

KREI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 · 이순미 · 강마야 · 김정승



KREI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김정섭·이순미·강마야·김정승



연구 담당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집필(1장, 2장, 4장, 5장, 6장)

이순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사례 조사, 집필(3장)

강마야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사례 조사, 집필(5장)

김정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설문 조사 진행, 집필(1장, 부록)

정책연구보고 P279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1. 9.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

I S B N | 979-11-6149-50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들의 주요 활동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고 향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전국의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 관련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표집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회의소 회원과 비회원의 응답을 비교하려고 농업회의소가 있는 시·군에서는 회원 농업인을 더 많이 표집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농업회의소 회원은 389명(23.5%)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농업기술센터·지역농협의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지방농정 관심도 및 참여도, 농정 관련 의견 제안 경험, 농업회의소 인지도 및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 평가, 농업회의소 활성화 과제, 농업회의소법에 관한 의견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 현재 활동 중인 전국 16개 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실무 책임자를 면담하였다. 농업회의소의 설립 과정, 현재 사무국 인력과 예산, 회원, 의사결정 구조 등 조직의 기본 현황, 농업인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활동 절차와 운영 방식, 정책 건의 외 운영 사업 현황, 농업회의소 활성화 과제 등에 관하여 반(半) 구조화된 형식의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충남연구원의 연구진과 분담·협업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 현재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는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법률적 근거 없이 비교적 적은 예산 지원하에서 농업인과 단체·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론화의 절차를 개발해 왔다. 제도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 낸 중요한 성과라 할 만하다. 농업회의소가 꾸준히 설립되고 여러 해에 걸쳐 경험이 축적되면서, 상당한 수준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농업회의소들이 출현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실제 경험에 바탕하여 새로 시작하는 농업회의소들을 조력할 단위가 만들어진 것도 성과다.
- 농업회의소 회원으로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괄하는 구성 방식을 창출한 것은 한국 농촌의 맥락에서 나온 독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지방농정 과정에서 공론 형성 역할을 수행해 온 농업인단체 등의 역할과 능력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농업인의 정책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농업회의소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독특한 방식의 대의 절차를 개발해 왔다는 점이다. 의사소통 밀도가 가장 높고 참여자 폭이 넓은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 유형부터, 가장 단순하며 공론장 성격이 약한 ‘농정부서에 대한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 유형까지 16개 유형의 공론화 절차가 생겨났다. 이 중에서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경로는 농업인 개인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숙의하는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의 형식을 한국의 농업회의소 내부에 도입한 중요한 성과다.

- 그러나 공론화 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 첫째, 민관협회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농업회의소 스스로 공론화 절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의 기능’을 실무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미흡, 비공식 간담회로 충분하다는 인식, ‘대의 기능’이 농업회의소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그러하다.
- 농업회의소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면 보조·수탁 사업비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리하여 사업 실행에 부담이 커지고,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인적 자원의 부족이 발생한다. 재정 확보를 위해 혹은 다수 농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활동에만 제한하여 보조사업을 수탁한다는 농업회의소가 많지만, 그 양 극단에 보조·수탁사업에 적극적인 입장과 공론장 기능에 집중해야 하므로 정책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있다. 정책 사업 집행과 공론장 기능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 여러 엇갈리는 의견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히 합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회의소의 정책 사업 집행을 둘러싸고 지역 내 기관·단체들과 오해를 빚는 사례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회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한계는 존재한다.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농업인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회의소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 반대이거나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참여는 저조하다.

정책 제언

- 공론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지방농정 당국이 농업회의소의 제안을 경청하거나 수용할 의무가 없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지방농정 당국과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는 공적 기구라는 정체성을 농업회의소에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재 법률 발의안들에서 ‘자문 및 건의’라고 표현되는 기능을 적어도 ‘심의’ 기능으로 바꾸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방농정심의회에 농업회의소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농업회의소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 공론장 기능과 정책 사업 집행 기능 둘 다 필요하지만 공론장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어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우선순위 문제’를 안내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농업회의소들이 ‘공론화 절차’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업회의소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무국에 필요한 전문성은 회의 조직화, 문서 작성, 자료 조사, 단체·행정·의회·농업인과의 소통과 중재,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식견 등 아주 폭넓고 그 수준도 상당하다. 이러한 전문성은 외부로부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획득하기 어렵다. 앞서가는 농업회의소들의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 농업회의소의 정책 사업 집행 기능과 관련해서는, 영속적·장기적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성격의 농정사무를 위탁받되 그것을 ‘고유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부합하는 농정사무로 농업경영체등록 제도나 공익직불제 관련 사무, 농지 관리 관련 사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가 없는 지역이 많고, 설립된 농업회의소들 간의 역량 차이도 있으므로 국가 농정사무의 위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6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11
제2장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13
1. 조사 개요	15
2.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참여 수준	17
3.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	29
4.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평가	33
5. 농업회의소 활성화의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	34
6. 소결: 지방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	41
제3장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45
1. 설립 과정	47
2. 사무국 운영 현황	62
3. 회원과 의사결정 구조	74
4. 소결: 개인과 단체의 동시 참여, 빈약한 재정	88
제4장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91
1. 분석 틀	93
2.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유형	97

3. 소결: 공론장 기능 활성화의 조건	118
제5장 공론장 기능 외의 사업 및 활동	123
1. 사업의 분류와 개요	125
2.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특징	128
3. 소결: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사업	147
제6장 결론	149
1. 성과와 한계	151
2. 발전 방안	156
부록	163
1. 설문 조사표	163
2. 설문 조사 결과	171
3. CP군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예시)	250
4.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2019년)	264
5.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등록 및 이행점검 단계 업무 개요도	289
참고문헌	291

제1장

〈표 1-1〉 21대 국회 농업회의소 법안 발의 현황(21년 10월 기준)	10
〈표 1-2〉 면담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12

제2장

〈표 2-1〉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16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	18
〈표 2-3〉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19
〈표 2-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	21
〈표 2-5〉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22
〈표 2-6〉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 (주관적 평가)	25
〈표 2-7〉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에 관한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의 주관적 평가 비교	25
〈표 2-8〉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 여부	26
〈표 2-9〉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27
〈표 2-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비교	28
〈표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28
〈표 2-12〉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30
〈표 2-13〉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1
〈표 2-14〉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32
〈표 2-15〉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에 관한 회원들의 주관적 평가	33

〈표 2-16〉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
〈표 2-17〉 농업회의소 법 제정 후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기능·역할 관계 전망	36
〈표 2-18〉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37
〈표 2-19〉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에 대한 의견	38
〈표 2-20〉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수준	38
〈표 2-21〉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39
〈표 2-22〉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40

제3장

〈표 3-1〉 사무국 인력 현황(2021년 7월 기준)	63
〈표 3-2〉 예산 및 재정 현황	67
〈표 3-3〉 회원 현황	75
〈표 3-4〉 조직 구성 현황	83

제4장

〈표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현황	98
〈표 4-2〉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실적	118

제5장

〈표 5-1〉 농업회의소 사업 분류 및 실행 현황	127
〈표 5-2〉 CG군 농업회의소의 주요 교육사업	143

제1장

〈그림 1-1〉 농어업회의소 사업 선정 현황(21년 10월 기준)	9
--	---

제2장

〈그림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23
〈그림 2-2〉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5

제3장

〈그림 3-1〉 시범사업 선정에서 창립총회까지 소요 기간(년)	48
〈그림 3-2〉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유형	49
〈그림 3-3〉 재원별 예산 비율	69
〈그림 3-4〉 지출항목별 비율	69

제4장

〈그림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공론화(의견수렴-건의) 절차 유형화의 틀	96
〈그림 4-2〉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유형 집약	97
〈그림 4-3〉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107
〈그림 4-4〉 농업회의소 공론화 절차들의 성격	120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부는 2021년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¹⁾ 농업회의소를 조직하려는 논의가 실행에 옮겨진 최초의 사례는 1998년에 있었던 전국농업회의소 창립 움직임이었다. 전국농업회의소 창립이 무산된 이후 20여 년 동안 국회에서는 9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른바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근년에 여러 차례 관련 법률 발의안이 제출되면서 관심을 끄는 농정 의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법제화 시도와는 별개로, 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촉진하려는 정책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¹⁾ 이 연구에서는 ‘농업회의소’라는 말을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업회의소’라고 되어 있으며, 법률 발의안들도 어촌까지 포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농어업회의소’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업이나 어촌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농업회의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20년까지 이른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20년 말까지 전국 각지에 20개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2021년 들어 20곳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사업은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설립 준비 과정을 컨설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된다.

설립되어 현재 활동하는 농업회의소들은 대부분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것인데, 그 운영 내용과 성과는 사례마다 차이가 크다. 설립되었지만 계속 운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된 곳에서부터,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대의(代議)의 제도적 절차’를 형성해 가는 곳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주된 기능 혹은 역할 또한 차이가 난다. 관련 법률이 없어 농업회의소의 ‘사업 범위’를 강제로 단일하게 규정하지 않고 ‘지역 농업인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라는 기본 목적만을 공유한 상태에서, 지역마다 각기 수행하는 농업회의소의 활동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하다.

팔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알려진 몇몇 사례가 ‘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활동이 미흡한 여러 사례를 근거로 ‘농업회의소 무용론’도 제기된다. 사실, 법률적 근거 없이 시작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사례들을 근거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 자체에 논리적 한계가 있음에도, 포괄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채 그 같은 논쟁 구도가 형성되는 현상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이미 설립·운영된 농업회의소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다. 그것을 토대로 ‘법제화’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농업회의소 제도의 기본 취지에 관한 논의,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된 농업회의소의 활동 성과나 한계를 살펴보고 분석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아주 드물다. 지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 농업회의소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며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들의 주요 활동 경험, 성과, 한계 등을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정립하며 향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세부 연구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지방농정 참여 수단으로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현재 활동 중인 농업회의소의 구성 과정과 조직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농업회의소들이 발전시켜 온 ‘지방농정 공론화 절차’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농업회의소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하고 분류하며, 농업회의소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활동들을 검토한다.

다섯째,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농업회의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 농업회의소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다.

3.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

3.1. 선행연구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외국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것과 국내 농업회의소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마상진 외(2014)에 따르면 농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주요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 있고,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등이 있다. 프랑스의 농업회의소에 관한 연구로는 오현석 외(1998), 오현석(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에 관한 것으로는 김수석 외(2010), 김수석(2018), 정기수 외(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오현석 외(1998)에서는 일본 농업회의소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다.

김수석 외(2010) 그리고 김수석(2018)에 따르면, 독일의 농업회의소는 주법(州法)에 기반한 농업인 자치기구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주 정부의 농정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주 단위가 중심이며, 군 단위 지소가 있다. 재원은 자체 수입과 주 정부 지원으로 구성되며, 자체 수입이 정부 보조보다 적다. 주 정부 농정 사업을 수탁한다는 점이 타국의 농업회의소와 다르다. 농업회의소가 없는 주에서는 농업청이 농정 사업을 수행한다.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김수석(2018), 정기수 외(2018)의 연구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업회의소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법에 기반한다. 주요 업무로는 농업인 대의 기능, 농업인 지도 및 상담, 회원 대상 직업·평생 교육, 정책 자금 집행 대행 등이 있다. 중앙, 주, 지역별 농업회의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주 농업회의소가 중심이다. 주 농업회의소와 지역 농민회의소 회원들이 농업인단체에서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오현석 외(1998), 오현석(2011), 정기수 외(2018) 등의 연구에서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를 다루었다. 프랑스 농업회의소는 중앙정부의 「농업회의소법」에 근거

한다. 주요 업무로는 중앙정부·도(department) 농정에 대한 자문 의견 개진, 지도사업, 직업훈련, 통계 작성과 보급, 농촌 관광이다. 구조는 도 농업회의소, 지역(region) 농업회의소, 전국 농업회의소로 계층 구조를 이룬다. 도 농업회의소가 중심이고 기초다.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 정부 보조,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이 중 토지세가 주요 수입원이다.

일본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오현석 외(1998) 그리고 정기수 외(2018)의 연구가 있다. 관련 근거는 중앙정부의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업무는 농지 행정, 농지 관련 자금 및 세제 관리, 농업인 연금 관련 업무, 농업인 의견 공표, 정책 건의 등이다. 시·정·촌 농업위원회, 도도부현 농업회의, 전국 농업회의소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이며, 시·정·촌 농업위원회가 기반이 된다. 재원은 주로 국가 보조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에 의존한다. 농지 관련 행정을 대행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국내 농업회의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방향, 운영 실태, 활동 및 기능에 대해서 다루었다(신희권, 2010; 마상진 외, 2014; 김정섭 외, 2020). 신희권(2010)은 지방농정 거버넌스 문제에 행정학적 접근을 취하면서, 지역 내 수평적 농정 거버넌스로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하였다. 농정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집약하면서 농업회의소가 지니는 위상을 정립하려 시도하였다.

마상진 외(2014)에서는 시·군 농어업회의소 조직 및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작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모색하였다. 김정섭 외(2020)에서는 시·군 농업회의소 사례 7곳을 면담 조사하여 현재 수행하는 활동 또는 기능을 분류하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지역 농업인의 의견 수렴, 정책 건의, 교육훈련, 정보 공유 등 핵심적인 기능 몇 가지를 식별하였다.

농업회의소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나 제도 현황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 농업회의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될

때 참조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제안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에 설립된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마상진 외(2014), 김정섭 외(20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시기적으로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행한 초기에 수행된 경우도 있어 현 시점에서 운영되는 농업회의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농업회의소의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있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는 국내 농업회의소들의 활동, 구성, 기능, 제도 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평가적 관점’에서 조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왜’ 하고 있는지를 경험적 근거 위에서 해명하고, 농업회의소 운영이나 향후 발전 방안 모색에 기여할 자료와 분석 결과를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3.2. 농업회의소 관련 정책 동향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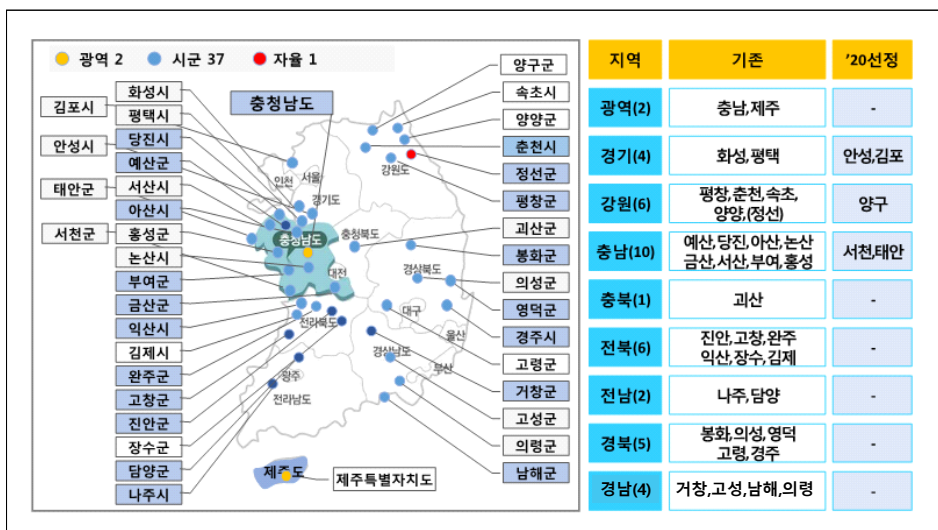
농업회의소와 관련된 정책 사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 사업’이 있다.³⁾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1) 민관협치 거버넌스 확산을 위한 농업회의소 확대 및 활성화, (2) 협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정 파트너십(partnership) 구축 및 공감대 확산이다. 지원 내용은 (1) 농업인 및 단체, 시·군 담당자 대상 농업회의소에 대한 교육, (2)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 (3) 농업회의소 이해 및 공감도 확산을 위한 교육과 지역 순회 설명회, 홍보 등이다. 정부 예산은 2019년 2억 원, 2020년과 2021년에 1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다.

²⁾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epis.or.kr/user/business/list?menuNo=20&level=2&partNo=&searchWord=%ED%9A%8C%EC%9D%98%EC%86%8C>, 검색일: 2021. 9. 15)와 농어업회의소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자료(2021)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³⁾ 2020년까지 ‘농업회의소 시범 사업’이었다가 2021년에 ‘농업회의소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37개소,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소로 총 39개소이다. 강원도 정선군 농업회의소는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립하였다. 시범사업을 거쳐 설립된 농업회의소는 총 20개소(충청남도,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예산, 완주, 아산, 당진, 금산, 익산, 부여, 담양, 춘천, 경주, 영덕, 화성)이다. 설립 중인 농업회의소는 19개소(제주도, 의성, 고성, 평택, 괴산, 서산, 장수, 고령, 논산, 속초, 양양, 의령, 홍성, 김제, 안성, 김포, 양구, 서천, 태안, 논산)다.

〈그림 1-1〉 농어업회의소 사업 선정 현황(21년 10월 기준)



자료: 김대현(2021: 46)을 수정함.

국회에서 발의된 농업회의소 법안은 총 5건(정부안, 신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 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안,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안,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안)이다. 발의된 법안마다 농업회의소의 목적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규정하였다. 농업회의소 임무에 관해 신정훈 의원 발의안이 증명·검사 및 감정, 기술보급·검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 설립인가권에 대해서는 이개호 의원 발의안만 기초 및 광역 농업회의소 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두었고, 다른 발의안은 모두

농식품부 장관에게 두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이개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 발의안이 지방자치단체만을 지원의 주체로 명시하였고, 나머지 3건의 발의안은 국가도 포함하였다.

〈표 1-1〉 21대 국회 농업회의소 법안 발의 현황(21년 10월 기준)

구분	21대 국회 의원발의안				정부안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목적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및 공익가치 제고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 발전
임무	자문·건의, 농지 이용,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제공,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증명·검사 및 감정, 기술보급·검정, 위탁업무 등 (15개 항목)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위탁업무, 부대사업 (7개 항목)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삶의 질, 위탁업무, 부대사업 (8개 항목)	정책 참여,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협력, 위탁업무 (8개 항목)	정책참여,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정보·자료 수집·제공, 대·내외 협력, 위탁업무 (8개 항목)
설 립 인 가	기초	30명 이상 발기	농업인 30명 이상, 3개 단체 이상 발기	30명 이상 발기	30명 이상 발기
		5% 또는 500명 이상 동의	5% 또는 500명 이상, 10개 단체 이상 동의	500명 이상 동의 *500명 미만 지역 연합설립	10% 또는 1,000명 이상 동의
	인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발기	기초 1/3 이상 발기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과반수 이상 동의	기초 1/2 이상 동의
	전국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			광역시·도지사
		기초·광역 1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2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20개 이상 발기	기초·광역 1/3 이상 발기
	인가	기초·광역 2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4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40개 이상 동의	기초·광역 1/2 이상 동의
특별 대의원	재적 대의원의 1/5 이내	재적 대의원의 1/2 이내	재적 대의원의 1/2 이내	재적 대의원의 1/5 이내	재적 대의원의 1/3 이내
경비 지원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국가·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지자체 경비 지원 가능	지자체 지원 가능
업무 위탁	-	-	-	회의소 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	-

자료: 김대현(2021: 31).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4.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농업회의소의 현황·기능을 조사·분석하고, 농업회의소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대한 만족도 및 참여 수준을 알아보고,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에 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농업회의소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제화 및 재원 등 농업회의소 활성화의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면담 조사, 문헌 조사 등을 통해 16개 시·군 농업회의소의 조직 구성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을 누가 주도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적 자원, 재정 현황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회의소 회원 및 조직 구성, 회비 납부 등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농업회의소의 공론장(公論場) 기능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인의 의견들이 어떠한 방법과 경로로 농업회의소에 전달되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어떠한 절차로 정리되며, 어떤 경로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건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농업회의소가 공론장으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논하였다. 농업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익사업, 경제사업, 홍보사업, 역량강화사업, 조직관리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농업회의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4.2. 연구 방법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농정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정 참여 여부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가입한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대한 평가, 농업회의소 회원 가입 의향 및 재원, 농업회의소법 제정에 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교차표를 이용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업회의소 16개소의 사무국장, 회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7월이다.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사무국 운영 현황, 회원, 조직 및 의사결정 구조, 농업인 의견 수렴 절차, 농업회의소 내부에서의 정리 과정, 농업인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는 과정, 공론장 기능 이외 농업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활동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⁴⁾

〈표 1-2〉 면담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개소	지역명
16	평창, 춘천, 정선, 거창, 완주, 익산, 나주, 봉화, 경주, 영덕, 아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담양

주: 충청남도 농업회의소도 면담 조사를 하였으나,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⁴⁾ 분석 결과를 서술할 때 각 농업회의소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제2장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2

농업회의소에 관한 농업인의 인식

1. 조사 개요

전국의 농업인 1,658명을 대상으로 농업회의소에 관해 제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⁵⁾ 2021년 6월 한 달 동안 두 가지 경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집하여 방문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장통신원 및 리포터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965명(58.2%), 후자의 경우는 693명(41.8%)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⁵⁾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에 관해 인지하는 정책 및 서비스 만족도', '지역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지방농정에 대한 인지된(perceived) 관심도 및 참여도, 농정 관련 의견 제언 경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평가하는 운영 실태 및 농업회의소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 '농업회의소법에 관한 의견' 등의 측면에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부록 1>에 실었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선별해 기술하였다. 가령, 응답자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 사이에 특정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거나, 응답 내용 자체가 함의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설명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응답 결과들 대부분을 <부록 2>에 옮겼다.

지역별 농업인구를 감안하여 표집하였다. 다만, 이미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농업인’과 ‘농업회의소가 지역에 없어서 가입하지 못했거나 있어도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 두 집단의 응답을 비교할 수 있게,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시·군에서는 농업회의소 회원인 농업인을 더 많이 표집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농업회의소 회원인 사람은 389명(23.5%), 회원이 아닌 사람은 1,254명(75.6%)이었다.

남성은 1,323명(79.83%), 여성은 325명(19.6%)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대로서 651명(39.31%)이었다. 그 다음으로 40대 및 50대 632명(38.1%), 70대 230명(13.9%), 40세 미만 청년층 99명(6.0%), 80세 이상 39명(2.4%)의 순이었다. 영농 경력이 31년 이상인 농업인이 483명(2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년 이하인 농업인이 167명(10.1%)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07명(18.5%)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거주자가 48명(2.9%)으로 가장 적었다.

〈표 2-1〉 설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비회원			무응답			전체
	389 (23.7)			1,254 (75.6)			15 (0.9)			1,658 (100.0)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전체
	1,323 (79.8)			325 (19.6)			10 (0.6)			1,658 (100.0)
연령대	20~30대	40~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무응답		전체
	99 (6.0)	632 (38.1)		651 (39.3)	230 (13.9)		39 (2.4)	7 (0.4)		1,658 (100.0)
영농종사 기간	1~5년	6~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무응답		전체
	167 (10.1)	312 (18.8)		418 (25.2)	269 (16.2)		483 (29.1)	9 (0.5)		1,658 (100.0)
거주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4 (12.3)	142 (8.6)	122 (7.4)	224 (13.5)	170 (10.3)	239 (14.4)	307 (18.5)	202 (12.2)	48 (2.9)	1,658 (100.0)

자료: 설문 조사.

2.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및 참여 수준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 분포는 대체로 정규분포와 유사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매우 불만족’ 및 ‘매우 만족’이라는 양극단으로 갈수록 응답 빈도가 낮았다<표 2-2>. ‘만족’ 및 ‘매우 만족’ 두 응답을 합친 빈도가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두 응답을 합친 빈도보다 아주 약간 높았다.

농업회의소 회원인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불만족’ 혹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만족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에 가입할 동기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아니면, 농업회의소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지방농정의 과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 불만족 성향이 강화되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방농정에 불만족 → 농업회의소 가입’과 ‘농업회의소 가입 → 지방농정에 불만족’이라는 두 흐름이 상호작용하는지도 모른다.

연령층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20대 및 30대 청년 농업인 집단과 60대 농업인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그리고 ‘불만족’의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높았다. 청년 농업인 집단의 경우, 절박한 정책 요구가 많은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이 그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얼마나 오래 농사를 지어왔는가, 즉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서도 만족도 응답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난다. 영농 경력이 많을수록 불만족 성향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표 2-2〉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31(8.0)	81(20.8)	186(47.8)	64(16.5)	27(6.9)	389(100.0)	$\chi^2=21.7$ $p=0.000$
	비회원	51(4.1)	237(18.9)	632(50.5)	284(22.7)	48(3.8)	1,252(100.0)	
	전체	82(5.0)	318(19.4)	818(49.8)	348(21.2)	75(4.6)	1,641(100.0)	
연령대	20~30대	6(6.1)	23(23.2)	39(39.4)	27(27.3)	4(4.0)	99(100.0)	$\chi^2=35.2$ $p=0.004$
	40~50대	24(3.8)	125(19.8)	310(49.1)	140(22.2)	32(5.1)	631(100.0)	
	60대	43(6.6)	136(20.9)	330(50.7)	122(18.7)	20(3.1)	651(100.0)	
	70대	8(3.5)	35(15.3)	121(52.8)	50(21.8)	15(6.6)	229(100.0)	
	80세 이상	1(2.6)	1(2.6)	24(61.5)	8(20.5)	5(12.8)	39(100.0)	
	전체	82(5.0)	320(19.4)	824(50.0)	347(21.0)	76(4.6)	1,649(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4(2.4)	28(16.8)	88(52.7)	40(24.0)	7(4.2)	167(100.0)	$\chi^2=32.5$ $p=0.009$
	6~10년	10(3.2)	66(21.2)	142(45.7)	79(25.4)	14(4.5)	311(100.0)	
	11~20년	19(4.6)	92(22.1)	209(50.1)	89(21.3)	8(1.9)	417(100.0)	
	21~30년	17(6.3)	57(21.2)	134(49.8)	47(17.5)	14(5.2)	269(100.0)	
	31년 이상	32(6.6)	78(16.1)	249(51.6)	92(19.0)	32(6.6)	483(100.0)	
	전체	82(5.0)	321(19.5)	822(49.9)	347(21.1)	75(4.6)	1,647(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5(7.4)	52(25.5)	88(43.1)	44(21.6)	5(2.5)	204(100.0)	$\chi^2=50.8$ $p=0.018$
	강원도	7(4.9)	24(16.9)	67(47.2)	32(22.5)	12(8.5)	142(100.0)	
	충청북도	2(1.6)	18(14.8)	53(43.4)	44(36.1)	5(4.1)	122(100.0)	
	충청남도	14(6.3)	41(18.4)	115(51.6)	40(17.9)	13(5.8)	223(100.0)	
	전라북도	6(3.5)	35(20.6)	95(55.9)	27(15.9)	7(4.1)	170(100.0)	
	전라남도	13(5.4)	43(18.0)	128(43.6)	46(19.2)	9(3.8)	239(100.0)	
	경상북도	14(4.6)	54(17.6)	147(48.0)	76(24.8)	15(4.9)	306(100.0)	
	경상남도	9(4.5)	44(21.9)	106(52.7)	34(16.9)	8(4.0)	201(100.0)	
	제주도	2(4.2)	10(20.8)	28(58.3)	6(12.5)	2(4.2)	48(100.0)	
	전체	82(5.0)	321(19.4)	827(50.0)	349(21.1)	76(4.6)	1,655(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응답자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지방농정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거주지 변수를 살펴본 것이기는 하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농정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농업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

2.1.2. 지방의회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의정활동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의회가 펼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문항에서는 ‘매우 불만족’ 및 ‘불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만족’ 및 ‘만족’에 응답한 비율보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전자의 응답 비율은 36.9%였고, 후자의 응답 비율은 18.7%에 불과했다.

〈표 2-3〉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31(9.9)	381(28.9)	572(43.4)	181(13.7)	54(4.1)	1,319(100.0)	$\chi^2=11.9$ $p=0.018$
	여성	23(7.1)	71(21.8)	158(48.6)	54(16.6)	19(5.8)	325(100.0)	
	전체	154(9.4)	452(27.5)	730(44.4)	235(14.3)	73(4.4)	1,644(100.0)	
연령대	20~30대	10(10.1)	21(21.2)	38(38.4)	27(27.3)	3(3.0)	99(100.0)	$\chi^2=43.9$ $p=0.000$
	40~50대	47(7.4)	174(27.6)	293(46.4)	85(13.5)	32(5.1)	631(100.0)	
	60대	78(12.0)	197(30.3)	275(42.3)	80(12.3)	20(3.1)	650(100.0)	
	70대	18(7.9)	53(23.2)	108(47.4)	35(15.4)	14(6.1)	228(100.0)	
	80세 이상	1(2.6)	7(17.9)	17(43.6)	10(25.6)	4(10.3)	39(100.0)	
	전체	154(9.4)	452(27.4)	731(44.4)	237(14.4)	73(4.4)	1,647(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5(3.0)	41(24.6)	82(49.1)	34(20.4)	5(3.0)	167(100.0)	$\chi^2=44.1$ $p=0.000$
	6~10년	28(9.0)	83(26.8)	138(44.5)	46(14.8)	15(4.8)	310(100.0)	
	11~20년	47(11.3)	125(30.0)	184(44.2)	53(12.7)	7(1.7)	416(100.0)	
	21~30년	32(11.9)	89(33.1)	109(40.5)	24(8.9)	15(5.6)	269(100.0)	
	31년 이상	42(8.7)	115(23.8)	217(44.9)	79(16.4)	30(6.2)	483(100.0)	
	전체	154(9.4)	453(27.5)	730(44.4)	236(14.3)	72(4.4)	1,645(100.0)	
거주 지역	경기도	29(14.2)	65(31.9)	84(41.2)	19(9.3)	7(3.4)	204(100.0)	$\chi^2=57.0$ $p=0.004$
	강원도	9(6.3)	39(27.5)	67(47.2)	20(14.1)	7(4.9)	142(100.0)	
	충청북도	7(5.8)	21(17.4)	56(46.3)	29(24.0)	8(6.6)	121(100.0)	
	충청남도	19(8.5)	68(30.5)	85(38.1)	39(17.5)	12(5.4)	223(100.0)	
	전라북도	15(8.8)	52(30.6)	79(46.5)	14(8.2)	10(5.9)	170(100.0)	
	전라남도	26(10.9)	57(23.8)	112(46.9)	33(13.8)	11(4.6)	239(100.0)	
	경상북도	30(9.8)	80(26.1)	136(44.4)	51(16.7)	9(2.9)	306(100.0)	
	경상남도	14(7.0)	66(32.8)	85(42.3)	29(14.4)	7(3.5)	201(100.0)	
	제주도	5(10.6)	7(14.9)	30(63.8)	3(6.4)	2(4.3)	47(100.0)	
	전체	154(9.3)	455(27.5)	734(44.4)	237(14.3)	73(4.4)	1,653(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세분한 비교에서도 그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 간의 비교만 제외한 나머지 특성별 비교에서 집단 간의 응답 빈도는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대체로 거의 모든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았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여정보다는 남성에서, 다른 연령 집단보다 60대 연령층에서 현저하게, 영농 종사기간이 11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집단에서,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 같은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의 정치과정에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접촉하여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서 ‘매우 불만족 +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여정보다는 남성이, 농촌에서는 너무 젊지도 않고 아주 고령도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60대 연령층이, 영농 경력이 너무 짧지도 않고 영농 은퇴를 목전에 둔 것도 아닌 고참 농업인이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정치과정에 접촉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과 정보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효과를 낳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1.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역의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만족 + 만족’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응답자의 43.7%가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여러 기준으로 세분한 응답자 집단별로 비교해도, 그런 패턴은 동일하다.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 비율이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경

우는 어느 집단에서도 없었다. 다만,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서 통계적 유의수준 5% 이내 범위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농업회의소 회원보다는 비회원들 사이에서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이 충청북도인 경우 ‘매우 만족 + 만족’ 응답 비율이 61.9%나 되어 아주 높았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였는데 37.4%였다.

〈표 2-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4(6.2)	55(14.2)	154(39.7)	109(28.1)	46(11.9)	388(100.0)	$\chi^2=14.5$ $p=0.006$
	비회원	40(3.2)	171(13.7)	473(37.9)	449(36.0)	115(9.2)	1,248(100.0)	
	전체	64(3.9)	226(13.8)	627(38.3)	558(34.1)	161(9.8)	1,636(100.0)	
거주 지역	경기도	10(4.9)	22(10.8)	76(37.3)	71(34.8)	25(12.3)	204(100.0)	$\chi^2=54.7$ $p=0.008$
	강원도	6(4.3)	19(13.5)	57(40.4)	43(30.5)	16(11.3)	141(100.0)	
	충청북도	4(3.3)	13(10.7)	29(24.0)	62(51.2)	13(10.7)	121(100.0)	
	충청남도	3(1.3)	28(12.6)	88(39.5)	75(33.6)	29(13.0)	223(100.0)	
	전라북도	7(4.1)	25(14.7)	81(47.6)	48(28.2)	9(5.3)	170(100.0)	
	전라남도	10(4.2)	37(15.5)	99(41.4)	75(31.4)	18(7.5)	239(100.0)	
	경상북도	13(4.3)	36(11.8)	115(37.8)	109(35.9)	31(10.2)	304(100.0)	
	경상남도	9(4.5)	44(21.9)	73(36.3)	59(29.4)	16(8.0)	201(100.0)	
	제주도	2(4.3)	5(10.6)	17(36.2)	18(38.3)	5(10.6)	47(100.0)	
	전체	64(3.9)	229(13.9)	635(38.5)	560(33.9)	162(9.8)	1,650(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2.1.4.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역농협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 만족’ 응답률(32.6%)이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27.5%)보다 조금 높았다. 그런데 몇 가지 응답자 특성별로 세분한 집단 간 비교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응답한 집단들도 있었다. 농

업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들, 40대 및 50대 연령층, 영농 종사 기간이 11~30년 사이에 있는 농업인 등의 집단에서는 ‘매우 불만족 + 불만족’ 응답률이 더 높았다. 앞서 살펴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다.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연령대 및 영농 경력 소유자 집단에서 만족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즉, 접촉이 많을수록 불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그와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농협들이 대체로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향이 있다는 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표 2-5〉 지역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42(10.8)	104(26.7)	142(36.5)	70(18.0)	31(8.0)	389(100.0)	$\chi^2=31.9$ $p=0.000$
	비회원	72(5.8)	231(18.5)	513(41.1)	337(27.0)	95(7.6)	1,248(100.0)	
	전체	114(7.0)	335(20.5)	655(40.0)	407(24.9)	126(7.7)	1,637(100.0)	
연령대	20~30대	8(8.1)	25(25.3)	28(28.3)	34(34.3)	4(4.0)	99(100.0)	$\chi^2=59.4$ $p=0.000$
	40~50대	50(7.9)	143(22.7)	260(41.3)	143(22.7)	34(5.4)	630(100.0)	
	60대	42(6.5)	136(21.0)	276(42.5)	147(22.7)	48(7.4)	649(100.0)	
	70대	14(6.1)	29(12.7)	80(35.1)	72(31.6)	33(14.5)	228(100.0)	
	80세 이상	1(2.6)	3(7.7)	17(43.6)	10(25.6)	8(20.5)	39(100.0)	
	전체	115(7.0)	336(20.4)	661(40.2)	406(24.7)	127(7.7)	1,645(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7(4.2)	31(18.6)	68(40.7)	53(31.7)	8(4.8)	167(100.0)	$\chi^2=62.5$ $p=0.000$
	6~10년	16(5.2)	66(21.4)	126(40.8)	85(27.5)	16(5.2)	309(100.0)	
	11~20년	33(8.0)	93(22.4)	182(43.9)	80(19.3)	27(6.5)	415(100.0)	
	21~30년	36(13.4)	64(23.8)	96(35.7)	57(21.2)	16(5.9)	269(100.0)	
	31년 이상	23(4.8)	83(17.2)	189(39.1)	128(26.5)	60(12.4)	483(100.0)	
	전체	115(7.0)	337(20.5)	661(40.2)	403(24.5)	127(7.7)	1,64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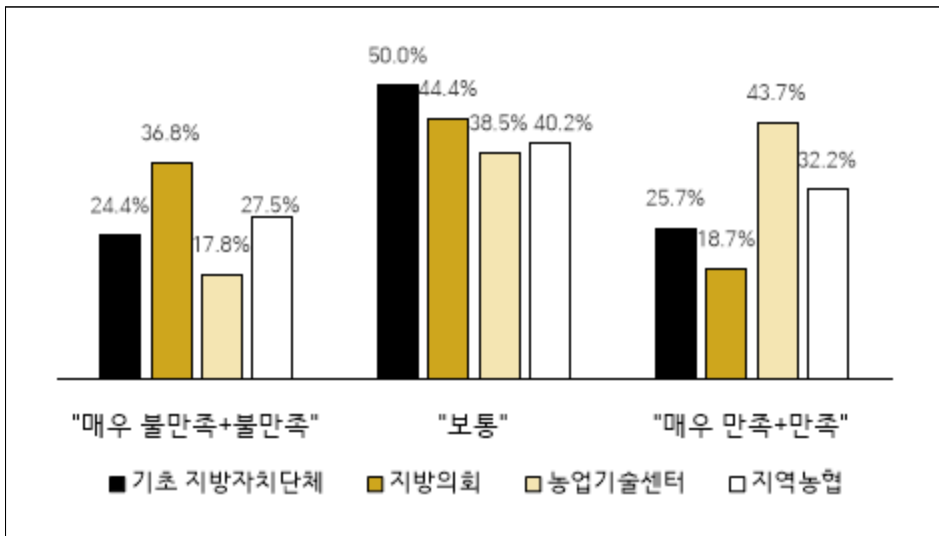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2.1.5.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시·군 수준에서 지방농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농업기술센터 등의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인 지역농협을 꼽을 수 있다. 이 기관들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다.⁶⁾ 조사 결과, 이들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지닌 기관의 활동에 관해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지방의회의 농업·농촌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그림 2-1〉 지방농정 관련 주요 기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자료: 설문 조사.

농업인들이 응답한 만족도 수준이 해당 기관의 활동, 사업, 업무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족도 수준은 농업인들이 해

⁶⁾ 농업기술센터와 시·군청의 '농정과' 같은 농업 행정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 경우 농업기술센터도 행정 부서처럼 정책 의사결정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교육·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다. 바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정책 의사결정보다는 고유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만족도를 물었다.

당 기관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수준과 기관들이 수행했다고 인지하는 역할 수준의 격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방농정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주된 역할로 삼는 농업기술센터나 지역농협에 비해, 의사결정 권한과 기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요인이 있다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지역의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지방농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물었다. 세 질문 각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빈도의 비율(‘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의 응답률을 합한 것)은 ‘관심’보다는 ‘참여’를, 그리고 ‘참여’보다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서 더 낮다. ‘관심(52.6%) > 참여(39.6%) > 영향력(28.8%)’의 순이다(표 2-6). 이 같은 응답은 일견, 상식적이다. 관심을 갖는 것, 참여하는 것, 영향력을 갖는 것은 순서대로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회의소 회원인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사이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표 2-7). 농업회의소 회원들 중에서 ‘관심’, ‘참여’,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그렇다 +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66.8%, 50.9%, 34.0%였다. 이에 비해 회원이 아닌 응답자들 중에서 그 비율은 각각 48.7%, 36.1%, 27.2%였다. 세 문항 모두에 대해서 농업회의소 회원인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의 농업인들 중 지방농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이들이 농업회의소에 가입했을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거꾸로 농업회의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회원인 농업인들에게 지방농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고 해서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인지되지는 않는 것 같다. ‘관심’과 ‘참여’ 측면에서의 집단 간(회원/비회원) 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 비율의 차이가 18.1%p, 14.8%p로 큰 것에 비해, ‘영향력’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 차이는 6.8%p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표 2-6〉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주관적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관심이 많다 (N=1,639)	38 (2.3)	164 (10.0)	569 (34.7)	628 (38.3)	240 (14.6)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N=1,636)	51 (3.1)	284 (17.4)	653 (39.9)	496 (30.3)	152 (9.3)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N=1,637)	94 (5.7)	283 (23.4)	688 (42.0)	349 (21.3)	123 (7.5)

자료: 설문 조사.

〈표 2-7〉 지방농정에 대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관심, 참여, 영향력에 관한 농업회의소 회원 및 비회원의 주관적 평가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고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관심이 많다 (N=1,639)	회원	6 (1.5)	18 (4.6)	106 (27.2)	160 (41.1)	99 (25.4)	$\chi^2=66.0$ $p=0.000$
	비회원	32 (2.6)	146 (11.7)	463 (37.0)	468 (37.4)	141 (11.3)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N=1,636)	회원	7 (1.8)	47 (12.1)	137 (35.2)	130 (33.4)	68 (17.5)	$\chi^2=52.3$ $p=0.000$
	비회원	44 (3.5)	237 (19.0)	516 (41.4)	366 (29.4)	84 (6.7)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N=1,637)	회원	18 (4.6)	96 (24.7)	142 (36.6)	89 (22.9)	43 (11.1)	$\chi^2=14.3$ $p=0.006$
	비회원	76 (6.1)	287 (23.0)	546 (43.7)	260 (20.8)	80 (6.4)	

자료: 설문 조사.

시·군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약 4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표 2-8>. 이 같은 제안 경험은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났다. 농업회의소 회원이 비회원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20대 및 30대 젊은 연령층이, 영농 종사 경력이 21~30년 사이에 있는 농업인 집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자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8〉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53(65.0)	136(35.0)	389(100.0)	$\chi^2=101.7$ $p=0.000$
	비회원	452(36.1)	801(63.9)	1,253(100.0)	
	전체	705(42.9)	937(57.1)	1,642(100.0)	
성별	남성	635(48.0)	687(52.0)	1,322(100.0)	$\chi^2=67.9$ $p=0.000$
	여성	74(22.8)	251(77.2)	325(100.0)	
	전체	709(43.0)	938(57.0)	1,647(100.0)	
연령대	20~30대	57(57.6)	42(42.4)	99(100.0)	$\chi^2=40.1$ $p=0.000$
	40~50대	261(39.8)	380(60.2)	631(100.0)	
	60대	319(49.0)	332(51.0)	651(100.0)	
	70대	76(33.0)	154(67.0)	230(100.0)	
	80세 이상	7(17.9)	32(82.1)	39(100.0)	
	전체	710(43.0)	940(57.0)	1,650(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59(35.3)	108(64.7)	167(100.0)	$\chi^2=20.1$ $p=0.000$
	6~10년	111(35.7)	200(64.3)	311(100.0)	
	11~20년	184(44.0)	234(56.0)	418(100.0)	
	21~30년	139(51.7)	130(48.3)	269(100.0)	
	31년 이상	218(45.1)	265(54.9)	483(100.0)	
	전체	711(43.1)	937(56.9)	1,648(100.0)	
거주 지역	경기도	81(39.7)	123(60.3)	204(100.0)	$\chi^2=33.3$ $p=0.000$
	강원도	80(56.3)	62(43.7)	142(100.0)	
	충청북도	32(26.2)	90(73.8)	122(100.0)	
	충청남도	110(49.1)	114(50.9)	224(100.0)	
	전라북도	76(45.0)	93(55.0)	169(100.0)	
	전라남도	96(40.2)	143(59.8)	239(100.0)	
	경상북도	129(42.2)	177(57.8)	306(100.0)	
	경상남도	93(46.3)	108(53.7)	201(100.0)	
	제주도	15(31.3)	33(68.8)	48(100.0)	
	전체	712(43.0)	943(57.0)	1,655(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있음'과 '없음' 중에서 응답 비율이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해 농업인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렴하는가’에 대한 농업인들의 긍정평가 비율은 43.2%, 부정평가 비율은 46.2%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약간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표 2-9>.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 긍정평가는 51.6%로 비회원 집단의 긍정평가 40.6%보다 상당히 높았다<표 2-10>. 회원들 자신이 가입한 농업회의소를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창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책 과정에 농업인이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동의한다(매우 그렇다 +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83.6%나 되었다. 농업회의소 회원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89.5%로 비회원 집단의 81.9%보다 더 높았다.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1.2%나 되어 눈길을 끈다. 농업회의소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 정보, 경험 등으로 인해 농업인의 지방농정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탓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 필요성을 남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농업인들이 먼저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결과가 설문 조사 응답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대개는 ‘농업회의소 활동 →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과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 농업회의소 활동’이라는 두 방향의 흐름이 상호작용했을 것이다.

〈표 2-9〉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N=1,630)	117 (7.2)	636 (39.0)	609 (37.4)	95 (5.8)	15 (3.9)
농업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N=1,640)	31 (1.9)	156 (9.5)	689 (42.0)	683 (41.6)	81 (4.9)

자료: 설문 조사.

〈표 2-10〉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견 수렴 태도 평가와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 인식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비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N=1,630)	회원	27 (7.0)	145 (37.6)	172 (44.6)	27 (7.0)	15 (3.9)	$\chi^2=30.1$ $p=0.000$
	비회원	90 (7.2)	491 (39.5)	437 (35.1)	68 (5.5)	158 (12.7)	
농업인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N=1,640)	회원	6 (1.5)	30 (7.7)	149 (38.3)	192 (51.2)	5 (1.3)	$\chi^2=28.6$ $p=0.000$
	비회원	25 (2.0)	126 (10.1)	540 (43.2)	484 (38.7)	76 (6.1)	

자료: 설문 조사.

‘농업인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참여 통로(기회) 부족’(2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2-11). 한편, 농업회의소 회원 집단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31.6%)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농업회의소 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문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얻게 된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2-11〉 기초 지방자치단체 농정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모름	전체
회원	40(10.3)	44(11.3)	99(25.4)	68(17.5)	123(31.6)	4(1.0)	11(2.8)	389(100.0)
비회원	128(10.2)	265(21.2)	329(26.3)	260(20.8)	225(18.0)	13(1.0)	31(2.5)	1,251(100.0)
전체	168(10.2)	309(18.8)	428(26.1)	328(20.0)	348(21.2)	17(1.0)	42(2.6)	1,640(100.0)

주: $\chi^2=43.185$, $p=0.000$

자료: 설문 조사.

3.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

농업회의소는 아직 법률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일 뿐이다. 농업회의소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국의 다수 농업인들이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 정도는 어떠한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은 얼마나 느끼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약 55%가 농업회의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표 2-12). 농업회의소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였고,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 비율이 약 29%였다. 한편,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약 22%)와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약 23%)는 응답의 비율을 합쳐 대략 45% 정도의 농업인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에 관해 인지하고 있는, 즉 들어본 적이 있고 잘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응답자 집단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여성(35.1%)에 비해 남성(48.0%)의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농업에 관한 다른 사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흔히 나타나지만, 여성 농업인보다는 남성 농업인이 지방농정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에 훨씬 더 자주 노출되거나 참여하기 때문이다.

연령 집단 중에서는 특히 60대 연령층에서 농업회의소에 관해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5%로 현저하게 높았다. 60대 연령층은 농업인 중에서도 그 구성비가 가장 높은 최빈 세대이며, 실제로 지방농정과 관련된 여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영농 종사 기간이 21년 이상인 농업인 집단에서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60대 연령층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현재 설립되어 활동하는 농업회의소가 가장 많은 지역들이다. 한편,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 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시·군 중 농업회의소가 설립된 곳은 하나도 없다.

〈표 2-12〉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비고
성별	남성	326(24.7)	307(23.3)	317(24.0)	370(28.0)	1,320(100.0)	$\chi^2=29.0$ $p=0.000$
	여성	37(11.4)	77(23.7)	100(30.8)	111(34.2)	325(100.0)	
	전체	363(22.1)	384(23.3)	417(25.3)	481(29.2)	1,645(100.0)	
연령대	20~30대	20(20.2)	27(27.3)	29(29.3)	23(23.2)	99(100.0)	$\chi^2=51.3$ $p=0.000$
	40~50대	128(20.3)	171(27.1)	168(26.6)	164(26.0)	631(100.0)	
	60대	185(28.5)	127(19.6)	142(21.9)	195(30.0)	649(100.0)	
	70대	30(13.0)	52(22.6)	67(29.1)	81(35.2)	230(100.0)	
	80세 이상	2(5.1)	7(17.9)	13(33.3)	17(43.6)	39(100.0)	
	전체	365(22.1)	384(23.3)	419(25.4)	480(29.1)	1,648(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18(10.8)	42(25.1)	56(33.5)	51(30.5)	167(100.0)	$\chi^2=94.5$ $p=0.000$
	6~10년	33(10.6)	81(26.0)	91(29.3)	106(34.1)	311(100.0)	
	11~20년	79(18.9)	78(18.7)	120(28.8)	140(33.6)	417(100.0)	
	21~30년	80(29.9)	64(23.9)	53(19.8)	71(26.5)	268(100.0)	
	31년 이상	156(32.3)	119(24.6)	97(20.1)	111(23.0)	483(100.0)	
	전체	366(22.2)	384(23.3)	417(25.3)	479(29.1)	1,646(100.0)	
거주 지역	경기도	26(12.7)	39(19.1)	52(25.5)	87(42.6)	204(100.0)	$\chi^2=99.6$ $p=0.000$
	강원도	44(31.0)	35(24.6)	28(19.7)	35(24.6)	142(100.0)	
	충청북도	10(8.3)	25(20.7)	36(29.8)	50(41.3)	121(100.0)	
	충청남도	82(36.6)	52(23.2)	48(21.4)	42(18.8)	224(100.0)	
	전라북도	38(22.4)	47(27.6)	45(26.5)	40(23.5)	170(100.0)	
	전라남도	52(21.8)	53(22.3)	61(25.6)	72(30.3)	238(100.0)	
	경상북도	58(19.0)	75(24.6)	86(28.2)	86(28.2)	305(100.0)	
	경상남도	54(26.9)	48(23.9)	48(23.9)	51(25.4)	201(100.0)	
	제주도	2(4.2)	10(20.8)	15(31.3)	21(43.8)	48(100.0)	
	전체	366(22.1)	384(23.2)	419(25.3)	484(29.3)	1,653(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의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 수준과 필요성을 느끼는 수준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는 듯하다. 농업회의소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6%였다<표 2-13>. 필요성 측면에서 긍정응답 비율이 84%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집단에 따라 약간의 정도 차이는 드러난다. 여정보다는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 40대·50대·60대 연령층에서, 영농경력 21년 이상인 집단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2-13〉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9(1.4)	81(6.1)	589(44.6)	531(40.2)	101(7.6)	1,321(100.0)	$\chi^2=17.4$ p=0.002
	여성	7(2.2)	17(5.2)	168(51.7)	95(29.2)	38(11.7)	325(100.0)	
	전체	26(1.6)	98(6.0)	757(46.0)	626(38.0)	139(8.4)	1,646(100.0)	
연령대	20~30대	1(1.0)	9(9.1)	61(61.6)	21(21.2)	7(7.1)	99(100.0)	$\chi^2=51.7$ p=0.000
	40~50대	13(2.1)	35(5.5)	285(45.1)	253(40.0)	46(7.3)	632(100.0)	
	60대	11(1.7)	36(5.5)	260(40.1)	283(43.6)	59(9.1)	649(100.0)	
	70대	1(0.4)	17(7.4)	131(57.0)	59(25.7)	22(9.6)	230(100.0)	
	80세 이상	0(0.0)	2(5.1)	21(53.8)	10(25.6)	6(15.4)	39(100.0)	
	전체	26(1.6)	99(6.0)	758(46.0)	626(38.0)	140(8.5)	1,649(100.0)	
영농 종사 기간	1~5년	3(1.8)	12(7.2)	92(55.1)	45(26.9)	15(9.0)	167(100.0)	$\chi^2=29.5$ p=0.021
	6~10년	6(1.9)	16(5.1)	162(51.9)	98(31.4)	30(9.6)	312(100.0)	
	11~20년	8(1.9)	31(7.5)	181(43.5)	158(38.0)	38(9.1)	416(100.0)	
	21~30년	4(1.5)	17(6.3)	118(43.9)	113(42.0)	17(6.3)	269(100.0)	
	31년 이상	5(1.0)	23(4.8)	204(42.2)	212(43.9)	39(8.1)	483(100.0)	
	전체	26(1.6)	99(6.0)	757(46.0)	626(38.0)	139(8.4)	1,647(100.0)	
거주 지역	경기도	7(3.4)	10(4.9)	90(44.1)	76(37.3)	21(10.3)	204(100.0)	$\chi^2=54.1$ p=0.009
	강원도	2(1.4)	11(7.8)	54(38.3)	67(47.5)	7(5.0)	141(100.0)	
	충청북도	0(0.0)	3(2.5)	63(51.6)	39(32.0)	17(13.9)	122(100.0)	
	충청남도	4(1.8)	14(6.3)	95(42.4)	93(41.5)	18(8.0)	224(100.0)	
	전라북도	3(1.8)	7(4.1)	81(47.6)	67(39.4)	12(7.1)	170(100.0)	
	전라남도	4(1.7)	15(6.3)	106(44.5)	96(40.3)	17(7.1)	238(100.0)	
	경상북도	4(1.3)	22(7.2)	154(50.3)	95(31.0)	31(10.1)	306(100.0)	
	경상남도	2(1.0)	15(7.5)	86(43.0)	87(43.5)	10(5.0)	200(100.0)	
	제주도	0(0.0)	3(6.3)	29(60.4)	8(16.7)	8(16.7)	48(100.0)	
	전체	26(1.6)	100(6.0)	758(45.9)	628(38.0)	141(8.5)	1,653(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어느 지역에서 농업회의소가 결성되고 활동하면, 그것에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들이 지방농정 당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를 식별하고 제기하는 통로로서 농업회의소가 기능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과정, 특히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인과 행정의 협력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셋째는 농업회의소가 늘 한결같이 지역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의 기능들에 관해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긍정응답(매우 그렇다 + 그렇다)을 제출하였다. ‘현안 문제 제기’, ‘협력적 의사결정’, ‘의사 대변’ 등의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응답률은 각각 66.8%, 66.9%, 57.2%였다. ‘의사 대변’ 측면의 기대효과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농업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지역의 농업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기구라는 인식은 확산되어 있는데 비해,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결집된 의사를 표현하는 ‘응집력 있는 단체’로서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덜 수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14〉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농업회의소는 지방농정 현안 문제를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1,639)	35 (2.1)	103 (6.3)	406 (24.8)	717 (43.7)	378 (23.1)
농업회의소는 제안된 지방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과 행정의 상호 협력해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N=1,636)	28 (1.7)	106 (6.5)	406 (24.8)	719 (43.9)	377 (23.0)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농업인단체) 의사를 잘 대변할 것이다 (N=1,635)	39 (2.4)	157 (9.6)	495 (30.3)	621 (38.0)	323 (19.8)

자료: 설문 조사.

4.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평가

현재 전국에 17개소의 농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다. 8년 이상 운영한 곳이 있고, 이제 막 설립된 초기 단계의 농업회의소도 있다. 어쨌든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들이 농업회의소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⁷⁾

〈표 2-15〉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에 관한 회원들의 주관적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의 정관과 규정은 구체적이다 (N=388)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의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N=388)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는 적절하다 (N=387)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 사무국의 인력은 적절하다 (N=387)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되었다 (N=387)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의 회원들은 농업회의소의 목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다 (N=386)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의 회원들은 상호협력한다 (N=387)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우리 지역 농업회의소 회원은 회의소 활동에 적극적이다 (N=387)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응답자 집단별로 해당 '보기' 항목 중 '매우 만족+만족'과 '매우 불만족+불만족'의 응답 비율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7) 농업회의소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조직 구조, 재정 상태 등이 다양한 양상이어서, 농업회의소 각각에 대하여 회원들의 주관적 평가를 파악해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설문 조사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농업회의소 각각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을 구할 수 없고, 뭉통그러서 평가 의견을 정리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농업회의소 각각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후의 장절에서 제시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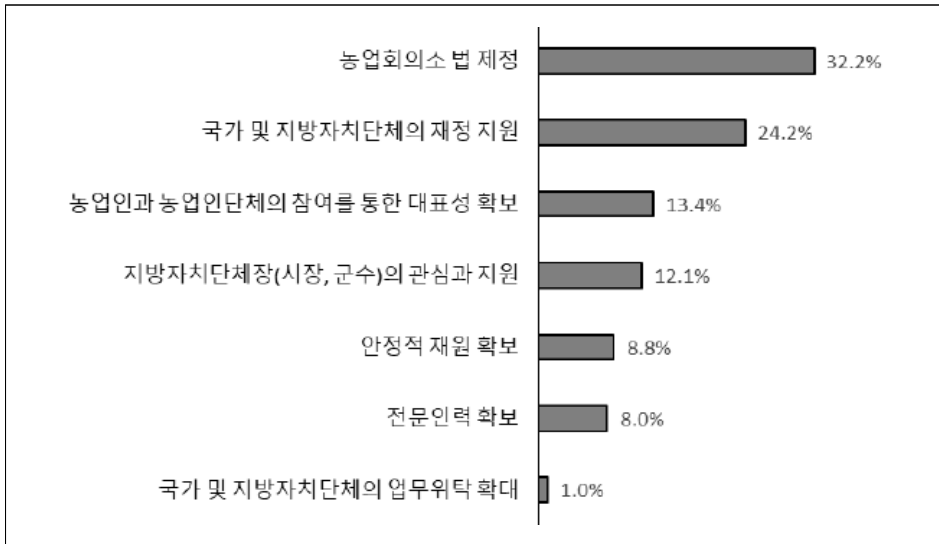
부정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비율이 긍정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보다 더 높은 질문 문항은 ‘재정자립도’와 ‘사무국 인력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긍정응답 비율이 부정응답 비율보다 높은 6개 문항을 긍정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열거하면, ‘농업회의소 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69.8%),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업회의소 설립’(68.2%), ‘구체적인 농업회의소 정관 및 규정’(65.3%), ‘농업회의소의 목표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공유’(55.7%), ‘농업회의소 회원들의 상호 협력’(46.8%), ‘회원들의 농업회의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39.5%) 등의 순이다.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대체로 형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농업회의소 회원들의 실제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바꿔 말하자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규정 등을 통해 민주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등의 과업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회원들의 실제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남겨진 숙제가 많음을 뜻한다. 그리고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당면한 중요 과제라고 인정된다.

5. 농업회의소 활성화의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꼽은 조건은 ‘농업회의소법 제정’(32.2%)이었다. 그 다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24.2%),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13.4%),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의 관심과 지원’(12.1%), ‘안정적 재원 확보’(8.8%), ‘전문인력 확보’(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확대’(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2-2〉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긍정응답(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 비율은 81.2%로 아주 높았다<표 2-16>. 특히, 농업회의소 회원 집단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66.4%에 달했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기초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학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16〉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농업회의소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	회원	3 (0.8)	9 (2.3)	109 (28.2)	257 (66.4)	9 (2.3)	387 (100.0)
	비회원	36 (2.9)	81 (6.5)	626 (50.3)	331 (26.6)	170 (13.7)	1,244 (100.0)
	전체	39 (2.4)	90 (5.5)	735 (45.1)	588 (36.1)	179 (11.0)	1,631 (100.0)

주: $\chi^2=211.4$, $p=0.000$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는 여론 중에는 그 이유로 ‘농업회의소법이 제정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여러 농업인단체와 경합하는 관계에 놓이는 또 다른 단체가 생겨나는 꼴’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중에는 그 같은 우려에 동의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11.9%).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 가운데 41.2%는 오히려 농업회의소와 기존의 농업인단체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진술에 동의하였다.

〈표 2-17〉 농업회의소 법 제정 후 농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기능·역할 관계 전망
단위: 명, (%)

구분	농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회원	213 (54.8)	110 (28.3)	27 (6.9)	22 (5.7)	17 (4.4)	389 (100.0)
비회원	216 (17.4)	512 (41.2)	167 (13.4)	160 (12.9)	189 (15.2)	1,244 (100.0)
전체	429 (26.3)	622 (38.1)	194 (11.9)	182 (11.1)	206 (12.6)	1,633 (100.0)

주: $\chi^2=222.4$, $p=0.000$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법 중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자체 회원 회비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다. 농업회의소 회원 집단이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회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자체 회원 회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더 낮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농업회의소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더 낮고, 자체 회원 회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젊을수록(20~50대) 자체 회원 회비로 농업회의소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비율이 60대 이상 연령대보다 더 높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2-18〉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271(69.7)	55(14.1)	52(13.4)	10(2.6)	1(0.3)	389(100.0)	$\chi^2=20.8$ $p=0.000$
	비회원	734(59.3)	267(21.6)	173(14.0)	33(2.7)	30(2.4)	1,237(100.0)	
	전체	1,005(61.8)	322(19.8)	225(13.8)	43(2.6)	31(1.9)	1,626(100.0)	
성별	남성	804(61.4)	271(20.7)	178(13.6)	37(2.8)	19(1.5)	1,309(100.0)	$\chi^2=13.6$ $p=0.009$
	여성	209(64.5)	49(15.1)	49(15.1)	5(1.5)	12(3.7)	324(100.0)	
	전체	1,013(62.0)	320(19.6)	227(13.9)	42(2.6)	31(1.9)	1,633(100.0)	
연령	20~30대	49(50.0)	34(34.7)	10(10.2)	2(2.0)	3(3.1)	98(100.0)	$\chi^2=45.4$ $p=0.000$
	40~50대	387(61.5)	136(21.6)	78(12.4)	23(3.7)	5(0.8)	629(100.0)	
	60대	416(64.7)	112(17.4)	92(14.3)	11(1.7)	12(1.9)	643(100.0)	
	70대	138(60.8)	33(14.5)	43(18.9)	4(1.8)	9(4.0)	227(100.0)	
	80세 이상	23(60.5)	6(15.8)	5(13.2)	2(5.3)	2(5.3)	38(100.0)	
	전체	1,013(62.0)	321(19.6)	228(13.9)	42(2.6)	31(1.9)	1,635(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의 중요 재원 중 하나인 회원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농업회의소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화에 36.8%가 매우 찬성하여 비회원 중 매우 찬성하는 비율(10.9%)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대로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화에 반대하는 비율은 비회원(27.7%)이 회원(11.3%)보다 높았다.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화에 대해 남성은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19.6%, 여성: 7.1%). 이에 반해 여성은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화에 반대하는 편이라고 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약 5%p 정도 높았다(남성: 19.2%, 여성 24.7%).

〈표 2-19〉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비고
농업회의소 가입 여부	회원	7(1.8)	37(9.5)	193(49.6)	143(36.8)	9(2.3)	389(100.0)	$\chi^2=190.0$ $p=0.000$
	비회원	51(4.1)	294(23.6)	580(46.6)	135(10.9)	184(14.8)	1,244(100.0)	
	전체	58(3.6)	331(20.3)	773(47.3)	278(17.0)	193(11.8)	1,633(100.0)	
성별	남성	46(3.5)	253(19.2)	635(48.2)	258(19.6)	125(9.5)	1,317(100.0)	$\chi^2=59.4$ $p=0.000$
	여성	11(3.4)	80(24.7)	141(43.5)	23(7.1)	69(21.3)	324(100.0)	
	전체	57(3.5)	333(20.3)	776(47.3)	281(17.1)	194(11.8)	1,641(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 회비의 적정 수준에 관한 물음에서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회비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3만~7만 원 사이의 연회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4%이나,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44.7%였다. 3만 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31.4%, 여성 43.5%로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 적정 연회비 수준에 대한 응답을 보면 60대 이하에서 70대 이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회비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2-20〉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수준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비고
성별	남성	279(31.4)	390(43.9)	93(10.5)	14(1.6)	113(12.7)	889(100.0)	$\chi^2=17.4$ $p=0.002$
	여성	70(43.5)	61(37.9)	11(6.8)	7(4.3)	12(7.5)	161(100.0)	
	전체	349(33.2)	451(43.0)	104(9.9)	21(2.0)	125(11.9)	1,050(100.0)	
연령대	20~30대	14(25.5)	21(38.2)	11(20.0)	2(3.6)	7(12.7)	55(100.0)	$\chi^2=28.9$ $p=0.025$
	40~50대	125(32.6)	170(44.4)	39(10.2)	11(2.9)	38(9.9)	383(100.0)	
	60대	143(31.4)	197(43.3)	45(9.9)	7(1.5)	63(13.8)	455(100.0)	
	70대	59(42.4)	58(41.7)	9(6.5)	1(0.7)	12(8.6)	139(100.0)	
	80세 이상	7(35.0)	7(35.0)	0(0.0)	0(0.0)	6(30.0)	20(100.0)	
	전체	348(33.1)	453(43.1)	104(9.9)	21(2.0)	126(12.0)	1,052(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설문응답자 중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들 사이에서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이 높았다(남성: 65.6%, 여성: 53.0%).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도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4%p 높았다.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 중 가입 의향은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다.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70대 이상에 비해 가입하려는 의향(가입할 것이다 + 적극 가입할 것이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가입하지 않을 의향이 그 이하 연령대보다 높았다. 가입 의향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슷하게 영농 종사 기간이 짧을수록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1〉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6 (1.6)	135 (13.5)	402 (40.2)	254 (25.4)	192 (19.2)	999 (100.0)	$\chi^2=16.6$ $p=0.00$
	여성	4 (1.4)	51 (17.5)	95 (32.5)	60 (20.5)	82 (28.1)	292 (100.0)	
	전체	20 (1.5)	186 (14.4)	497 (38.5)	314 (24.3)	274 (21.2)	1,291 (100.0)	
연령대	20~30대	1 (1.0)	9 (9.4)	32 (33.3)	26 (27.1)	28 (29.2)	96 (100.0)	$\chi^2=59.0$ $p=0.00$
	40~50대	9 (1.7)	54 (10.4)	209 (40.3)	133 (25.7)	113 (21.8)	518 (100.0)	
	60대	5 (1.1)	62 (13.6)	183 (40.2)	113 (24.8)	92 (20.2)	455 (100.0)	
	70대	4 (2.1)	51 (26.7)	66 (34.6)	35 (18.3)	35 (18.3)	191 (100.0)	
	80세 이상	0 (0.0)	11 (34.4)	8 (25.0)	7 (21.9)	6 (18.8)	32 (100.0)	
	전체	19 (1.5)	187 (14.5)	498 (38.5)	314 (24.3)	274 (21.2)	1,292 (100.0)	
영농 종사 기간	1년 이하	1 (3.6)	4 (14.3)	6 (21.4)	9 (32.1)	8 (28.6)	28 (100.0)	$\chi^2=44.9$ $p=0.00$
	2~5년	3 (2.2)	8 (5.9)	49 (36.0)	30 (22.1)	46 (33.8)	136 (100.0)	
	6~10년	5 (1.7)	43 (14.8)	112 (38.5)	64 (22.0)	67 (23.0)	291 (100.0)	
	11~20년	1 (0.3)	44 (12.8)	137 (39.9)	89 (25.9)	72 (21.0)	343 (100.0)	
	21~30년	4 (2.1)	25 (12.9)	83 (42.8)	48 (24.7)	34 (17.5)	194 (100.0)	
	31년 이상	6 (2.0)	63 (21.1)	110 (36.9)	72 (24.2)	47 (15.8)	298 (100.0)	
	전체	20 (1.6)	187 (14.5)	497 (38.5)	312 (24.2)	274 (21.2)	1,290 (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지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 중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가입 동기는 남성과 여성이 달랐다. 남성 중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건의하고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회의소에 가입하려 한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고,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경영에 도움을 받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의 비율이 높다.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서도 농업회 의소에 가입하려는 동기는 다르게 나타났다. 영농 종사 기간이 10년 이하로 짧은 응답자 중에서는 ‘경영에 도움을 받고 농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1년~30년 영농을 한 응답자 중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건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31년 이상 영농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농어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업회 의소에 가입하려 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표 2-22〉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응답자의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기여	농어업인 목소리를 하나로 하기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비고
성별	남성	199 (30.8)	104 (16.1)	115 (17.8)	109 (16.8)	59 (9.1)	58 (9.0)	0 0.0	3 (0.5)	647 (100.0)	$\chi^2=17.9$ p=0.01
	여성	32 (21.2)	27 (17.9)	33 (21.9)	16 (10.6)	22 (14.6)	19 (12.6)	1 (0.7)	1 (0.7)	151 (100.0)	
	전체	231 (28.9)	131 (16.4)	148 (18.5)	125 (15.7)	81 (10.2)	77 (9.6)	1 (0.1)	4 (0.5)	798 (100.0)	
영농 종사 기간	1년 이하	2 (13.3)	4 (26.7)	5 (33.3)	3 (20.0)	1 (6.7)	0 0.0	0 (0.0)	0 (0.0)	15 (100.0)	$\chi^2=55.5$ p=0.02
	2~5년	11 (14.1)	8 (10.3)	23 (29.5)	13 (16.7)	10 (12.8)	13 (16.7)	0 (0.0)	0 (0.0)	78 (100.0)	
	6~10년	43 (25.3)	30 (17.6)	37 (21.8)	30 (17.6)	12 (7.1)	18 (10.6)	0 (0.0)	0 (0.0)	170 (100.0)	
	11~20년	68 (30.2)	40 (17.8)	41 (18.2)	33 (14.7)	22 (9.8)	19 (8.4)	1 (0.4)	1 (0.4)	225 (100.0)	
	21~30년	54 (41.9)	20 (15.5)	12 (9.3)	24 (18.6)	11 (8.5)	7 (5.4)	0 (0.0)	1 (0.8)	129 (100.0)	
	31년 이상	52 (28.9)	29 (16.1)	29 (16.1)	22 (12.2)	25 (13.9)	21 (11.7)	0 (0.0)	2 (1.1)	180 (100.0)	
	전체	230 (28.9)	131 (16.4)	147 (18.4)	125 (15.7)	81 (10.2)	78 (9.8)	1 (0.1)	4 (0.5)	797 (100.0)	

주: 음영 처리한 칸은 설문항목의 ‘보기 항목’마다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설문 조사.

6. 소결: 지방농정 의사결정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

이상의 설문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과정(농업·농촌 정책의 기획-실행-평가)에 많이 노출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아주 젊거나 아주 고령도 아닌 60대 연령으로서 지역의 농업 부문에서 리더십을 지닐 만한, 경력이 오래된 농업인들 사이에서 지방농정 과정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더 높다. 특히, 지방농정 기구 중에서도 정책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다. 바꿔 말하면, 지방농정에 관해 경험적 지식·정보가 많은 농업인일수록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다.

둘째, 높은 수준의 불만족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나 참여하려는 의욕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가령, 농업회의소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농업인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에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의 지방농정에 대한 관심·참여·영향력 수준을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이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농정에 대한 불만은 농업인의 참여를 자극 촉진하며, 농업회의소 활동 경험이 있는 농업인은 참여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체감한 결과다. 시·군의 지방농정 의견 수렴 노력에 대해 농업회의소 회원인 농업인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불만족’이 지방농정을 차별권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이념과 실천을 자극하고 증폭하는 것이지, ‘냉소’로 흘러갈 개연성은 낮다고 볼 근거가 된다.⁸⁾

⁸⁾ 이른바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둘러싸고 근년에 여러 차례 열린 공식·비공식 토론회 혹은 신문 기사 등에서 어느 논자들은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설립되어 운영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는 고작 17개소다’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20년에 모 정부 기관이 개최한 비공식 협의회에 참석한, 규모가 아주 큰 어느 농업계 단체의 참석자가 ‘한국은 서구에 비해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라는 제도를 형성해 농정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역량이 안 되며, 따라서 농업회의소 법제화는 시기상조다’

셋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농업인의 정책 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과정에 참여할 통로(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 “농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농업회의소 법제화”의 필요성 등 표현을 달리하여 제시한 여러 문항에서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업회의소를 충분히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전체 연령층을 관통하면서 고르게, 농업회의소 회원이든 아니든,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인의 정책 참여 제도 필요성’에 찬성하였다. 지방농정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제도적·비제도적 의사소통 구조의 불충분함을 여실히 체감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⁹⁾

넷째, 지방농정의 의사소통 과정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제도적 통로로서의 농업회의소,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농정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농업인에게는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60대가 아닌 젊거나 아주 고령인 연령층에서, 영농 경력이 짧은 농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농업회의소 설립을 촉진하려는 홍보·정보 제공·교육 등의 제반 활동이 어떤 농업인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시사한다.

다섯째, 농업인들이, 우선은 농업회의소를 ‘농업인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로서 이해하는 관점이 더 우세하다. 농업회의소가 있거나 생겨난다면 수행한다고 기대하는 역할로 제시한 항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세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해 냉소하는 입장이 상당히 만연한 듯하지만, 정작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현장의 농업인들에게서는 그런 냉소적인 입장과는 다른 태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즉, 지방농정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처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⁹⁾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옥상옥 논리’는 설문 조사 결과와 완전히 배치(背馳)된다. 설문 조사 결과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이미 있는 집의 옥상 위에 또 집을 올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비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임을 시사한다. 오히려, 지방농정의 현장에는 1층집(농업인의 농정 참여 제도) 자체가 없다는 농업인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지역 농업 현안 문제 제기’나 ‘협력적 정책 의사결정’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편이다. 지역 농업인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변하는 응집력과 대표성 있는 농업인단체로서의 농업회의소 역할을 기대한다는 응답 빈도는 그보다 낮았다.¹⁰⁾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꼽은 것도, 그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¹⁰⁾ 농업회의소 관련 논의에서 등장하는 ‘관변 단체’ 주장은 농업회의소의 공식적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소치이다. 현재로서는 농업회의소에 ‘공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은 부득이하게 민법상의 사단법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비영리 민간단체의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관변 단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단법인’이라는 지위는 잠정적인 것이고, 외국의 사례들로 보나 현재 제출된 농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의 내용으로 보나 법제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농업회의소를 공법(公法)상의 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공적 기구를 두고 관변단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터이다. 물론, 농업회의소는 공적 기구의 지위를 누리게 되더라도 운영은 농업인들이 주도하면서 행정으로부터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로서 독립적 공적 기구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제3장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3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1. 설립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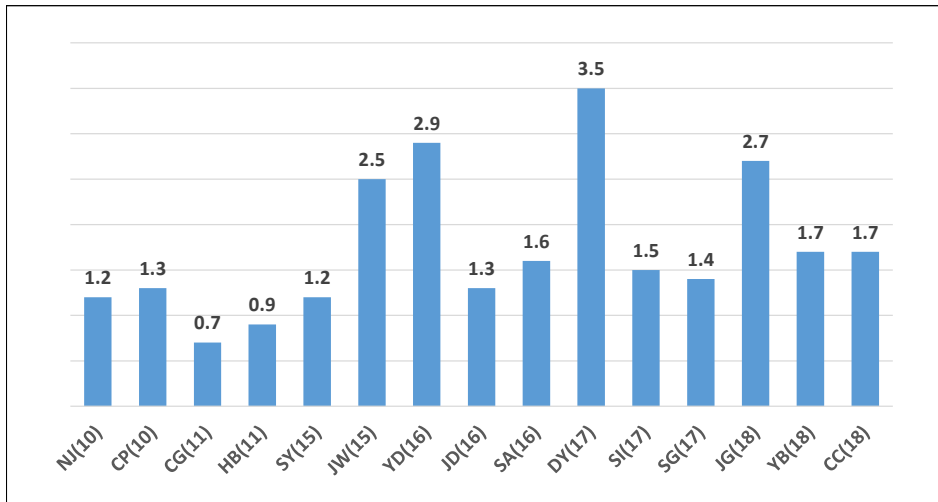
1.1. 설립 경로: 농업계 주도형과 행정 주도형

현재 운영 중인 농업회의소들 중에 SJ군 농업회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설립되었다. ‘시범사업의 경유’라는 공통적 설립 경로를 밟긴 하였으나, 설립 발의를 누가 하였고,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견은 어떠했고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경험은 상이하다. 이런 차이는 현재 농업회의소들의 조직 구성, 활동 우선순위, 자원 등의 다양한 양상과 명백한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상관성을 갖는다. 설립 과정에서 경험한 특수한 사정이 향후 농업회의소 조직 발전 과정상의 경로의존성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이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본다.

농업회의소들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부터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걸린

평균 소요 기간은 1년 8개월이다. 가장 짧은 지역은 CG군(8개월), 가장 긴 지역은 DY군(3년 6개월)이다. 대체로 시범사업 실시 초기인 2010년, 2011년에 선정된 지역의 농업회의소들이 창립까지의 소요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림 3-1〉 시범사업 선정에서 창립총회까지 소요 기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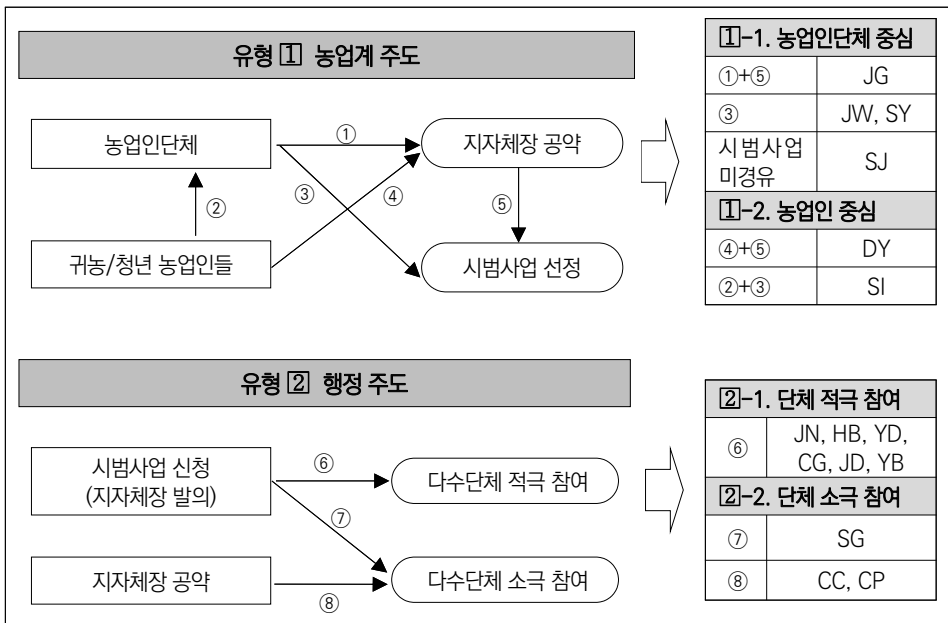
주: 지역명 뒤의 숫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연도이다.
자료: 면담 조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핵심 활동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교육, 회의), 농업회의소 홍보와 회원 모집(읍·면 순회설명회), 조직 구성 및 활동의 원칙 정립(정관 제정)이었다.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 결합된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들의 평가는 양면적이다. 한편에서는 행정의 역량을 통해 농업회의소 홍보와 회원 모집이 잘 되었고 본격적 창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JN, HB, YB),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계의 합의와 준비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설립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설립 이후 파행을 겪었음을 문제시하였다(CG, CC, CP).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행정 주도성이 농업회의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역량 훈련 및 함양에 대해 민간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는 꼴이 되어 창립총회 후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음을 성찰 하기도 하였다(YD).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설립 과정에서 농업계가 얼마나 주도적이었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림 3-2>는 면담 조사에 참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면담 내용에 설립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은 SA시를 제외한 15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발의·주도 주체, 설립 추진 과정, 농업계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설립 과정 유형을 도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립 과정은 크게 농업계 주도형과 행정 주도형으로 나뉘며, 단체 중심인지 농업인 중심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었는지, 농업인단체들이 적극 참여했는지에 따라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림 3-2〉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 유형



자료: 면담 조사.

▶ 유형 ①-1: 농업인단체 주도형

농업인단체 주도형은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

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경우(JG), 농식품부 시범사업 신청 및 추진에서 주도성을 발휘한 경우(JW, SY), 시범사업을 통하지 않고 농업인단체들이 설립을 즉시 추진한 경우(SJ)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적 요인의 강제가 적은 상태에서 농업인단체들이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농업인단체가 설립을 주도했다고 해도 최초 발의는 특정 단체가 했으며 숙고의 과정에서 최초 발의를 한 단체가 타 단체들을 설득하거나 논의를 주도하며 합의 및 공동 행동을 만들어냈다.

JG시의 경우, JG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 차원에서 시장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모든 후보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농업회의소 설립’이 공약사항이 된 데에는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온 JG시 농단협의 역할 강화 논의의 영향이 크다. 각 단체별 정책 제안을 농단협을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었는데, 농업인단체들을 대변할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전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농업회의소를 만들어도 기성의 농단협과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견이 있긴 했으나, 정책의 사후 평가가 아닌 ‘계획부터 같이’ 수립하고, 일방적 요구가 아닌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이 차별성으로 강조되었다.

농단협에서 어차피 그 당시에 농단협 회의 체제를 좀 개선해 가지고 시에 건의한 모든 사항들을 농단협을 통해서 건의를 하자고 합의를 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중략] 11) 근데 어쨌든 농민들을 대변한다는 단체들이 있지만, 지금 기존의 단체들은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고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내놓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아예 계획부터 같이 잡아볼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JG)

11) 이후로 다수의 면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다. 인용한 지문(地文)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된 부분과 꺾쇠 괄호 []로 묶인 부분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가 읽을 때 편의를 위해 저자가 추가한 것임을 밝혀 둔다.

JW군의 경우, JW군청에서 농식품부 시범사업을 신청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고 일부 단체장들 중심으로 “행정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면서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을 위한 단체장 모임을 진행하였다. JW군 농민회 회원이기도 한 한우협회 회장이 논의를 주도하였다.

SY군은 당시 농단협 회장(현 농업회의소 감사)이 논의를 주도하여 농단협의 의제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다루면서 결의를 모아내고 SY군을 움직였다. 회장은, 단체들이 농업인의 권익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농업인단체장 개인의 활동만 이루어지는 것에 오랫동안 회의를 느껴오던 차에 도가 주최한 농업회의소 설명회에 참가한 후 농업회의소 설립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SJ군 역시 ‘농업회의소 설립’을 농단협의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당시 SJ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현 농업회의소 회장)이 농단협 회장에 출마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J군 농업회의소는 농식품부의 시범사업 없이 설립된 유일한 사례인데, 처음부터 시범사업을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던 때에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여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그로 인해 농업회의소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시범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시범사업 후 설립이 무산되거나 시범사업을 거쳤어도 설립 후 2, 3년 간은 어려움을 겪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며, 시범사업이 시행착오를 없애주지 못할 바에야 굳이 그것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미루지 않고 추진했다고 한다.¹²⁾

¹²⁾ 실제로 시범사업을 거쳐 창립한 후에 활동 미흡, 선거 개입, 사무국 역량 부족 등이 이유가 되어 존폐 위기를 겪었거나 아직 그 위기를 다 극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 YD군은 2019년 6월 출범 후 3개월 만에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아무 활동이 없다가, 창립 2년이 다 된 2021년 2월에 현 사무국장이 들어와서야 법인 등록, 회비 수납 등 사무국의 기본적 운영 업무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직을 시작하였다. JW군은 창립 다음 해인 2019년 농업회의소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에게 휘둘러 임원이 총사퇴하는 위기를 겪었고, 2020년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며 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급급하여 회의소로서의 본격적 활동은 내년 2022년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JD시는 전(前) 사무국장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농업회의소가 빚을 지는 등 심각한 위기가 있었으나, 전(前) 회장단이 집행부 역할을 맡아 현재 극복 중에 있다. SA시는 1기 집행부와 2기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2021

▶ 유형 ①-2: 농업인 주도형

농업인 주도형은 40~50대의 젊은 농업인들이 교육 등을 통해 농업회의소를 접하고 설립을 주도한 경우다. DY군과 SI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설립을 제기한 농업인들이 협력을 조직화한 대상과 경로는 상이하다.

DY군에서는 지방선거 때에 유력한 군수 후보의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약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농업회의소 관련 논의를 주도한 것이 농업인단체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공약으로 삼도록 하여 행정력 지원을 조직화한 점에서 농업인단체 주도형과 유사성이 있다.

SI시에서는 ‘농업인대학’¹³⁾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귀농인들이 120명 정도의 민간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설립을 주도하였다. 농업인단체들과 연계가 약한 민간추진위원회로서는 농업인단체와 행정의 협력을 모두 얻어야 했다. 일차적으로 SI시에 중앙정부 시범사업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준비 부족, 농업인단체 논의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농업인단체의 지지와 참여를 조직화하려고 농업인단체, 활동가, 의원 등이 참여하는 ‘SI농업포럼’과 공동으로 농업회의소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SI시 농민연대가 농업회의소 설립을 결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민간추진위원회와 단체들 간의 연계에는 오랜 기간 SI시 농민회에서 활동해 왔고, 당시 SI농업포럼의 총무를 맡았던 현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년 7월 조사 당시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¹³⁾ 대부분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개월 또는 1년에 달하는 장기 교육과정으로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한다. 실제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은 아니다. 명칭을 ‘농업인대학’이라고 붙인 것이다.

▶ 유형 ②-1: 행정 주도-단체 적극 참여형

JN시, HB군, YD군, CG군, JD시, YB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농업인단체에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이에 농업인단체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다.

JN시와 HB군의 경우, 농업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인이었거나 농업인단체장 출신이어서 의지가 높고 평소 농업계와 소통이 잦았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농업회의소 설립은 한국농업경영인 지역연합회가 주도하고 농민회와 농촌지도자회는 회의적이어서 합의를 형성하는 데 크게 노력해야 했던 지역도 여럿이다. YD군의 경우, 농민회가 설립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단체들의 합의와 결합도가 높아졌다. CG군에서도 농민회가 처음에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회의적이었으나 논의하고 설득하여 함께 참여하기로 하면서 설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지역도 있어서 농민회의 동의와 참여가 농업인단체들의 결합도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두 지역의 경우 농업인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적었고 영향력이 큰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민회, 두 단체가 설립에 앞장서면서 단체들의 결속력을 높여냈음을 알 수 있다.

JD시와 YB군의 농업회의소 설립 당시 농업인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면담 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 JD시의 경우, 지역 내 농업 관련 단체가 많다.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정리해 시청에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단체 간 경쟁과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농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 하다.

시장님이 이걸 설립해야, 농업인단체가 파편화돼 있어서 여기도 보조사업 달라, 저기도 보조사업 달라, 누구는 더 준다, 누구는 덜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너네들끼리 사업을 해서 분과별 골고루 사업을 주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거예요. [중략] 단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번 모이면 의견을 모으기 힘들고 자기들 주장이 많고 단체 간 갈등도 심했어요 (JD)

YB군은 면담 조사에 참여한 사무국장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농업회의소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시 구체적 논의 과정을 알지는 못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제안한 이후 농업인단체장들이 4, 5개월 정도 가부를 논의하는 단계를 거쳤다고 한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이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합의와 결속을 만든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YB는 이사들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보다 1년 늦게 만들어졌는데도 열심히 하세요. 민간의 주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힘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걸 행정에서 도와주면 속도라든지 회원 확보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만들어진 다음엔 민간이 해야 할 일이라 민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이 지원한다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YB 같은 경우 행정도 지원을 많이 해주기도 했지만, 민간의 준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SI)

▶ 유형 ②-2: 행정 주도-단체 소극 참여형

공감대나 사전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행정이 강하게 설립을 추진한 지역에서는, 농업인단체들이 설립 과정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원 가입과 조직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 왜곡이 일어나기도 했다. 혹은, 다른 농업인단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농업인단체가 설립을 주도하면서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SG군에서는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의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농협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농협들이 반대한 이유는 농업회의소 특별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게 되는 것을 농업인단체를 후원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오해한 데 있었다. 농업인들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드니, 관행에 따라 부담하던 후원금을 또 지출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설립이 추진되었고, 농업인단체들도 농업회의소를 소위 ‘스폰 관계’를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창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체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어 농업회의소에 대한 행정의 의지와 공감대도 많이 약화되었다.

CP군에서는 “농민과 농민단체장들조차도 농업회의소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그게 갑자기 추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농업인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자신의 회원들에게는 농업회의소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는 등 “암묵적인 보이콧”이 있었다. 그 결과, 창립총회 때 회원 가입자는 250명, 회비 납부는 50명으로 그 수가 기대 이하로 적었다고 한다.

CC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에 대해, 농업회의소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고 그래서 설립한다 해도 운영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농업인단체들이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유보의 뜻을 분명히 하였으나,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추진하게 되었다.

회비로 직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회비만 가지고는 한 사람 쓰기에도 버거워요. [중략] 그러면 운영을 하려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운영비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중략] 그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단체가 끝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단체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신 거죠. (CC)

CC시의 경우, 처음에는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단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들은 참가에 소극적이었다. 추진 과정에서도 단체 간의 견해차가 컸다. 그 결과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적극적인 지원 약속,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도 설립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처럼 여러 지역에서 겪은 어려움이 계속적인 위기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회의소의 개점휴업 위기가 농업회의소의 고유 역할과 목적을 성찰하고 활동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CP군 농업회의소다. CP군 농업회의소는 설립을 준비하던 시점의 마을가짐으로 돌아가 농업인들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는 활동을 전면화하였다. 경청과 건의, 그리고 반영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환류하는 의사소통의 절차와 체계를 만들어갔다.

농업회의소라는 조직은 사실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회의소에 관한 신뢰, 농민들과 회의소 간의 신뢰, 그리고 농업회의소와 행정 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농민들을 만나러 나가자, 그랬던 거죠. [중략]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중략] 듣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읍·면 간담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CP)

1.2. 농업회의소의 설립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은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농업회의소 설립 과정에서 제시된 부정적 의견은 주로 기존 농업인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된 역할 중복 우려는 농단협과의 역할 중복, 특히 지역 농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낸다는 목표의 유사성에 관한 것이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논의와 설득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미 다수의 지역에서 농단협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혹은 사안별로 진행하면서 정책 건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부 농업인단체들은 간부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정책적 이해를 관철해 오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회의소 설립은 ‘단체들 위의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시도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했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주체들은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업인단체 혹은 농단협은 ‘임의단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협의가 비상시적이고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는 자치법규(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공식성을 갖는다.¹⁴⁾ 농단협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임의성은 예컨대, 지방농정 전반이 아니라 특정 사안만을 다루거나 정책

¹⁴⁾ 면담 조사를 실시한 16개 시·군 중 13개 지역이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농업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농업회의소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였다.

간담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면담이 행정의 사정에 따라 취소되기도 하는 것으로 예시된다.

실제로 농민연대는 농민단체들 간의 협의 기구인데 실제로 임의단체거든요? 그래서 정례적으로 주요하게 하는 활동 중 하나가 시장님과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울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왜 안 하십니까, 하면 바빠서 못 했다. 그러면 바빠서 못 했다 하면 할 얘기가 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담회 안 했다고 집회를 열 수도 없고. 그래서 임의기구가 갖는 한계도 좀 있고. (SI)

과거에는 농민회나 농업경영인들이나 수매 관련해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한 분야의 사람들만 그렇게 했고요. [중략] **현안에 따른 정책협의회나 이런 건 하나의 단발성일 수 있고요.** 농업회의소는 법제화가 먼저 따라줘야겠지만 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단체 위상이 되면, 상시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DY)

행정과 농업인단체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분산돼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임의조직이잖아요. 그나마 행정에서 소통이 되는 걸 보면, 심의회, 농업농촌식품심의위원회로 해서 그 심의회[에] 각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사인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략] **협치라고 하면,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그걸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다 만들어진 거를 그 안에서 사인하고 그러니까 행정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략] **농업인 주도로 정책이나 힘을 가지자는 뜻으로...** (CG)

물론 조례에 의해 보장되는 공식성이라는 게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긴 하다. 조례에 근거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계의 정치적 관계 맥락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위상이 좌우될 수 있음을 뜻한다. 농업회의소의 농정 자문 및 건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반영의 임의성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¹⁵⁾ 그럼에도, 설립 당시 주체들은 농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15) 정책 협의의 공식성 부족은 일부 농업회의소들의 대의 활동 위축을 결과하기도 하였다. “아마 정책은 저희도 2015~2017년까지 쪽 했는데, [중략] 행정에 건의하는 건 건의 수준일 뿐이지 이걸 반영해야 한다,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희도 막상 [중략] 의견 수렴할 때 이거 하면 될 겁니다라는 성취 욕구가 좀 있어야지, [중략] 서로서로 좀 약간,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CG).”

공론장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농업회의소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에서도 협치 조직이라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만을 넘기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워요. 전 그렇게 봐요. 실은 행정의 제장님들은 [보직] 기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농업회의소가 정책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아요. [중략]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게 [정책협의] 자리가 만나지고 제안되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건 가능하게 되는 거 같고 그래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SI)

농업회의소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농업회의소가 품목·성별·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농업인에게 개방된 포괄성을 갖는다는 점이라고 설명된다. 일정한 회원 가입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 혹은 임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폐쇄성과 위계성을 가진 농업인단체가 많은데, 농업회의소는 개별 농업인에 기초하여 민의(民意)를 형성할 조직적 토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농민들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고 전체가 소외되지 않는 어떤, 한농연 같은 경우 한농연 정책 자금을 타야지 들어가는 단체잖아요, 요즘 많이 오픈도 하지만. 생활개선회나 여성은 여성들대로. 지금 여기는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 역할도 되고. (HB)

농민단체장이나 농민단체들은 시장을 만나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일반 농민들은 건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실은 단체도, 단체장이나 간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니까 뭔가를 제안하려면 힘든 거죠, 구조가. [중략] 농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농업회의소를 만든 나름의 계기였던 거 같아요. (SI)

농업회의소는 단순히 회장님들의 의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략] 한 번도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농민들이 참석해서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략] 농단협이 기존에 했던 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고. (CC)

물론, 농업회의소의 포괄성 원칙이 의사결정 구조와 대의활동 과정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포괄성을 중요 원칙

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목적하는 ‘대의(代議)’가 농업계 대표 기구라는 ‘위상 강조’가 아니라 농업인 개개인의 의견을 의제화하는 ‘공론장’¹⁶⁾ 기능에 있다는 인식과 닿아 있다.

셋째, 농업회의소는 체계적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함으로써 농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농업인단체들이나 농단협은 단체장 혹은 임원들이 의견을 대표하는 구조이므로 임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농정에 대한 의견과 단체의 역량이 좌우되고, 단체 간 영향력의 차이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해가 지방농정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일성의 원칙은 힘 있는 농업인단체 혹은 다수의 지배와 달리 농업인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농업인과 약소한 농업인단체들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공정성의 원칙을 동반하면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굳이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단체들이 농업회의소가 필요한 거를 느끼냐면 자기들 스스로 로비를 못하는 단체, 한 돈이나 육계나 이런 곳은 자기네들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하는데, 뭐 염소나 양봉이나 한봉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힘도 없고, 단체 구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힘이 약한 단체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농업회의소가 그 균형을 잡아주고. (JN)

큰 단체보다는 소규모 단체, 그러니까 힘이 없는 단체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농업회의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회장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농업인 주도로 정책이나 힘을 가지자는 뜻으로. (CG)

그런데 농업계를 대표하는 통일된 목소리의 발신지로서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농단협을 대체한다’거나 ‘농업인단체들의 개별적 의견 제시를

¹⁶⁾ 하버마스(J. Habermas)는 공론장 기능을 이렇게 묘사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상응하는 쟁점을 정식화하여 공론장에서 선전하면, 그들의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공론장의 내생적 동원과 함께 그렇지 않았더라면 잠재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법칙성 — 이것은 모든 공론장의 내부구조에 내장되어 있으며 대중매체의 규범적 자기이해 속에도 보존되어 있다 — 이 활성화 되기 때문이다. 무대의 배우는 청중석의 호응 덕분에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 법칙성이다.”(위르겐 하버마스, 2000: 210-511).

금기시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지역들도 있다. SJ군의 경우, 농단협 회장(현 농업회의소 회장)이 농단협의 해산과 농업회의소 설립을 공약으로 하여 당선되었고 선거 직후 농단협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산을 결행하였다. “농업회의소는 대표 자치기구이니 농단협이 존치되면 농업회의소 밖에서 실행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JD시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보조사업 달라 하니 단체들끼리 조율해서 건의 창구를 일원화할 것”을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으로 인식한 시장의 권유로 농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고 시범사업 기간 중 농단협이 해산되었다. CC시는 2021년 창립총회를 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기능 중복으로 인해 몇 년 내 농단협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와 농단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농업회의소가 어떤 기구라고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농단협은 농민운동 조직들의 연합체이므로 당연히 임의적이고 정치적이다. 연합체이므로 상시적이기보다 사안별로 연대가 조직되고, 결사체이므로 가치와 목표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대치하기도 한다. 논의를 통해 합의가 형성되지 않으면 논의의 장을 벗어나 집회나 시위 등의 집합행동을 통해 의지를 관철할 수도 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대의기구이므로 공식성, 포괄성, 대표성의 원칙을 갖는다. 달리 말하자면, 가치나 이해(利害) 측면의 동의 여부에 따라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를 유지하는 것이 대원칙임을 의미한다.

농업회의소와 농단협은 제도와 시민사회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고, 기능과 속성도 다르기 때문에 농단협을 해산하고 농업회의소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제도 영역을 비판적으로 견인하는 시민사회 영역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셈이며 공론의 독점으로 다양한 논의 지형이 소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회의소의 대표성 원칙이 공정성의 원칙을 동반한다는 인식은, 농업회의소 설립 및 활동을 ‘공론의 독점’ 또는 ‘정책 건의 창구 단일화’와 같은 도구적 효율성으로 대표성을 이해하기보다 다양한 민의의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횡적·종적 의사소통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의 역할 중복에 대한 우려는 단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농협,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나타났다. 회원 농업인에 대한 교육,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활동(또는, 사업)들을 농업회의소가 수행할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농협, 농업기술센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이런 의심에 대해서 농업회의소의 차별성은 대의 기능에 있는 것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농업회의소는 민주주의의 하자는 얘기인데. [중략] 회의소가 농협과 농업기술센터의 공격을 받아요. 우리와 중첩되는 게 아니냐 하고, 뭐 하는 곳이냐 할 때, 제가 말씀드려요. 농협은 소득에 관련된 경제사업에 치중하시라고. 우린 그거 안 하겠다.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이나 그런 거에 최대한 교육하시고 활동하시라. 우린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가치 중심적인 활동이나 그런 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는 당신네들 안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죠. (JW)

그러나 설립 당시나 현재나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일부 농업회의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사업’을 정책 건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시한다. 또 정책 건의가 농업회의소의 근간이라고 동의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개인을 의견 수렴의 기본단위로 하는 것에 이견이 있기도 하다. 어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 개인의 의견이 비합리적이거나 사익 중심인 경향이 강하므로 농업인단체들의 의견이 공익성, 적실성,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체 중심의 의견 수렴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 개인에 맞춰져 있으나 의사결정 구조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농업인단체들 중심으로 짜인 경우도 있다.

의견 수렴의 기본 단위가 개인인지 농업인단체인지, 혹은 농업회의소 활동의 우선순위가 정책 건의인지 ‘사업’인지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여기서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설립 추진 과정과 직후의 경험들을 반추할 때, 농업회의소의 역할 중복이 논란될 경우 농업회의소에 대한 입장 차이가 내외부 갈등 심화와 신뢰 저하로

이어져 농업회의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사무국 운영 현황

2.1. 사무국 인적 자원

면담 조사를 실시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조사 당시 사무국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14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들의 연령은 60대인 경우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가 각각 4곳, 30대가 2곳이고, JD시와 SJ군을 제외하면 모두 남성이다. 과거에 농업에 종사했거나 현재 농업인인 사무국장이 9명이고, 9명은 농업인단체 활동 경력을, 3명은 농협 직원 또는 농업직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상근은 9곳, 비상근은 4곳이며, SI시는 농한기인 8개월만 상근이고 농번기 4개월은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사무국장이 현재 농사를 짓는 경우에 대체로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사무국장으로 종사한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편차가 크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상근 인력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다. JW군은 상근 인력이 없고, JN시와 CG군이 2명씩이다. JN시의 경우 1명은 농촌인력증개센터 업무 전달자로 농업회의소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 YB군은 3명으로 상근 인력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농업회의소들이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근 인력이 적어도 2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무국의 역량이 농업회의소의 전체 역량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사무국의 핵심인 사무국장의 역량, 역할, 권한 등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들이 있다. 사무국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견 수렴과 정책 개발에 있기 때문에 농업·농촌 현장성이 중요하므로 사무국장은 농업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지역도 있고, 수행 업무의 양이 방대하고 정책과 사무 영역에서 역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상근 근무 형태를 인적 특성보다 중시하는 곳도 있다.

어떤 데를 보면 농사 안 짓는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거기는 정책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느끼고 알아야 내가 설명도 하고 또 공직자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져 가야지, 일부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을 보면 도시에 있다가 어디, 뭘 다른데 지역에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못 견디고 가요. (JN)

그런데 막상 유능하신 분들은 자기 농사짓기 바쁘지. 자기 농사를 내버려 두고... 진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상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잘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사무국장이 반상근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사무국장이 나오고 사무장 한 명만 앉혀 놓거나 사무장조차 없는 곳이 많거든요. (CG)

〈표 3-1〉 사무국 인력 현황(2021년 7월 기준)

구분	사무국장								그 외 상근인력		
	연령	성별	농업 종사 경력	활동경력		종사 기간 (년)	근무 형태	인건비 재원	수	근무 형태	인건비 재원
			농협 종사 경력	농협 농업직 공무원 등	농업인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CP(12)	40중	남	●	●		8	●	회비	1	●	회비
JN(12)	60중	남	◎		●	6			2	●	회비
HB(12)	40후	남	◎		●	3			1	●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CG(12)	30중	남				2	●	회비	2	● △	회비, 수탁사업
SY(16)	60초	남		●		2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JD(17)	60중	여	◎		●	4			1	●	회비
SJ(17)	50초	여				2	●	회비	1	●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SA(18)	면담 조사 당시(2021.7) 공석								0		
JW(18)	40초	남	●		●	4	●	농촌인력중개센터	0		
SG(18)	30후	남	◎		●	3			1	●	농기업 후원금
SI(19)	50중	남	◎		●	4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YB(20)	면담 조사 당시(2021.7) 공석								4	●	회비
YD(20)	50후	남	●		●	2	●	회비	1	△	보조금사업 진행 인력
JG(21)	40중	남	●		●	3	●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1	●	회비
CC(21)	50중	남			●	2	●	농촌인력중개센터	1	●	회비
DY(21)	60초	남		●		1	●	신활력플러스사업	0		

주: 1) 농업 종사 경력 ● 과거 있음 ◎ 현재 농업인.

2) 상근 여부 ● 상근 ◎ 농한기 8개월 상근 △ 파트타임.

3) 지역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의 설립 연도.

자료: 면담 조사.

사무국장이 농사를 지어서 현장 감각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다고 농업인 여부가 사무국장 채용 혹은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사무국장의 역할 수행 범위가 농업인 조직화와 사업 및 회의 기획·운영이라는 총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의 자료, 정책 제안문 작성에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 범위의 차이는 사무국장 외 상근 인력 현황, 농업회의소의 조직 특성, 회의 외 사업의 규모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래서 농업회의소의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업무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상근 인력이 가장 많은 YB군 농업회의소에서는 회의 조직 및 의견 수렴의 사무실 밖 활동만이 아니라 구두로 제출된 의견들을 논리정연하게 다듬고 문서화하는 일까지가 사무국장의 중심 업무임을 강조한다.

사무국 역량이 곧 농업회의소 수준이라고 봅니다. [중략] 사실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인 단체] 회장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업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대안이나 해결방안, 또는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안한다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농업회의소 역량으로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회의소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관계 기관이나 연구소 또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한 제안들에 대한 실행방안들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거나 민관협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대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장 지원해 주는 사람, 그다음 조직관리, 회계관리 해주실 분 한 분,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 거죠. [중략] 사무국장은 내부 살림을 하고 내부 정책 제안 등을 가다듬는 거. (YB)

대의 활동의 전형을 잘 구축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CP군 농업회의소도 회의 체계 작동과 사업 진행 외 사무국장의 ‘보이지 않는’ 조정과 조율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두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 제안서로 만드는 자료 조사 및 문서 작업, 심각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불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설득하는 일 등인데, 이 ‘비공식 업무’가 사무국장 업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제 업무의 30% 가까이 **안 보이는 작업**이죠. 양쪽의 이야기를 제가 다 알고 있으니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중략] 최대한 어떻게 해야 안 터질 거다, 이런 거를 제가 포착을 해서 **양쪽에 [조율] 활동들을 주로 하는 게 제 업무**죠. [중략]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만나죠. [중략] 내가 반드시 이걸 관찰시키고 말겠다, 이런 농민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죠. [중략] 큰일 벌어질 것 같으면 연락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중략] 한 시간 이상 전화로 달라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으나 규정을 찾아보고 없으면 조례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 대신 조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테니까 6개월 이상도 기다려 주셔야 된다, 다만 내가 답변은 꼭 드리겠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니까 [중략] 조례안을 저희가 다른 지역 조례를 따와 가지고 CP군 무슨 조례 제정을 요청한다고 행정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중략] 항상 그런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조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조정자 역할의 업무가 30%가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 (CP)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게다가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가 넓고 통찰력, 판단력, 정책 전문성에 사무 역량까지 갖추어야 한다면 적절한 인재를 시·군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적정 상근 인력의 확보, 협치의 온전한 제도화와 체계 구축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체계가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다.

농업회의소가 잘 되면 그게 시·군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군 농업회의소의 개인이 잘 해서, CP도 국장이 잘해서 그런 거고, CG도 [전(前)] 국장님이 잘해서 그런 거지. [중략] 농업회의소의 역량을 회장과 사무국장 등 개인의 역량에 너무 맡기고 그걸 평가로 농업회의소가 잘하나, 못하냐로 나누는 건 아니지 않나. **최소한 농업회의소를 법제화 시켜서 체계를 갖춰놓고 봐서, 그런데도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역량이 덜 할거니까. [중략] 체계를 안 갖춘 사업에서 개인의 역량에 맞춰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성공사례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CG)

법 제정을 통한 공식성과 체계의 온전한 구축 외에도 경험 많은 농업회의소들의 선례와 경험, 사무국장들 간의 네트워킹이 사무국장 개인의 역량에 농업회의소가 좌우되지 않게 할 조직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CP군이나 CG군 같은 경우 문서로 쪽 정리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내줘요. 그걸 참고 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동안의 고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을 꾸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고민을 말하면 그 친구들도 다 했던 고민이라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중략] 어쨌든 경험들이 쌓이면서 빠른 속도감 있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형이 잡혀간다 생각하고. (SI)

2.2. 재정

재정 안정성은 모든 농업회의소들이 직면한 난제 중 하나다. “가난한 집 맡겨느라”라는 어느 사무국장의 소회나 “사무국의 생존이 일차적 목표였다”는 회고담은 재정 문제가 농업회의소의 위상 실현과 고유 역할 수행 이전에 놓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수의 농업회의소 사무국장들은 취임 몇 년 동안은 무급으로 일을 하였고, 업무량과 무관하게 재정난 때문에 무급의 비상근으로 있는 등 집행부의 희생과 헌신이 재정난을 메우는 방법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여기에 일부 농업회의소들은 회장이나 사무국장 개인이 자금을 차입해 농업회의소 예산의 부족분을 메꾸어 오기도 했고,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농기업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들의 2021년 예산액 평균은 약 1억 5328만 원이지만 지역별로 4400만 원~3억 4100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 연구에 참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4개소이고 그 외 지역은 1억 원 이상이며, 그중 3개소는 2억 원 이상이다. 재원은 크게 회비, 시·군 보조금, 공모·수탁사업비, 기타(후원금, 임원 차입금, 사업 수익금 등)로 구분된다. 시·군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농업회의소 활성화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아닌 명목의 비용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주로 회의나 교육사업의 자료비, 강사비, 홍보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된다. 공모·수탁사업비는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귀농·귀촌종합상담센터 운영비, 그리고 지자체·농축협 등의 교육대행사업 혹은 각종 공모사업 지원·선정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8개소가 공모·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재원은 임원, 회원, 농기업 등의 후원금, 판매 등 자체 수익 사업비, 교육참가비 등 수익자 부담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이다. 기타 재원이 있는 농업회의소는 3곳 있다.

〈표 3-2〉 예산 및 재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CP (12)	JN (12)	HB (12)	CG (1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2021년 예산액		154	241	68	174	341	110	80	46			144	288	120	175	161	44
재원별 구성비	회비	33.1	14.5	100.0	47.7	13.5	52.7	26.3	23.9			37.5	30.2	41.7	74.3	23.6	62.0
	보조금	66.9	14.5	0.0	31.0	22.0	31.8	18.8	76.1			6.9	42.0	58.3	14.3	26.7	38.0
	공모·수탁	0.0	44.0	0.0	11.5	43.4	0.0	53.8	0.0			55.6	27.8	0	11.4	50.9	0.0
	기타	0.0	0.0	0.0	9.8	21.1	15.5	0.0	0.0			0.0	0.0	0	-	0.0	0.0
지출 항목별 구성비	인건비	50.6 (2)	8.3 (2)	0.0 (0)	50.7 (2.5)	9.5 (2)	40.0 (1)	43.8 (2)	20.9 (1)			20.8 (2)	43.1 (4)	33.4 (1.5)	40.0 (2)	34.0 (2)	0.0 (0)
	그 외 운영비	12.3	6.2	41.2	3.7	2.6	6.4	32.5	11.4			16.7	5.9	8.3	7.4	34.0	62.0
	사업비	37.0	85.5	58.8	40.8	87.8	53.6	23.8	67.8			62.5	51.1	58.3	52.6	32.0	38.0

주: 1) 시군보조금 - 농업회의소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시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2) 공모·수탁사업-농촌인력증개센터, 귀농귀촌종합상담센터, 교육대행사업 등 각종 공모, 수탁사업.

3) 지출항목 인건비의 ()는 유급인력 수. 0.5는 반상근 혹은 파트타임.

4) 지역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의 설립 연도.

자료: 농업회의소별 제공자료(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2021년 예산서 등).

재원별 비율의 전체 평균은 회비가 41.5%, 보조금 32.0%, 공모·수탁사업비 21.3%, 기타 3.6%로 회비의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농업회의소 간 재원별 구성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림 3-3〉은 예산액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지역 순으로 재원별 구성비를 표시한 것이다. 회비의 비율은 13.5%에서 100%인 곳까지 차이가 나고, 회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낮은 지역에는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곳과 2억 원 이상인 곳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예산 규모와 회비의 비율 간에 일정한 상관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시·군 보조금의 비율은 14.3%~76.1%, 공모·수탁사업 재원의 비율은 11.4%~55.6%로, 둘 다 농업회의소 간 차이가 크다. 공모·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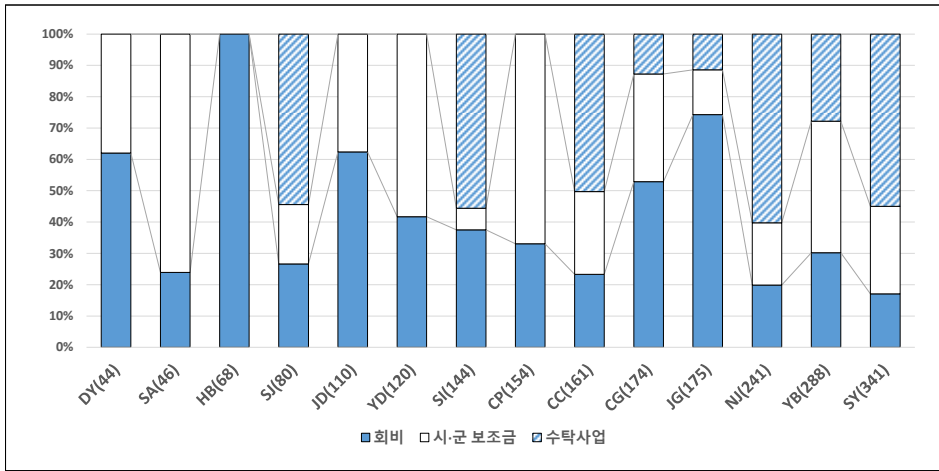
사업이 없거나 비율이 낮다고 해서 회비나 보조금의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산액 규모와 재원별 구성비 간에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모·수탁사업이 없는 농업회의소의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로 적은 편이고 그중 절반은 시·군 보조금의 비율이 회비보다 월등히 높고, 공모·수탁사업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예산 규모는 크고 회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은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농업회의소들의 보조금과 수탁사업비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어서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을 높이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해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지출항목별 비율의 평균은 인건비 28.2%, 그 외 운영비 17.9%, 사업비 53.5%로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 역시 농업회의소 간 차이가 크다. 농업회의소와 별도의 사업 및 회계 체계를 가진 수탁사업(로컬푸드 직매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인력이 농업회의소 업무를 겸직하는 2개소를 제외하고,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은 8.3%~50.7%로 범위가 넓다. 유급 인력의 수가 같은 농업회의소 간에도 인건비의 비율은 차이가 크게 난다. 사업비의 비율은 23.8%~87.8%인데 사업비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는 예산액이 적고 공모·수탁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가 하면 예산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많고 공모·수탁사업 비율이 높은 곳도 있다. 지출항목별 구성비 역시 예산 규모, 보조금 및 공모·수탁사업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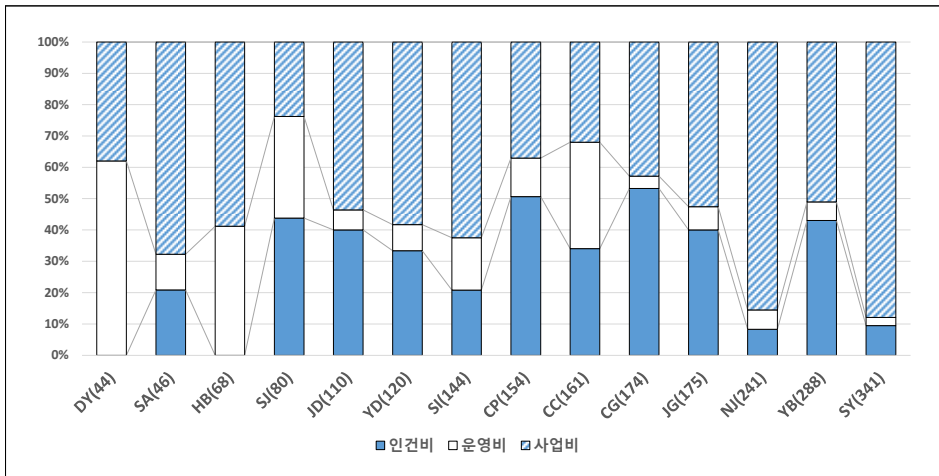
17) 재원별 비율과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별 지출항목 비율의 분포 차이, 예산액과 재원별 비율, 지출항목별 비율 상호 간의 관계도 유의미한 차이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3〉 자원별 예산 비율



주: 지역명 뒤 ()는 2021년 예산액.
 자료: 농업회의소별 제공자료(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2021년 예산서 등).

〈그림 3-4〉 지출항목별 비율



주: 지역명 뒤 ()는 2021년 예산액.
 자료: 농업회의소별 제공자료(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2021년 예산서 등).

대부분의 농업회의소가 보조금이나 공모·수탁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보조금 및 공모·수탁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은 첫째, 사업 부담이 크지만 자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 둘째, 농업회의소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농업회의소 고유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농업회의소의 목적과 위상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정을 확보하려고 사업을 운영하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농업회의소가 많다. 구체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경상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회비납부율을 높여 재정이 안정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JG, JW), 농업회의소의 고유 역할이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보조금을 받거나(SI), 농업회의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한을 두는(CG) 등 보조금과 공모·수탁사업 운영에 대한 일정한 경계심을 유지한다. 즉, 공모·수탁사업의 제한적 운영은 재정 안정까지 임시적으로만 운영한다는 기간 제한, 소규모로 사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모 제한, 농업회의소의 목적과 고유 역할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업 내용 제한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기간 제한은 나머지 두 제한보다 공모·수탁사업 운영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업 운영의 의미를 재원 확충에만 두는 인식이다. 반면, 규모 제한과 사업 내용 제한은 농업회의소의 목적 및 고유 역할과 부합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동반한다. 이 경우, 사업의 기준은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 및 지역 농업인 전체의 이해 실현에 기여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제한되며,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이나 농업회의소의 연간 예산과 사업 범위를 넘는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은 제외하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사업비는 사업을 하는 돈이라 그거는 묶여서 일을 해 버리잖아요. 그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업회의소 본연의 일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은 가능하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SI)

일단 사무국의 생존이라고 해야 하나? 왜냐하면 공모사업 그런 걸 계속 안 하면 사무국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중략] 항상 확고한 기준이 뭐냐면, **농업회의소가 수익사업, 그런 쪽은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데.** [중략] 농협에서 농업회의소를 제일 경계하는 이유가 자기들 수익사업을, 자기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협과 경쟁 상대가 되면 당연히 우리 농민을 위한 테이블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중략] 아까 말대로 주객전도되는 건... 농업회의소한테 (로컬푸드 매장을) 해 보라고 행정에서 권유를 했어요.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였죠. 안 한다고 했어요. **농업회의소 사업보다는 더 큰 걸 맡기가....**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지원사업을 맡은 곳도 있는데. [중략] 저희는 그런 거보다는 **공모사업이나 회원들한테, 저희도 좋고, 저희만 좋으면 안 되니까 저희도 좋고 회원들에게도 좋은 걸 찾으면서 지금까지.** (CG)

CG군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한 ‘회원들에게도 좋고 농업회의소에게도 좋은 공모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주민 목욕 지원사업, 농축협의 조합원 교육대행사업 등이 있다.

그런데 공모·수탁사업의 제한적 운영을 추구하는 농업회의소 간에도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면 인식의 차이가 있다. CG군 농업회의소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등도 ‘농업회의소 사업보다 더 큰 사업’으로 보고 수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지만,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농업회의소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운영이 필요하다는 농업회의소들도 있다.

솔직히 재정 때문에 하지는 않아요. 업무가 연계가 되고 하니까 이걸 우리 일인 거 같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일도 재정에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건비 딱 하나 나오지 더 이상 거기는 운영비나 사무용품비 이런 게 없어요. 인건비 외에 없어요 (SJ)

지금은 인력사업[농촌인력중개센터]을 하다 보니 전화오는 게 많고 관심들도 주시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본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SY)

한편, 수탁사업 운영에 적극성을 보이는 농업회의소들도 있다. 이들은 농업회의소가 회비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회원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수탁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이익’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 전국 차원의 영농자재 공동구매 등 농가소득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3년에서 5년 사이가 성과는 미흡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1인당 5000원씩 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회의소 역할에서 하는 게 뭐냐고. [중략] 그런데 너무 행

정이나 중앙정부에서 큰 거를 가지고 다 같이 득이 가지 않냐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걸로 인해 우리한테, **내 품목한테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돈만 내라 하고 나한테 의미가 없다면 전국의 농업회의소가 그걸 유지시킬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중략] 중앙정부에서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그냥 지원보다 내가 품목을 하고 있는 데서 얼마만큼 지원이 돼서 어떻게 그 품목들이 활성화되고 판로가 잘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HB)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거를,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받아야만, 이런 드론 사업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약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지원해주는... (JD)

※ 농업회의소가 2022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위탁운영하기로 시와 협의 완료

이거[수익사업]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관 수정할 때,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돈이야 우리가 직접 벌지 뭐, 이런 생각. [중략] 전국 단위로 [회원 대상 농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하면 거기서 절약되는 돈이 회비로 나가도 어차피 농업회의소에 가면 장갑도 싸게 사지, 삽도 싸게 사지, 이러면 농민들의 자발적인 가입이 이뤄지겠죠. 그땐 진짜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겠죠. (SG)

수탁사업의 제한적 운영과 적극적 운영 간에는 농업회의소의 위상, 고유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옥수수, 김장 재료 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SJ군의 사례는 숙고할 만한 참조를 제시해 준다. SJ군은 사무국 역량의 상당 부분을 수익사업 운영에 할애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농업회의소가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멤버십 기반이 아닌 전체 농업인을 위한 기구”로 있어야 하는데, “자동이체는 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으면 그만큼 뭔가를 돌려줘야 하니”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을 높이려 하기보다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자립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한다. SJ군의 수익사업 운영 선택은 농업회의소가 또 다른 대중운동 조직 혹은 협동조합 조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이며, 재정 자립으로 정치적 자율성을 견지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농업회의소의 고유 역할 수행을 침식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농업회의소들은 “농업회의소에 가입하면 얻는 것이 무엇이나”를 중시하는 농업인들의 인식에 직면하여 대의 활동 기구로서의 고유 역할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혜택의 창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고심하는 듯하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농업회의소들은, 멤버십에 기반한 농업인단체 활동의 오랜 경험 때문에 대의 활동에 무게 중심을 더 강하게 신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정책 개선이 회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모·수탁사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주 목적은 정책 제안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받아서 JN시한테 업무협의회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JN)

지금은 양상이 전국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게, 고유 역할을 시도도 해 보기 전에 이미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농업회의소라는 개념이 지역에 자리 잡을 때 왜곡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중략] 사업에 붙어 나오는 인건비를 타겟팅해 가지고 농업회의소가, [중략] 명함을 두 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농업회의소 활동은 시작도 못 했는데,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농촌 주민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이 고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궤도에 올랐을 때에, 이 활동만으로도 농가에게 어필할 수 있고 뭔가 와 닿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공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당연히 수익사업에서는 멀리 있어야 한다. 왜냐면 수익사업 같은 경우엔 기존에 기관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첩되면서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 (CP)

3. 회원과 의사결정 구조

3.1. 회원

농업회의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농협 등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단체회원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10개 미만인 곳에서부터 최대 92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곳까지 있다. 5곳의 농업회의소가 단체 규모에 따라 20만원~200만원까지 회비에 차등을 두었고, 9곳의 농업회의소는 20만원 혹은 30만원의 회비를 모든 단체에 일괄 책정하였다. 농수축협도 아예 농업회의소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부터 지역 내 모든 농수축협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지역까지 다양하다. 7곳의 농업회의소가 농수축협 종류와 상관 없이 같은 금액으로 특별회비를 책정하였고, 6곳이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와 지역 농축협의 회비를 차등 책정하였다. 2021년에 창립한 3개 농업회의소를 제외한 평균 회비 납부율은 단체회원 70.1%, 특별회원 85.6%로 높다. 그러나 JD, JN, YD 농업회의소의 단체회비 납부율은 0~34%로 낮다. JN, YD 농업회의소는 특별회비 납부율도 40% 이하로 낮다.

개인회원 규모는 500여 명에서 3,000명 이상까지로 차이가 크나, 다수의 농업회의소가 1,000명 내외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회비 납부율은 평균 57.6%로 높지 않다. 농업회의소별로는 9.2%~90.0%로 차이가 매우 크다. 연회비는 24,000원 ~ 60,000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연회비가 적다고 해서 회원이 많거나 회비 납부율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다.

8곳의 농업회의소가 회비 미납에 대한 제재를 정관에 명기하였다. 이 중 HB군은 회원의 제명과 탈퇴 조항에 1년 미납시 자동 제명되도록 규정하여 가장 강력한 회원 제재 조치를 운영한다. 나머지 7개 농업회의소는 보칙의 별칙 조항으로 제재를 명시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HB군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를 적용하여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명한 사례는 없다.

단위: 명, 천 원, %

주: 1) 2020년 이전 창립한 농업회의소의 현황은 2020년 12월 말 기준이고, 2021년 창립한 지역은 2021년 7월 말 기준이다.

2) 대부분의 농업회의소들이 회원신청서에 성별과 연령 기입 항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회원 비율은 사무국장들의 대략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성별 분리 통계는 아니다.

3) 회비 미납 제재 규정 - ● 회원의 제명과 탈퇴 조항에 미납기간 명시
◎ 보칙의 벌칙 조항에 미납기간 명시

4) 지역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 농업회의소의 설립 연도.

자료: 면담 조사 및 농업회의소별 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농업회의소 조직의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 75

저희 약점이 맨 처음에 회원을 모을 때 농업회의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라, 창립준비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단체장이었어요. 그 단체장들이 “내 단체 회원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개인한테 회원 가입 이야기를 하면 “나는 로컬푸드 회원이야. 로컬푸드[협동조합]도 농업회의소 들었잖아. 그런데 내가 왜 또 들어야 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JW)

설명회를 통해서 받은 것은, CMS 조건에 맞는 가입원서를 받았었어요. 계좌번호하고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동의하는 것들이 그런 걸 받았었는데, 그거 말고 설명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이런 단체에서 우르르 가입하고 이런 데는 아직 안 들어오고. 정리를 해 보니까 1/3 정도는 CMS가 되게 되어 있고, 2/3정도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JG)

농업인단체나 이장을 동원하여 회원을 모집한 지역 중에는 회원에게 일일이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여 정비하고(CG),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회원을 다시 모집하는 등(CP) 개인 회원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발현되도록 개선한 지역들도 있다. 이 지역들의 회비 납부율은 높다.

처음에 행정에서 각 읍, 면 단위로 회원을 모집해야 하니까, 회원 목표가 1,000명이라서 읍·면 단위로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회원인지도 모르고 가입된 분들도 많고. [중략] 이장님들한테 동원해서 이장님도 가입하고, 이장님이 주민들 몇 명씩 해서 하고. [중략] 회원 일일이 전화해서 가입한 게 맞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런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저희는 자동이체라서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니까. (CG)

그런데 농업인단체별 회원 할당이 편하게 머릿수 채우는 방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청서 작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많아 읍면 순회 간담회나 활동 속에서 농업인 개개인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신청서를 받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선택이었다는 곳도 있다.

단체회원들, 단체장들 모아놓고 한 단체에서 최소 20% 정도는 가입할 수 있게 하라고 할당량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게 악순환이죠. 그만큼 회비 수납이 안 되니까. 그게 조금 맹점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회의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회원 가입으로 연결하는 건 더 어려워요. 회원가입서를 쓰게끔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글자만 보면 나 회원가입서 못 쓴다고. 너가 쓰라고. 이런 것도 태반이에요. [중략] 그래서 저는 읍면 순회를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단체에 의무가입제도를

두든가, 아니면 법제화가 농촌에 사는 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해야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JW)

YB군은 회비납부율이 90.0%로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개인회원의 가입과 탈퇴를 민의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간주하는 인식이 있다. 회원으로서의 참여가 농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참여 의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하나라는 것이다. YB군은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들의 단체 가입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하며, 농업회의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 국면에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지속하는 등 개인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도 열 몇 번 회의를 했어요. 비대면 Zoom 회의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움직여야 회원이 5,000원씩 내는 거지. 5,000원이라는 돈이, 5,000원을 낸다는 마음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 전 모 단체가 “백 명을 가입하려고 한다. 회비는 개인별로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100명 분 1년치를 일괄 납부하겠다”고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우리는 매달 5,000원씩만 받는다. 그래야 농민들도 5,000원 낼 때마다 회의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농업회의소도 회원이 줄 때마다 왜 줄어드는지 성찰의 계기를 가질 수 있고,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중략]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업인과 접촉면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 간담회를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토론회도 계속하는 거예요. 또한 우린 플래카드도 많이 걸어요. 걸 만한 사유가 있으면 걸어요. 접촉면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YB)

한편, 대부분의 농업회의소가 회원 조직화 및 관리를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 SY군 농업회의소는 읍·면 지회가 회원 조직화 및 관리를 담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읍·면 지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나 회원 관리 차원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읍·면 지회장이 누구인가에 따라 회원 규모와 회비 납부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읍면 지회. 여기에서 4만 원, 5만 원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회비를 받아서 그중 24,000원을 우리에게 보내줬죠.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CMS로 바꾸려고. 네. 읍·면 지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다 보니 정확하게 회원 수가 정리가 안 돼요. [중략] 지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회원 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읍·면 지회가 나름대로는, 물론 지회장들이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 줘 좋다 보지만, 결국엔 회원 가입을 하는 텐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SY)

모든 농업회의소가 회원 확대와 참여도 제고를 중요 과제로 인식하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농업회의소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신뢰를 높이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익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다. 또 일부는 사업이나 활동을 통한 회원 확대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법 제정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식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지역은 공론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충실히 수행하여 농업인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니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농업회의소를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 말한다. “정책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원칙은 공론화 활동이라는 고유 역할만으로 충분히 회원 확대와 참여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제출된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경청되고 있음을 체감케 하는 것도 포함된다. 경청의 경험은, 의사결정 권력의 두 차원,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부적 배제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더라도 특정 경험이나 관점, 말하기 양식 등은 무시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안 되는 내부적 배제(Young, 2000: 54~56) 모두를 극복하게 한다.

두 번째 원칙을 고수하는 지역은 “농업회의소에 가입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냐”는 회원들의 당면한 요구 실현에 초점을 둔다.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거나 순회 목욕 서비스와 같은 회원 대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은 없더라도 회비에 상응하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가입도 늘고 회비 납부율도 높아진다는 관점을 강하게 견지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낸다든가 이런 걸 하면 혜택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나오는 **예산 보조를 받는**다든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아무것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니까. [중략]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략] **농업회의소의 회원이면 농민이 대출받을 때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SG)

세 번째 관점이 정책 개선 중시나 혜택의 배분 중시 관점과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 활동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버틸 힘이 필요하고, 독자적인 사업으로 ‘혜택’을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원 확대는 필요한데, 솔직히 생각하는 게 농업인에게 회비 걷어서 운영하는 건 쉽지가 않다. 회비 내에서 하는 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농협에서 회비를 더 내고 그 대신 **농협 조합원이면 당연히 농업회의소 회원이다.** 대부분 CG군 농민들은 농협 조합원이나 CG군 농민들은 다 농업회의소 회원이 되지 않겠나. [중략] **최소한 법제화가 되고 그 틀이 돼서** 진짜 그런 체계가 갖춰지고 자기 민의 수렴해서 반영이 된다는, 그런 게 확실히 고정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나. (CG)

법제화가 돼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어떤 농기계 신청을 받는다면지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농업회의소 회원이면 가점을 준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다 보니까, 농업회의소가 무의미하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중략] **농어업회의소 회원은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준다. 이러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겠죠?** (JN)

그러나 법 제정을 통한 농업회의소의 대표성과 공식성의 확보가 회원의 의무가입이나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동반해야 하는지/동반할 수 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확실한 것은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회원 확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업회의소가 회원 유지 및 확대, 참여도 제고를 위해 농업회의소 홍보, 회원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를 기본 사업으로 운영하며 신규 회원을 조직하기 위한 발품도 아끼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알리거나 정책 제안을 받는다는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과 회원 가입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 구글을 활용한 온라인 회원 가입, SNS와 문자를 통한 상시 정보 제공, 소식지 발송, 각종 보조사업 및 정책 정보 자료 제작·발송, 지역 축제 및 농업 관련 행사에 홍보 부스 설치 등의 노력을 펼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의견 수렴과 별도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품 추첨 행사를 하거나,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영농교육 때 교육생 대상으로 농업회의소를 설명하고 회원 가입 신청을 받기도 하였다.

회원 현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회원 구성의 다양성이다. 회원 구성의 다양성은 농업회의소가 대의기구라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이다.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한 곳도 있고, 그 반대로 단체에 속하지 않은 회원이 많은 곳도 있다. 대체로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편이나, 65세 이상의 노년층도 적지 않다.

일반 농민들 말고 단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농업회의소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SI)

여러 단체 지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고, [중략]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상들입니다. 65세 밑으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회원들 중에 단체가 아닌 분들은 소속은 아닌 분들은 있죠. 그분들은 65세 이상이라서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JG)

젊은 층은 대부분 되어 있고요.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연령을 보면 70대 이상이 100명쯤 되거든요. (DY)

특히 문제적인 것은 여성의 낮은 참여인데, 회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11.3%이고 농업회의소별로도 0.8%~23.0%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부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비를 할인하는 방안을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한 적도 있다고 하나, 이를 실제 적용한 지역은 YB

군이 유일하다.

회비 부담 경감은 여성 참여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발언의 주체와 내용은 남성중심적이기 쉽다. 같이 살고 같이 농사짓고 있으니 남편과 마을 남성이 부인과 여성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대변'한다는 의사소통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 참여 훈련과 자신감을 보유한 여성이 아니고서는 여성이 스스로를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기 쉽지 않고 읍·면 순회 간담회 참여를 자신의 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참여하는 여성이 적으면 소수의 참여 여성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다시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여성 비율은 대부분 여성농업인단체장들이 채워주고 있는데 이들이 여러 의사결정 구조에 다중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의 참여가 여성의 전반적 대표성 증진으로 귀결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악순환이 깔려 있다.

농업·농촌에서 성별에 따른 노동 구분이 작동하고 역할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고유하게 경험하는 문제를 남편 혹은 남성 주민들이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실제로 농업회의소들의 정책 건의 내용들은 영농과 소득 중심이어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책, 여성 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전담인력, 전담부서), 농업인안전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에서의 여성 목표제 등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 농촌 보육, 노인돌봄, 여성인권, 주거환경, 쓰레기 처리 등 환경 문제, 교통, 의료 등 농촌살이와 관련된 정책 건의는 거의 없다.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대의기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회비 부담 경감 외에도, 순회 간담회에서 여성들만의 공론 기회를 마련하거나 분과위원회 등 핵심 논의 단위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3.2. 의사결정 구조

농업회의소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는 총회이고,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의원 총회를 두고 있다. 대의원 총회는 1,000여 명 내외의 전체 회원을 정원으로 하는 총회 개최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한 대의 단위로, 국가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일부 농업회의소들은 정관에 총회 규정이 없다. 이런 곳이 9곳이나 된다. 그중 3개 농업회의소는 총회에 해당하는 장이 대의원총회 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농업회의소는 총회의 회의 규정에 대의원총회로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 대의원 조항에 총회를 대신한다고 규정할 수는 있으나 총회 조항에 총회 규정 없이 대의원총회로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회원의 기본권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8) 예를 들면,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총회 조항 없이 대의원총회 조항만으로 구성된 사례	
제3장 총 회 제12조(회의)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한다. 단, 회의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대의원회 제13조(대의원회의 소집) ① 대의원회 정기회는 매년 1회 회계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총회 제12조(대의원 총회) ① 회의소에 대의원총회를 둔다.
▶ 총회 회의 규정에 대의원총회로 대신한다고 명시한 사례	
제3장 기 관 제1절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표 3-4〉 조직 구성 현황

단위: 명, 개

구분		CP (12)	JN (12)	HB (12)	CG (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총회 규정 없음(정관)				◎	●	●	●		◎	◎	◎		◎			◎	
대의원	인원수	59	79	99	61	94	48	53	35	53		48	67	95	123	86	35
	지역 (추대/선임)	40.7	60.8	40.4	50.8	63.8	75.0	71.7	94.3	71.7	60	64.6	44.8	60.0	60	53.5	51.4
	단체회원	49.1	19.0	24.2	24.6	36.2	25.0	13.2	5.7	28.3	30	33.3	40.3	26.3	30	36.0	25.7
	특별회원	15.3	20.2	-	24.6	-	15.1	-	-	10	2.1	14.9	13.7	10	10.5	22.9	
	여성 할당	기준 (정관)	3명	3명	3명	5명	3명	3명	3명	4명	5명	3명	다수 40%	3명			3명
	비율	15.3	13.9	13.1	13.1	13.8	18.8	17.0	0.0	13.2		12.5	20.9	12.6		12.8	17.1
	소단체 할당														●		
	인원수	23	28	35	39	35	21	32	14	14	22	21	26	18	20	36	23
이사	회장단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			
	분과위원장		●	●	●	●	●	●			●	●	●	●	●		●
	단체이사	●	●	●	●	●	●	●		●	●	●	●		●	●	
	특별이사	●					●	●		●	●	●	●		●	●	●
	지역이사		●	●	●	●		●	●	●	●	●	●	●		●	●
분과 위원회	개수	7	9	9	13	10	6	9	조직 중	미조 직	6	10	9	7	8	11	8
	품목	5	5	5	5	4	4	6			0	4	4	4	5	6	4
	기능	2	4	4	8	6	2	3			6	6	5	3	3	5	4
	위원 구성	개인회원 참여	◎		●			●				●					●
읍면지회 조항(정관)			●						●	●	●	●	●		●	●	●
개수/읍면수		0 /8	20 /20	0 /10	0 /12	12 /12	12 /11	8 /9	11 /11	5 /13		6 /10	0 /15	0 /16	0 /13	0 /12	9 /10

주: 1) 총회 규정 - ● 정관의 총회에 해당하는 장이나 절이 대의원총회 조항만으로 구성.

◎ 총회 회의 규정에 대의원총회로 대신한다고 명시.

2) 지역 대의원 - ● 정관에 선출 방식을 합의 추대, 선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3) 분과위원회의 개인회원 참여 - ● 분과위원을 회원으로 구성

◎ 분과위원이 될 수는 없으나 회의 및 활동 참여는 가능

4) 읍면지회 조항 - ● 정관에 조항 있음.

자료: 면담 조사 및 농업회의소별 정관, 2021년 대의원총회 자료집.

농업회의소들은 대부분 지역 대의원, 단체회원 대의원, 특별회원 대의원으로 대의원들을 구성한다. 농수축협이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농업인 대의기구에 농협 등의 의사결정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특별회원 대의원이 없다. 단체회원 대의원과 특별회원 대의원 선출은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 대의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대의원도 합의 추대 혹은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총회 규정의 부재와 마찬가지로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회원의 권리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의원 구성 비율은 지역대의원이 평균 60.3%, 단체회원 대의원이 27.6%, 특별회원 대의원이 15.5%로 지역대의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그중에는 지역대의원 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있고, 지역대의원 비율이 단체회원 대의원 비율보다 낮은 곳도 있다. 농업회의소가 그동안 정책 참여 기회가 적었던 농업인 개인, 소규모 단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존재 의의를 둔다고 한다면, 최고 의사결정 단위의 의석 수가 그 원칙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대의원의 비중도 중요하고 또한 여성과 소규모 단체의 대의원 참여도 중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13개 농업회의소가 지역대의원 구성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13.9%에 불과하다. 여성 회원이 적으니 여성 대의원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약소단체 할당은 JG시만 운영하고 있고¹⁹⁾, 그 외 모든 농업회의소는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연합을 통해 대의원 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사회는 총회 소집과 안건 심의를 일차적 기능으로 하므로 의사결정의 최소 단위이자 첫 단계이다. 이사는 회장단과 분과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지역이사, 단체이사, 특별이사가 선출/선임 이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과위원장이 이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단체, 특별, 지역이사 중 지역이사만 두거나

19) 제19조(대의원회) ③ ...15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 중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20명 이하의 회장 직권 대의원을 둔다.

지역이사만 없는 등 세부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사무국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나 농업회의소 운영과 의제에 관한 상시적 논의는 회장단,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 단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핵심적인 운영 및 집행 단위로 기능한다. HB군은 유일하게 정관에 회장단 회의와 임원회의 조항을 두어 집행 및 운영 단위를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모든 회의가 정관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경직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회의 단위가 공식적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 모든 회의의 성원이 되는 회장단과 분과위원장에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회는 농업회의소에서 의제 혹은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단위로 기능한다. 읍·면 순회 간담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의견 취합을 중점 시행하는 농업회의소도 취합된 의견을 안건으로 정리·선정하는 단위가 분과위원회이고, 개별 회원들로부터의 의견 취합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가는 공론장 기능의 중요 요소가 된다. 모든 농업회의소의 정관에는 대의원을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 구성에서는 단체장과 소속 임원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지역들도 있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개방한 지역들도 있다. 회원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번잡함은 있으나 개인회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복수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참여 민주주의 원칙에는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크게 품목과 기능으로 나뉜다. 분과위원회가 조직된 14개 농업회의소 중 품목 분과위원회가 더 많은 지역이 8개고 기능 분과위원회가 더 많은 지역은 6개다. 기능별 분과위원회는 친환경, 가공유통, 농촌발전/정책이

공통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청년, 여성, 귀농귀촌 등 대상별 위원회를 조직했거나 문화복지, 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첨단농업 등 기능을 추가한 지역들도 일부 있다.²⁰⁾

읍·면지회가 정관에 명시된 농업회의소는 9개소고 읍·면지회가 실제로 조직된 곳은 8개소다. 정관에 명시된 읍·면지회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회원 확대, 회의소 홍보, 여론 수렴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대의원 선출을 읍·면지회의 역할로 명시하였다. 일부 농업회의소들은 읍·면지회 조직화를 개별 농업인들의 정책 참여 기회와 통로를 확장하고 농업회의소가 또 다른 단체연합이 되지 않게 하는 유효한 방안이라 인식한다.

보통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읍·면·동 회원분들께 문자 보내거든요? 이렇게 직접 하는 방식인데, 잘 안 모여요. 그런데 읍·면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가 있으면 사람 관계가 있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분회가 있는 조직은 30명, 40명씩 모이거든요. [중략] 불만 있으면 분회장님께 말씀드리려 분회장님이 올라올 수도 있고, [농민들이] 직접 하기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읍·면·동 분회가 있는 게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 [중략] 농업회의소 표준정관에 보면 단체 중

20) CP: 축산, 원예, 식량, 어업, 산림 / 농촌발전, 유통

JN: 식량, 원예, 과수, 축산, 임업 / 친환경, 가공유통, 농어촌발전, 귀농귀촌

HB: 식량, 과수, 축산, 원예, 특작 / 친환경, 유통가공, 산림소득, 농촌발전

CG: 식량, 과수, 축산, 원예, 특작 / 친환경, 가공유통, 농촌발전, 정보화농업,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내수면어업, 사회적농업

SY: 경종, 원예, 축수산, 임산 / 유통가공, 청년, 여성, 문화복지, 귀농귀촌, 협동조합

JD: 식량, 과수, 원예특작, 축산 / 농촌발전, 유통가공

SJ: 식량, 원예, 과수, 축산, 특작, 산림 / 친환경, 농업농촌발전, 가공유통

SG: 기획, 총무, 홍보, 교육, 회원관리, 여성회원관리

SI: 식량, 원예특작, 축산, 산림 / 농민정책, 농촌활력, 유통, 가공,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YB: 식량, 원예특작, 축수산, 산림 / 농업정책, 친환경, 첨단농업, 농업기술, 가공유통

YD: 식량, 원예, 축산, 임업 / 친환경, 가공유통, 농촌발전

JG: 식량, 축산, 원예특작, 과수, 임업산림어업 / 친환경, 유통가공, 협동조합

CC: 식량, 원예1, 원예2, 과수, 축산, 산림 / 농업정책, 친환경, 가공유통, 여성, 청년문화

DY: 식량, 과수, 축산, 원예특작 / 친환경, 가공유통, 농촌발전, 청년

※ 설립년도순

심으로 만든 데가 많아요. 회원들을 너 어디 소속 회원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니까 단체 간 연합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농업회의소를 단체에 할당 주듯이 회원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지역의 힘을 불어넣어야 농업회의소가 힘이 있겠단 판단을 해요.** 읍·면 쪽을 조직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저는 코로나만 아니면 농민조직을, 분회를 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SI)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홍보와 회원 확대 등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차원에서 읍·면지회 조직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회가 오히려 농업회의소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를 꺼리는 곳도 있다. 읍·면 지회 조직화는 다른 사안보다 특히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기대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관에 읍·면지회 규정이 있음에도 여러 우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을 종합하면 핵심적인 이슈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인회원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가로 수렴된다. 농업인단체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나 농업회의소가 고유 역할에 충실하려면 개인회원과 농업인단체회원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만일 의사결정 구조의 단체중심성이 강하더라도 읍·면 순회 간담회가 잘 작동되면 개인회원의 참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개인회원의 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의사결정 구조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회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가?

둘째, 지역대의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가?

셋째, 여성, 약소단체는 얼마나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가?

넷째,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읍·면지회가 조직되어 있고 읍·면지회가 회원들의 의사소통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4. 소결: 개인과 단체의 동시 참여, 빈약한 재정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업회의소들의 조직 구성과 인적·물적 자원 현황에
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회의소 설립 경로는 설립 발의·주도 주체, 설립 추진 과정, 농업계의
참여도 등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계(리더)와 지방행정
이 함께 참여하는 설립 추진단을 조직하고, 추진단이 농업인/농업인단체, 농협
등 설립 주체 간 합의 형성, 농업회의소 활동의 원칙 정립, 읍면 순회설명회를 통
한 회원 조직화 등을 주도하는 활동의 전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추진단이 주도
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일방적 추진에 농업인단체가 동원되어 형식적
설립에 그친 경우도 있다.

둘째, 설립 주체들이 인식하는 농업회의소의 필요성은 ① 농업인 지방농정 참
여의 공식성 보장(공론장의 제도화), ② 소외되었던 개별 농업인/약소 단체들을
포함하여 ‘모든’ 농업인의 정책 과정 참여 보장(참여 민주주의 실현), ③ 숙의를
통해 농업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대변(토론 민주주의 실현)한다는 것이었다. 농업
계의 통일된 목소리 대변을 공론의 독점(농단협의 해체, 단체별 건의 금지) 혹은
건의 창구 단일화와 같은 도구적 효율성으로 이해하는 지역도 일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역에서는 가치와 이해 여부를 떠나 논의 자체를 지속·유지함으로써 다
양한 민의의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농업회의소 고유의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농업회의소 사무국 인력은 사무국장 1명과 상근 인력 1명이 배치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사무국의 역량이 농업회의소를 좌우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무국장의 역할 범위와 역량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랐다. 직접적인 사
무행정 수행보다 회의 조직화와 정책 개발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사무국장
이 농업인 당사자여야 한다는 인적 특성을 강조하고, 사무행정 수행까지 강조하는
지역에서는 상근 근무 형태를 중시하였다. 16개 농업회의소 중 9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상근하며 활동 범위는 사무행정부터 회의 조직화 및 정책 개발까지 폭넓다. 여기에는 자료 조사 및 문서화 작업, 의견 조율 및 설득 등의 비공식 업무 비중이 상당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정으로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 농업회의소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도록 법 제정을 통해 적정 상근 인력을 확보하고 협치를 온전히 제도화하여 개인 역량이 아니라 체계가 작동되게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넷째, 농업회의소 운영에서 재정 안정성은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논하기 이전에 놓인 난제다. 개소당 연간 예산액 평균은 1억 5,328만 원으로 많지 않다. 이 중 53.3%가 보조금·수탁사업비여서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부담을 높이거나 지자체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여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적정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무국장의 희생에 의존하는 등 인적 자원 부족과 그에 따른 활동 위축이 결과되기도 하였다. 재정 불안정성이 초래한 인적 자원 부족, 보조사업 실행 부담,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어려움 등은 농업회의소의 지방농정 건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보조금 및 공모·수탁사업 운영에 대해 다수의 농업회의소는 재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여기에는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만 운영한다는 기간 제한, 소규모로 사업 부담이 과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모 제한, 농업회의소 고유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사업내용 제한의 세 가지 태도가 존재한다. 반면, 수탁사업 운영에 매우 적극적인 농업회의소도 있다. 이들은 농업회의소가 회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회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탁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탁사업 운영이 의견수렴과 정책 건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여섯째, 농업회의소의 회원은 개인, 농업인단체, 농축협으로 단체 및 조직과 개인 모두를 포괄한다. 농업회의소들은 그동안 단체·조직이 지방농정에 관여해 온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역할과 능력을 포괄하면서도 개별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설립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라도 개인회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회비 납부율이 높지만 농업인단체나 이장을 통한 집단 할당 방식으로 출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회의소 중 회비 납부율이 90%로 가장 높은 YB군은 개인회원의 가입과 탈퇴를 민의 파악의 척도로 삼아 단체 가입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농업회의소 접촉 기회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회원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의견 수렴과 정책 건의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과 사업 운영을 통해 회비에 상응하는 이익 배분으로 회원의 관심을 높이려는 입장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일곱째, 회원 구성의 다양성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들은 기존의 정책 참여 과정에서도 가장 소외되었던 집단인만큼 별도의 조직화 노력이 필요하다.

여덟째, 농업회의소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분과위원회-이사회-대의원회-총회를 기본으로 한다.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 농업인단체는 결합되어 있으나 개별 농업인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예컨대, 9곳이 정관에 총회 규정을 두지 않았고 2곳이 지역 대의원을 선출이 아닌 합의추대 혹은 선임하며, 3곳에서 대의원 중 지역 대의원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다. 13개 농업회의소가 대의원 구성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나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13.9%로 낮다. 약소단체 대의원 할당은 1곳만 실시하고 있다. 핵심 정책 논의 단위인 분과위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5곳의 농업회의소가 모든 회원에게 분과위원회 참여를 개방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개인회원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즉, 농업인단체와 개인의 동시참여 구조를 얼마나 작동시키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핵심은 어떤 단위든 개별 농업인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회의가 있는지다. 의사결정 구조가 농업인단체 중심이어서 읍·면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잘 운영되면 개별 농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제4장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4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

1. 분석 틀

대의(代議)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뜻한다.²¹⁾ 행정학의 용어로 좁히자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일”이라고 정의된다. 현재 한국에서 농업회의소의 대의원 등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는 법적 절차도 선례도 없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의 대의 기능’이라고 말할 때에는 전자(前者)의 뜻을 쓰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지방농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의논하는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그리고 지방정치 제도로서 기능할 것을, 즉 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선출직 대표자들로 농업회의소 대의원 회의나 이사회 등을 구성할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그 같은 대의 기능이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활동 중인 농업회의소들은 대의 기능을 수행할 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마련해야

²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들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동시에, 먼저 성립된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가 타 지역 농업회의소에 전파되기도 했다. 다양한 형식의 ‘공론화 절차’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는 형식을 지니는 것은 똑같다.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는 우선 ‘의견 수렴-건의’로 구성된 2단계의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메시지(message)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정책 건의 내용’이다. 1단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메시지의 발신자는 지역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이며, 수신자는 농업회의소다. 2단계 건의 단계에서는 농업회의소가 메시지의 발신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농정의 의사결정 책임을 지니는 행위자(조직)가 수신자다. ‘의견 수렴’과 ‘건의’ 단계 모두에서 여러 형태의 매체와 경로가 작동한다.

농업인의 의사를 대의하는 공적 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다면, ‘의사를 대의하는 공론화 절차’까지도 그 법률에서 일정 정도 규정할 수 있을 테다. 그러나 법제가 미비하므로 농업회의소들이 설립되고 활동하면서 ‘의사를 대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지방농정 현장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갈래의 ‘절차’들이 현존한다. 그중 바람직한 공론화 절차의 형식을 식별할 수 있다면, 농업회의소의 대의 모델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공론화 절차란 무엇을 뜻하는가? “공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민주적 의지형성과 의견형성의 제도화된 절차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비로소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되고, 정당한 법제정에 동참하게 된다.”(위르겐 하버마스, 2006: 493). 농업회의소가 구성해야 할 ‘바람직한 공론 절차’란 바로 ‘민주적 의지형성과 의견형성의 제도화된 절차’를 말한다. 이는 사적 영역에 있던 문제를 공론장에서 재점화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토론에 부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런 식으로 행위자들 간의 욕구 조정은 농업회의소 내부의 토론 그리고 농업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공론화 절차’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듯하다. 첫째,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최소의 제약 조건하에서 발화(發話)하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포괄성). 가령,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포괄성’이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농업회의소의 설립 취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농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수만 참여하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지요. 소수만 참여했을 때, 소수의 이야기들이 주류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실제로 정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은 농업회의소가 없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농정이 되지 않도록 역할하는 게 농업회의소라고 봅니다. (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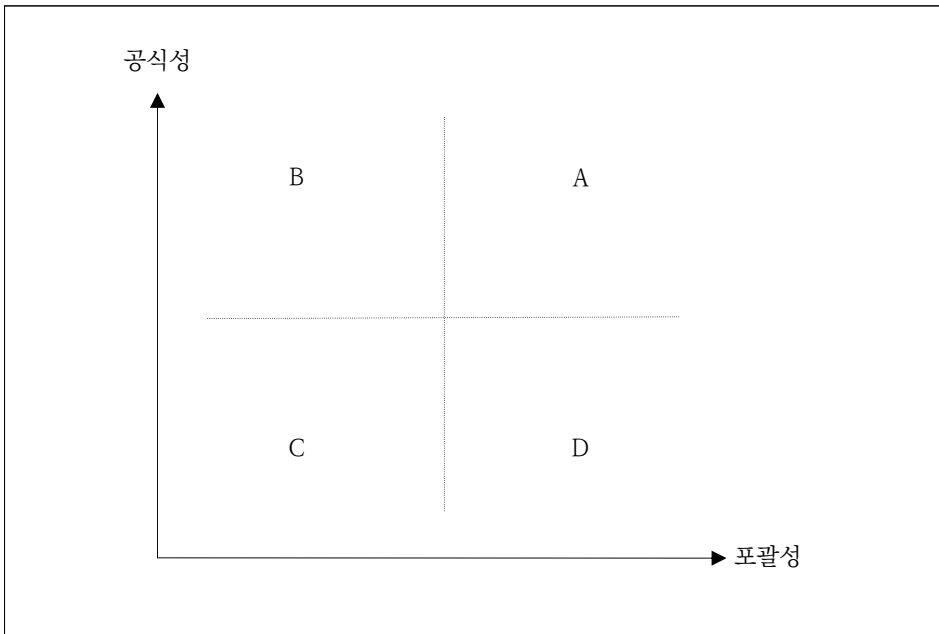
둘째, 발화되고 토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건의할 때 최대한 공개된 자리에서 최대한 명확한 메시지로 주고받아야 한다(공식성). ‘공식성’이 농업회의소 공론화 절차의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특정 단체나 개인이 요구를 관철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뭐 군수랑 친하다거나, 무슨 무슨 단체장이니까’라는 입장을 활용해 군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안 된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저 무슨 무슨 단체장이 부탁한 사항을 실행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보시오’라고 농정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면,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저는 농업회의소라면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직사회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농정 참여 활동은 최대한 합리적이려고 애쓰는 활동이다’라는 평판으로 공무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협치 조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대등한 입장에서 저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산해 낸 이야기가 특정 단체들에 관한 이야기고,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고,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 본인들과 논의하는 절차적인 것을 챙기지 않고서, 거꾸로 올라가서 군수를 만나서 뭔가를 추진한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손 잡고 협력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농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발판을 다져야 합니다. (CP).

포괄성과 공식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농업회의소들이 수립한 공론화 절차들을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림 4-1>에 보인 좌표평면에서 오른쪽 위 부분(영역 A)에 근접할수록 더 바람직한 공론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공론화(의견수렴-건의) 절차 유형화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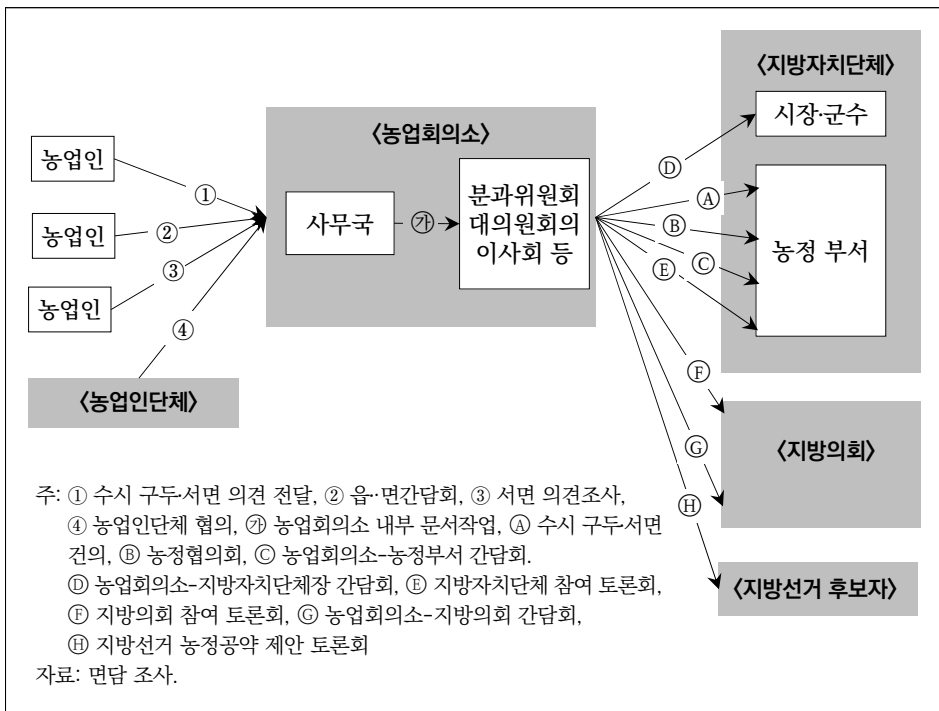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유형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즉 농업회의소를 경유하여 농업인의 의견이 정책건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전달되는 경로를 여럿 식별할 수 있었다. 의견 수렴이나 건의의 방식과 내용은 농업회의소마다 다르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한 곳에서도 여러 종류의 절차를 운용한다. 모두 16개 유형의 절차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5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표 4-1>.

그것들을 모두 집약해 보이자면 <그림 4-2>와 같다. 즉, 그림에 보이는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경로를 모든 농업회의소가 동일하게 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경로로 운용하는 절차들을 한데 모아 보인 것이다.

<그림 4-2>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유형 집약



〈표 4-1〉 농업회의소의 정책 의견 수렴-건의 절차 현황

구분		CP (12)	JN (12)	HB (12)	CG (1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농정부서에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 (1-A)		●	●		●	●	●	●		●		●	●	●			
농정 협의회 개최함	읍·면 간담회(2-가-B)	●	●		●			●				●	●	○	○	●	○
	수시·일상적 의견 수집 (1-가-B)	●			●								●				
	서면 의견조사(3-가-B)	●	●					●		●		●	○	○	○		
	농업인단체 협의(4-가-B)		●							●		●					
농정 협의회 개최 하지 않음	구두 의견 수렴 후 농정 부서에 서면 건의(1-가-A)				●												●
	읍·면 간담회 후 농정부서에 서면 건의(2-가-A)				●		●										
	읍·면 간담회 후 농정부서 와 간담회(2-가-C)			●		●											
	읍·면 간담회 없이 분과위원회 후 농정부서에 서면 건의(가-A)						●							●			
	읍·면 간담회 없이 분과위원회 후 농정부서와 간담회(가-C)				●	●	●										
간담회	농업인단체장 의견을 반영 한 자자체장 간담회 (4-D)	●	●					●				●					
	자자체장 간담회 (D)	●	●		●	●	●	●		●	●	●					○
공개 토론회	농업회의소-지자체 현안 토론회(1-E)	●	●	●	●	●	●					●	●	●		○	
	농업회의소-지방의회 현안 토론회 (1-가-F, 2-가-F)	●															
	농업회의소-지방의회 간담회(1-가-G, 2-가-G)	●		●				●							○	○	○
	지방선거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2-가-H, 4-가-H)	●	●				●										

주: 1) '의견수렴-건의 절차' 유형을 부호로 표시한 것은 〈그림 4-2〉를 참고.

2) 지역명 하단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의 농업회의소 설립연도.

3) ●: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혹은 2021년에 창립하여 시행할 겨를이 없었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음.

자료: 면담 조사.

2.1. 농정 부서에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

공론화 절차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유형이다.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등을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수시로 연락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책 사업 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문의할 경우, 농업회의소 측이 지방자치단체 관련 농정 부서 공무원을 접촉해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 농업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식의 의사소통 경로다.

의견 수렴(농업인-농업회의소) 및 건의(농업회의소-농정부서)의 두 단계 모두에서 의사소통의 형식은 비공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안만을 놓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관계자들이 수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어찌보면 지역의 농업인 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의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농정 부서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농업회의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농업회의소가 지역 농업인들의 자치기구라는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이른바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물론, 이 범주의 의사소통이 관찰되는 모든 농업회의소가 ‘낮은 문턱’으로 인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회의소의 대의 활동이 지역 농업인 다수에게 잘 인지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농정 부서 공무원들과도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에는 한 농가가 있었어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썬갠을 내는데 갑자기 여러 군데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다가, [잔류농약이 있다고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농약이] 바람에 실려 갔거나...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데, 행정과 로컬푸드협동조합과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책임을 두고] 서로 핑퐁계임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서너 군데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가 “JW군 농업회의소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JW군 전체에 걸었어요. 그걸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셨어요. 아는 분이셨지만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모르셨죠.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A부터 Z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듣고 나서 판단했죠. 이 문제의 초점은 개인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반영시켜주지 않는 거구나. 농업회의소의 이름으로 행정과 로컬푸드협동조합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르마를 타 드리고 해결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농업회의소가 이런 곳이네?’ 하며 가입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것이라고 봐요, 농업 회의소의 기능이. (JW)

농업회의소에 이야기하면, 저희[농업회의소 사무국]가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도 입장을 알려주고. 그러면 저희는 중간에서, 서로서로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민원성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쪽과 저쪽 의견을 들어보고, 오히려 행정이 맞으면 농민을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농민이] 뭘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은 “별써 사업도 끝나고 예산도 없어서, 힘듭니다. 내년에 신청 기간이 있으니 내년엔 써 보십시오.”라고 답이 오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에서 저희는 그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CG)

2.2. 농정협의회

면담 조사를 실시했던 16개 농업회의소 중 6곳에서 이런 방식의 대의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곳, CG군 농업회의소는 과거에 이런 방식의 절차를 운용하다가 중단한 바 있는데 2021년부터는 재개했다. 2020년 또는 2021년에 설립한 농업회의소 중 3곳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수가 참여하는 모임을 열 수 없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할 뜻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 절차는 대체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으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분과위원회 등을 열어 제출된 의견을 정책 제안 형태로 정리하고, 행정의 농정 담당자들과 농정협의회를 개최한다.

▶ 의견수렴(읍·면간담회, 일상적 대화, 서면 의견조사, 농업인단체 협의)

첫째 단계에서는 지역 농업인 다수의 의견을 모은다. 주로 ‘읍·면간담회’를 개최한다. 농업회의소 회원을 비롯한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지방농정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다. 농한기인 1/4분기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한다.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읍·면 순회 농업인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농한기에 농민들이 안 불편하실 때 나가서 합니다. 그때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주신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피드백해 드리고, 그리고 [지역의] 농업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말씀이 끝나실 때까지 그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매년 갖고 있고요. (CP)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받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연중 내내 일상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업회의소 사무국 직원과 나누는 대화 중에 표명되는 의견을 취합하기도 한다. 이처럼 농업인 개인들의 의견을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수렴하는 것 외에, 농업인단체 대표나 실무자들과 별도로 모여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여기[읍·면간담회]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면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공문으로 ‘의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반송해서 보낼 수 있게 회신용 봉투에 우표까지 붙여서... 저희가 그런 자료까지 같이 모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드리는 거죠. (CP)

그리고 사무국이, 일상적으로 계속 여기 농민들이 교육 다니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업회의소 사무국에] 들어오셔서 툭툭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안전이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될 때에는, 사무실이 바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이 어딘가에 계시면 그곳에 나가서 말씀 나누다가 [듣는] 그런 것도 다 메모해서... 이런 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다 정량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활동합니다. (CP)

내부적으로 16개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단체별로, 또는 지역도 다르시니까 지역별로 농정 현안에 대해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해달라 그래서 의견 받고, 그것에 대해 행정과 만나 이야기를 했죠. (JW)

읍·면·동 교육[간담회]를 3월에 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또 농업인단체, 품목단체들은 일년에 한두 번씩 꼭 [간담회를] 하죠. 정책반영 제안 사업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축산단체, 친환경농업단체, 여러 단체 대표들 오라고 해서 회의도 하고, 정책 의견도 받아서 JN시에 제출해주면 또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그러더라고요. (JN)

▶ 조정·검토(분과위원회)

둘째 단계에서는 제안된 의견들을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검토하고 정리한다. 대체로 ‘분과위원회’들에서 해당 분과와 관련된 제안들을 검토한다. 분과위원은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흔하다.²²⁾ 읍·면 순회 농업인간담회 등의 경로를 거쳐 제출된 제안들을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최종적으로 공식 제안할 정책 자료를 선택해 확정하는 데에 있다. 앞의 단계에서 거쳐 올라오는 정책 제안들의 수가 많아서 그것들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 농업인 다수와 관련된 공공적 사안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데, 그 같은 ‘의제 선정’을 농업회의소 안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대의원 등이 분야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들을 [군청에]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렴되었다”고 전달은 하되 “참고자료로 갖고 계시고, 보셔라. 우리 농민들이 앉아서 지금 주신 말씀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이야기가 더 없는지,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들을 우리 임원, 대의원들이 앉아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추후에는 우리 분과위원들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안들을 우리 나름대로 추려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투박하지만, 한 해에 예를 들어 1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군청에] 참고자료로 다 드리지만, 이것들을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30~40건으로 추려서, 또 이야기를 세분화해서 공식 건의하는 절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CP)

읍·면 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농민들이 참석하여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지금 의견만 모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진짜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시 한 번 걸러서 올린다면 훨씬 더 [관철시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CC)

지역의 농업인들이 표출하는 다수의 정책 제안 중 어떤 것을 선별하여 시·군에

²²⁾ 경우에 따라서는 대의원 외에도 농업회의소 임원(회장, 부회장 등)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농업회의소 이사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분과위원회와 병행하여 지역의 주요 농업인단체장, 농협 조합장,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제안하는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얽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분과위원인 농업인들이 직접 정책 제안을 선별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의제 설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8개 읍, 면 다 돌면 농민들의 언어가 왜곡되지 않는 수준으로 제가 정리해서 분과별로 이야기를 다 쪼갭니다. 그중에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는데,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하는 이야기는 제[사무국장]가 제안서 형태로, 예를 들면 제안 이유를 밝히고 그래서 주요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 시·군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토론]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처음에는 분과위원회를 분과 위원들한테 그냥 맡겨 놓았어요. “회의 자료는 이렇습니다. 토론하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는지, A라는 안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역 실정에 맞는 이야기인지, 우선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맞는지,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이야기인지 당신들이 토론해 보고 우선적으로 건의할 사항을 추려서 저한테 주십시오.”라는 식이었죠. 그렇게 해보니, 농민들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진 않잖아요. 토론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번 해 본 다음부터, 모든 분과위원회에서 발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 회의 자료를 만들고 이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말씀드리고, 분과위원들에게 ‘쟁점은 무엇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된다’라는 식으로 회의 발제를 끌고 가는 일은 지금도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대신, **의사결정은 농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 주장은 최대한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CP)

회의는 [읍·면] 분회, 분회장님이 주재해서 다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사무국]는 **참관만 하고.** 나중에 분회에서 회원님들에게서 나온 의견을 줄여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다 분회마다, 8개 분회니까 [이야기가] 분과별로 다 나오고 그거를 추려서 [농정협의회 자료를] 만드는 거죠. (SJ)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들 가운데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루어지는 공론화 절차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중시하는 CP군 농업회의소는 분과위원회를 분과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두 번 개최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농정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이때 공무원은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회의소 분과위원들의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수집한 정책 제안이나 건의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2차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의해야 할 정책 제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분과위원회 자리에 담당 공무원들도 다 앉아 계시거든요. 같이 앉아서 분과 회의를 하는데, 제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토론을 주도하지 말아라.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만 사실관계를 짚어주는 수준에서만 발언하시라. 배석은 꼭 하 시라’는 겁니다. 저[사무국장]는 발제를 하고, 그분[공무원]은 사실관계를 도와주는 것 만 하고, 토론은 철저히 농민들이 하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 말미에, ‘해당 분과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건의해야 될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본인들 이 5개는 직접 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CP)

의사결정은 분과위원회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사무국의 역량에 따라서 분과위 원회를 거쳐 나오는 정책 제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를 사무국에서 준비하기 때문이다.²³⁾ 달리 말하자면, 농업회의소 사무국의 지식 및 자료·정보 처리 역량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정책 제안 내용의 구체 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분과위원회에서] 농민들이 학자들처럼 ‘지역순환먹거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가 아니라면 ‘학교급식지 원센터를 빨리 만들고 단순히 예산을 교육청에 갖다주는 구조가 아니라, 다만 일부라 도 현물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로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라는 식으 로,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마운데... 뭐 그냥, ‘학교급식에 매출 좀 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종합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거나 ‘지역순환식품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고 하거나... 사무국에서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하되, 글을 써내고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작업들이나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계 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무국에서 물론 다 만들어야 합니다. 작 년에는 190여 개의 안전에 대해서 자료들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과별로 이러 게 [자료를] 드리고 발제를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님이 주재하시고 회 의를 진행하는 거죠.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 전국적인 현황은 어떠한고, 우리 CP군은 지금 관련하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제하면, 현장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농민들이 정리해 주시는 토론을 하는 거죠. (CP)

²³⁾ CP군 농업회의소의 분과회의 자료 일부분을 <부록 3>에 소개하였다.

▶ 제안·협의(농정협의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농업회의소에서 간추린 정책 제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농정 담당 공무원들과 협의한다. 농업회의소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농정협의회’라고 부른다. 농정협의회는 서면으로 혹은 시장·군수와의 간담회에 서 단순히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농업회의소의 대의원 및 임원 등 여러 명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 공무원 여럿이 모여 회의의 형식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식성을 갖는다. 물론, 현재로서는 지방농정심의회처럼 법률로 보장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온전히 공식적인 절차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모임이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예산 사업에 관한 토론’이어서 공식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다.

농정협의회는 농업회의소에서 거의 1년을 준비하여 모은 지역 농업인들의 정책 제안 중 어떤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고, 어떤 것을 수용하지 않는지가 확인되는 자리이다. 협의해야 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농정협의회를 오랫동안 실시해 온 농업회의소들은 협의회 개최 전에 최종 정책 제안을 행정에 미리 전달한다.²⁴⁾ 그렇게 해서 행정이 쉽게 수용한 제안은 협의회 때에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농업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 농정 담당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청에 6개 과장, 스물 몇 개 팀장님들이 [농정협의회에] 다 오세요. 그러면 서른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농업회의소에서 읍면 지역별로 선출된 이사들, 분과위원장들, 큰 단체의 단체장들 다 모셔서... 대략 60~70명이 농정협의회를 하거든요. 한 과에 20분씩만 하더라도 두 시간이 넘어가 버리고, 또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주거나 받거나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그래서 2019년에는 짧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미리 질문지를 주고 답변도 받아서, [농정협의회에서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 하자고 했지요. 정 미진한 부분만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두 시간 안에 끝난 적도 있었 습니다. (JN)

24) CP군 농업회의소가 농정협의회를 준비하면서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 정책제안서(건의사항)의 일부 내용을 <부록 4>에 소개하였다.

농정협의회는 어떻게 되냐면, 각 분과별로 우선 건의사항을 추려주면 저희[사무국]가 정리해서 행정에 전달하고 답변 자료를 받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 근거해서 농정협의회를 하게 되는데, 구성원은, CP군은 농정 조직이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 18개 담당, 3개 과장, 소장하고 저희 농업회의소에서는 분과위원장들만 모셔서 꼼꼼하게, 가급적이면 답변 자료가 왔으니까 그중에서 [건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만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렇게들 앉아서 매년 3시간, 4시간씩 토론을 하고요. (CP)

농업회의소 대의원 등과 시·군의 농정 담당자들이 진행하는 농정협의회가 항상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식의 협의회를 처음 시도할 때에는 양측 모두에게 생소한 일이어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흐르기도 했다. 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제가 느끼는 거는, 협치하겠다고 하는 과나 계는 그래도 [농정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고민하는데, 아예 형식적으로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되지’라며 판단하고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진짜 협치를 하려는 건지... 행정에서도 협치 조직이라고 만들어졌으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과나 우리 계에 건의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식이죠.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순간만 넘기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전 그렇게 봅니다. 실은 행정의 계장님들은 기간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농업회의소가 정책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아요. (SI)

그 전에는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농업회의소 분과장님들 있고 행정도 앞에 앉아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말이 ‘심문받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죄지었어? 왜 여기 와서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 변명을 해야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이게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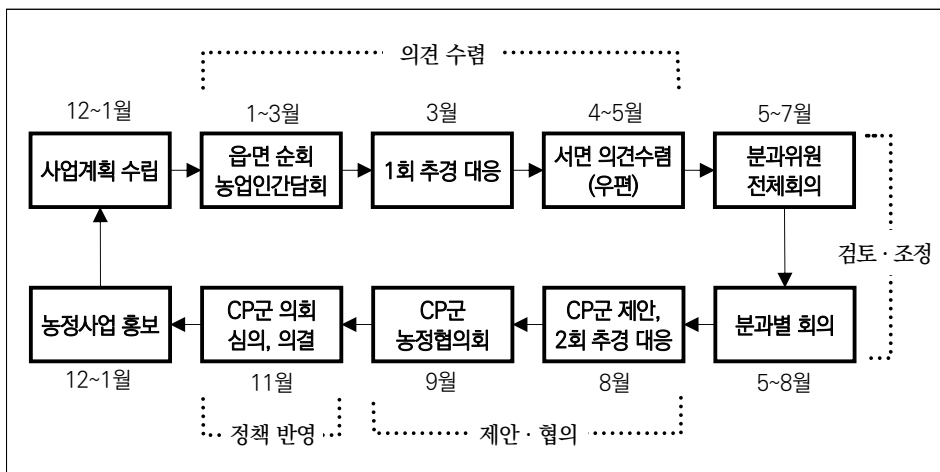
농정협의회라는 형식은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된 의무적인 절차가 아닌 데다가, 지방자치단체 농정 담당 공무원 중에는 농업회의소 측과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농정협의회는 형식적이거나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공식적인 다수의 대면 회의’로서의 농정협의를 거부하는 일도 생긴다. 혹은, 행정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지 못한

채 농정협의회보다는 공식성이 덜한 ‘간담회’나 ‘서면 건의’ 정도의 절차로 갈음하는 곳도 있다.

▶ 종합

이렇게 해서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의사소통의 경로가 완성되는데, 연초의 농한기에 시작해 9월 말이 되기 전에 농정협의회를 통해 정책 제안·협의를 이루어지고, 연말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끝나는 1년 주기를 지닌다. 이는 농업회의소들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던 CP군 농업회의소에서 8년 여의 기간 동안 형성하고 다듬어 온 공론화 절차인데, JN, CG, SJ, SI, YB, CC 등지의 여러 농업회의소에도 전파되었다. 농업회의소를 제도화의 경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공론장의 한 유형이라고 본다면, 이 같은 절차는 한국의 맥락에서 발전한 독특한 ‘모형(model)’으로 역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현(2021: 53)은 CP군에서 형성한 이 절차 주기를 다음 <그림 4-3>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3>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



자료: 김대현(2021: 52-53)의 내용을 재구성.

농정협의회를 염두에 두고 거의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같은 공론화 절차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포괄성’과 ‘공식성’이라는 두 요소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충족하는 형식이다. 형식 면에서 완결성이 가장 높은 만큼, 실제로 이런 절차를 운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의 학습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학습해야 하는가? 농업회의소를 구성하는 농업인들과 지방자치단체 농정 담당 공무원 모두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첫째, 농업인들과 행정 모두 농업회의소의 공론 절차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학습해야 한다. “협력, 타협, 광범위한 정책 선택지(options)에 대한 토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측면에서 모든 체계들이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그런 과정을 조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Moseley, M. et al., 2002: 28).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논의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농업회의소 논의와 맥락이 유사하게 농촌 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파트너십 문제를 논의한 OECD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십이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배치에 근거하거나, 여러 기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활동·업무협조관계·상호 수용된 계획에 근거하여 공식화된 협력의 체계”(OECD, 1990: 18)라고 정의한 바 있다. 농업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법규에 근거한 공식화된 협력 체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 OECD의 정의에 매우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법적 장치가 파트너십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회의소든 지방자치단체든 관련 행위자들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기본적으로는 **파트너십**인데, 파트너십만 인정되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다 듣고 분과위원회 열어서, 올라온 안들을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면 우리도 자르지요. 그런데 가능성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법제화되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정책협의회를 하긴 했는데, 조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관련 부서마다 농업회의소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어요.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과마다 틀려요. 예를 들면 농정국 내에서도 미래농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거버넌스를 잘 알기도 하나까 [농정협의회를] 깊이 있게 하는데, 농촌활력과나 축산과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또 회의 나오라고 불러?”라는 느낌인 거지요. 시어머니 또 한 명 생겼네, 하는 분위기인데... 민관 협력이라는 게 실제로 하기는 어렵지만, 딱 해놓기 시작하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도, 매번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농정협의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은 조금 더 더디게 걸리고,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성과를 내는 데는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저희도 자리 잡는 중이고, 그리고 행정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아직은 지켜보는 중이니까... 차츰차츰 자리 잡겠지요. (SI)

둘째, 농정협의회는 지시, 강요, 청탁 등과 같은 일방적인 언어 행위가 아니라 공공의 관점에서 의견을 모으는 민주주의 토론의 장이라는 점을 농업인과 행정 모두가 학습해야 한다. 읍·면간담회에서부터 농정협의회까지 이르는 의사소통 과정은, 말하자면 한국의 지방농정이라는 맥락에서 토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실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회의소라는 공론장을 통해 의견과 의지가 집약되고, 농정협의회라는 만남을 통해 공론장을 거쳐 나온 의견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심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나

25) 하버마스(2000)는 토의 민주주의의 정치는 제도화된 심의의 장에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이 흘러들어가는 절차의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같은 도식을 따르다면, 농업회의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 농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공적 의견이 흘러 들어가는 절차’에 다름 아니다. “토의정치의 활성화는 집합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시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심의와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공적 의견 사이의 협력과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의사소통 전체의 제도에 달려 있다. …(중략)… 이 주체 없는 의사소통이 의회와 그 심의기구들의 내부와 외부에서 토의의 장을 형성하고, 이 토의의 장 속에서 사회 전체와 관련되고 규제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에 관해 일정 정도 합리적인 의견형성과 의지형성이 일어난다. 공적 의견형성, 제도화된 선거, 입법부의 결정을 관통하는 의사소통의 흐름은 공론장에서 산출된 영향력과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권력이 입법을 통해 행정권력으로 변형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주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의 경계는 존중된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사회는 자율적 공론장의 사회적 기초로서, 경제적 행위체계와 공적 행정 모두로부터 구별된다.”(위르겐 하버마스, 2000: 400-401).

행정 공무원들이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공공의 관점에서 지방농정 과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농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농업회의소들의 경험 속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학습해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가령, 힘으로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토론 태도의 필요성 같은 것을 농업인들도 배워가는 것이다. 또는, 토론의 의제 자체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당면한 이익에만 국한된 범위의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즉 공공성이 더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학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회장님이 분과장님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차피 서면으로 [행정의 입장에 관해] 얘기도 받았으니, 더 추가해야 할 것이나 아니면 이것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너무 따지고 들면서 하지 말자.”라고, 방법을 좀 온화하게 하자, 너무 추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는 화기에애하게 잘한 것 같아요. 처음 할 때는 그런 면이 조금 있었나봐요. (SJ)

우린 이 자료들을 농정협의회에 오시는 분과위원장들께 한 2주 전에 항상 드려서, 2주 후에 회의할 건데 자료들을 좀 보시고 답변이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농정협의회 때 말씀하시자, 라고 말을 하고 농정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농정협의회가 진짜 불꽃이 튀었죠. 그런데 이제 서류를 먼저 전달해드리고 받고, 최종적으로 거의 굳히는 작업만 농정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농정협의회에서 큰 목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형태로 발전했죠. (CP)

논의가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론화가 안 되면 내 주머니에다가 넣을 수 있지만, 공론화가 되면 내 주머니에 못 넣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누군가 ‘이 예산을 내가 가져가야 하는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져올 수 있었지만, 딱 공론화시키면 그 예산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가져가니깐...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공익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 (중략) ... 예전에는 유지들이 몇 마디 말 잘하고,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가 통하고... 그동안 농정이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공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중략) ... 의제들이, 농업회의소가 생기니까 점점 공익형으로 바뀌더라고, 공익적으로. [농업인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보다 공익적인 요구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뒤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 나가더라고. 왜냐하면, 위
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공익적인 이야기들을,
공공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I)

셋째, 농업회의소라는 지방농정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효능을 실감
할 수 있는 장치와 활동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법을 농업회의소 사무국 등은 꾸준히
학습하고 실행해야 한다. 경제적 편익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실행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토론, 회의, 협의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만으로 구성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언어적 상호작
용밖에는 없다.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지방농정에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
다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환류(feedback)하는 일은 참여의 동기를 북
돋운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읍·면간담회를] 주관하고, 저희가 직접 우편을
보내고, 행정의 협조를 받아서 농민들을 모시고 농한기에 반드시 현장에 찾아가서 목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존에 농정에서 소외되었던 진짜 농민들, 농민단체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십니다. 여기 지금 [읍·면간담회]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진짜 머리 희끗희
끗한 노인들이 엄청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
(중략)... 그리고 전년도에 주신, 그 지역에서 주신 의견들 위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피드백해 드리고, 회원 모집도 병행하고, 의견수렴하는 시간 말씀 끝나실 때까지 듣
고... 이걸 8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못
했어요. 농민들이 전화가 정말 많이 오셨어요. ... (중략)... 이렇게 해서 답변 자료를 다
만듭니다. 행정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주신 이야기들이 농정협의회에서 어떤 답변을 받
았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반드시 피드백 해드리는 것까지가 저희의 업무입니
다. 그래서 행정과 농민들의 거리를 계속 좁혀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농민들의 오해와
행정의 오해를 계속해서 해소해주는 역할들을, 이 자료로 피드백 해드리는 것까지 해
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CP)

제가 느끼는 것은, 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읍·면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책자에 넣어서, 당신들이 건의했던 사항들을 분과위원회를
통해 행정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나, 어떻게 반영되었고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이
렇다라고 30~40페이지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 드리는 것 자체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내 이야기를 꼭 들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야기가 헛되이 내쳐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할까요? (CP)

2.3. 서면 또는 간담회를 통한 건의

어느 정도 공식화된 농정협의회가 아니라, 공식성이 덜한 간담회나 서면으로 농업회의소측이 지방농정과 관련된 제안을 시·군에 제시하는 의사소통 경로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는 읍·면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수행했는데, 행정과는 공식적인 농정협의회가 아니라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통보하거나 약식 간담회를 여는 경우다. 행정의 소극적 반응 때문에 또는 농업회의소가 공식화된 농정협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 및 간담회 형식을 취하는 듯하다.

전달만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반영하는... 협치란 말의 뜻이 '같이 다스린다'는 건데. 저희가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논쟁해서 몇 개 정도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 주면, 행정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 (중략)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견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건 건의만 하지, 뭐. 참, 그게 반영하거나, 그런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 중 진짜 괜찮은 의견도 많지만, 약간 민원성 그런 의견도 많아서, 하다 보니 의욕이 떨어진 건 있죠. (CG)

둘째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이 지역의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읍·면간담회 같은 모임은 생략되고, 농업회의소 분과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작성해 서면이나 간담회 형식으로 행정에 전달하는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근년에 설립되어, CP군 같은 곳에서 정립해 온 아주 공식화되고 다수의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할 역량이 안 되거나,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에서 택한 방법이다. 가령, YD군 농업회의소는 설립 첫해인 2020년에 공론화 절차를 확립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수 인원이 모이는 읍·면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업회의소와 군의 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엔, 단지 우편으로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문서로만... (YD)

올해[2021년]는 급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냥 형식을 안 갖추고, 있는 상황을, [정책 제안] 접수받은 상황을 그대로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반영하겠습니다'고... 뭐 이렇게 답변도 받은 상황입니다. (DY)

셋째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여 간담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특정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담당자와 농업회의소의 인사들이 모여서 의논하려고 간담회를 열기도 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의견 수렴하고 싶다고 하면, 공무원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의견 나누는 그런 식으로. ...(중략)... 당장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그냥,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아니면, 보통은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안에서[분과위원회 안에서] 논의는 되었으니까 분과위원장하고 부회장님과 제개[사무국장]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면담을 하는 거죠. (CG)

2.4.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농업회의소가 설립됨으로써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이나 부군수 등과 만나 의견을 전달할 기회도 생겨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농업인단체장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회의소가 없는 시·군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 간담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농업회의소가 지양하려는 지방농정에서 '과두제적 양상'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농업회의소가 이런 간담회를 활용한다. 특히, 농정 담당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공무원과의 교섭에서 관철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에 관해서는 일종의 '지름길'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활용하기도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산업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농업직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은 농정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단 시장님과 협의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그런 것들도 안건으로 정리해서 시장님과 정책간담회를 했죠. 시장님과 [논의]해야 할 성질이 굵직굵직한 것은 시장님과 1년에 한 번은 정책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중략)... 오히려 농정협의회보다는 시장 간담회가 더 결정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조례는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은 시장님이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다 잘렸다가, 올해는 [시장님이 지시해서] 다시 예산 썼거든요. 시장 간담회가 더 의미 있는 것 같긴 한데. (SI)

아까 얘기 드렸던 박스 보조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저[사무국장]에게 질문하길래... 똑같은 농산물인데 표고버섯은 임산물이라면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해서, 그건 어쨌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거죠. ...(중략)...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중략)...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기보다는 회의를 통해서 했고요. 우리 회장님이 부군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SY)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는 농업회의소 회장단만이 참여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주요 농업인단체장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한다. 농업회의소 회원이든 아니든, 주요 농업인단체를 배제하고 농업회의소측 인사들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군수 간담회 때는] 저희 회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주요 농민단체장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CP)

저희는 단체 대의원과 이사, 이렇게 주요 직책을 주고 단체들도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주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단체 회의를 꼭 해요. 예를 들면, 시장간담회 전이라든지... 이럴 땐 단체장들이 의견낼 수 있도록 하는데. (SI)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힘입어 간담회를 통해 어떤 정책 제안을 관철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도, 그런 방식은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곳도 있다. 그 부정적인 결과의 예를 들자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고 수용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중에는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이는 간담회를 추진하되, 중대한 지방농정 현안에 관한 논의는 농정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 정도만 수행하도록 조절하는 곳도 있다.

원래 그런 것들을 하면, 농정협의회에서 엮어내는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지요. 예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군수님을 모신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행정의 답변이 과하게 잘 나와요. 그 당시에 저희 농업회의소 회장님의 판단이 ‘이것은[군수 간담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중략)…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군수님 뵙는 자리는, 군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좋은 사업이 유치됐거나, 아니면 연말에 한 번쯤 농민단체장들께 연락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식사 한끼 합시다’라는 정도로 모이는 게 전부입니다. (CP)

2.5. 공개 토론회

농업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가, 혹은 농업회의소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공개된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특정 사안을 논의하는 일을, 대부분의 농업회의소들은 적어도 매년 1~2회 진행한다. 이 경우, 논의되는 ‘특정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의제들이다. 지방의회가 토론회 또는 간담회에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등의 중요 사안인 경우다.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농업회의소가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뜻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로부터 제안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푸드플랜 사업에 우리 농업회의소도 참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농업회의소 대표자 한두 명이 들어가서... 물론 중간에 회의도 하고 의견도 모이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농업회의소 회원들, 임원들이 모여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급식센터 문제에 농업회의소가 개입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풀린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관계자 전체가 모여서 의논하자’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농정과에서 1차 토론회를 한다면서 6월 말에 학교급식을 다루는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관계된 전체 회의를, 즉 학부모회, 조리사 대표 등 관계자 전체가 다 모이는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SY)

저희는 이제야 조례 중 하나로 “주요 작물 최저가격 안정에 관한 조례”를 굉장히 뒤늦게, 전남 권역에서도 다른 곳에선 다 하고 있는데, 뒤늦게 지난번에 그것을 군과 협의했어요. 그것도 현안 안전이긴 한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그나마 늦게라도 해보려고 했지요. 군 의원 중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행정에서 발의하겠다고 하면서 농업회의소와 같이 토론회를 하자고 왔더라구요. (YD)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토론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 읍·면간담회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을 모아 농정협의회까지 개최하는 공론화 절차를 형성한 CP군에서는, 지역의 농정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군의회와 함께 개최하기도 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공론장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업회의소의 지향에 정확히 부합하는 활동이다.

가급적 이런 대토론회 형식의 토론회를 2년에 한 번씩은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 형식은 아니더라도 세미나 형식이라도 가급적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2017년도의 대토론회 사진인데, 이 이후 2019년에 저희 사업계획상으로는 저희가 한 번 더 토론회를 해야 하는 주기였는데, 의회에서 의회의 공약사항으로 토론회를, 농업토론회를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전달해왔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셔라. 의회가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농업토론회를 해주겠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토론회 했던 자료를 받아가셔서, 거기에 준해서 토론회를 하셨죠. 저희는 그때 주제 발표 역할을 맡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안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지금 CP군의 농업 현안은 어떻게, 핵심적인 현안은 무엇이며, 미래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각 주체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농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든다. 뭐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회의소의 큰 역할 중 하나가 토론회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CP)

농업회의소가 주도해서 개최하는 공개 토론회 중 특별한 것은 지방선거 때에 준비하는 토론회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들에게 지역의

농정과 관련된 공약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한다. 어느 정당의 후보자인지와 관계없이, 지역의 농업인들이 의견을 모은 정책 제안들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방식의 토론회다. 이 공약 제안 토론회를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읍·면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정책 제안들을 농업회의소에서 정리한다. 여기에 지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덧붙이기도 한다. 이 같은 공약 제안 토론회를 조직하는 이유는, 시·군 안에서도 타 부문과 비교하여 재정 투입 면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업 부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책 요구를 선명하게 표명하려는 데 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목표에 8대 과제, 18개 세부사업 하는 식으로 농민들의 의견에 기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자료 플러스 농민들께서 우리 CP군 농업의 각 분야에 대해, 축산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수요조사서를 30개 이상의 문항으로 만들어 설문 조사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보기만 해도 후보자들이 ‘아, CP군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분석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전달했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공약제안서를 사실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두 개[수요조사서와 공약제안서]를 묶어 가지고, 군수 후보들을 찾아 뵙고 도의원, 군의원 후보님들에게는 똑같은 날 등기 발송을 하고 전화로 확인을 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었죠. …(중략)… 그래도 최소한 CP군에서 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면, 우리 농민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주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농업 분야의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말하게 하고 그것을 농민들이 듣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CP)

3. 소결: 공론장 기능 활성화의 조건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즉 지위나 업무 절차에 대한 법률적 보장 없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농업회의소들은 다양한 유형의 공론화 절차를 개발해왔다. 크게 보아 5개 유형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16개 유형의 절차가 생겨났다. 이는 농업회의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기록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경로의 개발과 확산은, 한국의 맥락에서 독특한 제도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런 공론화는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낳는가? 그 양적 지표로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정책 제안이 얼마나 많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정책 사업이나 조례·지침 등에 반영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터이다. 이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전국 수준의 자료는 없다. 다만, 공론장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한 사례라고 여겨지는 CP군 농업회의소의 정책 반영 실적을 기록한 자료가 믿을 만하다. CP군 농업회의소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88건의 의견을 농업인으로부터 수렴해 360건의 제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했다. 그중 125건의 제안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수용, 반영되었다.

〈표 4-2〉 CP군 농업회의소의 공론화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실적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의견 수렴 등 (회/년)	읍·면간담회	16	16	8	8	8	8	8	8	-	80
	분과위원회	6	12	12	12	7	7	7	7	7	77
	정책협의회	1	1	1	1	1	1	1	1	1	9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건/년)	의견수렴	28	69	120	65	85	92	190	152	87	888
	제안건 수	18	23	43	22	43	51	68	51	41	360
	반영건 수	13	8	10	5	18	14	18	22	17	125

자료: 김대현(202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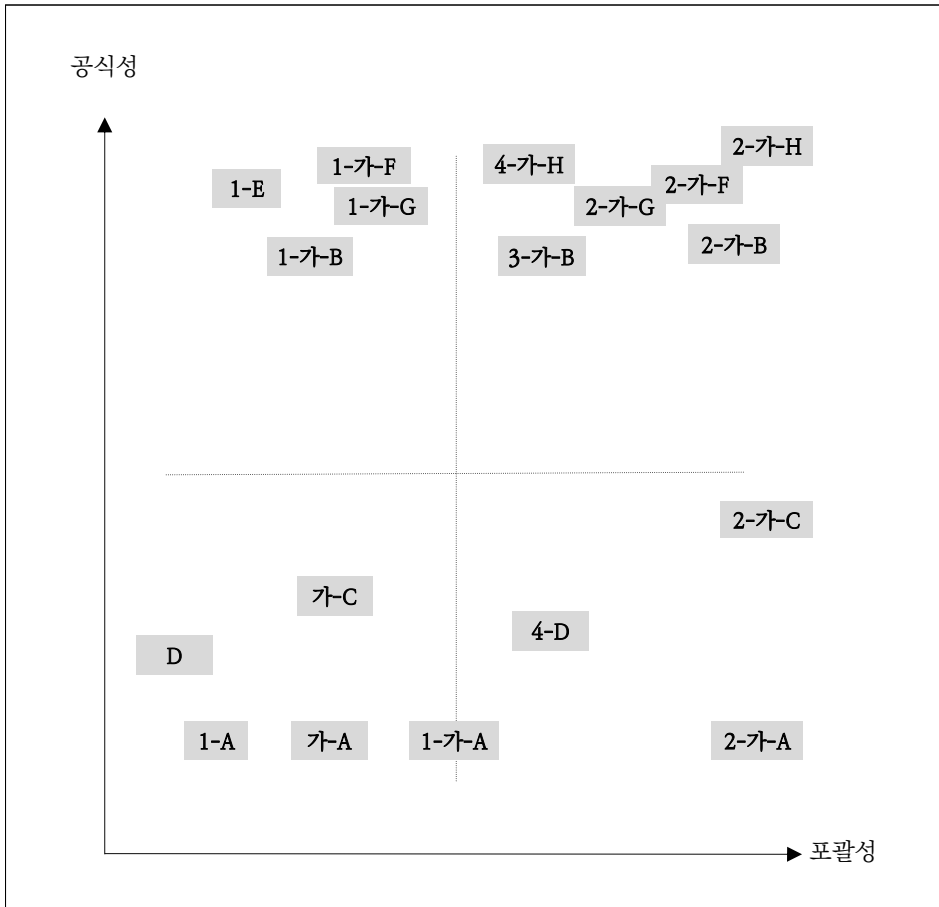
앞서 확인한 16개 유형의 공론화 절차가 모두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포괄성과 공식성이라는 두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 유형마다 특징이 다르다.

의사소통의 밀도가 가장 높고, 폭이 가장 넓은 공론화 절차는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2-가-B)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거꾸로 가장 단순하며 공론장 성격을 가장 약하게 지니는 절차는 ‘농정부서에 대한 수시 구두 및 서면 건의’(1-A) 유형이다.

농업회의소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여러 종류의 공론화 절차를 형성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설립·운영한 지 오래된 곳일수록 더 다양하게 공론화 절차를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CP군(9개 유형)이나 JN시(8개 유형)의 농업회의소에 비해 근년에 설립된 YB군(5개)이나 YD군(3개)의 농업회의소에서는 공론화 절차 유형이 덜 다양하다.

물론, 설립 연도와 공론화 절차의 다양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가령, HB군 농업회의소의 경우 설립 연도가 비교적 오래된 곳임에도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SG군 농업회의소나 SA시 농업회의소는 오래전에 설립된 곳은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다른 지역의 농업회의소에 비해 공론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서 공론화 절차를 다양하게 형성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데, 그런 발전을 가로막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4-4〉 농업회의소 공론화 절차들의 성격



자료: 저자 작성.

가령,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절차를 운영하다가 그만둔 농업회의소 중에서 읍·면간담회와 분과위원회까지는 진행되지만 농정협의회를 열지 못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비공개 간담회나 서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끝나는 곳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가 공론화 절차 형성 및 운영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들의 정책 제안을 풍부하게 수렴해도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과 관이 협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여하에 따라 농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법률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인의 정책 제안을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기획 과정에 반영하려는 나름의 노력도 일부 시도된다. YB군의 경우, 현재 공식적으로 지방농정심의 기능을 위임받은 지방 농정심의회에 농업회의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농업회의소를 경유한 정책 건의를 지방 농정심의회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그리고 농정심의회 위원으로 농업회의소 주요 인사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례다(김정섭 외, 2020: 41).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농정심의회 위원으로 농업회의소의 주요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 4-1〉 “YB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농업회의소 관련 조항

제9조(민관합치 농정 확대) 군수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YB군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협치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중략)...

제11조(정책심의회 기능)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략)...

3. YB군 농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중략)...

제12조(정책심의회 구성)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의소 회장 및 분과위원장 9인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1년 11월 1일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농업회의소가 이 같은 공식성을 지니는 공론화 절차 운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농업회의소의 대의 기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무 수준에서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미흡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농업회의소 임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비공식 간담회 정도로 충분하다고 믿거나(즉, 공론화 절차의 공식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아예 ‘대의 기능’이 농업회의소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업회의소의 주된 역할은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지방농정 과정에 집약해 반영하는 의사소통 기능, 즉 공론장 기능(또는 대의 기능)이다. 현재로서는 법률로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농업회의소들이 개발해 실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는 곳들도 적지 않다. 농업회의소의 공론장 기능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회의소 모두 이런 절차의 필요성과 그 운영의 세부에 관해 학습해야 한다. 특히, 새롭게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지역에서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런 학습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제5장

공론장 기능 외의 사업 및 활동



5

공론장 기능 외의 사업 및 활동

1. 사업의 분류와 개요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업회의소의 근본적인 역할은 ‘공론장 기능’인데, 그러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사업의 실적보다는, 농업회의소라는 기구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어떤 사업을 자발적으로 계획했거나 실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가령, HB군 농업회의소는 HB군이 조성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사실상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이며 일정한 영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역 내 다른 조직이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공공성을 표방하는 농업회의소’가 나서서 선점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지역에서 다수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이므로 농업인의 자조 단체라는 성격을 지니는 농업회의소가

수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 이러저러한 개별 사업을 두고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판단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판단 기준으로 농업회의소의 사업은 ‘지역 농업인들의 공적 대의기구로서 농업회의소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농업회의소의 여러 사업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 전체를 두고 ①공익사업, ②경제사업, ③역량강화사업, ④조직관리사업, ⑤홍보사업, ⑥농업인 의견 수렴 활동, ⑦정책 제안 활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에서 ‘⑥농업인 의견 수렴 활동’과 ‘⑦정책 제안 활동’은 4장에서 다룬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서는 그 둘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업 및 활동 실태를 살펴본다.²⁶⁾

이 연구에서 ‘공익사업’이란 농업회의소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나 위탁을 받아 공공 정책사업을 대행하거나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는 자체 재원으로 지역 농업인 다수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활동을 특정해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사업’이란 농업회의소가 그 실행과정에서 일정한(수입이 아니라) 수익을 얻는 사업을 뜻한다. 농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혹은 위탁 사업도, 사업 실행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수입이 남는다면 이 범주에 속한다. 농업회의소에 따라서는 운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다. ‘역량강화사업’이란 농업회의소 회원 및 조직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조사, 교육, 학습, 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조직관리사업’이란 회원제로 운영되는 농업회의소 조직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원 모집, 농업회의소 홍보, 회비 관리, 대외 협력 등의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홍보사업’이란

²⁶⁾ ‘사업’과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어느 농업회의소의 총회에서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에 나오듯이 (자체 재원이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활동 내용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분석하되, ‘사업’이라는 용어를 쓴다.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 관련 정보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알리려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들이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농업회의소 사업 분류 및 실행 현황

구분	CP (12)	JN (12)	HB (12)	CG (12)	SY (16)	JD (17)	SJ (17)	SA (18)	JW (18)	SG (18)	SI (19)	YB (20)	YD (20)	JG (21)	CC (21)	DY (21)
공익사업																
* 정부·지자체 정책사업 수탁	○*	●*		●*	●		●*		●*		●*	●*			●*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지원	○			●												
* 지역 내 민간단체 사업 수탁				●												
* 자체공익사업(교육 등)		●		●	●	●	○		●		●					○
* 조사·연구	●		●	●			○									
경제사업																
* 자체 경제사업							●			○						
* 지자체 정책사업 수탁			●													
역량강화사업																
* 임원, 실무자 교육	●	●		●	●	●		●		○	●	●	●	●	●	●
* 회원 교육	●			●	●	●		●	●	○	●	●	●	●	○	●
조직관리사업																
* 지역 내 기관, 단체와의 교류	●	●	●	●	●	●	●		●		●				●	
* 지역 외 기관, 단체와의 교류	●	●		●	●		●		●		●				●	
* 농업회의소 지역 내 홍보	●	●		●	●			●	●	●		●	●		●	●
* 소식지, 리플렛, 홈페이지	●		●	●		○	●			○		●	●		●	●
홍보사업																
* 농정지원사업 안내서 발간	●		●	○					●		●	●			○	
* 농산물가격 관측정보 배포	●								●							
* 영농 관련 교육자료 배포		●		○			●	●	●		●		●			

주: 1) 지역명 하단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지역의 농업회의소 설립 연도.

2) ●: 시행함, ○: 계획했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음(2021년 10월 1일 기준).

3) *: 농정협의회 개최 경험이 있는 곳.

자료: 면담 조사, 총회자료집 등 농업회의소들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주요 문서들.

2.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 유형별 특징

2.1. 공익사업

앞 절에서 농촌 지역의 농업인이나 주민 다수의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잠정 정의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이나 조직관리사업에 비해 그것을 수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역량강화사업이나 조직관리사업은 농업회의소 기구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익사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익사업은 설립·운영의 경험이 오랜 농업회의소에서 더 활발하게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업회의소의 기본 역할인 공론장 기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어야, 이런 종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을 계획했거나 추진 중인 11개 농업회의소 중 SY군, JD시, DY군 농업회의소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모두 앞의 4장에서 언급한 가장 고도화된 공론화 절차인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 과정을 운영하는 곳들이다(CP, JN, CG, SJ, JW, SI, YB, CC).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재원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공익사업’들을 정부·지자체 수탁 사업, 지역 내 민간단체 수탁 사업,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 농업회의소 자체 공익사업, 조사·연구 사업으로 세분화하였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탁 사업

정부·지자체 수탁 사업을 계획했거나 시행하는 9개 농업회의소 중 7곳에서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²⁷⁾을 계획했거나 시행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²⁷⁾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설치하면 상근하는 상담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를 연간 8,000만 원 보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등 농업 고용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전에 없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주로 일용 노동자를 알선하는 일종의 ‘공공 고용 서비스 단위’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근년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농업 고용 노동력 문제는 농업회의소라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논의되었고, 마침 정부의 관련된 정책 지원 사업이 추진되므로 농업회의소가 직접 수탁받아 운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자체는 농업회의소가 생기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 일손이 없으니까요. …(중략)… 그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농업회의소가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농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어떨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농업회의소 관계자들, 사무국장 전국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회의 때마다 농업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전국 단위에서 교육시켜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게 된 동기도, 여기가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다들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SY)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외에도, 소수이지만 공익직불제 모니터링 (CG, JW, SI)이나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CG) 같은 다수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직결된 주요 정부 정책 사업을 점검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종류의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농업인들과의 접촉면이 넓고 접촉 밀도가 행정보다 더 높은 농업회의소가 이처럼 주요 농업정책(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받아 관여함으로써 시행 과정상의 효율을 높이거나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LS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막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그중 국고가 70%, 지방비가 30%를 차지한다. 2021년 현재 전국에 130여 개소가 운영되는데(한 시·군에서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꽤 있다), 대부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으로 농업회의소들이 운영하는 곳이 일부 있으며, 드물게는 지역의 농업인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면, 작목반 찾아다니면서 무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끼어들어 교육 한 번 하는 게 전부이거든요. 횡수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을마다 우리가 들어가서 교육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행정과 농업회의소가 함께 준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강사들을 발굴하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마을을 다 다니게 하고 의견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67개 마을 중 230개 마을에 들어갔어요. 농업회의소에서는 면마다 두 명씩 회원을 발탁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게 PLS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시행될 건데 농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의견 수렴도 하고 대책도 제안하고, 또 전달할 것은 전달하면서, 쪽모아진 내용을 우리가 다시 분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하고, 농식품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데려와서는 ‘시행하겠습니다’는 식으로 강연하면, 분명히 불평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농업회의소에서는 이 불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공론화해서 보완하게끔 하는 거죠. ...(중략)... 행정에서 그런 자리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품관원 직원 한 명 불러서 뭐 갈등 건 수가 몇 건이 있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성과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피해가 없고 갈등이 많지는 않다. 잘되고 있다.”라면서 넘어갈 것이란 말이지요. ...(중략)...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불만 많고 갈등 많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중간평가 한 번 더 하고, 또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CG)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조력기구) 지원 사업

CP군이나 CG군처럼 농업회의소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운영 경험이 오랜 곳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 같은 종류의 조력기구²⁸⁾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역의 이러저러한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조사업 시행에 조력할 민간 조력기구를 조직해야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²⁸⁾ 흔히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명칭을 지닌 것들이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다. 그 용어의 기원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집행되는 경로의 중간에서 일정한 조력 활동을 하는 조직이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를 싸잡아서 중간지원조직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농업회의소’를 중간지원조직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 ‘조력기구’라고 쓰겠다.

일을 위탁할 마땅한 단체나 조직이 눈에 띄지 않을 때 농업회의소에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참여하여 조력기구를 설립하거나(CG), 조력기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아예 농업회의소가 맡아 수행하면서 안정화시킬 것을 요청받기도 한다(CP).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업은 상당한 부담을 지는 일이며, 농업회의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론화 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CP군이 내년에 농촌협약사업에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 내용 중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농업회의소가 맡기로는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완해야 할 텐데, 사업 [계획을] 보니까 ‘혁’ 소리가 날 정도인 거예요.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사업 내용이 농업회의소랑 점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업계획에 집어 넣고 본 것도 있어요. …(중략)… [행정의] 담당자 분들에게 ‘이거 저랑 조금 다시 이야기합시다. 사업보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농업회의소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 두었습니다. …(중략)… 행정의 담당자는 당장 농업회의소한테 내년에, 구두로 저한테만, 시군역량강화사업부터 일단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이 4억 원 정도인데, 사람을 두 명 정도 채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안을 구두로 하셨지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면, 그래서 농업회의소 실무가 현저히 흔들릴 정도면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제게 겸직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뭔가 기존에 [의지할] 다른 조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P군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없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서] 그림을, 농촌협약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을 법한 중간지원조직 6개를 통합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그리고 그 사무국 역할을 농업회의소가 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무슨 관광협회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 중 농업회의소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략)… 지금 이 계획으로는 농업회의소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CP)

▶ 지역 내 민간단체 사업 수탁

아주 드물지만, 지역 내 민간단체로부터 교육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한 사례도 있다. CG군 농업회의소는 2020년에 지역 내 축협으로부터 의뢰받아 축협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협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규모는 작은 것이었지만, 로컬푸드 매장 운영 같은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농업회의소가 주도할 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제

기를 우회하면서도, 지역 내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계기였다.

▶ 자체 공익사업

특정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시행하지 않고, 농업회의소에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서 지역의 농업인 다수를 대상으로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들이 여럿이다.

대부분 교육사업인데, 인문학 강좌나 드론을 활용한 방제기술 교육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농업회의소 입장에서는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를 알리면서 이익을 주는 활동이지만, 교육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을 주 업무로 삼는 직능기관과의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잘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사업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자체 공익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가령, SI시 농업회의소는 창립 첫해인 2019년에 읍·면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파 가격 불안정 사태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파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다. 이런 종류의 캠페인은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제도로서 작동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자조단체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양파가격이 팍팍 폭락하면서, 양파값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양파값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올해 [가격이] 떨어졌어도, 올해 가격 지지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도 안타까워서, 돈이 있었으면 더 크게 했을 텐데, ‘양파 무료 나눔행사’를 했어요. 옛날 농민단체 같으면 길에다 버리던지 불지르던지, 그런 식으로 항의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은 양파값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양파값이 비싼지 낮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인물 만들고, 왜 양파값이 떨어졌는지를 알리는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즙 대여섯 개 넣고 유인물도 넣어서 나눠드렸어요. 소문이 좋았습니다. (SI)

특기할 만한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농업회의소가 새로운 농정

사업 아이디어를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공모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기획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 5-1〉 CG군 농업회의소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공개발표회 소식(2020년 7월 2일)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한 ‘2020년도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공개발표회가, 1일 CG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CG군 농업회의소는 이날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공개발표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발표에서는 CG군이 주최하고 CG군 농업회의소가 주관하는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된 사업 제안자가 직접 제안 배경과 예산 등을 설명했다. 또, 이 설명을 들은 20여 명의 전문가와 농민들이 심사표에 점수를 매겨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했다.

1차 심사는 지난 5월 29일, CG군 농업회의소 내부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면을 통해 진행했으며, 그중 ‘농업에 대한 생태, 민주주의 가치관 세우기’, ‘당뇨 예방 효과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CG군 소수정란 이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당나귀를 통한 체험활동과 식용 사업’ 등 4개 공모사업이 공개발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CG군 농업회의소 K사무국장은 “서류에만 국한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기획한 분이 발표해 보고 농민들이 직접 선정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개 발표회를 기획했다.”라고 설명하며 “1차 서류 심사 점수와 공개발표 심사 점수를 더해 당선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에 따라 한 팀이 될 수도, 두 팀 이상이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사)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CG군연합회장 C씨는 “제가 많이 배워 가는 것 같고, 이런(발표회)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다”라면서 “(지속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내용, 알찬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CG군에서 추진하며 공무원이 평가하고 사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졌었는데, 올해부터는 CG군 농업회의소가 공모 신청 접수부터 선정까지 모두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사업 홍보와 모집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공개발표’라는 시도도 할 수 있게 됐다. CG군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더 많은 ‘주민 제안’ 정책이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시설을 짓는데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농정 공모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이 한 개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내용은 좋지만 예산 지출상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다듬어 제안하는 것 등 우리 안의 숙제를 안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발표에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도 괜찮은 정책은 보완하고 다듬어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제안 공모사업’에 CG군 내 한 해 농업예산 1,000억 중 1%라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J면 WB마을 이장 L씨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면사무소에서 알려줬는데 주민들에게 동기부여가 안되어 신청이 안됐었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칭찬을 해 주고 싶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뒷받침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료: CG군 농업회의소 홈페이지(2020년 11월 20일 검색), 김정섭 외(2020: 54)에서 재인용.

▶ 조사·연구사업²⁹⁾

농업회의소의 조사·연구 활동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정책 요구를 식별하는 조사활동이다. 앞에서 언급한 CG군의 PLS 교육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나, 지방선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농정 관련 토론회 같은 행사를 계기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형식으로 정책 수요를 조사한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토론회를 하나 하더라도, [지방선거 때에] 공약 제안을 하나 하더라도, 기존 관행처럼 단체장들이 앉아서 각자 공약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부터 기본적인 것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가령, 공약 제안서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매년 8개 읍·면을 돌면서 순회간담회를, 농민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에서 이러저러한 토론회를 6개월 뒤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공약 제안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설문 조사를 합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입각해서 공약 제안서 초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회의소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뺍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증된, 진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공약을 제안하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CP)

그러니까 정책 설문 조사도 같이 하는데요. 농업회의소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데 관철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기록해 두었다가, 농민들에게 ‘이 사업들 중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상위 3개를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합니다. (CP)

두 번째 종류의 조사는 농업회의소 본연의 기능인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토론을 위해 정책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종류의 활동이다. 가령, 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조사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조사하는 작업이다. 이런 종류의 조사 작업은 농업회의소 내부의 상근 직원이 담당한다. 이 같은 조사 자료는 농정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지방자치

²⁹⁾ 이 부분의 서술은 김정섭 외(2020: 48-52)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단체 행정 부문에 정책을 제안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참고 5-2>.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제안들을 쭉욱 듣다 보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조례안을,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조사하고, 조례안을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제안을 했고요. 크게 보면 5~6건의 조례가 직접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그 첫 사례는 ‘농축산업가격안정기금조례’, 이게 흔히들 말하는 최저가격보장 조례거든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조례이고, 국가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조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설득과 행정 설득을 농업회의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이 조례는 큰 소득을 보장해 주는 조례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했을 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조례라는 것을 인식하자’고 설득했습니다. (CP)

〈참고 5-2〉 “CP군 농업회의소 2019년 2차 농촌발전분과 회의자료 중 사례분석 자료”

2. 주요 내용(타 지자체 농민수당(안))

구분	내용	비고
지급대상	-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백만 원 이상인 사람, 은퇴한 농업인, 경영체를 등록하였지만 실제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법인종사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연 14~120만 원	
지급방법	지역상품권(전액 / 또는 상품권 50%, 현금 50%)	

3. 국내 동향

가. 농업인수당 도입 확정·검토 지역(전남도 등 60여 지자체)

지역명	지원금액	지급연도	비고
전남도	연 60만 원	- 2020년 지급 계획 - 도 40%, 시·군 60%	검토 중
전북도	연 60만 원	- 2020년 지급 계획 - 도 40%, 시·군 60%	

지역명		지원금액	지급연도	비고
경기	여주시	연 60만 원	2020년 지급	확정
	안성시	연 50~60만 원	2020년 지급	
경북	청송군	연 50만 원	2020년 지급	
	봉화군	연 50만 원	2020년 지급 - 2021년 이후 확대	
전남	강진군	연 70만 원	2018년 지급	
	해남군	연 60만 원	2019년 지급	
	장흥군	연 60만 원	2019년 지급	
	함평군	연 60만 원	2019년 지급	
	화순군	월 10만 원 이내	2020년 지급	
	광양시	연 60만 원	2020년 지급	
전북	고창군	연 60만 원	2020년 지급	
충남	부여군	연 14만 원	2019년 지급 - 2021년 이후 확대	

나. 강원도 농업인수당 도입 검토 지역(2019년 8월 현재)

지역명	추진경과
강원도	- 2019. 2. 20, 강원도-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강원도 농민수당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9. 8. 9, 강원도-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2020년도 농업농촌 정책협약' 체결(농민수당 도입 등 포함)
홍천군	- 농단협-군수 면담 진행. 연내 도입을 목표로 서명 운동, 토론회 등 추진 예정
춘천시	- 2019. 2. 28, 농민수당 토론회 진행. 농단협 차원 추진위 구성
철원군	- 농단협 차원에서 농민수당 논의 중
원주시	- 2019. 3. 20, 농민수당 관련 농단협 대표자 설명회 개최. 농민단체 차원 추진위 구성
정선군	- 농어업회의소, 농단협 중심으로 농민수당 추진활동 전개

자료: CP군 농업회의소 내부 자료에서 발췌.

세 번째 형태의 조사 활동은 지역농업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CG군). 이런 성격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담당 부서가 해야 할 일이지만, 더러는 자료 생산이 중단되거나 누락되기도 한다.

〈참고 5-3〉 최근 6년 간의 CG군 과수재배 증감추이 자료 조사(2017년 3월 29일)

최근 5년 간의 CG군 과수재배 증감추이 자료를 요청하니, 2016년 기준 자료가 없어서 올해 초 기준의 자료를 별도로 조사하여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CG군 포도는 확실히 줄어든 것이 눈에 띄니다(면적 23%, 생산량 11% 가량). 사과와 작년에 거의 면적 증감률이 없고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언젠가 CG군 ##면의 사과 농사꾼 U회원은 예전처럼 다시 배추나 고추를 심어버릴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어제는 CG읍에 사는 사과농사 짓는 회원이 사과나무 베어내고 거기다가 포도를 심을까 하던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후 5년 뒤 CG군의 사과와 포도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 가지가 예측됩니다. 오늘 JJ시에서는 농민들이 하우스 고추밭을 갈아엎고 정부와 ○○○도의 무책임한 농정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밭은 계속 돌고 돕니다. 무얼 심든 간에 농민들은 놀리지 않습니다. 농촌에 농지에 사람을 심지 못해서 그제 한스러울 뿐입니다.

최근 6년간 CG군 과수 재배 증감 추이

단위: ha, 톤

품목명		2011년 (A)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B)	증감율 (B/A-1)	2017. 1월
합계	재배면적	1,782.3	1,683.9	1,683.2	1,690.3	1,694.6	-0.049	
	생산량	31,153	26,875	36,957.6	36,724.8	42,007.6	0.348	
사과	재배면적	1,508.7	1,428.3	1,428.0	1,440.3	1,452.6	-0.037	1,452
	생산량	27,658	23,900	33,059	33,906	38,549	0.394	37,746
포도	재배면적	231.1	228.2	230.0	228.0	225.4	-0.025	175.8
	생산량	2,934.0	2,648.0	3,572.0	2,515.6	3,241.1	0.105	3,689
복숭아	재배면적	308.	18.7	17.2	16.8	12.3	-0.601	
	생산량	368.0	210.0	208.6	250.5	167.1	-0.546	
배	재배면적	11.7	8.7	8.0	5.2	4.3	-0.632	
	생산량	193.0	117.0	118.0	52.7	50.4	-0.739	

자료: CG군 농업회외소 홈페이지(2020년 11월 20일 검색).

면담 조사에 응한 농업회의소 중에 조사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CP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장래에 조사사업이 농업회의소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농업회의소의 근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해 농민들의 의견을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설득 논리의 근거를 만드는 수단으로서 조사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 관련 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선결 과제는 전문인력 확보다.

우리 농업회의소에 정책실장은 [현재] 없는 구조이지만 정책실장이라든가 사무국장 같은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 이게 초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꼭 농업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국가의 농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정과 우리 지역의 농정을 다 큰 줄기로 꿰고 있고, 세부 사업도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좋고. 국가의 농정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달하고 국가의 농정 기조를 그대로 지역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물론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런 농정 제안들을 해 나가야 맞다고 보는데... (중략)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문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사무국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한계는 존재합니다. (중략) 그러니까 이 설득 논리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핵심 업무가 조사연구 업무가 될 가능성이 좀...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이 거기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될까? 다른 지역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구요. (CP)

2.2. 경제사업

조사 대상이었던 16개 농업회의소 가운데 현재 경제사업을 하는 곳은 2개소 (HB, SJ)였다. 다른 한 곳 SG군 농업회의소는 경제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B군 및 SJ군 농업회의소의 경제사업은 차이가 있다. HB군 농업회의소의 경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하는 것인데 비해, SJ군 농업회의소의 경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HB군 농업회의소는 군이 조성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무를 수탁받아 시행한다.³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업이 지역 농업인 다수의 공익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만, HB군 농업회의소가 그 사업을 수탁받은 동기는 우선 회원들에게 농업회의소가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현안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이걸 건의해서 그 부분을 이뤄내는 형태, 그런 쪽으로 기대에 찬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농업회의소가 그렇게 돼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 군에서 예산 지원을, 운영비라든지, 조금씩 그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서 시간이 3년에서 5년 사이 성과는 미흡하고 회원들이 1인당 5000원씩 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회의소의 역할에서, 하는 게 뭐냐고. 우리가 추구했던 거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행정에 운송비 지원이라든지, 우박 피해 [보상이라든지]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 정책적인 제안, 그리고 농가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감소시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그런 사안들이] 이슈화되면서, 회원들도 농업회의소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조금 이해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자기한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타 시·군과 다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매장]를 운영하고 있어요. (HB)

HB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탁을 처음 제안받은 곳이 농업회의소가 아닌 다른 기관이었는데 그곳이 수탁을 거절해서 농업회의소로 넘어왔다. 그런 내력이 있었기에 경제적 이익이 나는 수탁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경합 구도가 처음부터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처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탁사업을 농업회의소가 직접 수행하면, 지역 안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그 사업의 수탁을 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일어날 개연성은 있다. 실제로 CG군 농업회의소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수탁에 나서지 않은 사례도 있다.

30) 정확하게 말하자면 HB군 농업회의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HB군 농업회의소는 법률상 사단법인이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별도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매장을 운영한다. 사실상 HB군 농업회의소가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나 농업법인 등이 농업회의소 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농협이 물류, 유통을 잘 하시니까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군에서 부탁을 드렸었대요. 그런데 거기[농협]도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학교 급식을 같이 했었어야 해요. ○○○도는 친환경급식 조례니 뭐니 해서 농산물을 현물로 지급을 해요. 그러다보니 각 학교마다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 줘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농협에서는 이 [학교급식] 사업을 해서 수익이 솔직히 잘 안 남는 사업이거든요, 보조를 받아도. 그러다보니 ‘우리는 못한다, 매장도 우리가 못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HB농업회의소]가 학교급식을 하면서 매장 운영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전 임원들은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런 것 때문에 [농협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도 나누셨다고 해요. (HB)

SJ군 농업회의소는 조사 대상 사례 중 이른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형성된 유일한 농업회의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회비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운영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제사업을 전개하였다.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농업회의소] 만든 거고요. 다른 곳은 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설립한 곳이라서... 시범사업의 경우는 약간의 운영비나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로지 회원 회비로만 운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요. 열악하고. 그래서 회장님이 좀 많이 힘들었죠. 운영을 해 나가려면 회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조금 해서 운영비에 보태 쓰고,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거예요. (SJ)

이 경제사업이란, SJ군 농업회의소 회원들이 재배·생산한 옥수수, 김장 속재료, 절임배추 등을 농업회의소가 구매해서 도시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경제사업은 그 자체로는 농업회의소가 공식적으로 할 만한 ‘지역 농업인 다수의 공익’과 관련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농업회의소 운영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옥수수, SJ하면 옥수수잖아요. 7월부터 우리가 택배로 [판매]하는데, 이게 원래 서울시 ○○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계속 저희가 몇 년을 해 왔던 거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택배로 전환되어서 비대면으로 판매하거든요. 우리 회원

들 농가에서 옥수수를 수매해서, 그거를 서울 그런 쪽으로 박스로 보내 판매하는 거죠. 거기서 남는 수익을 [농업회의소] 운영비에 쓰고... 겨울에는 김장 속재료와 절임 배추를 해서, 그거는 경기도 ○○시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도 작년부터 택배로... 그래서 올해까지는 택배로 계속할 것 같아요. (SJ)

회원 농가들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농업회의소 운영에 활용해야 할 만큼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SJ군 농업회의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수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저러한 ‘수탁사업’은 하더라도 “우리 일인 것 같은” 사업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농업회의소를] 이끌어 왔으니까... 솔직히 재정 때문에 [수탁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업무가 연계가 되고 하니까, 이걸 우리 일인 것 같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수탁사업] 일도 재정에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할 역량강화 교육³¹⁾도 인건비 딱 하나 나오지, 더 이상은 없거든요. (SJ)

농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업회의소라는 기구의 정체성에 비추어볼 때, 그 자체로 ‘옳다’ 아니면 ‘그르다’라고 판단할 기준은 없다. 시·군 농업회의소에서 경제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농업회의소들 각각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맡겨두어야 할 일이다. 다만, 그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전략적 판단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다른 종류의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핵심 기능인 ‘공론장 기능’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소진

31) SJ군이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이름의 사업을 2022년에 SJ농업회의소에 위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역량강화사업’은 농업회의소들이 통상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농업회의소 차원의 역량강화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웬만한 농촌 시·군은 거의 빠짐없이 시행하는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말한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균특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내역사업 중 하나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민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체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민간 중간지원조직 등에 사업 기획 및 시행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케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사업과 공론장 기능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표 5-1>에서 보였듯이,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로 이어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론화 절차가 형성된 농업회의소들이 오히려 공익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농업회의소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은 농업회의소의 정체성 측면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농업회의소의 경제사업은 필경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유통·판매와 관련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지역 내 다른 직능단체가 수행할 만한 일을 농업회의소가 가로챌다거나 경쟁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HB군 사례처럼 마땅한 사업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에 농업회의소가 수탁한다면 논란은 수그러들 수 있으나, 여전히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회의소가 지역 농업인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정체성 문제에 비추어 특정한 경제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터이다.

2.3. 농업회의소 역량강화사업과 조직관리사업

농업회의소의 활동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의 사업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들 부른다. 대체로 농업회의소 임원이나 사무국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농업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대부분이 이 두 종류의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5-2〉 CG군 농업회의소의 주요 교육사업

교육활동 명칭	개요	시기
[역량강화] 지역농정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	• 농업 정책 및 농업 일반에 관한 교육 • 14강, 전문가 초청 강연 형식 • 농업회의소 임원, 귀농·귀촌인, 마을사무장 등	2017년 연중
[역량강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 친환경농업, 마을공동체에 관한 교육 • 선진지 견학	2017년 4월
[역량강화] 제주도 농정혁신 현장 견학	• 제주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학교급식 현장 견학 • 농업회의소 임원 등 관계자	2017년 10월
[농업기술경영/농정]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CG군 농업회의소 바로알림이 활동 교육	• PLS 전면 시행 대비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 • 강사단 교육 및 워크숍, 1차 및 2차 순회교육, 평가 워크숍	2018년 8~12월
[농업기술경영/농정] CG군 지역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실	•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 • 연속 강좌 • 식생활교육 지역활동가, 체험공간 운영자, 강사 등	2018년 10~11월
[농업기술경영/농정]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주제 견학	•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행사 견학 및 워크숍 • 서울에서 열리는 농부시장 2개소 견학	2018년 11월
[농업기술경영/농정] 사과밭 관리와 합리적 병해충 방제 지침 교육	• 사과 방제력 해설 • 희망자	2019년 3월
[농업기술경영/농정] 시설원예농가 현장지원 교육	• 시설원에 장비 운용 기술 교육 • 희망자 • 현장 시범 교육	2019년 12월
[농업기술경영/농정] CG군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	• 로컬푸드 일반 및 마케팅,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 출하 농민 90명 • 강의(3회), 선진지 견학, 워크숍	2020년 5~6월
[농업기술경영/농정] 공익직불제 이행체계 현장모델화 교육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공익직불제 이 • 행준수사항 교육 • 공동체활동과 강연 • 시범사업 마을 주민	2020년 9월
[농업기술경영/농정]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포럼	•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과 사례 • 강연 및 토론 • 농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2020년 11월

주: 1) CG군 농업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교육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교육활동 명칭 앞에 []로 묶어 표기한 내용은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범주다.

자료: CG군 농업회의소 홈페이지, 2020년 11월 20일 검색; 김정섭 외(2020: 47)에서 재인용.

보통은 집합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의 형식이며, 연간 2~4회 정도 수행된다. CG군 농업회의소처럼 아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수십 차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다. ‘코로나 19’ 사태라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농업회의소 임원이든 실무자든 회원이든 역량강화사업을 밀도 있게 편성하면서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 사업 중에 역량강화 이 부분은 다들 똑같지 않습니까? 읍·면의 농민들 그리고 임원, 대의원들 모시고 교육할 것은 하고... 거버넌스 관련된 교육, 농정 예산과 관련된 교육, 또는 선진지에도, 일본에서 농업회의소 운영한다고 해서 예전에 다녀온 기억이 있고, 2019년에는 충청남도의 ‘3농혁신’을 좀 배우자고 해서, 충청도청에 가서 ‘3농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현장도 서너 군데 둘러보면서 ‘아, 충남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지요.³²⁾ (CP)

조직관리사업은 지역 내에서 여타의 농업 관련 직능단체나 농업인단체와의 관계를 ‘종계’ 유지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외적 활동’의 형식과 농업회의소 회원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주로 하는 ‘회원 관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외적 활동’은 지역의 농업계에 큰 행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가 있을 때 농업인단체장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의 절반 이상이 이런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회원 관리’의 경우 소식지를 배포하거나 펼침막 등 농업회의소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는 일인데, 조사 대상 농업회의소 가운데 소식지나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기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뜻밖의 발견으로 아직까지 다수의 농업회의소 사무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징표다.

³²⁾ 김정섭 외(2020: 44)에서 인용.

2.4. 홍보사업

농업회의소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관점의 홍보를 ‘조직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앞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사업은 직접적인 조직 관리 차원이 아니라 농업인 일반에게 필요한 영농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농산물 가격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사업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서 농업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사업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의 형식으로 농업·농촌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현저한 한국의 농촌 현실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정 사업 정보를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농정에 조력한다는 의미에만 머무는 활동이 아니다. 농업회의소가 다수의 농업인을 포괄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 반대 방향에서 ‘관’으로부터 나오는 정보가 지역에 널리 공유되게 하는 일도 민주주의적인 지방농정에 긴요한 일이다.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정보 비대칭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과두제적 지방농정’을 조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들어와 보면, 정보들이, 전달체계가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합니다. 이장님들만 알 수 있는 체계입니다. 농민들한테는 [정보가] 전달되기가 거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중앙정부의 사업을 농민들이 알 수 있는 채널은 없어요. 본인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농민들 말고는 알 수가 없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만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CP군의 보조금 사업이 130여 개 정도 될 듯합니다. [농정을 담당하는] 3개 과에서 연초에 보조사업 신청받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전달체계가 어땠느냐면,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담긴] 한글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요. 그 자료를 읍·면사무소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이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약 5쪽 분량의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 주면서 ‘읍·면의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장님들도, 예를 들어 유명한 사업들, ‘저온저장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알지만, 어떤 사업은 한 가지 사업 안에 신청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이 10개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나요? 제 장모님도 이장님이셨지만, 전혀 전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느냐?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이장님이랑 친한 사람, 인터넷 좀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독식하면서 지원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전국적으로 안 깨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단을 없애야 하는데, ‘우리가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책자를 만들어서 직접 전달하고, 읽어보실 수 있게 하고,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책자를 만든 지가 6, 7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장님들과 우리 농업회의소 회원들에게 다 전달했고, 지금은 지역농협처럼 우리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책자를 보내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던 보조사업이, 300개까지 신청이 들어와 폭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군청에서 제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줄 알았다.’고 하길래,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확한 거지. 300명 신청한 부분을 올해에 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을 기준 삼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경우 시기가 안 맞아 책자에 넣지 못하면 문자로 정보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관측정보를 내시잖아요? 그것까지 얻어서 전달합니다.³³⁾ (CP)

보통 정보가, 이런 [정책]사업 정보가 이장님들한테 가고, 이장님들이 연락해 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우리 동네는 없어. 바빠서 그냥 넘어가야겠네.’라면서 [전달을] 접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한 부씩 나눠드렸죠. 모든 회원들에게. 적어도 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³⁴⁾ (SI)

33) 김정섭 외(2020: 43-44)에서 인용.

34) 김정섭 외(2020: 43)에서 인용.

3. 소결: 농업회의소의 정체성과 사업

농업인들의 의견을 형성해 정책 제안의 형태로 지방농정에 투입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농업회의소들은 여러 종류의 ‘사업’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다양하지만, 개별 농업회의소들을 비교하면 그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공론화 절차를 견고하게 확립한 농업회의소일수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공론장 기능’과 ‘사업 수행 기능’이 서로 상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의 농업인 다수를 대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산출하려는 취지의 ‘공익사업’은 농업회의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내부의 논의가 왕성한 곳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거나, 농업회의소가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은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농업회의소에 중앙정부의 주요 농정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제도적 기반이 없지만, 외국의 농업회의소들이 그러하듯이, 중앙정부 주요 농정의 일부분을 농업회의소가 전담하여 수행하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어떤 사무를 농업회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가 강점을 갖고 시행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조사연구사업’을 들 수 있다.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농업회의소는 세 곳에 불과하지만, 그 가능성과 긍정적 기대효과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소수이지만, 농업회의소가 직접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는데 경제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업 중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제사업을 농업회의소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터이다.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려 할 때, 지역 안에서 경

합 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회의소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이 미흡하기 쉬운데다가, 다수 농업인의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농업회의소의 지향이나 정체성 측면에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이, 그리고 조직관리사업은 절반 이상의 농업회의소들이 수행하지만 대체로 최소한의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농업인들이 모이기 어려운 제약 조건이 작용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 일종의 제도적 동형성(institutional isomorphism)을 관찰할 수 있다. 단발적인 집체식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뛰어넘는 형식과 내용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회의소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향후 추가로 설립될 농업회의소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농업회의소 회원이나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농업회의소의 기본적인 역할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창의적이고 충실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사업과 비슷하게 조직관리사업도 대부분의 농업회의소가 수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관리사업은 농업회의소의 일상적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므로,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관한 내용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은, 단순히 지방농정에 조력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업·농촌 정책 정보의 비대칭 구도에서 정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다수 농업인에게 의도적으로 농업회의소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일은, 농업회의소의 대의 기능과 맞물려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6 결론

1. 성과와 한계

1.1. 성과

정부가 농업회의소 설립·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 1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명목상으로는 20개소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고, 2021년 현재 설립 작업을 진행하는 곳도 20개소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설립되어 있다고, 즉 사단법인으로登記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해야 할 농업회의소도 2~4개소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활발히 운영되는 농업회의소가 16개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농업회의소를 확산하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의 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적은 경상예산을

투입해 컨설팅, 농업회의소에 대한 안내, 농업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의 설립 실적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지방정부 수준에서 농정 자문을 농업회의소 활동의 본령으로 삼는, 즉 ‘대의 기능’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경우 1924년에 농업회의소 설치법을 제정하고도 3년이 지난 1927년에야 법률에 따른 ‘보통선거’를 처음 실시하여 농업회의소를 구성할 수 있었다(김수석, 2007). 사실은 1851년과 1919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전사(前史)가 있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유사하게 비교할 만한 사례로,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전국 3,500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2021년 9월 기준으로 800여 개소가 설립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시·군보다 한 단계 낮은 행정구역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정책적 지원이 대상 집단의 규모로 보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보다 더 많음에도, 그 설립 속도가 농업회의소의 경우보다 크게 빠르지 않다. 주민자치회나 농업회의소처럼 ‘자치적 성격을 지니는 민간 참여 공적 기구’를 형성하는 일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그리고 민주적인 과정을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처럼 보통선거를 통해 농업회의소에 농업인 대표자들을 두게 하는 법률도 없는, 아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국 각지의 농업회의소가 이 정도 설립된 것은 그 속도가 늦은 것이라 볼 수 없다.

2014년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마상진 외(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농업회의소 회원이 아닌 농업인들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졌다. 마상진 외(2014: 73)에서는 농업회의소를 ‘대략 알고 있거나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농업인의 비율이 16.6%였는데,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9.3%였다(부표 2-35).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14년의 연구에서 85.1%, 이번 연구에서는 81.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꾸준히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고, 몇몇 농업회의소의 활동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업회의소를 새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의 결합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농업계의 합의와 준비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설립 이후 운영상에 파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몇몇 사례를 통해 학습했다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업회의소가 지방정치 무대에서,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다수의 농업회의소 관계자들이 학습하게 되었다.

농업회의소의 구성 측면에서 개별 농업인과 지역의 농업인단체 및 농축협 같은 조직을 동시에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도 한국 농촌의 맥락에서 나온 특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가입’ 방식으로 농업회의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농업인 개인을 단위로 삼을 것인지 농업인단체 등 조직을 단위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설립된 농업회의소들은 거의 대부분 농업인 개인과 관련 단체·조직에게 회원 가입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인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상황에서는 다양한 위치에 처한 개별 농업인들을 포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농정과 관련해 지역에서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농업인단체 등의 역할과 능력을 농업회의소에서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개인’과 ‘조직’ 모두를 포괄하는 농업회의소 구성 방식을 창출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초기에는 농업회의소 설립 및 초기 운영을 돕는 외부 행위자들이 몇몇 농민운동가나 단체뿐이었다. 이들이 농업회의소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된 연구 자료나 외국 사례에 근거하여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농업회의소들이 몇 곳 출현했고, 여러 해 동안의 운영 경험을 지닌 농업회의소들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즉,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새로 시작하는 농업회의소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조력할 단위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농업회의소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독특한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형성해냈다는 점이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업회의소들은 농업인의 정책 제안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경로를 다양하게 모색·형성하였다. 그중에서도 ‘읍·면간담회-분과위원회-농정협의회’의 경로는 농업인 개인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농업회의소 내부에서 숙의하는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의 형식을 한국의 농업회의소 내부에 도입한 중요한 성과다.

일부 사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현행 법규에서 공식적인 지방농정 관련 심의 기구인 ‘지방농정심의회’가 당면한 대표성 미흡, 토론 미흡 등의 문제에 농업회의소가 관여할 통로를 만들어낸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YB군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지방농정 사안에 대한 공식적 심의 과정에 농업회의소의 참여를 보장케 하거나,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농업회의소의 대의원이나 임원이 지방농정심의회에 참여하는 관행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농업회의소가 당초에 지향했던 ‘공적 대의기구’라는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1.2. 한계

농업회의소들 다수가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 노력했음에도, 상위 수준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적 파트너십 관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음이 드러났다. 농업회의소를 매개로 지역의 농업인들이 지방농정과 관련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제안을 마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검토하거나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응이 없는 문제 제기나 정책 제안’이라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농업회의소 활동을 지속할 동력을 잃기 시작한 곳도 일부 나타났다.

농업회의소들 중에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정치의 현실에서 파당적 이해관계에 휩쓸리거나 오인되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곳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다수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는 농업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측면이나 지역 내 농업인단체들 사이의 기성 관계 구도 안에서 스스로 파당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활동의 잠재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기도 하였다. 좁은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농업회의소가 민주주의적 지방농정을 구현하려는 ‘대의 기구’라는 정체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일반에게 이해되지 못함으로써 설립과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경우들도 있었다.

농업회의소 제도가 중국에는 ‘좁은 의미의 대의 제도’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보통선거로 농업회의소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령, 독일에서 농업회의소들은 농업인들 개인이 대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므로 ‘개인들의 구성’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별로 농업회의소 대의원 후보자를 내어 선출한다. 프랑스에서는 보통선거를 실시하되 농업·농촌 관련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농업계 전체를 망라한 조직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한다(김수석 외, 2010: 86-89). 현재로서는 한국의 농업회의소들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자발적 결사체 성격을 지니지만, 공적인 대의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 대의원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가령 개인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하게 할 것인지 지역의 농업인단체 등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내도록 하게 할 것인지 정당 선거의 모양새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발전 방안

2.1. 농업회의소의 법적 지위 확립

대의 기능, 달리 표현하자면 지방농정에 관한 공론 형성 및 제안 기능을 수행하려 노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농업회의소들이 있다.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취지가 말 그대로 새로운 모델을 구성해내는 데 있다고 본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몇몇 농업회의소들이 구성해 낸 대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농업회의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의견들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법규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농정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제안을 경청하거나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해 지방농정 당국과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는 공적 기구라는 정체성을 농업회의소에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모델처럼 제시되는 공론화 절차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회의소가 공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받게 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법률 발의안들에서는 ‘자문 및 건의’라고 표현되는 이 기능을 더 높은 심급에서의 지방농정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자문 및 건의’를 넘어서, 지방농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추진하는 농업인들의 몫이다.

지금 당장 이른바 ‘농업회의소법’에서 그런 기능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현행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농정심의회에 관해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농업회의소나

새로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곳에서, YB군에서 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수단 삼아 지방농정심의회에 농업회의소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농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2. 지역 농업인들의 공론장이라는 정체성 확립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은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지역에서 토의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의견을 형성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에 제안하는 통로, 즉 공론장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업·농촌 정책의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공론장 기능과 정책 사업 집행 기능, 둘 중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입장은 없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정 담당 공무원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명확하지 않거나 엇갈리는 듯하다.

그런데 아직은 농업회의소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되어 있지도 않고,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능 기관·단체들과의 역할 중복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론장 기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농업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다.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를 미루어 보더라도, 공론장 기능을 충실하고 안정되게 수행하는 농업회의소가 오히려 특정 정책 사업 전체 또는 집행 과정의 일부를 수탁해 수행할 때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높다.

공론장 기능과 정책 사업 집행 기능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정립하기는 어렵다. 둘 다 필요하다. 그러나 공

론장 기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려는 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농업회의소들에게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도 그 같은 ‘우선순위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할 것을 안내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습이나 토론 같은 계기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농업회의소들이 ‘공론화 절차’를 견고하게 형성하는 일이다.

2.3. 농업회의소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과 지원

그동안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된 역량강화 측면의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연중 몇 번의 집체 교육, 워크숍, 컨설팅 정도의 지원이 있었을 뿐이다. 농업회의소 실무자 및 회원, 지역의 농업인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농업회의소를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정보 측면의 지원을 현재 수준보다 아주 크게 늘려야 한다.

농업회의소 운영의 성과는, 최종적으로는 지방농정의 긍정적 변화를 지역의 농업인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농업회의소가 해야 하는 일은 공론장을 형성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들고 지방농정 당국과 협의하고 사업이나 제도로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회의소 사무국의 실무 역량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무국은 한 해 동안에도 아주 많은 횟수의 토론을 조직해야 하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기까지 각종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농축협, 농업인단체, 개별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농업회의소가 특정한 농정 사업을 수탁해 실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문제는, 외부로부터 지식을 얻어 주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농업회의소 사무

국의 전문적·실무적 역량'을 신장시킬 수는 없다는 데 있다. 즉, 교과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과 능력'이 중요해진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농업회의소의 경험을 다른 농업회의소 사무국과 공유하는 방식의 학습이 거의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설립한 지 8년이 넘는 농업회의소들도 있다.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라는 이름으로 농업회의소들의 협의체도 결성되어 있다. 시행착오를 먼저 겪은 농업회의소들의 경험이 새로이 설립되는 농업회의소들에게 상세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2.4. 고유사업으로서 국가 위탁사무 시범 추진

공론장 기능 외에 농업회의소가 정책 사업 실행 과정에서 직접 역할을 담당하는 일은 피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농업회의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정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16개 농업회의소 중 그런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곳은 한 곳뿐이었다. 그곳도 2022년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두 건의 실행 과정에 직접 관여할 예정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의 농업회의소들도 단순히 대의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한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회의소들이 실행하는 '사업'들 가운데 영속적으로 또는 10년 이상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것은 없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농촌 고용인력지원사업) 시행자가 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몇 곳 있지만, 그 보조사업은 1년을 기한으로 시행하되 매년 갱신 절차를 받아 계속할 수 있다. 게다가 농업회의소의 고유사업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농업회의소,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자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정책 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농업 고용 노동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이어서 몇몇 농업회의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보조사업 외에, 농업회의소들이 현재 시행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같은 종류의 것이다. 즉, 영속성도 없고 지역 내 다른 직능 기관·단체가 하는 일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

농업회의소가 정책의 집행에 직접 참여하려고 할 때에는, 영속적인 또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농정 사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되 그것을 ‘고유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때에야 농업회의소의 정체성에 부합할 것이다. 그 위탁사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한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특정 농촌 지역에서만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무여야 한다. 셋째,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농업회의소 및 그 회원 농업인들이 직접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사무의 효율이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하게는 사무의 성격이 농업인 다수의 공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공공적 성격의 사무여야 농업회의소가 집행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을 놓고 볼 때, 농업회의소들이 위탁받아 시행할 만한 농정 사무(제도 운영, 보조금 사업 등)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제나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사무를 검토해 볼 만하다. 그밖에도, 「농지법」이 여러 측면에서 개정될 전망이고, 앞으로도 농지제도가 큰 폭으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전제하에 지역에서 정보 측면에서의 농지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농업회의소에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제도, 공익직불제, 농지관리 업무 등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들을 비교적 충족한다. 거의 영속적인 농정 사무이며, 공간적으로도 특수한 지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전국 모든 농촌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는 일이며, 농업인 다수의 공익

과 직결되는 일이다. 다만, 농업회의소 및 그 회원 농업인들이 직접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효율이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분별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가령, 공익직불제 중 기본형 직불제 시행과정은 아주 복잡한 절차로 구성되는데 그중에는 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관여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업무수행상 단계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직불금 신청 및 등록 과정에서는 경작사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경작사실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관외 경작자가 경작하고 있거나,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이거나, 상속 및 증여 농지 등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직불제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도 농업인이 직접 관여할 때 효과적인 업무들이 있다. 몇 가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여부나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데에는 현지의 농업인들이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외부로부터 조사원을 고용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농업회의소에 제공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테다.

농업회의소의 고유사업이자 국가 농정 사무로 추진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시·군 농업회의소가 20개소 정도에 불과하며, 그중에서 조직과 업무 절차가 안정되지 못한 곳도 많다. 특히, 농업회의소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공론장 기능’을 견고한 절차로 형성한 곳은 절반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가 농정 사무 중 어떤 것을 농업회의소에 위임하여 시행하려 한다면, 우선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할 터이다. 공론화 절차를 확립하였고, 회원 등 조직 관리가 안정되었으며, 지역의 여러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로부터 확실하게 지지받는 농업회의소 1~3개소를 골라 시범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이러한 구상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회의소들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터이다.

1. 설문 조사표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리아리서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농어업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어업인의 지방농정 참여 등에 대해 평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정책수립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시간은 10여분 정도 소요되며,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I. 농어업·농어촌 정책 만족도

※ 먼저 농어업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1. 지방농정 기관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만족하시는 정도에 따라 보기 중에서 골라 주세요. 1점부터 5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1.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	①	②	③	④	⑤
1-2. 지방의회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활동	①	②	③	④	⑤
1-3. 지역농협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	①	②	③	④	⑤
1-4.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교육 및 농촌개발사업	①	②	③	④	⑤

II. 농어업인(단체)의 농정 참여

※ 다음은 농어업인(농어업인 단체)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2. 농어업인(농어업인단체 포함)의 농정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골라주십시오. 1점부터 5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는 지방농정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께서는 유·무선 전화, 인터넷, 지자체 농정설명회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농정 관련 의견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제안해 본 적 있다 **문3-1로**

② 제안해 본 적 없다 **문4로**

문3-1. (문3=① 응답자만) 제안을 해본 적이 있다면, 최근 3년 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문4. 귀하께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농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5. 귀하께서는 농어업인이 기초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문6. 귀하께서는 농어업인들이 기초자치단체 농정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정 관련 지식·정보 부족

② 참여방법 관련 지식·정보 부족

③ 참여 통로(기회) 부족

④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⑤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

⑥ 기타()

Ⅲ. 농업회의소 인지도 및 필요성

※ 다음은 농업업회의소의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명문〉

농업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및 지방농정에 자문 및 건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기구입니다.

문7. 귀하께서는 농업업회의소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④ 들어본 적 없다

문8. 전체 농업업인을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업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어촌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업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농업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문9. 다음은 농업업회의소 기대효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골라주십시오. 1점부터 5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농업업회의소는 지방농정 현안 문제를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2. 농업업회의소는 제안된 지방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과 행정이 상호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3. 농업업회의소는 농업업인(농어업인단체) 의사를 잘 대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다음은 농업업회의소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10. 귀하께서는 현재 농업업회의소 회원이십니까?

① 회원이다 ➡ 문11로

② 회원이 아니다 ➡ 문13으로

문11. 다음은 농업업회의소의 운영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골라주십시오. 1점부터 5점 중에서 동의하시는 정도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설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의 정관과 규정은 구체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2.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의 의사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3.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4.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 사무국의 인력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1-5.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1-6.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의 회원은 농업업회의소의 목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7.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의 회원은 회원 간 상호협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8. 우리 지역 농업업회의소 회원은 회의소 활동에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귀하께서는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③ 안정적 자원확보
- ④ 전문인력 확보
- ⑤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확대
- ⑦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의 관심과 지원
- ⑧ 기타()

V.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 및 회비

※ 다음은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과 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13. 귀하께서는 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②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 ③ 가입할 것이다 ④ 적극 가입할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문13-1. (문13=③, ④ 응답자만)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①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 ② 농어업인의 의사와 권익 대변을 위하여
- ③ 농어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 ④ 국가 및 지방의 농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 ⑤ 농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 ⑥ 농어업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받기 위해서
- ⑦ 기타()

문14. 귀하께서는 농어업회의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 ② 자체 회원 회비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 | ④ 기타() |

문15. 귀하께서는 농어업회의소 회원의 회비납부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반대한다 | ② 반대하는 편이다 |
| ③ 찬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찬성한다 |
| ⑤ 잘 모르겠다 | |

문15-1. (문15=③, ④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연간 회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3만원 미만 | ② 3~5만원 | ③ 6~7만원 |
| ④ 8~9만원 | ⑤ 10만원 이상 | |

VI.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마지막으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관련 내용입니다.

문16. 현재의 농어업회의소는 법적근거가 없어 그 위상과 활동, 활성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농어업 회의소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 ③ 필요하다 | ④ 매우 필요하다 |
| ⑤ 잘 모르겠다 | |

문17.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가 참여하여 설립하는 민간자율기구입니다. 농어업회의소와 농어업인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 ②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
| ③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 ④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
| ⑤ 잘 모르겠다 | |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세 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59세 ⑤ 60~69세 ⑥ 70~79세
⑦ 80세 이상

DQ3. 귀하의 영농종사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이하 ② 2~5년 ③ 6~10년
④ 11~20년 ⑤ 21~30년 ⑥ 31년 이상

DQ4. 귀하의 농어업 관련 주요 작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재배하는 작물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예: 벼농사, 채소, 특용작물, 사과, 한우, 양돈, 양식업 등)

$$\left(\begin{array}{c} \text{ } \end{array} \right)$$

DQ5. 귀하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규모는 얼마인가요?

- ① 거의 없음 ② 120만원 미만
③ 120~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1천만원 미만
⑤ 1천만원~2천만원 미만 ⑥ 2천만원~5천만원 미만
⑦ 5천~1억원 미만 ⑧ 1~2억원 미만
⑨ 2억원 이상 99 모름/무응답

♣ 설문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 만족도 - 지자체 정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경기도	15 (7.4)	52 (25.5)	88 (43.1)	44 (21.6)	5 (2.5)	204 (100.0)
강원도	7 (4.9)	24 (16.9)	67 (47.2)	32 (22.5)	12 (8.5)	142 (100.0)
충청북도	2 (1.6)	18 (14.8)	53 (43.4)	44 (36.1)	5 (4.1)	122 (100.0)
충청남도	14 (6.3)	41 (18.4)	115 (51.6)	40 (17.9)	13 (5.8)	223 (100.0)
전라북도	6 (3.5)	35 (20.6)	95 (55.9)	27 (15.9)	7 (4.1)	170 (100.0)
전라남도	13 (5.4)	43 (18.0)	128 (53.6)	46 (19.2)	9 (3.8)	239 (100.0)
경상북도	14 (4.6)	54 (17.6)	147 (48.0)	76 (24.8)	15 (4.9)	306 (100.0)
경상남도	9 (4.5)	44 (21.9)	106 (52.7)	34 (16.9)	8 (4.0)	201 (100.0)
제주도	2 (4.2)	10 (20.8)	28 (58.3)	6 (12.5)	2 (4.2)	48 (100.0)
전체	82 (5.0)	321 (19.4)	827 (50.0)	349 (21.1)	76 (4.6)	1,655 (100.0)

주: $\chi^2=50.861$, $p=0.01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 만족도 - 지방의회 농정 활동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경기도	29 (14.2)	65 (31.9)	84 (41.2)	19 (9.3)	7 (3.4)	204 (100.0)
강원도	9 (6.3)	39 (27.5)	67 (47.2)	20 (14.1)	7 (4.9)	142 (100.0)
충청북도	7 (5.8)	21 (17.4)	56 (46.3)	29 (24.0)	8 (6.6)	121 (100.0)
충청남도	19 (8.5)	68 (30.5)	85 (38.1)	39 (17.5)	12 (5.4)	223 (100.0)
전라북도	15 (8.8)	52 (30.6)	79 (46.5)	14 (8.2)	10 (5.9)	170 (100.0)
전라남도	26 (10.9)	57 (23.8)	112 (46.9)	33 (13.8)	11 (4.6)	239 (100.0)
경상북도	30 (9.8)	80 (26.1)	136 (44.4)	51 (16.7)	9 (2.9)	306 (100.0)
경상남도	14 (7.0)	66 (32.8)	85 (42.3)	29 (14.4)	7 (3.5)	201 (100.0)
제주도	5 (10.6)	7 (14.9)	30 (63.8)	3 (6.4)	2 (4.3)	47 (100.0)
전체	154 (9.3)	455 (27.5)	734 (44.4)	237 (14.3)	73 (4.4)	1,653 (100.0)

주: $\chi^2=57.044$, $p=0.00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 만족도 - 지역농협사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경기도	16 (7.8)	36 (17.6)	77 (37.7)	58 (28.4)	17 (8.3)	204 (100.0)
강원도	11 (7.8)	32 (22.7)	51 (36.2)	37 (26.2)	10 (7.1)	141 (100.0)
충청북도	6 (5.0)	15 (12.5)	55 (45.8)	34 (28.3)	10 (8.3)	120 (100.0)
충청남도	14 (6.3)	51 (22.9)	84 (37.7)	54 (24.2)	20 (9.0)	223 (100.0)
전라북도	13 (7.6)	35 (20.6)	82 (48.2)	32 (18.8)	8 (4.7)	170 (100.0)
전라남도	19 (7.9)	48 (20.1)	92 (38.5)	57 (23.8)	23 (9.6)	239 (100.0)
경상북도	23 (7.5)	60 (19.6)	123 (40.2)	76 (24.8)	24 (7.8)	306 (100.0)
경상남도	9 (4.5)	54 (26.9)	85 (42.3)	44 (21.9)	9 (4.5)	201 (100.0)
제주도	4 (8.5)	7 (14.9)	14 (29.8)	16 (34.0)	6 (12.8)	47 (100.0)
전체	115 (7.0)	338 (20.5)	663 (40.2)	408 (24.7)	127 (7.7)	1,651 (100.0)

주: $\chi^2=35.449$, $p=0.30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 만족도 - 농업기술센터 농정 관련 사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경기도	10 (4.9)	22 (10.8)	76 (37.3)	71 (34.8)	25 (12.3)	204 (100.0)
강원도	6 (4.3)	19 (13.5)	57 (40.4)	43 (30.5)	16 (11.3)	141 (100.0)
충청북도	4 (3.3)	13 (10.7)	29 (24.0)	62 (51.2)	13 (10.7)	121 (100.0)
충청남도	3 (1.3)	28 (12.6)	88 (39.5)	75 (33.6)	29 (13.0)	223 (100.0)
전라북도	7 (4.1)	25 (14.7)	81 (47.6)	48 (28.2)	9 (5.3)	170 (100.0)
전라남도	10 (4.2)	37 (15.5)	99 (41.4)	75 (31.4)	18 (7.5)	239 (100.0)
경상북도	13 (4.3)	36 (11.8)	115 (37.8)	109 (35.9)	31 (10.2)	304 (100.0)
경상남도	9 (4.5)	44 (21.9)	73 (36.3)	59 (29.4)	16 (8.0)	201 (100.0)
제주도	2 (4.3)	5 (10.6)	17 (36.2)	18 (38.3)	5 (10.6)	47 (100.0)
전체	64 (3.9)	229 (13.9)	635 (38.5)	560 (33.9)	162 (9.8)	1,650 (100.0)

주: $\chi^2=54.665$, $p=0.00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 응답자 거주지역별 지방농정 참여 -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8 (3.9)	28 (13.7)	74 (36.3)	63 (30.9)	31 (15.2)	204 (100.0)
강원도	4 (2.8)	8 (5.7)	39 (27.7)	58 (41.1)	32 (22.7)	141 (100.0)
충청북도	2 (1.7)	13 (10.7)	47 (38.8)	50 (41.3)	9 (7.4)	121 (100.0)
충청남도	2 (0.9)	20 (8.9)	72 (32.1)	90 (40.2)	40 (17.9)	224 (100.0)
전라북도	3 (1.8)	10 (5.9)	72 (42.4)	66 (38.8)	19 (11.2)	170 (100.0)
전라남도	7 (2.9)	19 (8.0)	89 (37.4)	89 (37.4)	34 (14.3)	238 (100.0)
경상북도	8 (2.6)	41 (13.4)	95 (31.1)	117 (38.4)	44 (14.4)	305 (100.0)
경상남도	3 (1.5)	21 (10.4)	66 (32.8)	87 (43.3)	24 (11.9)	201 (100.0)
제주도	1 (2.1)	6 (12.5)	20 (41.7)	13 (27.1)	8 (16.7)	48 (100.0)
전체	38 (2.3)	166 (10.0)	574 (34.7)	633 (38.3)	241 (14.6)	1,652 (100.0)

주: $\chi^2=49.492$, $p=0.02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 응답자 거주지역별 지방농정 참여 - 참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10 (5.0)	36 (17.8)	88 (43.6)	52 (25.7)	16 (7.9)	202 (100.0)
강원도	5 (3.5)	19 (13.4)	49 (34.5)	46 (32.4)	23 (16.2)	142 (100.0)
충청북도	6 (5.0)	22 (18.2)	45 (37.2)	39 (32.2)	9 (7.4)	121 (100.0)
충청남도	3 (1.3)	38 (17.0)	84 (37.7)	65 (29.1)	33 (14.8)	223 (100.0)
전라북도	7 (4.1)	29 (17.1)	73 (42.9)	49 (28.8)	12 (7.1)	170 (100.0)
전라남도	7 (2.9)	42 (17.6)	105 (44.1)	69 (29.0)	15 (6.3)	238 (100.0)
경상북도	8 (2.6)	67 (22.0)	114 (37.4)	94 (30.8)	22 (7.2)	305 (100.0)
경상남도	2 (1.0)	28 (13.9)	85 (42.3)	68 (33.8)	18 (9.0)	201 (100.0)
제주도	3 (6.4)	7 (14.9)	16 (34.0)	16 (34.0)	5 (10.6)	47 (100.0)
전체	51 (3.1)	288 (17.5)	659 (40.0)	498 (30.2)	153 (9.3)	1,649 (100.0)

주: $\chi^2=46.021$, $p=0.05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 응답자 거주지역별 지방농정 참여 - 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20 (9.9)	56 (27.7)	95 (47.0)	25 (12.4)	6 (3.0)	202 (100.0)
강원도	9 (6.3)	26 (18.3)	61 (43.0)	30 (21.1)	16 (11.3)	142 (100.0)
충청북도	6 (4.9)	23 (18.9)	48 (39.3)	34 (27.9)	11 (9.0)	122 (100.0)
충청남도	6 (2.7)	55 (24.6)	93 (41.5)	50 (22.3)	20 (8.9)	224 (100.0)
전라북도	9 (5.3)	44 (25.9)	73 (42.9)	30 (17.6)	14 (8.2)	170 (100.0)
전라남도	16 (6.8)	53 (22.4)	102 (43.0)	51 (21.5)	15 (6.3)	237 (100.0)
경상북도	16 (5.2)	77 (25.2)	119 (39.0)	68 (22.3)	25 (8.2)	305 (100.0)
경상남도	13 (6.5)	39 (19.4)	84 (41.8)	50 (24.9)	15 (7.5)	201 (100.0)
제주도	0 (0.0)	13 (27.1)	22 (45.8)	11 (22.9)	2 (4.2)	48 (100.0)
전체	95 (5.8)	386 (23.4)	697 (42.2)	349 (21.1)	124 (7.5)	1,651 (100.0)

주: $\chi^2=46.231$, $p=0.05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 응답자 거주지역별 최근 3년 농정 관련 의견 제안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계
경기도	81 (39.7)	123 (60.3)	204 (100.0)
강원도	80 (56.3)	62 (43.7)	142 (100.0)
충청북도	32 (26.2)	90 (73.8)	122 (100.0)
충청남도	110 (49.1)	114 (50.9)	224 (100.0)
전라북도	76 (45.0)	93 (55.0)	169 (100.0)
전라남도	96 (40.2)	143 (59.8)	239 (100.0)
경상북도	129 (42.2)	177 (57.8)	306 (100.0)
경상남도	93 (46.3)	108 (53.7)	201 (100.0)
제주도	15 (31.3)	33 (68.8)	48 (100.0)
전체	712 (43.0)	943 (57.0)	1,655 (100.0)

주: $\chi^2=33.33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 응답자 거주지역별 지자체의 의견 수렴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24 (11.9)	83 (41.1)	63 (31.2)	7 (3.5)	25 (12.4)	202 (100.0)
강원도	9 (6.4)	56 (39.7)	52 (36.9)	13 (9.2)	11 (7.8)	141 (100.0)
충청북도	5 (4.1)	44 (36.1)	52 (42.6)	12 (9.8)	9 (7.4)	122 (100.0)
충청남도	9 (4.1)	85 (38.5)	87 (39.4)	15 (6.8)	25 (11.3)	221 (100.0)
전라북도	10 (6.0)	76 (45.2)	53 (31.5)	8 (4.8)	21 (12.5)	168 (100.0)
전라남도	24 (10.1)	94 (39.7)	78 (32.9)	16 (6.8)	25 (10.5)	237 (100.0)
경상북도	22 (7.2)	115 (37.6)	115 (37.6)	22 (7.2)	32 (10.5)	306 (100.0)
경상남도	9 (4.5)	76 (38.4)	92 (46.5)	3 (1.5)	18 (9.1)	198 (100.0)
제주도	5 (10.4)	13 (27.1)	21 (43.8)	0 (0.0)	9 (18.8)	48 (100.0)
전체	117 (7.1)	642 (39.1)	613 (37.3)	96 (5.8)	175 (10.7)	1,643 (100.0)

주: $\chi^2=58.024$, $p=0.00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참여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3 (1.5)	12 (5.9)	74 (36.5)	106 (52.2)	8 (3.9)	203 (100.0)
강원도	3 (2.1)	19 (13.4)	52 (36.6)	67 (47.2)	1 (0.7)	142 (100.0)
충청북도	2 (1.7)	15 (12.4)	56 (46.3)	43 (35.5)	5 (4.1)	121 (100.0)
충청남도	2 (0.9)	30 (13.4)	93 (41.5)	88 (39.3)	11 (4.9)	224 (100.0)
전라북도	2 (1.2)	18 (10.7)	69 (40.8)	64 (37.9)	16 (9.5)	169 (100.0)
전라남도	4 (1.7)	20 (8.4)	102 (42.7)	101 (42.3)	12 (5.0)	239 (100.0)
경상북도	8 (2.6)	28 (9.2)	124 (40.5)	127 (41.5)	19 (6.2)	306 (100.0)
경상남도	6 (3.0)	14 (7.0)	92 (45.8)	85 (42.3)	4 (2.0)	201 (100.0)
제주도	1 (2.1)	2 (4.2)	29 (60.4)	9 (18.8)	7 (14.6)	48 (100.0)
전체	31 (1.9)	158 (9.6)	691 (41.8)	690 (41.7)	83 (5.0)	1,653 (100.0)

주: $\chi^2=65.25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정참여 제약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 모름	전체
경기도	20 (9.8)	37 (18.1)	38 (18.6)	42 (20.6)	58 (28.4)	1 (0.5)	8 (3.9)	204 (100.0)
강원도	13 (9.2)	26 (18.3)	37 (26.1)	33 (23.2)	29 (20.4)	1 (0.7)	3 (2.1)	142 (100.0)
충청북도	17 (13.9)	30 (24.6)	35 (28.7)	22 (18.0)	16 (13.1)	1 (0.8)	1 (0.8)	122 (100.0)
충청남도	25 (11.2)	40 (17.9)	54 (24.2)	51 (22.9)	45 (20.2)	3 (1.3)	5 (2.2)	223 (100.0)
전라북도	19 (11.3)	29 (17.3)	44 (26.2)	31 (18.5)	39 (23.2)	2 (1.2)	4 (2.4)	168 (100.0)
전라남도	19 (7.9)	37 (15.5)	80 (33.5)	37 (15.5)	51 (21.3)	5 (2.1)	10 (4.2)	239 (100.0)
경상북도	28 (9.2)	57 (18.6)	78 (25.5)	71 (23.2)	65 (21.2)	2 (0.7)	5 (1.6)	306 (100.0)
경상남도	24 (11.9)	43 (21.4)	53 (26.4)	35 (17.4)	41 (20.4)	1 (0.5)	4 (2.0)	201 (100.0)
제주도	5 (10.4)	13 (27.1)	12 (25.0)	9 (18.8)	6 (12.5)	1 (2.1)	2 (4.2)	48 (100.0)
전체	170 (10.3)	312 (18.9)	431 (26.1)	331 (20.0)	350 (21.2)	17 (1.0)	42 (2.5)	1,653 (100.0)

주: $\chi^2=51.546$, $p=0.34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경기도	26 (12.7)	39 (19.1)	52 (25.5)	87 (42.6)	204 (100.0)
강원도	44 (31.0)	35 (24.6)	28 (19.7)	35 (24.6)	142 (100.0)
충청북도	10 (8.3)	25 (20.7)	36 (29.8)	50 (41.3)	121 (100.0)
충청남도	82 (36.6)	52 (23.2)	48 (21.4)	42 (18.8)	224 (100.0)
전라북도	38 (22.4)	47 (27.6)	45 (26.5)	40 (23.5)	170 (100.0)
전라남도	52 (21.8)	53 (22.3)	61 (25.6)	72 (30.3)	238 (100.0)
경상북도	58 (19.0)	75 (24.6)	86 (28.2)	86 (28.2)	305 (100.0)
경상남도	54 (26.9)	48 (23.9)	48 (23.9)	51 (25.4)	201 (100.0)
제주도	2 (4.2)	10 (20.8)	15 (31.3)	21 (43.8)	48 (100.0)
전체	366 (22.1)	384 (23.2)	419 (25.3)	484 (29.3)	1,653 (100.0)

주: $\chi^2=99.629$,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7 (3.4)	10 (4.9)	90 (44.1)	76 (37.3)	21 (10.3)	204 (100.0)
강원도	2 (1.4)	11 (7.8)	54 (38.3)	67 (47.5)	7 (5.0)	141 (100.0)
충청북도	0 (0.0)	3 (2.5)	63 (51.6)	39 (32.0)	17 (13.9)	122 (100.0)
충청남도	4 (1.8)	14 (6.3)	95 (42.4)	93 (41.5)	18 (8.0)	224 (100.0)
전라북도	3 (1.8)	7 (4.1)	81 (47.6)	67 (39.4)	12 (7.1)	170 (100.0)
전라남도	4 (1.7)	15 (6.3)	106 (44.5)	96 (40.3)	17 (7.1)	238 (100.0)
경상북도	4 (1.3)	22 (7.2)	154 (50.3)	95 (31.0)	31 (10.1)	306 (100.0)
경상남도	2 (1.0)	15 (7.5)	86 (43.0)	87 (43.5)	10 (5.0)	200 (100.0)
제주도	0 (0.0)	3 (6.3)	29 (60.4)	8 (16.7)	8 (16.7)	48 (100.0)
전체	26 (1.6)	100 (6.0)	758 (45.9)	628 (38.0)	141 (8.5)	1,653 (100.0)

주: $\chi^2=54.115$, $p=0.00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8 (3.9)	19 (9.3)	44 (21.6)	86 (42.2)	47 (23.0)	204 (100.0)
강원도	2 (1.4)	5 (3.5)	28 (19.7)	55 (38.7)	52 (36.6)	142 (100.0)
충청북도	0 (0.0)	6 (4.9)	34 (27.9)	71 (58.2)	11 (9.0)	122 (100.0)
충청남도	5 (2.2)	12 (5.4)	53 (23.8)	92 (41.3)	61 (27.4)	223 (100.0)
전라북도	4 (2.4)	10 (5.9)	44 (26.0)	76 (45.0)	35 (20.7)	169 (100.0)
전라남도	6 (2.5)	14 (5.9)	55 (23.1)	107 (45.0)	56 (23.5)	238 (100.0)
경상북도	5 (1.6)	25 (8.2)	87 (28.5)	133 (43.6)	55 (18.0)	305 (100.0)
경상남도	3 (1.5)	10 (5.0)	48 (23.9)	84 (41.8)	56 (27.9)	201 (100.0)
제주도	2 (4.2)	3 (6.3)	18 (37.5)	18 (37.5)	7 (14.6)	48 (100.0)
전체	35 (2.1)	104 (6.3)	411 (24.9)	722 (43.7)	380 (23.0)	1,652 (100.0)

주: $\chi^2=62.569$,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협력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7 (3.4)	16 (7.8)	48 (23.5)	92 (45.1)	41 (20.1)	204 (100.0)
강원도	3 (2.1)	6 (4.2)	27 (19.0)	53 (37.3)	53 (37.3)	142 (100.0)
충청북도	0 (0.0)	5 (4.1)	39 (32.0)	65 (53.3)	13 (10.7)	122 (100.0)
충청남도	3 (1.3)	15 (6.7)	49 (22.0)	94 (42.2)	62 (27.8)	223 (100.0)
전라북도	3 (1.8)	14 (8.3)	42 (25.0)	71 (42.3)	38 (22.6)	168 (100.0)
전라남도	7 (3.0)	13 (5.5)	65 (27.4)	95 (40.1)	57 (24.1)	237 (100.0)
경상북도	4 (1.3)	27 (8.9)	79 (25.9)	142 (46.6)	53 (17.4)	305 (100.0)
경상남도	1 (0.5)	9 (4.5)	50 (25.0)	93 (46.5)	47 (23.5)	200 (100.0)
제주도	0 (0.0)	3 (6.3)	13 (27.1)	18 (37.5)	14 (29.2)	48 (100.0)
전체	28 (1.7)	108 (6.5)	412 (25.0)	723 (43.8)	378 (22.9)	1,649 (100.0)

주: $\chi^2=60.085$, $p=0.00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6〉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농업인 의사 대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12 (5.9)	22 (10.8)	62 (30.4)	76 (37.3)	32 (15.7)	204 (100.0)
강원도	2 (1.4)	14 (9.9)	32 (22.7)	45 (31.9)	48 (34.0)	141 (100.0)
충청북도	0 (0.0)	13 (10.7)	40 (32.8)	52 (42.6)	17 (13.9)	122 (100.0)
충청남도	5 (2.2)	20 (9.0)	60 (26.9)	86 (38.6)	52 (23.3)	223 (100.0)
전라북도	4 (2.4)	14 (8.3)	55 (32.7)	64 (38.1)	31 (18.5)	168 (100.0)
전라남도	6 (2.5)	21 (8.9)	75 (31.6)	88 (37.1)	47 (19.8)	237 (100.0)
경상북도	8 (2.6)	36 (11.8)	97 (31.8)	122 (40.0)	42 (13.8)	305 (100.0)
경상남도	2 (1.0)	13 (6.5)	59 (29.5)	81 (40.5)	45 (22.5)	200 (100.0)
제주도	0 (0.0)	6 (12.5)	19 (39.6)	13 (27.1)	10 (20.8)	48 (100.0)
전체	39 (2.4)	159 (9.6)	499 (30.3)	627 (38.0)	324 (19.7)	1648 (100.0)

주: $\chi^2=58.413$, $p=0.00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7〉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정관 정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1 (20.0)	2 (40.0)	2 (40.0)	0 (0.0)	5 (100.0)
강원도	0 (0.0)	0 (0.0)	6 (10.3)	25 (43.1)	27 (46.6)	58 (100.0)
충청남도	1 (1.1)	2 (2.2)	29 (31.5)	41 (44.6)	19 (20.7)	92 (100.0)
전라북도	1 (2.3)	1 (2.3)	11 (25.0)	23 (52.3)	8 (18.2)	44 (100.0)
전라남도	1 (1.8)	3 (5.3)	26 (45.6)	21 (36.8)	6 (10.5)	57 (100.0)
경상북도	2 (2.8)	6 (8.5)	22 (31.0)	30 (42.3)	11 (15.5)	71 (100.0)
경상남도	0 (0.0)	4 (6.7)	16 (26.7)	20 (33.3)	20 (33.3)	60 (100.0)
제주도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388 (100.0)

주: $\chi^2=73.36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8〉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민주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1 (20.0)	2 (40.0)	2 (40.0)	0 (0.0)	5 (100.0)
강원도	0 (0.0)	1 (1.7)	6 (10.3)	26 (44.8)	25 (43.1)	58 (100.0)
충청남도	1 (1.1)	4 (4.3)	21 (22.8)	43 (46.7)	23 (25.0)	92 (100.0)
전라북도	0 (0.0)	1 (2.3)	13 (29.5)	19 (43.2)	11 (25.0)	44 (100.0)
전라남도	1 (1.8)	3 (5.3)	16 (28.1)	19 (33.3)	18 (31.6)	57 (100.0)
경상북도	2 (2.8)	5 (7.0)	23 (32.4)	23 (32.4)	18 (25.4)	71 (100.0)
경상남도	1 (1.7)	3 (5.0)	12 (20.0)	23 (38.3)	21 (35.0)	60 (100.0)
제주도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388 (100.0)

주: $\chi^2=45.942$, $p=0.01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9〉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재정자립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1 (20.0)	2 (40.0)	1 (20.0)	1 (20.0)	0 (0.0)	5 (100.0)
강원도	3 (5.2)	19 (32.8)	23 (39.7)	10 (17.2)	3 (5.2)	58 (100.0)
충청남도	11 (12.0)	27 (29.3)	37 (40.2)	10 (10.9)	7 (7.6)	92 (100.0)
전라북도	2 (4.5)	12 (27.3)	22 (50.0)	5 (11.4)	3 (6.8)	44 (100.0)
전라남도	9 (15.8)	25 (43.9)	15 (26.3)	4 (7.0)	4 (7.0)	57 (100.0)
경상북도	5 (7.1)	23 (32.9)	27 (38.6)	12 (17.1)	3 (4.3)	70 (100.0)
경상남도	10 (16.7)	27 (45.0)	19 (31.7)	4 (6.7)	0 (0.0)	60 (100.0)
제주도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387 (100.0)

주: $\chi^2=30.696$, $p=0.33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0〉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사무국 인적 자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3 (60.0)	1 (20.0)	1 (20.0)	0 (0.0)	5 (100.0)
강원도	2 (3.4)	15 (25.9)	17 (29.3)	20 (34.5)	4 (6.9)	58 (100.0)
충청남도	8 (8.7)	18 (19.6)	41 (44.6)	17 (18.5)	8 (8.7)	92 (100.0)
전라북도	1 (2.3)	18 (40.9)	22 (50.0)	3 (6.8)	0 (0.0)	44 (100.0)
전라남도	6 (10.5)	20 (35.1)	20 (35.1)	9 (15.8)	2 (3.5)	57 (100.0)
경상북도	2 (2.8)	20 (28.2)	26 (36.6)	17 (23.9)	6 (8.5)	71 (100.0)
경상남도	9 (15.3)	29 (49.2)	17 (28.8)	4 (6.8)	0 (0.0)	59 (100.0)
제주도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전체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387 (100.0)

주: $\chi^2=59.276$,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1〉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자발적 참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2 (50.0)	1 (25.0)	1 (25.0)	0 (0.0)	4 (100.0)
강원도	0 (0.0)	2 (3.4)	2 (3.4)	28 (48.3)	26 (44.8)	58 (100.0)
충청남도	2 (2.2)	8 (8.7)	20 (21.7)	35 (38.0)	27 (29.3)	92 (100.0)
전라북도	2 (4.5)	5 (11.4)	10 (22.7)	15 (34.1)	12 (27.3)	44 (100.0)
전라남도	3 (5.3)	6 (10.5)	15 (26.3)	18 (31.6)	15 (26.3)	57 (100.0)
경상북도	3 (4.2)	4 (5.6)	14 (19.7)	24 (33.8)	26 (36.6)	71 (100.0)
경상남도	0 (0.0)	7 (11.7)	16 (26.7)	23 (38.3)	14 (23.3)	60 (100.0)
제주도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전체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387 (100.0)

주: $\chi^2=42.443$, $p=0.03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2〉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공감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강원도	0 (0.0)	2 (3.4)	9 (15.5)	32 (55.2)	15 (25.9)	58 (100.0)
충청남도	1 (1.1)	9 (9.8)	30 (32.6)	38 (41.3)	14 (15.2)	92 (100.0)
전라북도	0 (0.0)	3 (6.8)	16 (36.4)	16 (36.4)	9 (20.5)	44 (100.0)
전라남도	3 (5.4)	10 (17.9)	19 (33.9)	14 (25.0)	10 (17.9)	56 (100.0)
경상북도	4 (5.6)	7 (9.9)	24 (33.8)	22 (31.0)	14 (19.7)	71 (100.0)
경상남도	0 (0.0)	5 (8.3)	25 (41.7)	27 (45.0)	3 (5.0)	60 (100.0)
제주도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전체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386 (100.0)

주: $\chi^2=46.449$, $p=0.01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3〉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상호 협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1 (25.0)	2 (50.0)	1 (25.0)	0 (0.0)	4 (100.0)
강원도	0 (0.0)	2 (3.4)	18 (31.0)	26 (44.8)	12 (20.7)	58 (100.0)
충청남도	2 (2.2)	10 (10.9)	38 (41.3)	30 (32.6)	12 (13.0)	92 (100.0)
전라북도	0 (0.0)	8 (18.2)	13 (29.5)	16 (36.4)	7 (15.9)	44 (100.0)
전라남도	2 (3.5)	15 (26.3)	18 (31.6)	13 (22.8)	9 (15.8)	57 (100.0)
경상북도	3 (4.2)	8 (11.3)	33 (46.5)	12 (16.9)	15 (21.1)	71 (100.0)
경상남도	1 (1.7)	6 (10.0)	25 (41.7)	23 (38.3)	5 (8.3)	60 (100.0)
제주도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387 (100.0)

주: $\chi^2=45.345$, $p=0.02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4〉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적극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경기도	0 (0.0)	1 (25.0)	3 (75.0)	0 (0.0)	0 (0.0)	4 (100.0)
강원도	0 (0.0)	2 (3.4)	22 (37.9)	24 (41.4)	10 (17.2)	58 (100.0)
충청남도	2 (2.2)	15 (16.3)	43 (46.7)	22 (23.9)	10 (10.9)	92 (100.0)
전라북도	0 0.0	9 (20.5)	15 (34.1)	13 (29.5)	7 (15.9)	44 (100.0)
전라남도	1 (1.8)	13 (22.8)	25 (43.9)	12 (21.1)	6 (10.5)	57 (100.0)
경상북도	5 (7.0)	9 (12.7)	32 (45.1)	13 (18.3)	12 (16.9)	71 (100.0)
경상남도	1 (1.7)	12 (20.0)	23 (38.3)	21 (35.0)	3 (5.0)	60 (100.0)
제주도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전체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387 (100.0)

주: $\chi^2=39.162$, $p=0.07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5〉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자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경기도	1 (16.7)	1 (16.7)	1 (16.7)	0 (0.0)	3 (50.0)	0 (0.0)	0 (0.0)	0 (0.0)	6 (100.0)
강원도	24 (41.4)	13 (22.4)	5 (8.6)	2 (3.4)	4 (6.9)	1 (1.7)	9 (15.5)	0 (0.0)	58 (100.0)
충청남도	28 (30.8)	22 (24.2)	2 (2.2)	11 (12.1)	18 (19.8)	0 (0.0)	10 (11.0)	0 (0.0)	91 (100.0)
전라북도	18 (40.9)	7 (15.9)	2 (4.5)	1 (2.3)	8 (18.2)	0 (0.0)	8 (18.2)	0 (0.0)	44 (100.0)
전라남도	15 (26.3)	16 (28.1)	9 (15.8)	5 (8.8)	6 (10.5)	1 (1.8)	5 (8.8)	0 (0.0)	57 (100.0)
경상북도	12 (16.9)	26 (36.6)	8 (11.3)	7 (9.9)	10 (14.1)	1 (1.4)	7 (9.9)	0 (0.0)	71 (100.0)
경상남도	27 (45.0)	8 (13.3)	7 (11.7)	5 (8.3)	3 (5.0)	1 (1.7)	8 (13.3)	1 (1.7)	60 (100.0)
제주도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전체	125 (32.2)	94 (24.2)	34 (8.8)	31 (8.0)	52 (13.4)	4 (1.0)	47 (12.1)	1 (0.3)	388 (100.0)

주: $\chi^2=66.720$, $p=0.047$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6〉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6 (2.9)	28 (13.7)	98 (48.0)	35 (17.2)	37 (18.1)	204 (100.0)
강원도	1 (0.7)	16 (11.4)	35 (25.0)	74 (52.9)	14 (10.0)	140 (100.0)
충청북도	0 (0.0)	25 (20.5)	41 (33.6)	28 (23.0)	28 (23.0)	122 (100.0)
충청남도	6 (2.7)	15 (6.8)	51 (23.1)	118 (53.4)	31 (14.0)	221 (100.0)
전라북도	1 (0.6)	19 (11.2)	50 (29.6)	76 (45.0)	23 (13.6)	169 (100.0)
전라남도	3 (1.3)	19 (8.1)	63 (26.7)	102 (43.2)	49 (20.8)	236 (100.0)
경상북도	2 (0.7)	37 (12.1)	100 (32.7)	119 (38.9)	48 (15.7)	306 (100.0)
경상남도	3 (1.5)	17 (8.5)	54 (26.9)	98 (48.8)	29 (14.4)	201 (100.0)
제주도	0 (0.0)	8 (16.7)	21 (43.8)	12 (25.0)	7 (14.6)	48 (100.0)
전체	22 (1.3)	184 (11.2)	513 (31.1)	662 (40.2)	266 (16.2)	1,647 (100.0)

주: $\chi^2=133.04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7〉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경기도	114 (56.4)	39 (19.3)	27 (13.4)	12 (5.9)	10 (5.0)	202 (100.0)
강원도	91 (65.5)	27 (19.4)	17 (12.2)	4 (2.9)	0 (0.0)	139 (100.0)
충청북도	72 (59.5)	25 (20.7)	20 (16.5)	4 (3.3)	0 (0.0)	121 (100.0)
충청남도	144 (64.9)	42 (18.9)	29 (13.1)	6 (2.7)	1 (0.5)	222 (100.0)
전라북도	110 (65.9)	29 (17.4)	26 (15.6)	0 (0.0)	2 (1.2)	167 (100.0)
전라남도	146 (62.1)	40 (17.0)	38 (16.2)	5 (2.1)	6 (2.6)	235 (100.0)
경상북도	179 (58.9)	68 (22.4)	44 (14.5)	7 (2.3)	6 (2.0)	304 (100.0)
경상남도	135 (67.2)	45 (22.4)	16 (8.0)	3 (1.5)	2 (1.0)	201 (100.0)
제주도	24 (50.0)	7 (14.6)	11 (22.9)	2 (4.2)	4 (8.3)	48 (100.0)
전체	1,015 (61.9)	322 (19.6)	228 (13.9)	43 (2.6)	31 (1.9)	1,639 (100.0)

주: $\chi^2=63.294$,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8〉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12 (5.9)	12 (5.9)	85 (42.1)	71 (35.1)	22 (10.9)	202 (100.0)
강원도	2 (1.4)	7 (4.9)	60 (42.3)	65 (45.8)	8 (5.6)	142 (100.0)
충청북도	2 (1.7)	7 (5.8)	56 (46.7)	32 (26.7)	23 (19.2)	120 (100.0)
충청남도	6 (2.7)	11 (4.9)	88 (39.5)	97 (43.5)	21 (9.4)	223 (100.0)
전라북도	0 (0.0)	8 (4.7)	78 (46.2)	67 (39.6)	16 (9.5)	169 (100.0)
전라남도	10 (4.2)	6 (2.5)	110 (46.4)	87 (36.7)	24 (10.1)	237 (100.0)
경상북도	4 (1.3)	21 (6.9)	138 (45.5)	93 (30.7)	47 (15.5)	303 (100.0)
경상남도	3 (1.5)	16 (8.0)	97 (48.5)	73 (36.5)	11 (5.5)	200 (100.0)
제주도	0 (0.0)	3 (6.3)	27 (56.3)	9 (18.8)	9 (18.8)	48 (100.0)
전체	39 (2.4)	91 (5.5)	739 (45.0)	594 (36.1)	181 (11.0)	1,644 (100.0)

주: $\chi^2=77.196$,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29〉 응답자 거주지역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경기도	47 (23.0)	77 (37.7)	23 (11.3)	23 (11.3)	34 (16.7)	204 (100.0)
강원도	50 (35.5)	52 (36.9)	15 (10.6)	13 (9.2)	11 (7.8)	141 (100.0)
충청북도	22 (18.2)	45 (37.2)	18 (14.9)	22 (18.2)	14 (11.6)	121 (100.0)
충청남도	72 (32.3)	92 (41.3)	20 (9.0)	17 (7.6)	22 (9.9)	223 (100.0)
전라북도	47 (27.8)	62 (36.7)	21 (12.4)	17 (10.1)	22 (13.0)	169 (100.0)
전라남도	60 (25.5)	89 (37.9)	25 (10.6)	31 (13.2)	30 (12.8)	235 (100.0)
경상북도	75 (24.6)	106 (34.8)	44 (14.4)	34 (11.1)	46 (15.1)	305 (100.0)
경상남도	51 (25.5)	91 (45.5)	21 (10.5)	18 (9.0)	19 (9.5)	200 (100.0)
제주도	9 (18.8)	11 (22.9)	9 (18.8)	9 (18.8)	10 (20.8)	48 (100.0)
전체	433 (26.3)	625 (38.0)	196 (11.9)	184 (11.2)	208 (12.6)	1,646 (100.0)

주: $\chi^2=52.387$, $p=0.01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0〉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지방 농정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지자체 정책	회원	31 (8.0)	81 (20.8)	186 (47.8)	64 (16.5)	27 (6.9)	389 (100.0)
	비회원	51 (4.1)	237 (18.9)	632 (50.5)	284 (22.7)	48 (3.8)	1,252 (100.0)
	전체	82 (5.0)	318 (19.4)	818 (49.8)	348 (21.2)	75 (4.6)	1,641 (100.0)
지방의회	회원	39 (10.0)	108 (27.8)	168 (43.2)	53 (13.6)	21 (5.4)	389 (100.0)
	비회원	114 (9.1)	342 (27.4)	561 (44.9)	183 (14.6)	50 (4.0)	1,250 (100.0)
	전체	153 (9.3)	450 (27.5)	729 (44.5)	236 (14.4)	71 (4.3)	1,639 (100.0)
지역농협	회원	42 (10.8)	104 (26.7)	142 (36.5)	70 (18.0)	31 (8.0)	389 (100.0)
	비회원	72 (5.8)	231 (18.5)	513 (41.1)	337 (27.0)	95 (7.6)	1,248 (100.0)
	전체	114 (7.0)	335 (20.5)	655 (40.0)	407 (24.9)	126 (7.7)	1,637 (100.0)
농업기술 센터	회원	24 (6.2)	55 (14.2)	154 (39.7)	109 (28.1)	46 (11.9)	388 (100.0)
	비회원	40 (3.2)	171 (13.7)	473 (37.9)	449 (36.0)	115 (9.2)	1,248 (100.0)
	전체	64 (3.9)	226 (13.8)	627 (38.3)	558 (34.1)	161 (9.8)	1,636 (100.0)

주: 지자체 $\chi^2=21.688$, $p=0.000$ / 지방의회 $\chi^2=2.021$, $p=0.732$ / 지역농협 $\chi^2=31.868$, $p=0.000$ / 농업기술센터 $\chi^2=14.509$, $p=0.00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1〉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정 참여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관심도	회원	6 (1.5)	18 (4.6)	106 (27.2)	160 (41.1)	99 (25.4)	389 (100.0)
	비회원	32 (2.6)	146 (11.7)	463 (37.0)	468 (37.4)	141 (11.3)	1,250 (100.0)
	전체	38 (2.3)	164 (10.0)	569 (34.7)	628 (38.3)	240 (14.6)	1,639 (100.0)
참여도	회원	7 (1.8)	47 (12.1)	137 (35.2)	130 (33.4)	68 (17.5)	389 (100.0)
	비회원	44 (3.5)	237 (19.0)	516 (41.4)	366 (29.4)	84 (6.7)	1,247 (100.0)
	전체	51 (3.1)	284 (17.4)	653 (39.9)	496 (30.3)	152 (9.3)	1,636 (100.0)
영향력	회원	18 (4.6)	96 (24.7)	142 (36.6)	89 (22.9)	43 (11.1)	388 (100.0)
	비회원	76 (6.1)	287 (23.0)	546 (43.7)	260 (20.8)	80 (6.4)	1,249 (100.0)
	전체	94 (5.7)	383 (23.4)	688 (42.0)	349 (21.3)	123 (7.5)	1,637 (100.0)

주: 관심도 $\chi^2=65.999$, $p=0.000$ / 참여도 $\chi^2=52.311$, $p=0.000$ / 영향력 $\chi^2=14.284$, $p=0.00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2〉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최근 3년간 농정 의견 제안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회원	253 (65.0)	136 (35.0)	389 (100.0)
비회원	452 (36.1)	801 (63.9)	1,253 (100.0)
전체	705 (42.9)	937 (57.1)	1,642 (100.0)

주: $\chi^2=101.64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3〉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지자체 의견 수렴 평가 및 농정참여 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지자체 의견 수렴	회원	27 (7.0)	145 (37.6)	172 (44.6)	27 (7.0)	15 (3.9)	386 (100.0)
	비회원	90 (7.2)	491 (39.5)	437 (35.1)	68 (5.5)	158 (12.7)	1,244 (100.0)
	전체	117 (7.2)	636 (39.0)	609 (37.4)	95 (5.8)	173 (10.6)	1,630 (100.0)
농정참여 제도 필요성	회원	6 (1.5)	30 (7.7)	149 (38.3)	199 (51.2)	5 (1.3)	389 (100.0)
	비회원	25 (2.0)	126 (10.1)	540 (43.2)	484 (38.7)	76 (6.1)	1,251 (100.0)
	전체	31 (1.9)	156 (9.5)	689 (42.0)	683 (41.6)	81 (4.9)	1,640 (100.0)

주: 지자체 의견 수렴 $\chi^2=30.059$, $p=0.000$ / 농정참여 제도 $\chi^2=28.59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4〉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정참여 제약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 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 모름	전체
회원	40 (10.3)	44 (11.3)	99 (25.4)	68 (17.5)	123 (31.6)	4 (1.0)	11 (2.8)	389 (100.0)
비회원	128 (10.2)	265 (21.2)	329 (26.3)	260 (20.8)	225 (18.0)	13 (1.0)	31 (2.5)	1,251 (100.0)
전체	168 (10.2)	309 (18.8)	428 (26.1)	328 (20.0)	348 (21.2)	17 (1.0)	42 (2.6)	1,640 (100.0)

주: $\chi^2=43.18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5〉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회원	266 (68.4)	114 (29.3)	7 (1.8)	2 (0.5)	389 (100.0)
비회원	99 (7.9)	268 (21.4)	404 (32.3)	480 (38.4)	1,251 (100.0)
전체	365 (22.3)	382 (23.3)	411 (25.1)	482 (29.4)	1,640 (100.0)

주: $\chi^2=750.17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6〉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회원	5 (1.3)	17 (4.4)	103 (26.5)	255 (65.7)	8 (2.1)	388 (100.0)
비회원	21 (1.7)	83 (6.6)	649 (51.8)	369 (29.5)	130 (10.4)	1,252 (100.0)
전체	26 (1.6)	100 (6.1)	752 (45.9)	624 (38.0)	138 (8.4)	1,640 (100.0)

주: $\chi^2=170.72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7〉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안 해결	회원	9 (2.3)	14 (3.6)	60 (15.4)	119 (30.6)	187 (48.1)	389 (100.0)
	비회원	26 (2.1)	89 (7.1)	346 (27.7)	598 (47.8)	191 (15.3)	1,250 (100.0)
	전체	35 (2.1)	103 (6.3)	406 (24.8)	717 (43.7)	378 (23.1)	1,639 (100.0)
협력적 의사 결정	회원	9 (2.3)	21 (5.4)	55 (14.1)	127 (32.6)	177 (45.5)	389 (100.0)
	비회원	19 (1.5)	85 (6.8)	351 (28.1)	592 (47.5)	200 (16.0)	1,247 (100.0)
	전체	28 (1.7)	106 (6.5)	406 (24.8)	719 (43.9)	377 (23.0)	1,636 (100.0)
의사 대변	회원	12 (3.1)	22 (5.7)	71 (18.3)	126 (32.4)	158 (40.6)	389 (100.0)
	비회원	27 (2.2)	135 (10.8)	424 (34.0)	495 (39.7)	165 (13.2)	1,246 (100.0)
	전체	39 (2.4)	157 (9.6)	495 (30.3)	621 (38.0)	323 (19.8)	1,635 (100.0)

주: 현안 해결 $\chi^2=182.421$, $p=0.000$ / 협력적 의사 결정 $\chi^2=151.970$, $p=0.000$ / 의사 대변 $\chi^2=150.35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8〉 농업회의소 회원의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정관 정비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388 (100.0)
민주적 의사 결정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388 (100.0)
재정 자립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387 (100.0)
사무국 인적 자원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387 (100.0)
자발적 참여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387 (100.0)
회의소 공감대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386 (100.0)
회원 상호 협력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387 (100.0)
회원 적극성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387 (1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39〉 농업회의소 회원의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자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자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빈도	125 (32.2)	94 (24.2)	34 (8.8)	31 (8.0)	52 (13.4)	4 (1.0)	47 (12.1)	1 (0.3)	388 (1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0〉 농업회의소 비회원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20 (1.6)	179 (14.3)	483 (38.7)	306 (24.5)	260 (20.8)	1,248 (1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1〉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의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 기여	농어업인 목소리를 하나로 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 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회원	98 (26.1)	82 (21.8)	42 (11.2)	58 (15.4)	68 (18.1)	27 (7.2)	0 (0.0)	1 (0.3)	376 (100.0)
비회원	226 (29.1)	126 (16.2)	144 (18.5)	122 (15.7)	78 (10.0)	76 (9.8)	1 (0.1)	4 (0.5)	777 (100.0)
전체	324 (28.1)	208 (18.0)	186 (16.1)	180 (15.6)	146 (12.7)	103 (8.9)	1 (0.1)	5 (0.4)	1,153 (100.0)

주: $\chi^2=29.46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2〉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회원	271 (69.7)	55 (14.1)	52 (13.4)	10 (2.6)	1 (0.3)	389 (100.0)
비회원	734 (59.3)	267 (21.6)	173 (14.0)	33 (2.7)	30 (2.4)	1,237 (100.0)
전체	1005 (61.8)	322 (19.8)	225 (13.8)	43 (2.6)	31 (1.9)	1,626 (100.0)

주: $\chi^2=20.78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3〉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회비납부 의무화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회원	7 (1.8)	37 (9.5)	193 (49.6)	143 (36.8)	9 (2.3)	389 (100.0)
비회원	51 (4.1)	294 (23.6)	580 (46.6)	135 (10.9)	184 (14.8)	1,244 (100.0)
전체	58 (3.6)	331 (20.3)	773 (47.3)	278 (17.0)	193 (11.8)	1,633 (100.0)

주: $\chi^2=190.01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4〉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수준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회원	112 (33.3)	144 (42.9)	44 (13.1)	4 (1.2)	32 (9.5)	336 (100.0)
비회원	237 (33.5)	306 (43.2)	59 (8.3)	15 (2.1)	91 (12.9)	708 (100.0)
전체	349 (33.4)	450 (43.1)	103 (9.9)	19 (1.8)	123 (11.8)	1,044 (100.0)

주: $\chi^2=8.468$, $p=0.07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5〉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회원	3 (0.8)	9 (2.3)	109 (28.2)	257 (66.4)	9 (2.3)	387 (100.0)
비회원	36 (2.9)	81 (6.5)	626 (50.3)	331 (26.6)	170 (13.7)	1,244 (100.0)
전체	39 (2.4)	90 (5.5)	735 (45.1)	588 (36.1)	179 (11.0)	1,631 (100.0)

주: $\chi^2=211.35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6〉 농업회의소 회원 여부에 따른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회원	213 (54.8)	110 (28.3)	27 (6.9)	22 (5.7)	17 (4.4)	389 (100.0)
비회원	216 (17.4)	512 (41.2)	167 (13.4)	160 (12.9)	189 (15.2)	1,244 (100.0)
전체	429 (26.3)	622 (38.1)	194 (11.9)	182 (11.1)	206 (12.6)	1,633 (100.0)

주: $\chi^2=222.43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7〉 응답자 성별 농정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지자체 정책	남성	62 (4.7)	270 (20.4)	649 (49.1)	275 (20.8)	65 (4.9)	1,321 (100.0)
	여성	20 (6.2)	51 (15.7)	173 (53.2)	70 (21.5)	11 (3.4)	325 (100.0)
	전체	82 (5.0)	321 (19.5)	822 (49.9)	345 (21.0)	76 (4.6)	1,646 (100.0)
지방의회	남성	131 (9.9)	381 (28.9)	572 (43.4)	181 (13.7)	54 (4.1)	1,319 (100.0)
	여성	23 (7.1)	71 (21.8)	158 (48.6)	54 (16.6)	19 (5.8)	325 (100.0)
	전체	154 (9.4)	452 (27.5)	730 (44.4)	235 (14.3)	73 (4.4)	1,644 (100.0)
지역 농협	남성	96 (7.3)	283 (21.5)	519 (39.4)	326 (24.7)	94 (7.1)	1,318 (100.0)
	여성	19 (5.9)	55 (17.0)	138 (42.6)	80 (24.7)	32 (9.9)	324 (100.0)
	전체	115 (7.0)	338 (20.6)	657 (40.0)	406 (24.7)	126 (7.7)	1,642 (100.0)
농업기술 센터	남성	53 (4.0)	194 (14.7)	504 (38.2)	436 (33.1)	131 (9.9)	1,318 (100.0)
	여성	11 (3.4)	33 (10.2)	128 (39.6)	121 (37.5)	30 (9.3)	323 (100.0)
	전체	64 (3.9)	227 (13.8)	632 (38.5)	557 (33.9)	161 (9.8)	1,641 (100.0)

주: 지자체 $\chi^2=6.406$, $p=0.171$ / 지방의회 $\chi^2=11.916$, $p=0.018$ / 지역농협 $\chi^2=6.528$, $p=0.163$ / 농업

기술센터 $\chi^2=5.763$, $p=0.21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8〉 응답자 성별 농정 참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관심도	남성	31 (2.4)	127 (9.6)	457 (34.6)	500 (37.9)	204 (15.5)	1,319 (100.0)
	여성	7 (2.2)	38 (11.7)	115 (35.4)	129 (39.7)	36 (11.1)	325 (100.0)
	전체	38 (2.3)	165 (10.0)	572 (34.8)	629 (38.3)	240 (14.6)	1,644 (100.0)
참여도	남성	38 (2.9)	241 (18.3)	524 (39.8)	389 (29.5)	125 (9.5)	1,317 (100.0)
	여성	13 (4.0)	46 (14.2)	131 (40.4)	107 (33.0)	27 (8.3)	324 (100.0)
	전체	51 (3.1)	287 (17.5)	655 (39.9)	496 (30.2)	152 (9.3)	1,641 (100.0)
영향력	남성	81 (6.1)	326 (24.7)	551 (41.8)	263 (19.9)	98 (7.4)	1,319 (100.0)
	여성	14 (4.3)	59 (18.2)	142 (43.8)	85 (26.2)	24 (7.4)	324 (100.0)
	전체	95 (5.8)	385 (23.4)	693 (42.2)	348 (21.2)	122 (7.4)	1,643 (100.0)

주: 관심도 $\chi^2=4.849$, $p=0.303$ / 참여도 $\chi^2=5.014$, $p=0.286$ / 영향력 $\chi^2=11.315$, $p=0.02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49〉 응답자 성별 최근 3년간 농정 제안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남성	635 (48.0)	687 (52.0)	1,322 (100.0)
여성	74 (22.8)	251 (77.2)	325 (100.0)
전체	709 (43.0)	938 (57.0)	1,647 (100.0)

주: $\chi^2=67.91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0〉 응답자 성별 지자체 의견 수렴 평가 및 농정참여 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의견 수렴	남성	95 (7.2)	545 (41.5)	483 (36.8)	79 (6.0)	112 (8.5)	1,314 (100.0)
	여성	22 (6.9)	95 (29.6)	127 (39.6)	17 (5.3)	60 (18.7)	321 (100.0)
	전체	117 (7.2)	640 (39.1)	610 (37.3)	96 (5.9)	172 (10.5)	1,635 (100.0)
참여 제도 필요성	남성	24 (1.8)	133 (10.1)	531 (40.2)	582 (44.1)	51 (3.9)	1,321 (100.0)
	여성	7 (2.2)	24 (7.4)	156 (48.1)	106 (32.7)	31 (9.6)	324 (100.0)
	전체	31 (1.9)	157 (9.5)	687 (41.8)	688 (41.8)	82 (5.0)	1,645 (100.0)

주: 의견 수렴 $\chi^2=35.478$, $p=0.000$ / 참여 제도 필요성 $\chi^2=31.03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1〉 응답자 성별 농정 참여 제약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모름	전체
남성	130 (9.8)	236 (17.9)	356 (26.9)	254 (19.2)	308 (23.3)	13 (1.0)	24 (1.8)	1,321 (100.0)
여성	39 (12.0)	76 (23.5)	73 (22.5)	72 (22.2)	42 (13.0)	4 (1.2)	18 (5.6)	324 (100.0)
전체	169 (10.3)	312 (19.0)	429 (26.1)	326 (19.8)	350 (21.3)	17 (1.0)	42 (2.6)	1,645 (100.0)

주: $\chi^2=36.14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2〉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남성	326 (24.7)	307 (23.3)	317 (24.0)	370 (28.0)	1,320 (100.0)
여성	37 (11.4)	77 (23.7)	100 (30.8)	111 (34.2)	325 (100.0)
전체	363 (22.1)	384 (23.3)	417 (25.3)	481 (29.2)	1,645 (100.0)

주: $\chi^2=29.00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3〉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성	19 (1.4)	81 (6.1)	589 (44.6)	531 (40.2)	101 (7.6)	1,321 (100.0)
여성	7 (2.2)	17 (5.2)	168 (51.7)	95 (29.2)	38 (11.7)	325 (100.0)
전체	26 (1.6)	98 (6.0)	757 (46.0)	626 (38.0)	139 (8.4)	1,646 (100.0)

주: $\chi^2=17.369$, $p=0.00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4〉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안 해결	남성	30 (2.3)	76 (5.8)	303 (22.9)	577 (43.7)	335 (25.4)	1,321 (100.0)
	여성	5 (1.5)	26 (8.0)	106 (32.7)	144 (44.4)	43 (13.3)	324 (100.0)
	전체	35 (2.1)	102 (6.2)	409 (24.9)	721 (43.8)	378 (23.0)	1,645 (100.0)
협력적 의사 결정	남성	33 (2.5)	122 (9.3)	380 (28.8)	505 (38.3)	278 (21.1)	1,318 (100.0)
	여성	6 (1.9)	34 (10.5)	117 (36.2)	120 (37.2)	46 (14.2)	323 (100.0)
	전체	39 (2.4)	156 (9.5)	497 (30.3)	625 (38.1)	324 (19.7)	1,641 (100.0)
의사 대변	남성	22 (1.7)	88 (6.7)	309 (23.4)	571 (43.3)	329 (24.9)	1,319 (100.0)
	여성	6 (1.9)	19 (5.9)	99 (30.7)	150 (46.4)	49 (15.2)	323 (100.0)
	전체	28 (1.7)	107 (6.5)	408 (24.8)	721 (43.9)	378 (23.0)	1,642 (100.0)

주: 현안 해결 $\chi^2=29.399$, $p=0.000$ / 협력적 의사 결정 $\chi^2=17.102$, $p=0.002$ / 의사 대변 $\chi^2=11.835$, $p=0.01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5〉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정관 정비	남성	4 (1.2)	15 (4.3)	98 (28.3)	147 (42.5)	82 (23.7)	346 (100.0)
	여성	1 (2.4)	3 (7.3)	14 (34.1)	14 (34.1)	9 (22.0)	41 (100.0)
	전체	5 (1.3)	18 (4.7)	112 (28.9)	161 (41.6)	91 (23.5)	387 (100.0)
민주적 의사 결정	남성	5 (1.4)	16 (4.6)	80 (23.1)	138 (39.9)	107 (30.9)	346 (100.0)
	여성	0 (0.0)	3 (7.3)	13 (31.7)	16 (39.0)	9 (22.0)	41 (100.0)
	전체	5 (1.3)	19 (4.9)	93 (24.0)	154 (39.8)	116 (30.0)	387 (100.0)
재정자립	남성	37 (10.7)	124 (35.9)	126 (36.5)	41 (11.9)	17 (4.9)	345 (100.0)
	여성	4 (9.8)	12 (29.3)	17 (41.5)	5 (12.2)	3 (7.3)	41 (100.0)
	전체	41 (10.6)	136 (35.2)	143 (37.0)	46 (11.9)	20 (5.2)	386 (100.0)
사무국 인적 자원	남성	27 (7.8)	114 (32.9)	126 (36.4)	62 (17.9)	17 (4.9)	346 (100.0)
	여성	1 (2.5)	9 (22.5)	18 (45.0)	9 (22.5)	3 (7.5)	40 (100.0)
	전체	28 (7.3)	123 (31.9)	144 (37.3)	71 (18.4)	20 (5.2)	386 (100.0)
자발적 참여	남성	9 (2.6)	34 (9.9)	64 (18.6)	131 (38.0)	107 (31.0)	345 (100.0)
	여성	1 (2.4)	0 (0.0)	14 (34.1)	13 (31.7)	13 (31.7)	41 (100.0)
	전체	10 (2.6)	34 (8.8)	78 (20.2)	144 (37.3)	120 (31.1)	386 (100.0)
공감대	남성	7 (2.0)	35 (10.2)	110 (32.0)	134 (39.0)	58 (16.9)	344 (100.0)
	여성	1 (2.4)	2 (4.9)	15 (36.6)	16 (39.0)	7 (17.1)	41 (100.0)
	전체	8 (2.1)	37 (9.6)	125 (32.5)	150 (39.0)	65 (16.9)	385 (100.0)
회원 상호 협력	남성	8 (2.3)	49 (14.2)	127 (36.8)	109 (31.6)	52 (15.1)	345 (100.0)
	여성	0 (0.0)	2 (4.9)	19 (46.3)	12 (29.3)	8 (19.5)	41 (100.0)
	전체	8 (2.1)	51 (13.2)	146 (37.8)	121 (31.3)	60 (15.5)	386 (100.0)
회원 적극성	남성	9 (2.6)	56 (16.2)	143 (41.4)	94 (27.2)	43 (12.5)	345 (100.0)
	여성	0 (0.0)	5 (12.2)	20 (48.8)	11 (26.8)	5 (12.2)	41 (100.0)
	전체	9 (2.3)	61 (15.8)	163 (42.2)	105 (27.2)	48 (12.4)	386 (100.0)

주: 정관 정비 $\chi^2=2.258$, $p=0.689$ / 민주적 의사 결정 $\chi^2=3.250$, $p=0.517$ / 재정자립 $\chi^2=1.144$, $p=0.887$
 / 사무국 인적 자원 $\chi^2=4.199$, $p=0.380$ / 자발적 참여 $\chi^2=8.846$, $p=0.065$ / 공감대 $\chi^2=1.339$,
 $p=0.855$ / 회원 상호 협력 $\chi^2=4.770$, $p=0.312$ / 회원 적극성 $\chi^2=1.918$, $p=0.75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6〉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자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남성	120 (34.7)	86 (24.9)	30 (8.7)	25 (7.2)	43 (12.4)	4 (1.2)	37 (10.7)	1 (0.3)	346 (100.0)
여성	5 (12.2)	8 (19.5)	4 (9.8)	5 (12.2)	9 (22.0)	0 (0.0)	10 (24.4)	0 (0.0)	41 (100.0)
전체	125 (32.3)	94 (24.3)	34 (8.8)	30 (7.8)	52 (13.4)	4 (1.0)	47 (12.1)	1 (0.3)	387 (100.0)

주: $\chi^2=16.116$, $p=0.02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7〉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성	18 (1.4)	131 (9.9)	413 (31.3)	571 (43.3)	185 (14.0)	1,318 (100.0)
여성	4 (1.2)	51 (15.8)	98 (30.3)	90 (27.9)	80 (24.8)	323 (100.0)
전체	22 (1.3)	182 (11.1)	511 (31.1)	661 (40.3)	265 (16.1)	1,641 (100.0)

주: $\chi^2=42.012$, $p=0.02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8〉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 기여	농어업인 목소리 하나로 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 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남성	283 (29.0)	178 (18.3)	150 (15.4)	162 (16.6)	120 (12.3)	78 (8.0)	0 (0.0)	4 (0.4)	975 (100.0)
여성	42 (23.0)	32 (17.5)	37 (20.2)	19 (10.4)	28 (15.3)	23 (12.6)	1 (0.5)	1 (0.5)	183 (100.0)
전체	325 (28.1)	210 (18.1)	187 (16.1)	181 (15.6)	148 (12.8)	101 (8.7)	1 (0.1)	5 (0.4)	1,158 (100.0)

주: $\chi^2=18.296$, $p=0.01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59〉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재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남성	804 (61.4)	271 (20.7)	178 (13.6)	37 (2.8)	19 (1.5)	1,309 (100.0)
여성	209 (64.5)	49 (15.1)	49 (15.1)	5 (1.5)	12 (3.7)	324 (100.0)
전체	1,013 (62.0)	320 (19.6)	227 (13.9)	42 (2.6)	31 (1.9)	1,633 (100.0)

주: $\chi^2=13.562$, $p=0.00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0〉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화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성	46 (3.5)	253 (19.2)	635 (48.2)	258 (19.6)	125 (9.5)	1,317 (100.0)
여성	11 (3.4)	80 (24.7)	141 (43.5)	23 (7.1)	69 (21.3)	324 (100.0)
전체	57 (3.5)	333 (20.3)	776 (47.3)	281 (17.1)	194 (11.8)	1,641 (100.0)

주: $\chi^2=59.416$,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1〉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남성	279 (31.4)	390 (43.9)	93 (10.5)	14 (1.6)	113 (12.7)	889 (100.0)
여성	70 (43.5)	61 (37.9)	11 (6.8)	7 (4.3)	12 (7.5)	161 (100.0)
전체	349 (33.2)	451 (43.0)	104 (9.9)	21 (2.0)	125 (11.9)	1,050 (100.0)

주: $\chi^2=17.353$, $p=0.00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2〉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성	30 (2.3)	75 (5.7)	573 (43.5)	521 (39.6)	117 (8.9)	1,316 (100.0)
여성	9 (2.8)	16 (4.9)	164 (50.6)	73 (22.5)	62 (19.1)	324 (100.0)
전체	39 (2.4)	91 (5.5)	737 (44.9)	594 (36.2)	179 (10.9)	1,640 (100.0)

주: $\chi^2=49.33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3〉 응답자 성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남성	370 (28.1)	500 (38.0)	160 (12.2)	140 (10.6)	146 (11.1)	1,316 (100.0)
여성	62 (19.1)	124 (38.2)	36 (11.1)	43 (13.2)	60 (18.5)	325 (100.0)
전체	432 (26.3)	624 (38.0)	196 (11.9)	183 (11.2)	206 (12.6)	1,641 (100.0)

주: $\chi^2=21.18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4〉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농정 만족도 - 지자체 정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30대	6 (6.1)	23 (23.2)	39 (39.4)	27 (27.3)	4 (4.0)	99 (100.0)
40~50대	24 (3.8)	125 (19.8)	310 (49.1)	140 (22.2)	32 (5.1)	631 (100.0)
60대	43 (6.6)	136 (20.9)	330 (50.7)	122 (18.7)	20 (3.1)	651 (100.0)
70대	8 (3.5)	35 (15.3)	121 (52.8)	50 (21.8)	15 (6.6)	229 (100.0)
80세 이상	1 (2.6)	1 (2.6)	24 (61.5)	8 (20.5)	5 (12.8)	39 (100.0)
전체	82 (5.0)	320 (19.4)	824 (50.0)	347 (21.0)	76 (4.6)	1,649 (100.0)

주: $\chi^2=35.170$, $p=0.00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5〉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농정 만족도 - 지방의회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30대	10 (10.1)	21 (21.2)	38 (38.4)	27 (27.3)	3 (3.0)	99 (100.0)
40~50대	47 (7.4)	174 (27.6)	293 (46.4)	85 (13.5)	32 (5.1)	631 (100.0)
60대	78 (12.0)	197 (30.3)	275 (42.3)	80 (12.3)	20 (3.1)	650 (100.0)
70대	18 (7.9)	53 (23.2)	108 (47.4)	35 (15.4)	14 (6.1)	228 (100.0)
80세 이상	1 (2.6)	7 (17.9)	17 (43.6)	10 (25.6)	4 (10.3)	39 (100.0)
전체	154 (9.4)	452 (27.4)	731 (44.4)	237 (14.4)	73 (4.4)	1,647 (100.0)

주: $\chi^2=43.93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6〉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농정 만족도 - 지역농협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30대	8 (8.1)	25 (25.3)	28 (28.3)	34 (34.3)	4 (4.0)	99 (100.0)
40~50대	50 (7.9)	143 (22.7)	260 (41.3)	143 (22.7)	34 (5.4)	630 (100.0)
60대	42 (6.5)	136 (21.0)	276 (42.5)	147 (22.7)	48 (7.4)	649 (100.0)
70대	14 (6.1)	29 (12.7)	80 (35.1)	72 (31.6)	33 (14.5)	228 (100.0)
80세 이상	1 (2.6)	3 (7.7)	17 (43.6)	10 (25.6)	8 (20.5)	39 (100.0)
전체	115 (7.0)	336 (20.4)	661 (40.2)	406 (24.7)	127 (7.7)	1,645 (100.0)

주: $\chi^2=59.44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7〉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농정 만족도 - 농업기술센터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0~30대	3 (3.0)	17 (17.2)	36 (36.4)	37 (37.4)	6 (6.1)	99 (100.0)
40~50대	27 (4.3)	98 (15.6)	240 (38.1)	208 (33.0)	57 (9.0)	630 (100.0)
60대	23 (3.5)	83 (12.8)	252 (38.9)	230 (35.5)	60 (9.3)	648 (100.0)
70대	9 (3.9)	25 (11.0)	89 (39.0)	72 (31.6)	33 (14.5)	228 (100.0)
80세 이상	2 (5.1)	3 (7.7)	15 (38.5)	13 (33.3)	6 (15.4)	39 (100.0)
전체	64 (3.9)	226 (13.7)	632 (38.4)	560 (34.1)	162 (9.9)	1,644 (100.0)

주: $\chi^2=15.630$, $p=0.47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8〉 응답자 연령대별 농정 참여 -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 30대	3 (3.0)	17 (17.2)	31 (31.3)	39 (39.4)	9 (9.1)	99 (100.0)
40~ 50대	6 (0.9)	61 (9.7)	224 (35.4)	253 (40.0)	88 (13.9)	632 (100.0)
60대	18 (2.8)	56 (8.6)	219 (33.7)	252 (38.8)	105 (16.2)	650 (100.0)
70대	9 (4.0)	26 (11.5)	80 (35.2)	77 (33.9)	35 (15.4)	227 (100.0)
80세 이상	2 (5.1)	4 (10.3)	19 (48.7)	11 (28.2)	3 (7.7)	39 (100.0)
전체	38 (2.3)	164 (10.0)	573 (34.8)	632 (38.4)	240 (14.6)	1,647 (100.0)

주: $\chi^2=27.130$, $p=0.04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69〉 응답자 연령대별 농정 참여 - 참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 30대	3 (3.0)	18 (18.2)	38 (38.4)	34 (34.3)	6 (6.1)	99 (100.0)
40~ 50대	14 (2.2)	105 (16.7)	255 (40.6)	199 (31.7)	55 (8.8)	628 (100.0)
60대	26 (4.0)	117 (18.0)	263 (40.4)	188 (28.9)	57 (8.8)	651 (100.0)
70대	5 (2.2)	43 (18.9)	82 (36.1)	69 (30.4)	28 (12.3)	227 (100.0)
80세 이상	3 (7.7)	2 (5.1)	19 (48.7)	8 (20.5)	7 (17.9)	39 (100.0)
전체	51 (3.1)	285 (17.3)	657 (40.0)	498 (30.3)	153 (9.3)	1,644 (100.0)

주: $\chi^2=21.722$, $p=0.15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0〉 응답자 연령대별 농정 참여 - 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 30대	6 (6.1)	22 (22.2)	38 (38.4)	26 (26.3)	7 (7.1)	99 (100.0)
40~ 50대	31 (4.9)	159 (25.2)	269 (42.6)	128 (20.3)	44 (7.0)	631 (100.0)
60대	46 (7.1)	157 (24.2)	268 (41.3)	133 (20.5)	45 (6.9)	649 (100.0)
70대	10 (4.4)	43 (18.9)	101 (44.3)	49 (21.5)	25 (11.0)	228 (100.0)
80세 이상	2 (5.1)	3 (7.7)	18 (46.2)	13 (33.3)	3 (7.7)	39 (100.0)
전체	95 (5.8)	384 (23.3)	694 (42.2)	349 (21.2)	124 (7.5)	1,646 (100.0)

주: $\chi^2=20.158$, $p=0.21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1〉 응답자 연령대별 최근 3년 농정 제안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20~30대	57 (57.6)	42 (42.4)	99 (100.0)
40~50대	251 (39.8)	380 (60.2)	631 (100.0)
60대	319 (49.0)	332 (51.0)	651 (100.0)
70대	76 (33.0)	154 (67.0)	230 (100.0)
80세 이상	7 (17.9)	32 (82.1)	39 (100.0)
전체	710 (43.0)	940 (57.0)	1,650 (100.0)

주: $\chi^2=40.10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2〉 응답자 연령대별 지자체 의견 수렴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9 (9.4)	29 (30.2)	42 (43.8)	5 (5.2)	11 (11.5)	96 (100.0)
40~50대	49 (7.8)	262 (41.7)	216 (34.4)	38 (6.1)	63 (10.0)	628 (100.0)
60대	46 (7.1)	272 (42.0)	236 (36.5)	33 (5.1)	60 (9.3)	647 (100.0)
70대	11 (4.8)	67 (29.4)	105 (46.1)	14 (6.1)	31 (13.6)	228 (100.0)
80세 이상	2 (5.1)	9 (23.1)	14 (35.9)	6 (15.4)	8 (20.5)	39 (100.0)
전체	117 (7.1)	639 (39.0)	613 (37.4)	96 (5.9)	173 (10.6)	1,638 (100.0)

주: $\chi^2=36.549$, $p=0.00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3〉 응답자 연령대별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1 (1.0)	9 (9.2)	47 (48.0)	34 (34.7)	7 (7.1)	98 (100.0)
40~50대	10 (1.6)	64 (10.1)	243 (38.4)	290 (45.9)	25 (4.0)	632 (100.0)
60대	14 (2.2)	65 (10.0)	258 (39.7)	291 (44.8)	22 (3.4)	650 (100.0)
70대	6 (2.6)	18 (7.9)	119 (52.0)	63 (27.5)	23 (10.0)	229 (100.0)
80세 이상	0 0.0	1 (2.6)	24 (61.5)	9 (23.1)	5 (12.8)	39 (100.0)
전체	31 (1.9)	157 (9.5)	691 (41.9)	687 (41.7)	82 (5.0)	1,648 (100.0)

주: $\chi^2=59.70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4〉 응답자 연령대별 농정 참여 제약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 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 모름	전체
20~ 30대	9 (9.3)	19 (19.6)	42 (43.3)	14 (14.4)	8 (8.2)	1 (1.0)	4 (4.1)	97 (100.0)
40~ 50대	66 (10.5)	130 (20.6)	177 (28.1)	131 (20.8)	118 (18.7)	5 (0.8)	4 (0.6)	631 (100.0)
60대	64 (9.8)	111 (17.1)	151 (23.2)	144 (22.1)	163 (25.0)	6 (0.9)	12 (1.8)	651 (100.0)
70대	27 (11.7)	47 (20.4)	52 (22.6)	36 (15.7)	51 (22.2)	3 (1.3)	14 (6.1)	230 (100.0)
80세 이상	4 (10.3)	5 (12.8)	9 (23.1)	2 (5.1)	9 (23.1)	2 (5.1)	8 (20.5)	39 (100.0)
전체	170 (10.3)	312 (18.9)	431 (26.2)	327 (19.8)	349 (21.2)	17 (1.0)	42 (2.5)	1,648 (100.0)

주: $\chi^2=121.969$,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5〉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20~ 30대	20 (20.2)	27 (27.3)	29 (29.3)	23 (23.2)	99 (100.0)
40~ 50대	128 (20.3)	171 (27.1)	168 (26.6)	164 (26.0)	631 (100.0)
60대	185 (28.5)	127 (19.6)	142 (21.9)	195 (30.0)	649 (100.0)
70대	30 (13.0)	52 (22.6)	67 (29.1)	81 (35.2)	230 (100.0)
80세 이상	2 (5.1)	7 (17.9)	13 (33.3)	17 (43.6)	39 (100.0)
전체	365 (22.1)	384 (23.3)	419 (25.4)	480 (29.1)	1,648 (100.0)

주: $\chi^2=51.27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6〉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1 (1.0)	9 (9.1)	61 (61.6)	21 (21.2)	7 (7.1)	99 (100.0)
40~50대	13 (2.1)	35 (5.5)	285 (45.1)	253 (40.0)	46 (7.3)	632 (100.0)
60대	11 (1.7)	36 (5.5)	260 (40.1)	283 (43.6)	59 (9.1)	649 (100.0)
70대	1 (0.4)	17 (7.4)	131 (57.0)	59 (25.7)	22 (9.6)	230 (100.0)
80세 이상	0 0.0	2 (5.1)	21 (53.8)	10 (25.6)	6 (15.4)	39 (100.0)
전체	26 (1.6)	99 (6.0)	758 (46.0)	626 (38.0)	140 (8.5)	1,649 (100.0)

주: $\chi^2=51.70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7〉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현안 해결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2 (2.0)	8 (8.1)	33 (33.3)	47 (47.5)	9 (9.1)	99 (100.0)
40~50대	9 (1.4)	31 (4.9)	163 (25.8)	300 (47.5)	128 (20.3)	631 (100.0)
60대	19 (2.9)	41 (6.3)	134 (20.6)	268 (41.3)	187 (28.8)	649 (100.0)
70대	3 (1.3)	18 (7.8)	65 (28.3)	97 (42.2)	47 (20.4)	230 (100.0)
80세 이상	2 (5.1)	5 (12.8)	15 (38.5)	9 (23.1)	8 (20.5)	39 (100.0)
전체	35 (2.1)	103 (6.3)	410 (24.9)	721 (43.8)	379 (23.0)	1,648 (100.0)

주: $\chi^2=51.33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8〉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협력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1.0)	4 (4.0)	38 (38.4)	43 (43.4)	13 (13.1)	99 (100.0)
40~50대	10 (1.6)	30 (4.8)	163 (25.9)	301 (47.8)	126 (20.0)	630 (100.0)
60대	12 (1.9)	53 (8.2)	133 (20.5)	271 (41.8)	179 (27.6)	648 (100.0)
70대	5 (2.2)	19 (8.3)	61 (26.6)	95 (41.5)	49 (21.4)	229 (100.0)
80세 이상	0 0.0	1 (2.6)	16 (41.0)	12 (30.8)	10 (25.6)	39 (100.0)
전체	28 (1.7)	107 (6.5)	411 (25.0)	722 (43.9)	377 (22.9)	1,645 (100.0)

주: $\chi^2=44.58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79〉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의사 대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2 (2.0)	15 (15.2)	31 (31.3)	41 (41.4)	10 (10.1)	99 (100.0)
40~50대	12 (1.9)	50 (7.9)	205 (32.5)	261 (41.4)	102 (16.2)	630 (100.0)
60대	19 (2.9)	58 (9.0)	174 (26.9)	236 (36.5)	160 (24.7)	647 (100.0)
70대	5 (2.2)	32 (14.0)	70 (30.6)	76 (33.2)	46 (20.1)	229 (100.0)
80세 이상	1 (2.6)	2 (5.1)	18 (46.2)	12 (30.8)	6 (15.4)	39 (100.0)
전체	39 (2.4)	157 (9.5)	498 (30.3)	626 (38.1)	324 (19.7)	1,644 (100.0)

주: $\chi^2=40.856$,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0〉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정관 정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0 (0.0)	5 (41.7)	4 (33.3)	2 (16.7)	12 (100.0)
40~50대	1 (0.8)	6 (4.8)	33 (26.4)	59 (47.2)	26 (20.8)	125 (100.0)
60대	3 (1.5)	9 (4.4)	58 (28.6)	83 (40.9)	50 (24.6)	203 (100.0)
70대	0 (0.0)	3 (7.0)	14 (32.6)	13 (30.2)	13 (30.2)	43 (100.0)
80세 이상	0 (0.0)	0 (0.0)	2 (40.0)	3 (60.0)	0 (0.0)	5 (100.0)
전체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388 (100.0)

주: $\chi^2=13.857$, $p=0.60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1〉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민주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1 (8.3)	4 (33.3)	3 (25.0)	3 (25.0)	12 (100.0)
40~50대	1 (0.8)	4 (3.2)	31 (24.8)	57 (45.6)	32 (25.6)	125 (100.0)
60대	3 (1.5)	13 (6.4)	44 (21.7)	74 (36.5)	69 (34.0)	203 (100.0)
70대	0 (0.0)	1 (2.3)	12 (27.9)	18 (41.9)	12 (27.9)	43 (100.0)
80세 이상	0 (0.0)	0 (0.0)	2 (40.0)	3 (60.0)	0 (0.0)	5 (100.0)
전체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388 (100.0)

주: $\chi^2=16.446$, $p=0.42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2〉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재정자립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2 (16.7)	3 (25.0)	5 (41.7)	2 (16.7)	0 0.0	12 (100.0)
40~50대	10 (8.0)	45 (36.0)	47 (37.6)	17 (13.6)	6 (4.8)	125 (100.0)
60대	26 (12.9)	77 (38.1)	70 (34.7)	19 (9.4)	10 (5.0)	202 (100.0)
70대	3 (7.0)	11 (25.6)	18 (41.9)	7 (16.3)	4 (9.3)	43 (100.0)
80세 이상	0 0.0	0 0.0	4 (80.0)	1 (20.0)	0 0.0	5 (100.0)
전체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387 (100.0)

주: $\chi^2=15.070$, $p=0.52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3〉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사무국 인적 자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5 (41.7)	4 (33.3)	1 (8.3)	1 (8.3)	12 (100.0)
40~50대	5 (4.0)	42 (33.9)	47 (37.9)	25 (20.2)	5 (4.0)	124 (100.0)
60대	20 (9.9)	64 (31.5)	71 (35.0)	36 (17.7)	12 (5.9)	203 (100.0)
70대	2 (4.7)	11 (25.6)	20 (46.5)	8 (18.6)	2 (4.7)	43 (100.0)
80세 이상	0 0.0	1 (20.0)	3 (60.0)	1 (20.0)	0 0.0	5 (100.0)
전체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387 (100.0)

주: $\chi^2=9.723$, $p=0.88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4〉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자발적 참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1 (8.3)	3 (25.0)	3 (25.0)	4 (33.3)	12 (100.0)
40~50대	4 (3.2)	11 (8.8)	21 (16.8)	56 (44.8)	33 (26.4)	125 (100.0)
60대	4 (2.0)	16 (7.9)	45 (22.2)	71 (35.0)	67 (33.0)	203 (100.0)
70대	1 (2.4)	6 (14.3)	9 (21.4)	12 (28.6)	14 (33.3)	42 (100.0)
80세 이상	0 0.0	0 0.0	1 (20.0)	2 (40.0)	2 (40.0)	5 (100.0)
전체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387 (100.0)

주: $\chi^2=10.361$, $p=0.847$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5〉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공감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1 (8.3)	4 (33.3)	3 (25.0)	3 (25.0)	12 (100.0)
40~50대	1 (0.8)	12 (9.6)	43 (34.4)	51 (40.8)	18 (14.4)	125 (100.0)
60대	6 (3.0)	20 (9.9)	62 (30.7)	80 (39.6)	34 (16.8)	202 (100.0)
70대	0 0.0	4 (9.5)	15 (35.7)	14 (33.3)	9 (21.4)	42 (100.0)
80세 이상	0 0.0	0 0.0	2 (40.0)	2 (40.0)	1 (20.0)	5 (100.0)
전체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386 (100.0)

주: $\chi^2=8.632$, $p=0.92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6〉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상호 협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1 (8.3)	4 (33.3)	4 (33.3)	2 (16.7)	12 (100.0)
40~50대	1 (0.8)	14 (11.2)	53 (42.4)	40 (32.0)	17 (13.6)	125 (100.0)
60대	6 (3.0)	31 (15.3)	76 (37.4)	58 (28.6)	32 (15.8)	203 (100.0)
70대	0 0.0	5 (11.9)	12 (28.6)	17 (40.5)	8 (19.0)	42 (100.0)
80세 이상	0 0.0	0 0.0	2 (40.0)	2 (40.0)	1 (20.0)	5 (100.0)
전체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387 (100.0)

주: $\chi^2=11.166$, $p=0.79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7〉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적극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30대	1 (8.3)	3 (25.0)	4 (33.3)	2 (16.7)	2 (16.7)	12 (100.0)
40~50대	1 (0.8)	19 (15.2)	57 (45.6)	35 (28.0)	13 (10.4)	125 (100.0)
60대	7 (3.4)	34 (16.7)	84 (41.4)	55 (27.1)	23 (11.3)	203 (100.0)
70대	0 0.0	5 (11.9)	15 (35.7)	13 (31.0)	9 (21.4)	42 (100.0)
80세 이상	0 0.0	0 0.0	4 (80.0)	0 0.0	1 (20.0)	5 (100.0)
전체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387 (100.0)

주: $\chi^2=15.849$, $p=0.46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8〉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자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자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20~ 30대	2 (18.2)	1 (9.1)	2 (18.2)	0 0.0	5 (45.5)	0 0.0	1 (9.1)	0 0.0	11 (100.0)
40~ 50대	38 (30.4)	33 (26.4)	9 (7.2)	12 (9.6)	18 (14.4)	1 (0.8)	13 (10.4)	1 (0.8)	125 (100.0)
60대	79 (38.7)	46 (22.5)	19 (9.3)	14 (6.9)	24 (11.8)	1 (0.5)	21 (10.3)	0 0.0	204 (100.0)
70대	6 (14.0)	13 (30.2)	4 (9.3)	5 (11.6)	4 (9.3)	1 (2.3)	10 (23.3)	0 0.0	43 (100.0)
80세 이상	0 0.0	1 (20.0)	0 0.0	0 0.0	1 (20.0)	1 (20.0)	2 (40.0)	0 0.0	5 (100.0)
전체	125 (32.2)	94 (24.2)	34 (8.8)	31 (8.0)	52 (13.4)	4 (1.0)	47 (12.1)	1 (0.3)	388 (100.0)

주: $\chi^2=55.656$,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89〉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2 (2.0)	8 (8.1)	34 (34.3)	32 (32.3)	23 (23.2)	99 (100.0)
40~50대	9 (1.4)	51 (8.1)	214 (34.0)	245 (38.9)	111 (17.6)	630 (100.0)
60대	6 (0.9)	64 (9.9)	187 (28.9)	298 (46.0)	93 (14.4)	648 (100.0)
70대	4 (1.7)	49 (21.4)	70 (30.6)	74 (32.3)	32 (14.0)	229 (100.0)
80세 이상	0 0.0	11 (29.7)	8 (21.6)	12 (32.4)	6 (16.2)	37 (100.0)
전체	21 (1.3)	183 (11.1)	513 (31.2)	661 (40.2)	265 (16.1)	1,643 (100.0)

주: $\chi^2=63.44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0〉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 기여	농어업인 목소리 하나로 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 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20~ 30대	18 (27.7)	11 (16.9)	17 (26.2)	11 (16.9)	7 (10.8)	1 (1.5)	0 0.0	0 0.0	65 (100.0)
40~ 50대	132 (28.9)	90 (19.7)	75 (16.4)	76 (16.7)	43 (9.4)	38 (8.3)	1 (0.2)	1 (0.2)	456 (100.0)
60대	132 (27.6)	89 (18.6)	61 (12.8)	72 (15.1)	74 (15.5)	48 (10.0)	0 0.0	2 (0.4)	478 (100.0)
70대	39 (27.5)	18 (12.7)	29 (20.4)	21 (14.8)	19 (13.4)	14 (9.9)	0 0.0	2 (1.4)	142 (100.0)
80세 이상	4 (21.1)	2 (10.5)	5 (26.3)	1 (5.3)	5 (26.3)	2 (10.5)	0 0.0	0 0.0	19 (100.0)
전체	325 (28.0)	210 (18.1)	187 (16.1)	181 (15.6)	148 (12.8)	103 (8.9)	1 (0.1)	5 (0.4)	1,160 (100.0)

주: $\chi^2=36.651$, $p=0.127$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1〉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자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20~ 30대	49 (50.0)	34 (34.7)	10 (10.2)	2 (2.0)	3 (3.1)	98 (100.0)
40~ 50대	387 (61.5)	136 (21.6)	78 (12.4)	23 (3.7)	5 (0.8)	629 (100.0)
60대	416 (64.7)	112 (17.4)	92 (14.3)	11 (1.7)	12 (1.9)	643 (100.0)
70대	138 (60.8)	33 (14.5)	43 (18.9)	4 (1.8)	9 (4.0)	227 (100.0)
80세 이상	23 (60.5)	6 (15.8)	5 (13.2)	2 (5.3)	2 (5.3)	38 (100.0)
전체	1013 (62.0)	321 (19.6)	228 (13.9)	42 (2.6)	31 (1.9)	1,635 (100.0)

주: $\chi^2=45.42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2〉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6 (6.1)	20 (20.4)	42 (42.9)	13 (13.3)	17 (17.3)	98 (100.0)
40~50대	27 (4.3)	147 (23.4)	282 (44.8)	105 (16.7)	68 (10.8)	629 (100.0)
60대	17 (2.6)	116 (17.8)	313 (48.2)	144 (22.2)	60 (9.2)	650 (100.0)
70대	5 (2.2)	44 (19.3)	124 (54.4)	16 (7.0)	39 (17.1)	228 (100.0)
80세 이상	2 (5.3)	6 (15.8)	16 (42.1)	4 (10.5)	10 (26.3)	38 (100.0)
전체	57 (3.5)	333 (20.3)	777 (47.3)	282 (17.2)	194 (11.8)	1,643 (100.0)

주: $\chi^2=59.268$,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3〉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20~30대	14 (25.5)	21 (38.2)	11 (20.0)	2 (3.6)	7 (12.7)	55 (100.0)
40~50대	125 (32.6)	170 (44.4)	39 (10.2)	11 (2.9)	38 (9.9)	383 (100.0)
60대	143 (31.4)	197 (43.3)	45 (9.9)	7 (1.5)	63 (13.8)	455 (100.0)
70대	59 (42.4)	58 (41.7)	9 (6.5)	1 (0.7)	12 (8.6)	139 (100.0)
80세 이상	7 (35.0)	7 (35.0)	0 (0.0)	0 (0.0)	6 (30.0)	20 (100.0)
전체	348 (33.1)	453 (43.1)	104 (9.9)	21 (2.0)	126 (12.0)	1,052 (100.0)

주: $\chi^2=28.888$, $p=0.02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4〉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30대	4 (4.0)	8 (8.1)	49 (49.5)	26 (26.3)	12 (12.1)	99 (100.0)
40~50대	16 (2.5)	28 (4.5)	295 (46.9)	228 (36.2)	62 (9.9)	629 (100.0)
60대	13 (2.0)	37 (5.7)	265 (41.0)	268 (41.5)	63 (9.8)	646 (100.0)
70대	6 (2.6)	18 (7.9)	106 (46.3)	64 (27.9)	35 (15.3)	229 (100.0)
80세 이상	0 0.0	0 0.0	23 (60.5)	7 (18.4)	8 (21.1)	38 (100.0)
전체	39 (2.4)	91 (5.5)	738 (45.0)	593 (36.1)	180 (11.0)	1,641 (100.0)

주: $\chi^2=39.205$, $p=0.00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5〉 응답자 연령대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20~ 30대	10 (10.1)	45 (45.5)	24 (24.2)	7 (7.1)	13 (13.1)	99 (100.0)
40~ 50대	142 (22.5)	292 (46.3)	80 (12.7)	63 (10.0)	53 (8.4)	630 (100.0)
60대	212 (32.8)	214 (33.1)	66 (10.2)	77 (11.9)	78 (12.1)	647 (100.0)
70대	61 (26.6)	63 (27.5)	21 (9.2)	31 (13.5)	53 (23.1)	229 (100.0)
80세 이상	8 (21.1)	9 (23.7)	5 (13.2)	6 (15.8)	10 (26.3)	38 (100.0)
전체	433 (26.4)	623 (37.9)	196 (11.9)	184 (11.2)	207 (12.6)	1,643 (100.0)

주: $\chi^2=105.05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6〉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정 만족도 - 지자체 정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5년	4 (2.4)	28 (16.8)	88 (52.7)	40 (24.0)	7 (4.2)	167 (100.0)
6~10년	10 (3.2)	66 (21.2)	142 (45.7)	79 (25.4)	14 (4.5)	311 (100.0)
11~20년	19 (4.6)	92 (22.1)	209 (50.1)	89 (21.3)	8 (1.9)	417 (100.0)
21~30년	17 (6.3)	57 (21.2)	134 (49.8)	47 (17.5)	14 (5.2)	269 (100.0)
31년 이상	32 (6.6)	78 (16.1)	249 (51.6)	92 (19.0)	32 (6.6)	483 (100.0)
전체	82 (5.0)	321 (19.5)	822 (49.9)	347 (21.1)	75 (4.6)	1,647 (100.0)

주: $\chi^2=32.522$, $p=0.00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7〉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정 만족도 - 지방의회 농정 활동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5년	5 (3.0)	41 (24.6)	82 (49.1)	34 (20.4)	5 (3.0)	167 (100.0)
6~10년	28 (9.0)	83 (26.8)	138 (44.5)	46 (14.8)	15 (4.8)	310 (100.0)
11~20년	47 (11.3)	125 (30.0)	184 (44.2)	53 (12.7)	7 (1.7)	416 (100.0)
21~30년	32 (11.9)	89 (33.1)	109 (40.5)	24 (8.9)	15 (5.6)	269 (100.0)
31년 이상	42 (8.7)	115 (23.8)	217 (44.9)	79 (16.4)	30 (6.2)	483 (100.0)
전체	154 (9.4)	453 (27.5)	730 (44.4)	236 (14.3)	72 (4.4)	1,645 (100.0)

주: $\chi^2=44.05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8〉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정 만족도 - 지역농협사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5년	7 (4.2)	31 (18.6)	68 (40.7)	53 (31.7)	8 (4.8)	167 (100.0)
6~10년	16 (5.2)	66 (21.4)	126 (40.8)	85 (27.5)	16 (5.2)	309 (100.0)
11~20년	33 (8.0)	93 (22.4)	182 (43.9)	80 (19.3)	27 (6.5)	415 (100.0)
21~30년	36 (13.4)	64 (23.8)	96 (35.7)	57 (21.2)	16 (5.9)	269 (100.0)
31년 이상	23 (4.8)	83 (17.2)	189 (39.1)	128 (26.5)	60 (12.4)	483 (100.0)
전체	115 (7.0)	337 (20.5)	661 (40.2)	403 (24.5)	127 (7.7)	1,643 (100.0)

주: $\chi^2=62.52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99〉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정 만족도 - 농업기술센터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5년	3 (1.8)	25 (15.0)	58 (34.7)	67 (40.1)	14 (8.4)	167 (100.0)
6~10년	10 (3.2)	37 (12.0)	116 (37.5)	121 (39.2)	25 (8.1)	309 (100.0)
11~20년	17 (4.1)	66 (15.9)	168 (40.4)	133 (32.0)	32 (7.7)	416 (100.0)
21~30년	13 (4.9)	39 (14.6)	103 (38.4)	89 (33.2)	24 (9.0)	268 (100.0)
31년 이상	21 (4.4)	60 (12.4)	187 (38.8)	147 (30.5)	67 (13.9)	482 (100.0)
전체	64 (3.9)	227 (13.8)	632 (38.5)	557 (33.9)	162 (9.9)	1,642 (100.0)

주: $\chi^2=25.278$, $p=0.06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0〉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방농정 참여 -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1 (0.6)	25 (15.0)	69 (41.3)	62 (37.1)	10 (6.0)	167 (100.0)
6~10년	6 (1.9)	36 (11.6)	124 (39.9)	115 (37.0)	30 (9.6)	311 (100.0)
11~20년	6 (1.4)	48 (11.5)	145 (34.8)	167 (40.0)	51 (12.2)	417 (100.0)
21~30년	7 (2.6)	17 (6.3)	90 (33.5)	106 (39.4)	49 (18.2)	269 (100.0)
31년 이상	18 (3.7)	39 (8.1)	143 (29.7)	182 (37.8)	99 (20.6)	481 (100.0)
전체	38 (2.3)	165 (10.0)	571 (34.7)	632 (38.4)	239 (14.5)	1,645 (100.0)

주: $\chi^2=57.568$,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1〉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방농정 참여 - 참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3 (1.8)	24 (14.4)	78 (46.7)	55 (32.9)	7 (4.2)	167 (100.0)
6~10년	11 (3.5)	61 (19.7)	142 (45.8)	80 (25.8)	16 (5.2)	310 (100.0)
11~20년	15 (3.6)	78 (18.7)	167 (40.0)	129 (30.9)	28 (6.7)	417 (100.0)
21~30년	7 (2.6)	49 (18.4)	101 (38.0)	74 (27.8)	35 (13.2)	266 (100.0)
31년 이상	15 (3.1)	74 (15.4)	168 (34.9)	159 (33.0)	66 (13.7)	482 (100.0)
전체	51 (3.1)	286 (17.4)	656 (40.0)	497 (30.3)	152 (9.3)	1,642 (100.0)

주: $\chi^2=45.10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2〉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방농정 참여 - 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5 (3.0)	32 (19.2)	82 (49.1)	39 (23.4)	9 (5.4)	167 (100.0)
6~10년	20 (6.4)	72 (23.1)	144 (46.2)	58 (18.6)	18 (5.8)	312 (100.0)
11~20년	30 (7.2)	110 (26.4)	173 (41.6)	81 (19.5)	22 (5.3)	416 (100.0)
21~30년	18 (6.7)	76 (28.4)	101 (37.7)	53 (19.8)	20 (7.5)	268 (100.0)
31년 이상	22 (4.6)	94 (19.5)	195 (40.5)	117 (24.3)	53 (11.0)	481 (100.0)
전체	95 (5.8)	384 (23.4)	695 (42.3)	348 (21.2)	122 (7.4)	1,644 (100.0)

주: $\chi^2=35.503$, $p=0.00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3〉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최근 3년 농정 제안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1~5년	59 (35.3)	108 (64.7)	167 (100.0)
6~10년	111 (35.7)	200 (64.3)	311 (100.0)
11~20년	184 (44.0)	234 (56.0)	418 (100.0)
21~30년	139 (51.7)	130 (48.3)	269 (100.0)
31년 이상	218 (45.1)	265 (54.9)	483 (100.0)
전체	711 (43.1)	937 (56.9)	1,648 (100.0)

주: $\chi^2=20.08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4〉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자체 농정 의견 수렴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5 (3.0)	68 (41.0)	62 (37.3)	8 (4.8)	23 (13.9)	166 (100.0)
6~10년	24 (7.8)	129 (41.9)	96 (31.2)	18 (5.8)	41 (13.3)	308 (100.0)
11~20년	33 (8.0)	178 (42.9)	141 (34.0)	20 (4.8)	43 (10.4)	415 (100.0)
21~30년	20 (7.5)	124 (46.6)	94 (35.3)	12 (4.5)	16 (6.0)	266 (100.0)
31년 이상	35 (7.3)	141 (29.3)	219 (45.5)	37 (7.7)	49 (10.2)	481 (100.0)
전체	117 (7.2)	640 (39.1)	612 (37.4)	95 (5.8)	172 (10.5)	1,636 (100.0)

주: $\chi^2=49.71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5〉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자체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1 (0.6)	20 (12.0)	78 (47.0)	54 (32.5)	13 (7.8)	166 (100.0)
6~10년	4 (1.3)	34 (10.9)	133 (42.6)	129 (41.3)	12 (3.8)	312 (100.0)
11~20년	12 (2.9)	50 (12.0)	159 (38.0)	179 (42.8)	18 (4.3)	418 (100.0)
21~30년	6 (2.2)	31 (11.6)	92 (34.3)	130 (48.5)	9 (3.4)	268 (100.0)
31년 이상	8 (1.7)	22 (4.6)	226 (46.9)	196 (40.7)	30 (6.2)	482 (100.0)
전체	31 (1.9)	157 (9.5)	688 (41.8)	688 (41.8)	82 (5.0)	1,646 (100.0)

주: $\chi^2=44.92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6〉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지자체 농정 참여 장애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 모름	전체
1~5년	26 (15.7)	45 (27.1)	42 (25.3)	29 (17.5)	21 (12.7)	0 0.0	3 (1.8)	166 (100.0)
6~10년	29 (9.4)	61 (19.7)	107 (34.5)	68 (21.9)	39 (12.6)	2 (0.6)	4 (1.3)	310 (100.0)
11~20년	42 (10.0)	78 (18.7)	112 (26.8)	96 (23.0)	85 (20.3)	2 (0.5)	3 (0.7)	418 (100.0)
21~30년	23 (8.6)	39 (14.5)	63 (23.4)	53 (19.7)	83 (30.9)	6 (2.2)	2 (0.7)	269 (100.0)
31년 이상	50 (10.4)	88 (18.2)	104 (21.5)	82 (17.0)	122 (25.3)	7 (1.4)	30 (6.2)	483 (100.0)
전체	170 (10.3)	311 (18.9)	428 (26.0)	328 (19.9)	350 (21.3)	17 (1.0)	42 (2.6)	1,646 (100.0)

주: $\chi^2=109.75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7〉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1~5년	18 (10.8)	42 (25.1)	56 (33.5)	51 (30.5)	167 (100.0)
6~10년	33 (10.6)	81 (26.0)	91 (29.3)	106 (34.1)	311 (100.0)
11~20년	79 (18.9)	78 (18.7)	120 (28.8)	140 (33.6)	417 (100.0)
21~30년	80 (29.9)	64 (23.9)	53 (19.8)	71 (26.5)	268 (100.0)
31년 이상	156 (32.3)	119 (24.6)	97 (20.1)	111 (23.0)	483 (100.0)
전체	366 (22.2)	384 (23.3)	417 (25.3)	479 (29.1)	1,646 (100.0)

주: $\chi^2=94.486$,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8〉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3 (1.8)	12 (7.2)	92 (55.1)	45 (26.9)	15 (9.0)	167 (100.0)
6~10년	6 (1.9)	16 (5.1)	162 (51.9)	98 (31.4)	30 (9.6)	312 (100.0)
11~20년	8 (1.9)	31 (7.5)	181 (43.5)	158 (38.0)	38 (9.1)	416 (100.0)
21~30년	4 (1.5)	17 (6.3)	118 (43.9)	113 (42.0)	17 (6.3)	269 (100.0)
31년 이상	5 (1.0)	23 (4.8)	204 (42.2)	212 (43.9)	39 (8.1)	483 (100.0)
전체	26 (1.6)	99 (6.0)	757 (46.0)	626 (38.0)	139 (8.4)	1,647 (100.0)

주: $\chi^2=29.534$, $p=0.02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09〉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현안 해결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5 (3.0)	12 (7.2)	48 (28.9)	86 (51.8)	15 (9.0)	166 (100.0)
6~10년	2 (0.6)	27 (8.7)	73 (23.5)	156 (50.2)	53 (17.0)	311 (100.0)
11~20년	8 (1.9)	26 (6.2)	109 (26.1)	188 (45.1)	86 (20.6)	417 (100.0)
21~30년	7 (2.6)	18 (6.7)	55 (20.4)	124 (46.1)	65 (24.2)	269 (100.0)
31년 이상	13 (2.7)	20 (4.1)	124 (25.7)	166 (34.4)	160 (33.1)	483 (100.0)
전체	35 (2.1)	103 (6.3)	409 (24.8)	720 (43.7)	379 (23.0)	1,646 (100.0)

주: $\chi^2=72.64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0〉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협력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3 (1.8)	5 (3.0)	54 (32.5)	89 (53.6)	15 (9.0)	166 (100.0)
6~10년	2 (0.6)	26 (8.4)	78 (25.2)	145 (46.8)	59 (19.0)	310 (100.0)
11~20년	6 (1.4)	27 (6.5)	115 (27.6)	187 (45.0)	81 (19.5)	416 (100.0)
21~30년	5 (1.9)	18 (6.7)	58 (21.6)	123 (45.9)	64 (23.9)	268 (100.0)
31년 이상	12 (2.5)	31 (6.4)	105 (21.7)	177 (36.6)	158 (32.7)	483 (100.0)
전체	28 (1.7)	107 (6.5)	410 (25.0)	721 (43.9)	377 (22.9)	1,643 (100.0)

주: $\chi^2=65.74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1〉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에 대한 기대 - 의사 대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4 (2.4)	12 (7.2)	72 (43.4)	64 (38.6)	14 (8.4)	166 (100.0)
6~10년	7 (2.3)	37 (11.9)	84 (27.1)	142 (45.8)	40 (12.9)	310 (100.0)
11~20년	11 (2.6)	39 (9.4)	141 (33.9)	159 (38.2)	66 (15.9)	416 (100.0)
21~30년	5 (1.9)	26 (9.7)	74 (27.7)	104 (39.0)	58 (21.7)	267 (100.0)
31년 이상	12 (2.5)	43 (8.9)	126 (26.1)	157 (32.5)	145 (30.0)	483 (100.0)
전체	39 (2.4)	157 (9.6)	497 (30.3)	626 (38.1)	323 (19.7)	1,642 (100.0)

주: $\chi^2=75.75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2〉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정관 정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1 (10.0)	0 (0.0)	3 (30.0)	2 (20.0)	4 (40.0)	10 (100.0)
6~10년	0 0.0	1 (3.0)	11 (33.3)	13 (39.4)	8 (24.2)	33 (100.0)
11~20년	2 (2.5)	4 (5.1)	24 (30.4)	34 (43.0)	15 (19.0)	79 (100.0)
21~30년	0 (0.0)	4 (4.9)	20 (24.7)	42 (51.9)	15 (18.5)	81 (100.0)
31년 이상	2 (1.1)	9 (4.9)	54 (29.2)	71 (38.4)	49 (26.5)	185 (100.0)
전체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388 (100.0)

주: $\chi^2=16.979$, $p=0.387$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3〉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민주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1 (10.0)	1 (10.0)	5 (50.0)	3 (30.0)	10 (100.0)
6~10년	0 (0.0)	1 (3.0)	11 (33.3)	14 (42.4)	7 (21.2)	33 (100.0)
11~20년	2 (2.5)	4 (5.1)	19 (24.1)	29 (36.7)	25 (31.6)	79 (100.0)
21~30년	0 (0.0)	7 (8.6)	18 (22.2)	37 (45.7)	19 (23.5)	81 (100.0)
31년 이상	3 (1.6)	6 (3.2)	44 (23.8)	70 (37.8)	62 (33.5)	185 (100.0)
전체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388 (100.0)

주: $\chi^2=13.185$, $p=0.65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4〉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재정자립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2 (20.0)	3 (30.0)	5 (50.0)	0 (0.0)	0 (0.0)	10 (100.0)
6~10년	4 (12.5)	12 (37.5)	12 (37.5)	4 (12.5)	0 0.0	32 (100.0)
11~20년	14 (17.7)	26 (32.9)	28 (35.4)	8 (10.1)	3 (3.8)	79 (100.0)
21~30년	6 (7.4)	23 (28.4)	32 (39.5)	13 (16.0)	7 (8.6)	81 (100.0)
31년 이상	15 (8.1)	72 (38.9)	67 (36.2)	21 (11.4)	10 (5.4)	185 (100.0)
전체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387 (100.0)

주: $\chi^2=16.297$ $p=0.43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5〉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사무국 인적 자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5 (50.0)	5 (50.0)	0 (0.0)	0 (0.0)	10 (100.0)
6~10년	3 (9.1)	15 (45.5)	8 (24.2)	6 (18.2)	1 (3.0)	33 (100.0)
11~20년	8 (10.1)	25 (31.6)	27 (34.2)	15 (19.0)	4 (5.1)	79 (100.0)
21~30년	3 (3.7)	28 (34.6)	31 (38.3)	14 (17.3)	5 (6.2)	81 (100.0)
31년 이상	14 (7.6)	50 (27.2)	74 (40.2)	36 (19.6)	10 (5.4)	184 (100.0)
전체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387 (100.0)

주: $\chi^2=13.257$ $p=0.65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6〉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자발적 참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0 (0.0)	1 (10.0)	6 (60.0)	3 (30.0)	10 (100.0)
6~10년	0 (0.0)	3 (9.1)	8 (24.2)	13 (39.4)	9 (27.3)	33 (100.0)
11~20년	5 (6.3)	8 (10.1)	14 (17.7)	33 (41.8)	19 (24.1)	79 (100.0)
21~30년	1 (1.3)	9 (11.3)	19 (23.8)	29 (36.3)	22 (27.5)	80 (100.0)
31년 이상	4 (2.2)	14 (7.6)	37 (20.0)	63 (34.1)	67 (36.2)	185 (100.0)
전체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387 (100.0)

주: $\chi^2=15.203$ $p=0.51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7〉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공감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1 (10.0)	3 (30.0)	5 (50.0)	1 (10.0)	10 (100.0)
6~10년	0 (0.0)	4 (12.1)	12 (36.4)	13 (39.4)	4 (12.1)	33 (100.0)
11~20년	5 (6.3)	6 (7.6)	20 (25.3)	34 (43.0)	14 (17.7)	79 (100.0)
21~30년	0 (0.0)	11 (13.8)	27 (33.8)	32 (40.0)	10 (12.5)	80 (100.0)
31년 이상	3 (1.6)	15 (8.2)	64 (34.8)	66 (35.9)	36 (19.6)	184 (100.0)
전체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386 (100.0)

주: $\chi^2=17.353$ $p=0.363$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8〉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상호 협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0 (0.0)	5 (50.0)	3 (30.0)	2 (20.0)	10 (100.0)
6~10년	0 (0.0)	6 (18.2)	14 (42.4)	9 (27.3)	4 (12.1)	33 (100.0)
11~20년	4 (5.1)	12 (15.2)	26 (32.9)	24 (30.4)	13 (16.5)	79 (100.0)
21~30년	1 (1.3)	10 (12.5)	36 (45.0)	22 (27.5)	11 (13.8)	80 (100.0)
31년 이상	3 (1.6)	23 (12.4)	66 (35.7)	63 (34.1)	30 (16.2)	185 (100.0)
전체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387 (100.0)

주: $\chi^2=11.087$ $p=0.80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19〉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적극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5년	0 (0.0)	1 (10.0)	5 (50.0)	4 (40.0)	0 (0.0)	10 (100.0)
6~10년	0 (0.0)	7 (21.2)	16 (48.5)	7 (21.2)	3 (9.1)	33 (100.0)
11~20년	3 (3.8)	15 (19.0)	27 (34.2)	24 (30.4)	10 (12.7)	79 (100.0)
21~30년	0 (0.0)	14 (17.5)	35 (43.8)	20 (25.0)	11 (13.8)	80 (100.0)
31년 이상	6 (3.2)	24 (13.0)	81 (43.8)	50 (27.0)	24 (13.0)	185 (100.0)
전체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387 (100.0)

주: $\chi^2=11.670$ $p=0.76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0〉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1~ 5년	4 (40.0)	1 (10.0)	1 (10.0)	1 (10.0)	1 (10.0)	0 (0.0)	2 (20.0)	0 (0.0)	10 (100.0)
6~ 10년	14 (42.4)	5 (15.2)	1 (3.0)	1 (3.0)	9 (27.3)	0 (0.0)	3 (9.1)	0 (0.0)	33 (100.0)
11~ 20년	24 (30.4)	13 (16.5)	11 (13.9)	6 (7.6)	18 (22.8)	0 (0.0)	7 (8.9)	0 (0.0)	79 (100.0)
21~ 30년	27 (33.3)	26 (32.1)	5 (6.2)	8 (9.9)	9 (11.1)	0 (0.0)	6 (7.4)	0 (0.0)	81 (100.0)
31년 이상	56 (30.3)	49 (26.5)	16 (8.6)	15 (8.1)	15 (8.1)	4 (2.2)	29 (15.7)	1 (0.5)	185 (100.0)
전체	125 (32.2)	94 (24.2)	34 (8.8)	31 (8.0)	52 (13.4)	4 (1.0)	47 (12.1)	1 (0.3)	388 (100.0)

주: $\chi^2=38.257$ $p=0.09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1〉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 5년	4 (2.4)	12 (7.2)	54 (32.3)	48 (28.7)	49 (29.3)	167 (100.0)
6~ 10년	5 (1.6)	40 (12.9)	113 (36.6)	87 (28.2)	64 (20.7)	309 (100.0)
11~ 20년	2 (0.5)	44 (10.6)	145 (34.8)	154 (36.9)	72 (17.3)	417 (100.0)
21~ 30년	4 (1.5)	24 (9.0)	83 (31.2)	121 (45.5)	34 (12.8)	266 (100.0)
31년 이상	7 (1.5)	63 (13.1)	117 (24.3)	249 (51.7)	46 (9.5)	482 (100.0)
전체	22 (1.3)	183 (11.2)	512 (31.2)	659 (40.2)	265 (16.1)	1,641 (100.0)

주: $\chi^2=94.60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2〉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 기여	농어업인 목소리를 나로 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 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1~ 5년	14 (13.9)	15 (14.9)	30 (29.7)	17 (16.8)	12 (11.9)	13 (12.9)	0 (0.0)	0 (0.0)	101 (100.0)
6~ 10년	50 (25.9)	40 (20.7)	39 (20.2)	31 (16.1)	14 (7.3)	19 (9.8)	0 (0.0)	0 (0.0)	193 (100.0)
11~ 20년	91 (30.5)	52 (17.4)	49 (16.4)	45 (15.1)	32 (10.7)	27 (9.1)	1 (0.3)	1 (0.3)	298 (100.0)
21~ 30년	77 (38.1)	36 (17.8)	14 (6.9)	41 (20.3)	22 (10.9)	11 (5.4)	0 (0.0)	1 (0.5)	202 (100.0)
31년 이상	92 (25.3)	67 (18.4)	54 (14.8)	47 (12.9)	68 (18.7)	33 (9.1)	0 (0.0)	3 (0.8)	364 (100.0)
전체	324 (28.0)	210 (18.1)	186 (16.1)	181 (15.6)	148 (12.8)	103 (8.9)	1 (0.1)	5 (0.4)	1,158 (100.0)

주: $\chi^2=75.684$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3〉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자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1~ 5년	96 (57.8)	41 (24.7)	18 (10.8)	4 (2.4)	7 (4.2)	166 (100.0)
6~ 10년	170 (55.4)	82 (26.7)	44 (14.3)	8 (2.6)	3 (1.0)	307 (100.0)
11~ 20년	262 (63.6)	72 (17.5)	63 (15.3)	11 (2.7)	4 (1.0)	412 (100.0)
21~ 30년	172 (64.4)	49 (18.4)	35 (13.1)	9 (3.4)	2 (0.7)	267 (100.0)
31년 이상	310 (64.4)	78 (16.2)	68 (14.1)	10 (2.1)	15 (3.1)	481 (100.0)
전체	1,010 (61.8)	322 (19.7)	228 (14.0)	42 (2.6)	31 (1.9)	1,633 (100.0)

주: $\chi^2=34.100$ p=0.00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4〉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회비납부 의무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6 (3.6)	48 (28.7)	68 (40.7)	19 (11.4)	26 (15.6)	167 (100.0)
6~10년	15 (4.8)	70 (22.6)	146 (47.1)	30 (9.7)	49 (15.8)	310 (100.0)
11~20년	14 (3.4)	81 (19.6)	201 (48.7)	65 (15.7)	52 (12.6)	413 (100.0)
21~30년	11 (4.1)	56 (20.9)	128 (47.8)	60 (22.4)	13 (4.9)	268 (100.0)
31년 이상	11 (2.3)	78 (16.1)	232 (48.0)	107 (22.2)	55 (11.4)	483 (100.0)
전체	57 (3.5)	333 (20.3)	775 (47.2)	281 (17.1)	195 (11.9)	1,641 (100.0)

주: $\chi^2=59.189$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조 사 결과

〈부표 2-125〉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1~5년	31 (35.6)	38 (43.7)	11 (12.6)	1 (1.1)	6 (6.9)	87 (100.0)
6~10년	60 (34.3)	79 (45.1)	16 (9.1)	4 (2.3)	16 (9.1)	175 (100.0)
11~20년	97 (36.9)	107 (40.7)	22 (8.4)	9 (3.4)	28 (10.6)	263 (100.0)
21~30년	52 (27.8)	81 (43.3)	21 (11.2)	4 (2.1)	29 (15.5)	187 (100.0)
31년 이상	106 (31.5)	147 (43.6)	34 (10.1)	3 (0.9)	47 (13.9)	337 (100.0)
전체	346 (33.0)	452 (43.1)	104 (9.9)	21 (2.0)	126 (12.0)	1,049 (100.0)

주: $\chi^2=17.123$ $p=0.37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6〉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6 (3.6)	16 (9.6)	84 (50.3)	38 (22.8)	23 (13.8)	167 (100.0)
6~10년	8 (2.6)	17 (5.5)	159 (51.1)	81 (26.0)	46 (14.8)	311 (100.0)
11~20년	12 (2.9)	25 (6.1)	181 (43.9)	149 (36.2)	45 (10.9)	412 (100.0)
21~30년	6 (2.2)	10 (3.7)	108 (40.1)	126 (46.8)	19 (7.1)	269 (100.0)
31년 이상	7 (1.5)	23 (4.8)	205 (42.7)	199 (41.5)	46 (9.6)	480 (100.0)
전체	39 (2.4)	91 (5.6)	737 (45.0)	593 (36.2)	179 (10.9)	1,639 (100.0)

주: $\chi^2=55.49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7〉 응답자 영농종사 기간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년	24 (14.5)	68 (41.0)	34 (20.5)	19 (11.4)	21 (12.7)	166 (100.0)
6~10년	49 (15.8)	136 (43.7)	40 (12.9)	38 (12.2)	48 (15.4)	311 (100.0)
11~20년	95 (22.9)	177 (42.8)	50 (12.1)	43 (10.4)	49 (11.8)	414 (100.0)
21~30년	75 (28.1)	113 (42.3)	33 (12.4)	26 (9.7)	20 (7.5)	267 (100.0)
31년 이상	190 (39.3)	129 (26.7)	39 (8.1)	57 (11.8)	68 (14.1)	483 (100.0)
전체	433 (26.4)	623 (38.0)	196 (11.9)	183 (11.2)	206 (12.6)	1,641 (100.0)

주: $\chi^2=104.43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8〉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만족도 - 지자체 정책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거의 없음	3 (2.8)	23 (21.3)	59 (54.6)	17 (15.7)	6 (5.6)	108 (100.0)
1.2백만 원	1 (1.2)	14 (16.7)	53 (63.1)	14 (16.7)	2 (2.4)	84 (100.0)
1.2~5백만 원	5 (3.0)	36 (21.6)	81 (48.5)	35 (21.0)	10 (6.0)	167 (100.0)
5백~1천만 원	10 (4.7)	36 (16.8)	118 (55.1)	46 (21.5)	4 (1.9)	214 (100.0)
1~2천만 원	11 (5.4)	43 (21.0)	103 (50.2)	45 (22.0)	3 (1.5)	205 (100.0)
2~5천만 원	19 (5.3)	66 (18.3)	178 (49.3)	82 (22.7)	16 (4.4)	361 (100.0)
0.5~1억 원	12 (4.8)	51 (20.2)	119 (47.2)	57 (22.6)	13 (5.2)	252 (100.0)
1~2억 원	11 (7.1)	34 (21.9)	63 (40.6)	32 (20.6)	15 (9.7)	155 (100.0)
2억 원 이상	9 (11.7)	11 (14.3)	36 (46.8)	16 (20.8)	5 (6.5)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6 (25.0)	12 (50.0)	3 (12.5)	2 (8.3)	24 (100.0)
전체	82 (5.0)	320 (19.4)	822 (49.9)	347 (21.1)	76 (4.6)	1,647 (100.0)

주: $\chi^2=49.145$ $p=0.071$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29〉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만족도 - 지방의회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거의 없음	10 (9.3)	24 (22.2)	50 (46.3)	17 (15.7)	7 (6.5)	108 (100.0)
1.2백만 원	5 (6.0)	24 (28.6)	45 (53.6)	8 (9.5)	2 (2.4)	84 (100.0)
1.2~5백만 원	11 (6.6)	45 (27.1)	76 (45.8)	26 (15.7)	8 (4.8)	166 (100.0)
5백~1천만 원	22 (10.3)	50 (23.4)	104 (48.6)	31 (14.5)	7 (3.3)	214 (100.0)
1~2천만 원	22 (10.8)	58 (28.4)	88 (43.1)	28 (13.7)	8 (3.9)	204 (100.0)
2~5천만 원	31 (8.6)	100 (27.7)	159 (44.0)	57 (15.8)	14 (3.9)	361 (100.0)
0.5~1억 원	27 (10.7)	75 (29.8)	106 (42.1)	33 (13.1)	11 (4.4)	252 (100.0)
1~2억 원	12 (7.7)	55 (35.5)	55 (35.5)	22 (14.2)	11 (7.1)	155 (100.0)
2억 원 이상	11 (14.3)	17 (22.1)	34 (44.2)	12 (15.6)	3 (3.9)	77 (100.0)
모름 / 무응답	3 (12.5)	4 (16.7)	13 (54.2)	2 (8.3)	2 (8.3)	24 (100.0)
전체	154 (9.4)	452 (27.5)	730 (44.4)	236 (14.3)	73 (4.4)	1,645 (100.0)

주: $\chi^2=30.657$ $p=0.72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0〉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만족도 - 지역농협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거의 없음	11 (10.2)	13 (12.0)	52 (48.1)	24 (22.2)	8 (7.4)	108 (100.0)
1.2백만 원	4 (4.8)	13 (15.5)	40 (47.6)	20 (23.8)	7 (8.3)	84 (100.0)
1.2~5백만 원	8 (4.8)	25 (15.1)	62 (37.3)	50 (30.1)	21 (12.7)	166 (100.0)
5백~1천만 원	9 (4.2)	49 (22.9)	85 (39.7)	56 (26.2)	15 (7.0)	214 (100.0)
1~2천만 원	9 (4.4)	48 (23.6)	83 (40.9)	45 (22.2)	18 (8.9)	203 (100.0)
2~5천만 원	26 (7.2)	76 (21.1)	134 (37.2)	98 (27.2)	26 (7.2)	360 (100.0)
0.5~1억 원	18 (7.1)	59 (23.4)	108 (42.9)	57 (22.6)	10 (4.0)	252 (100.0)
1~2억 원	17 (11.0)	35 (22.6)	58 (37.4)	32 (20.6)	13 (8.4)	155 (100.0)
2억 원 이상	11 (14.3)	16 (20.8)	26 (33.8)	18 (23.4)	6 (7.8)	77 (100.0)
모름 / 무응답	2 (8.3)	3 (12.5)	10 (41.7)	6 (25.0)	3 (12.5)	24 (100.0)
전체	115 (7.0)	337 (20.5)	658 (40.0)	406 (24.7)	127 (7.7)	1,643 (100.0)

주: $\chi^2=50.249$ $p=0.05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1〉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만족도 - 농업기술센터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거의 없음	4 (3.7)	14 (13.0)	50 (46.3)	31 (28.7)	9 (8.3)	108 (100.0)
1.2백만 원	1 (1.2)	16 (19.0)	36 (42.9)	24 (28.6)	7 (8.3)	84 (100.0)
1.2~5백만 원	9 (5.4)	26 (15.7)	59 (35.5)	52 (31.3)	20 (12.0)	166 (100.0)
5백~1천만 원	6 (2.8)	26 (12.1)	87 (40.7)	79 (36.9)	16 (7.5)	214 (100.0)
1~2천만 원	8 (3.9)	31 (15.2)	69 (33.8)	76 (37.3)	20 (9.8)	204 (100.0)
2~5천만 원	9 (2.5)	52 (14.4)	151 (41.9)	118 (32.8)	30 (8.3)	360 (100.0)
0.5~1억 원	12 (4.8)	31 (12.4)	93 (37.2)	93 (37.2)	21 (8.4)	250 (100.0)
1~2억 원	9 (5.8)	22 (14.2)	48 (31.0)	55 (35.5)	21 (13.5)	155 (100.0)
2억 원 이상	5 (6.5)	8 (10.4)	30 (39.0)	20 (26.0)	14 (18.2)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0 (0.0)	10 (41.7)	9 (37.5)	4 (16.7)	24 (100.0)
전체	64 (3.9)	226 (13.8)	633 (38.6)	557 (33.9)	162 (9.9)	1,642 (100.0)

주: $\chi^2=41.396$ $p=0.247$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2〉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참여 -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2 (1.9)	16 (14.8)	41 (38.0)	39 (36.1)	10 (9.3)	108 (100.0)
1.2백만 원	2 (2.4)	10 (11.9)	40 (47.6)	22 (26.2)	10 (11.9)	84 (100.0)
1.2~5백만 원	3 (1.8)	21 (12.7)	69 (41.6)	53 (31.9)	20 (12.0)	166 (100.0)
5백~1천만 원	7 (3.3)	28 (13.1)	88 (41.1)	73 (34.1)	18 (8.4)	214 (100.0)
1~2천만 원	6 (2.9)	25 (12.2)	79 (38.5)	78 (38.0)	17 (8.3)	205 (100.0)
2~5천만 원	4 (1.1)	30 (8.3)	111 (30.7)	155 (42.9)	61 (16.9)	361 (100.0)
0.5~1억 원	7 (2.8)	19 (7.5)	74 (29.4)	118 (46.8)	34 (13.5)	252 (100.0)
1~2억 원	4 (2.6)	10 (6.5)	32 (20.8)	63 (40.9)	45 (29.2)	154 (100.0)
2억 원 이상	2 (2.6)	3 (3.9)	26 (33.8)	24 (31.2)	22 (28.6)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2 (8.3)	12 (50.0)	6 (25.0)	3 (12.5)	24 (100.0)
전체	38 (2.3)	164 (10.0)	572 (34.8)	631 (38.4)	240 (14.6)	1,645 (100.0)

주: $\chi^2=106.97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3〉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참여 - 참여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7 (6.5)	20 (18.5)	44 (40.7)	28 (25.9)	9 (8.3)	108 (100.0)
1.2백만 원	2 (2.4)	12 (14.3)	45 (53.6)	20 (23.8)	5 (6.0)	84 (100.0)
1.2~5백만 원	9 (5.5)	38 (23.0)	62 (37.6)	41 (24.8)	15 (9.1)	165 (100.0)
5백~1천만 원	4 (1.9)	36 (16.8)	100 (46.7)	64 (29.9)	10 (4.7)	214 (100.0)
1~2천만 원	9 (4.4)	44 (21.6)	84 (41.2)	56 (27.5)	11 (5.4)	204 (100.0)
2~5천만 원	6 (1.7)	59 (16.4)	122 (33.9)	133 (36.9)	40 (11.1)	360 (100.0)
0.5~1억 원	7 (2.8)	43 (17.1)	100 (39.7)	77 (30.6)	25 (9.9)	252 (100.0)
1~2억 원	4 (2.6)	26 (16.9)	43 (27.9)	53 (34.4)	28 (18.2)	154 (100.0)
2억 원 이상	1 (1.3)	7 (9.1)	38 (49.4)	22 (28.6)	9 (11.7)	77 (100.0)
모름 / 무응답	2 (8.3)	2 (8.3)	17 (70.8)	2 (8.3)	1 (4.2)	24 (100.0)
전체	51 (3.1)	287 (17.5)	655 (39.9)	496 (30.2)	153 (9.3)	1,642 (100.0)

주: $\chi^2=86.83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4〉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참여 - 농정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7 (6.5)	21 (19.4)	55 (50.9)	18 (16.7)	7 (6.5)	108 (100.0)
1.2백만 원	5 (6.0)	14 (16.7)	42 (50.0)	14 (16.7)	9 (10.7)	84 (100.0)
1.2~5백만 원	11 (6.6)	34 (20.5)	76 (45.8)	33 (19.9)	12 (7.2)	166 (100.0)
5백~1천만 원	13 (6.1)	43 (20.1)	108 (50.5)	39 (18.2)	11 (5.1)	214 (100.0)
1~2천만 원	14 (6.9)	47 (23.0)	84 (41.2)	48 (23.5)	11 (5.4)	204 (100.0)
2~5천만 원	15 (4.2)	85 (23.5)	134 (37.1)	92 (25.5)	35 (9.7)	361 (100.0)
0.5~1억 원	13 (5.2)	77 (30.7)	92 (36.7)	56 (22.3)	13 (5.2)	251 (100.0)
1~2억 원	9 (5.8)	37 (23.9)	62 (40.0)	27 (17.4)	20 (12.9)	155 (100.0)
2억 원 이상	7 (9.1)	23 (29.9)	26 (33.8)	16 (20.8)	5 (6.5)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4 (16.7)	15 (62.5)	3 (12.5)	1 (4.2)	24 (100.0)
전체	95 (5.8)	385 (23.4)	694 (42.2)	346 (21.0)	124 (7.5)	1,644 (100.0)

주: $\chi^2=53.941$ p=0.02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5〉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최근 3년 농정 제안 경험

단위: 명, (%)

구분	있음	없음	보통이다
거의 없음	17 (15.7)	91 (84.3)	108 (100.0)
1.2백만 원	24 (28.6)	60 (71.4)	84 (100.0)
1.2~5백만 원	50 (29.9)	117 (70.1)	167 (100.0)
5백~1천만 원	69 (32.4)	144 (67.6)	213 (100.0)
1~2천만 원	85 (41.1)	122 (58.9)	207 (100.0)
2~5천만 원	176 (48.8)	185 (51.2)	361 (100.0)
0.5~1억 원	151 (59.9)	101 (40.1)	252 (100.0)
1~2억 원	90 (58.1)	65 (41.9)	155 (100.0)
2억 원 이상	41 (53.2)	36 (46.8)	77 (100.0)
모름 / 무응답	8 (33.3)	16 (66.7)	24 (100.0)
전체	711 (43.1)	937 (56.9)	1,648 (100.0)

주: $\chi^2=114.36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6〉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지자체 의견 수렴 평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7 (6.5)	37 (34.6)	33 (30.8)	4 (3.7)	26 (24.3)	107 (100.0)
1.2백만 원	6 (7.1)	36 (42.9)	25 (29.8)	4 (4.8)	13 (15.5)	84 (100.0)
1.2~5백만 원	14 (8.4)	62 (37.3)	51 (30.7)	12 (7.2)	27 (16.3)	166 (100.0)
5백~1천만 원	9 (4.2)	75 (35.4)	91 (42.9)	8 (3.8)	29 (13.7)	212 (100.0)
1~2천만 원	15 (7.3)	87 (42.2)	77 (37.4)	10 (4.9)	17 (8.3)	206 (100.0)
2~5천만 원	23 (6.5)	145 (40.8)	145 (40.8)	22 (6.2)	20 (5.6)	355 (100.0)
0.5~1억 원	20 (8.0)	108 (43.2)	87 (34.8)	18 (7.2)	17 (6.8)	250 (100.0)
1~2억 원	9 (5.8)	60 (38.7)	62 (40.0)	12 (7.7)	12 (7.7)	155 (100.0)
2억 원 이상	12 (15.6)	24 (31.2)	33 (42.9)	5 (6.5)	3 (3.9)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7 (29.2)	7 (29.2)	1 (4.2)	8 (33.3)	24 (100.0)
전체	116 (7.1)	641 (39.2)	611 (37.3)	96 (5.9)	172 (10.5)	1,636 (100.0)

주: $\chi^2=88.97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7〉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참여 제도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10 (9.3)	56 (51.9)	29 (26.9)	13 (12.0)	108 (100.0)
1.2백만 원 미만	2 (2.4)	7 (8.3)	39 (46.4)	34 (40.5)	2 (2.4)	84 (100.0)
1.2~5백만 원	6 (3.6)	17 (10.2)	71 (42.5)	61 (36.5)	12 (7.2)	167 (100.0)
5백~1천만 원	2 (0.9)	24 (11.3)	103 (48.4)	69 (32.4)	15 (7.0)	213 (100.0)
1~2천만 원	5 (2.4)	20 (9.7)	83 (40.1)	91 (44.0)	8 (3.9)	207 (100.0)
2~5천만 원	7 (1.9)	35 (9.7)	142 (39.6)	163 (45.4)	12 (3.3)	359 (100.0)
0.5~1억 원	6 (2.4)	25 (9.9)	101 (40.1)	112 (44.4)	8 (3.2)	252 (100.0)
1~2억 원	0 (0.0)	14 (9.0)	52 (33.5)	84 (54.2)	5 (3.2)	155 (100.0)
2억 원 이상	1 (1.3)	4 (5.2)	31 (40.3)	41 (53.2)	0 (0.0)	77 (100.0)
모름 / 무응답	1 (4.2)	2 (8.3)	10 (41.7)	4 (16.7)	7 (29.2)	24 (100.0)
전체	30 (1.8)	158 (9.6)	688 (41.8)	688 (41.8)	82 (5.0)	1,646 (100.0)

주: $\chi^2=98.90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8〉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정 참여 제약 요인

단위: 명, (%)

구분	농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방법 관련 지식, 정보 부족	참여 통로 (기회) 부족	농어업단체의 민주성 부족 (소수 힘 있는 사람 주도)	기초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기타	없음/ 모름	전체
거의 없음	23 (21.3)	25 (23.1)	20 (18.5)	13 (12.0)	23 (21.3)	0 0.0	4 (3.7)	108 (100.0)
1.2백만 원 미만	8 (9.5)	24 (28.6)	16 (19.0)	16 (19.0)	17 (20.2)	1 (1.2)	2 (2.4)	84 (100.0)
1.2~5백만 원	25 (15.0)	35 (21.0)	37 (22.2)	36 (21.6)	24 (14.4)	1 (0.6)	9 (5.4)	167 (100.0)
5백~1천만 원	20 (9.4)	51 (23.9)	67 (31.5)	34 (16.0)	35 (16.4)	0 0.0	6 (2.8)	213 (100.0)
1~2천만 원	17 (8.2)	44 (21.3)	56 (27.1)	37 (17.9)	44 (21.3)	3 (1.4)	6 (2.9)	207 (100.0)
2~5천만 원	31 (8.6)	67 (18.6)	99 (27.5)	82 (22.8)	72 (20.0)	2 (0.6)	7 (1.9)	360 (100.0)
0.5~1억 원	22 (8.8)	39 (15.5)	72 (28.7)	54 (21.5)	56 (22.3)	6 (2.4)	2 (0.8)	251 (100.0)
1~2억 원	13 (8.4)	18 (11.6)	36 (23.2)	36 (23.2)	48 (31.0)	2 (1.3)	2 (1.3)	155 (100.0)
2억 원 이상	7 (9.1)	2 (2.6)	22 (28.6)	16 (20.8)	26 (33.8)	2 (2.6)	2 (2.6)	77 (100.0)
모름/무응답	4 (16.7)	6 (25.0)	5 (20.8)	5 (20.8)	2 (8.3)	0 0.0	2 (8.3)	24 (100.0)
전체	170 (10.3)	311 (18.9)	430 (26.1)	329 (20.0)	347 (21.1)	17 (1.0)	42 (2.6)	1,646 (100.0)

주: $\chi^2=110.422$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39〉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들어본 적 없다	전체
거의 없음	8 (7.4)	15 (13.9)	38 (35.2)	47 (43.5)	108 (100.0)
1.2백만 원 미만	7 (8.3)	18 (21.4)	24 (28.6)	35 (41.7)	84 (100.0)
1.2~5백만 원	14 (8.4)	39 (23.5)	51 (30.7)	62 (37.3)	166 (100.0)
5백~1천만 원	27 (12.6)	56 (26.2)	61 (28.5)	70 (32.7)	214 (100.0)
1~2천만 원	33 (15.9)	50 (24.2)	61 (29.5)	63 (30.4)	207 (100.0)
2~5천만 원	108 (30.1)	89 (24.8)	79 (22.0)	83 (23.1)	359 (100.0)
0.5~1억 원	83 (32.9)	59 (23.4)	56 (22.2)	54 (21.4)	252 (100.0)
1~2억 원	55 (35.5)	32 (20.6)	34 (21.9)	34 (21.9)	155 (100.0)
2억 원 이상	26 (33.8)	23 (29.9)	7 (9.1)	21 (27.3)	77 (100.0)
모름/무응답	4 (16.7)	3 (12.5)	4 (16.7)	13 (54.2)	24 (100.0)
전체	365 (22.2)	384 (23.3)	415 (25.2)	482 (29.3)	1,646 (100.0)

주: $\chi^2=148.815$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0〉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3 (2.8)	11 (10.2)	54 (50.0)	19 (17.6)	21 (19.4)	108 (100.0)
1.2백만 원 미만	3 (3.6)	2 (2.4)	50 (59.5)	25 (29.8)	4 (4.8)	84 (100.0)
1.2~5백만 원	3 (1.8)	10 (6.0)	76 (45.5)	55 (32.9)	23 (13.8)	167 (100.0)
5백~1천만 원	3 (1.4)	11 (5.1)	127 (59.3)	55 (25.7)	18 (8.4)	214 (100.0)
1~2천만 원	5 (2.4)	14 (6.8)	105 (51.0)	67 (32.5)	15 (7.3)	206 (100.0)
2~5천만 원	1 (0.3)	22 (6.1)	159 (44.2)	157 (43.6)	21 (5.8)	360 (100.0)
0.5~1억 원	6 (2.4)	17 (6.7)	84 (33.3)	120 (47.6)	25 (9.9)	252 (100.0)
1~2억 원	2 (1.3)	7 (4.5)	62 (40.0)	78 (50.3)	6 (3.9)	155 (100.0)
2억 원 이상	0 (0.0)	4 (5.2)	24 (31.2)	46 (59.7)	3 (3.9)	77 (100.0)
모름/무응답	0 (0.0)	2 (8.3)	14 (58.3)	4 (16.7)	4 (16.7)	24 (100.0)
전체	26 (1.6)	100 (6.1)	755 (45.8)	626 (38.0)	140 (8.5)	1,647 (100.0)

주: $\chi^2=131.228$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1〉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현안 해결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6 (5.6)	15 (13.9)	37 (34.3)	41 (38.0)	9 (8.3)	108 (100.0)
1.2백만 원 미만	3 (3.6)	2 (2.4)	27 (32.1)	41 (48.8)	11 (13.1)	84 (100.0)
1.2~5백만 원	3 (1.8)	13 (7.8)	40 (24.0)	70 (41.9)	41 (24.6)	167 (100.0)
5백~1천만 원	5 (2.3)	16 (7.5)	55 (25.8)	103 (48.4)	34 (16.0)	213 (100.0)
1~2천만 원	7 (3.4)	16 (7.7)	54 (26.1)	97 (46.9)	33 (15.9)	207 (100.0)
2~5천만 원	2 (0.6)	16 (4.4)	85 (23.5)	161 (44.6)	97 (26.9)	361 (100.0)
0.5~1억 원	5 (2.0)	12 (4.8)	58 (23.2)	107 (42.8)	68 (27.2)	250 (100.0)
1~2억 원	3 (1.9)	7 (4.5)	25 (16.1)	63 (40.6)	57 (36.8)	155 (100.0)
2억 원 이상	0 (0.0)	4 (5.2)	17 (22.1)	29 (37.7)	27 (35.1)	77 (100.0)
모름/무응답	1 (4.2)	3 (12.5)	12 (50.0)	7 (29.2)	1 (4.2)	24 (100.0)
전체	35 (2.1)	104 (6.3)	410 (24.9)	719 (43.7)	378 (23.0)	1,646 (100.0)

주: $\chi^2=105.043$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2〉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협력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3 (2.8)	11 (10.3)	37 (34.6)	44 (41.1)	12 (11.2)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2 (2.4)	0 (0.0)	28 (33.3)	43 (51.2)	11 (13.1)	84 (100.0)
1.2~5백만 원	4 (2.4)	10 (6.0)	45 (26.9)	71 (42.5)	37 (22.2)	167 (100.0)
5백~1천만 원	3 (1.4)	12 (5.6)	75 (35.2)	83 (39.0)	40 (18.8)	213 (100.0)
1~2천만 원	5 (2.4)	16 (7.8)	39 (18.9)	107 (51.9)	39 (18.9)	206 (100.0)
2~5천만 원	3 (0.8)	25 (6.9)	78 (21.6)	163 (45.2)	92 (25.5)	361 (100.0)
0.5~1억 원	5 (2.0)	18 (7.2)	61 (24.4)	104 (41.6)	62 (24.8)	250 (100.0)
1~2억 원	2 (1.3)	8 (5.2)	25 (16.1)	66 (42.6)	54 (34.8)	155 (100.0)
2억 원 이상	1 (1.3)	5 (6.5)	10 (13.0)	34 (44.2)	27 (35.1)	77 (100.0)
모름/무응답	0 (0.0)	3 (12.5)	13 (54.2)	6 (25.0)	2 (8.3)	24 (100.0)
전체	28 (1.7)	108 (6.6)	411 (25.0)	721 (43.9)	376 (22.9)	1,644 (100.0)

주: $\chi^2=91.97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3〉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기대 효과 - 의사 대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4 (3.7)	15 (14.0)	53 (49.5)	24 (22.4)	11 (10.3)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2 (2.4)	7 (8.3)	28 (33.3)	32 (38.1)	15 (17.9)	84 (100.0)
1.2~5백만 원	4 (2.4)	16 (9.6)	58 (34.7)	59 (35.3)	30 (18.0)	167 (100.0)
5백~1천만 원	8 (3.8)	18 (8.5)	72 (33.8)	90 (42.3)	25 (11.7)	213 (100.0)
1~2천만 원	8 (3.9)	22 (10.7)	57 (27.7)	89 (43.2)	30 (14.6)	206 (100.0)
2~5천만 원	6 (1.7)	27 (7.5)	101 (28.0)	140 (38.8)	87 (24.1)	361 (100.0)
0.5~1억 원	5 (2.0)	28 (11.2)	61 (24.5)	100 (40.2)	55 (22.1)	249 (100.0)
1~2억 원	2 (1.3)	14 (9.0)	38 (24.5)	56 (36.1)	45 (29.0)	155 (100.0)
2억 원 이상	0 (0.0)	5 (6.5)	20 (26.0)	30 (39.0)	22 (28.6)	77 (100.0)
모름/무응답	0 (0.0)	7 (29.2)	10 (41.7)	5 (20.8)	2 (8.3)	24 (100.0)
전체	39 (2.4)	159 (9.7)	498 (30.3)	625 (38.0)	322 (19.6)	1,643 (100.0)

주: $\chi^2=89.216$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4〉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정관 정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0 (0.0)	2 (25.0)	5 (62.5)	1 (12.5)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4 (40.0)	2 (20.0)	4 (40.0)	10 (100.0)
1.2~5백만 원	0 (0.0)	0 (0.0)	6 (35.3)	5 (29.4)	6 (35.3)	17 (100.0)
5백~1천만 원	1 (2.9)	3 (8.8)	17 (50.0)	10 (29.4)	3 (8.8)	34 (100.0)
1~2천만 원	0 (0.0)	1 (3.2)	8 (25.8)	18 (58.1)	4 (12.9)	31 (100.0)
2~5천만 원	1 (1.0)	6 (5.7)	18 (17.1)	45 (42.9)	35 (33.3)	105 (100.0)
0.5~1억 원	2 (2.5)	7 (8.6)	23 (28.4)	34 (42.0)	15 (18.5)	81 (100.0)
1~2억 원	1 (1.6)	0 (0.0)	15 (23.8)	31 (49.2)	16 (25.4)	63 (100.0)
2억 원 이상	0 (0.0)	1 (2.7)	17 (45.9)	12 (32.4)	7 (18.9)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전체	5 (1.3)	18 (4.6)	112 (28.9)	162 (41.8)	91 (23.5)	388 (100.0)

주: $\chi^2=52.925$ $p=0.034$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5〉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민주적 의사 결정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1 (12.5)	0 0.0	6 (75.0)	1 (12.5)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5 (50.0)	4 (40.0)	1 (10.0)	10 (100.0)
1.2~5백만 원	0 0.0	1 (5.9)	2 (11.8)	6 (35.3)	8 (47.1)	17 (100.0)
5백~1천만 원	0 0.0	2 (5.9)	12 (35.3)	17 (50.0)	3 (8.8)	34 (100.0)
1~2천만 원	1 (3.2)	1 (3.2)	8 (25.8)	13 (41.9)	8 (25.8)	31 (100.0)
2~5천만 원	1 (1.0)	4 (3.8)	24 (22.9)	39 (37.1)	37 (35.2)	105 (100.0)
0.5~1억 원	2 (2.5)	5 (6.2)	15 (18.5)	37 (45.7)	22 (27.2)	81 (100.0)
1~2억 원	1 (1.6)	3 (4.8)	14 (22.2)	22 (34.9)	23 (36.5)	63 (100.0)
2억 원 이상	0 0.0	2 (5.4)	11 (29.7)	11 (29.7)	13 (35.1)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전체	5 (1.3)	19 (4.9)	93 (24.0)	155 (39.9)	116 (29.9)	388 (100.0)

주: $\chi^2=38.375$ $p=0.36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6〉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재정자립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3 (37.5)	4 (50.0)	1 (12.5)	0 0.0	8 (100.0)
1.2백만 원 미만	2 (20.0)	2 (20.0)	1 (10.0)	3 (30.0)	2 (20.0)	10 (100.0)
1.2~5백만 원	4 (23.5)	3 (17.6)	7 (41.2)	1 (5.9)	2 (11.8)	17 (100.0)
5백~1천만 원	3 (8.8)	12 (35.3)	17 (50.0)	2 (5.9)	0 0.0	34 (100.0)
1~2천만 원	3 (9.7)	15 (48.4)	8 (25.8)	4 (12.9)	1 (3.2)	31 (100.0)
2~5천만 원	8 (7.7)	38 (36.5)	40 (38.5)	14 (13.5)	4 (3.8)	104 (100.0)
0.5~1억 원	11 (13.6)	33 (40.7)	22 (27.2)	10 (12.3)	5 (6.2)	81 (100.0)
1~2억 원	5 (7.9)	16 (25.4)	27 (42.9)	10 (15.9)	5 (7.9)	63 (100.0)
2억 원 이상	5 (13.5)	14 (37.8)	16 (43.2)	1 (2.7)	1 (2.7)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전체	41 (10.6)	136 (35.1)	144 (37.2)	46 (11.9)	20 (5.2)	387 (100.0)

주: $\chi^2=42.482$ $p=0.21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7〉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사무국 인적 자원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3 (37.5)	3 (37.5)	2 (25.0)	0 0.0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3 (30.0)	5 (50.0)	2 (20.0)	0 0.0	10 (100.0)
1.2~5백만 원	1 (5.9)	4 (23.5)	6 (35.3)	3 (17.6)	3 (17.6)	17 (100.0)
5백~1천만 원	1 (2.9)	13 (38.2)	16 (47.1)	4 (11.8)	0 0.0	34 (100.0)
1~2천만 원	3 (9.7)	10 (32.3)	11 (35.5)	6 (19.4)	1 (3.2)	31 (100.0)
2~5천만 원	9 (8.6)	35 (33.3)	39 (37.1)	20 (19.0)	2 (1.9)	105 (100.0)
0.5~1억 원	7 (8.8)	33 (41.3)	20 (25.0)	15 (18.8)	5 (6.3)	80 (100.0)
1~2억 원	3 (4.8)	14 (22.2)	26 (41.3)	14 (22.2)	6 (9.5)	63 (100.0)
2억 원 이상	4 (10.8)	8 (21.6)	18 (48.6)	5 (13.5)	2 (5.4)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전체	28 (7.2)	123 (31.8)	145 (37.5)	71 (18.3)	20 (5.2)	387 (100.0)

주: $\chi^2=40.290$ $p=0.28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8〉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자발적 참여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0 0.0	0 0.0	5 (62.5)	3 (37.5)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3 (30.0)	6 (60.0)	1 (10.0)	10 (100.0)
1.2~5백만 원	0 0.0	0 0.0	5 (29.4)	4 (23.5)	8 (47.1)	17 (100.0)
5백~1천만 원	1 (2.9)	4 (11.8)	12 (35.3)	11 (32.4)	6 (17.6)	34 (100.0)
1~2천만 원	2 (6.5)	3 (9.7)	4 (12.9)	17 (54.8)	5 (16.1)	31 (100.0)
2~5천만 원	3 (2.9)	7 (6.7)	18 (17.1)	38 (36.2)	39 (37.1)	105 (100.0)
0.5~1억 원	1 (1.2)	9 (11.1)	16 (19.8)	34 (42.0)	21 (25.9)	81 (100.0)
1~2억 원	2 (3.2)	7 (11.3)	6 (9.7)	20 (32.3)	27 (43.5)	62 (100.0)
2억 원 이상	1 (2.7)	4 (10.8)	14 (37.8)	9 (24.3)	9 (24.3)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0)
전체	10 (2.6)	34 (8.8)	79 (20.4)	144 (37.2)	120 (31.0)	387 (100.0)

주: $\chi^2=49.206$ $p=0.07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49〉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공감대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0 0.0	3 (37.5)	4 (50.0)	1 (12.5)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4 (40.0)	5 (50.0)	1 (10.0)	10 (100.0)
1.2~5백만 원	0 0.0	2 (11.8)	7 (41.2)	2 (11.8)	6 (35.3)	17 (100.0)
5백~1천만 원	1 (2.9)	5 (14.7)	12 (35.3)	14 (41.2)	2 (5.9)	34 (100.0)
1~2천만 원	1 (3.2)	2 (6.5)	9 (29.0)	15 (48.4)	4 (12.9)	31 (100.0)
2~5천만 원	2 (1.9)	6 (5.7)	28 (26.7)	42 (40.0)	27 (25.7)	105 (100.0)
0.5~1억 원	3 (3.8)	7 (8.8)	23 (28.7)	40 (50.0)	7 (8.8)	80 (100.0)
1~2억 원	1 (1.6)	5 (8.1)	24 (38.7)	22 (35.5)	10 (16.1)	62 (100.0)
2억 원 이상	0 0.0	10 (27.0)	14 (37.8)	6 (16.2)	7 (18.9)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전체	8 (2.1)	37 (9.6)	126 (32.6)	150 (38.9)	65 (16.8)	386 (100.0)

주: $\chi^2=53.939$ $p=0.028$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0〉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상호 협력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1 (12.5)	3 (37.5)	3 (37.5)	1 (12.5)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6 (60.0)	4 (40.0)	0 0.0	10 (100.0)
1.2~5백만 원	0 0.0	1 (5.9)	6 (35.3)	4 (23.5)	6 (35.3)	17 (100.0)
5백~1천만 원	1 (2.9)	6 (17.6)	16 (47.1)	6 (17.6)	5 (14.7)	34 (100.0)
1~2천만 원	1 (3.2)	6 (19.4)	4 (12.9)	16 (51.6)	4 (12.9)	31 (100.0)
2~5천만 원	1 (1.0)	10 (9.5)	37 (35.2)	36 (34.3)	21 (20.0)	105 (100.0)
0.5~1억 원	3 (3.7)	10 (12.3)	36 (44.4)	25 (30.9)	7 (8.6)	81 (100.0)
1~2억 원	2 (3.2)	9 (14.5)	22 (35.5)	18 (29.0)	11 (17.7)	62 (100.0)
2억 원 이상	0 0.0	8 (21.6)	16 (43.2)	8 (21.6)	5 (13.5)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전체	8 (2.1)	51 (13.2)	147 (38.0)	121 (31.3)	60 (15.5)	387 (100.0)

주: $\chi^2=38.541$ $p=0.35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1〉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운영 평가 - 회원 적극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거의 없음	0 0.0	2 (25.0)	3 (37.5)	3 (37.5)	0 0.0	8 (100.0)
1.2백만 원 미만	0 0.0	0 0.0	5 (50.0)	4 (40.0)	1 (10.0)	10 (100.0)
1.2~5백만 원	1 (5.9)	2 (11.8)	4 (23.5)	5 (29.4)	5 (29.4)	17 (100.0)
5백~1천만 원	0 0.0	6 (17.6)	19 (55.9)	7 (20.6)	2 (5.9)	34 (100.0)
1~2천만 원	1 (3.2)	6 (19.4)	11 (35.5)	9 (29.0)	4 (12.9)	31 (100.0)
2~5천만 원	2 (1.9)	12 (11.4)	41 (39.0)	31 (29.5)	19 (18.1)	105 (100.0)
0.5~1억 원	3 (3.7)	14 (17.3)	32 (39.5)	27 (33.3)	5 (6.2)	81 (100.0)
1~2억 원	2 (3.2)	10 (16.1)	28 (45.2)	12 (19.4)	10 (16.1)	62 (100.0)
2억 원 이상	0 0.0	9 (24.3)	19 (51.4)	7 (18.9)	2 (5.4)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0 0.0	2 (100.0)
전체	9 (2.3)	61 (15.8)	164 (42.4)	105 (27.1)	48 (12.4)	387 (100.0)

주: $\chi^2=35.872$ $p=0.475$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2〉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한 과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안정적 재원 확보	전문인력 확보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확대	지방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의 관심과 지원	기타	전체
거의 없음	1 (12.5)	4 (50.0)	1 (12.5)	1 (12.5)	1 (12.5)	0 0.0	0 0.0	0 0.0	8 (100.0)
1.2백만 원 미만	3 (30.0)	4 (40.0)	2 (20.0)	0 0.0	1 (10.0)	0 0.0	0 0.0	0 0.0	10 (100.0)
1.2~5백만 원	2 (11.8)	6 (35.3)	1 (5.9)	1 (5.9)	5 (29.4)	0 0.0	2 (11.8)	0 0.0	17 (100.0)
5백~1천만 원	5 (14.7)	13 (38.2)	5 (14.7)	3 (8.8)	3 (8.8)	1 (2.9)	4 (11.8)	0 0.0	34 (100.0)
1~2천만 원	14 (45.2)	5 (16.1)	1 (3.2)	1 (3.2)	4 (12.9)	0 0.0	6 (19.4)	0 0.0	31 (100.0)
2~5천만 원	36 (34.3)	24 (22.9)	8 (7.6)	12 (11.4)	14 (13.3)	2 (1.9)	9 (8.6)	0 0.0	105 (100.0)
0.5~1억 원	32 (39.0)	15 (18.3)	5 (6.1)	6 (7.3)	13 (15.9)	0 0.0	10 (12.2)	1 (1.2)	82 (100.0)
1~2억 원	16 (25.8)	18 (29.0)	6 (9.7)	6 (9.7)	7 (11.3)	1 (1.6)	8 (12.9)	0 0.0	62 (100.0)
2억 원 이상	16 (43.2)	5 (13.5)	5 (13.5)	1 (2.7)	3 (8.1)	0 0.0	7 (18.9)	0 0.0	37 (100.0)
모름/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0)
전체	125 (32.2)	94 (24.2)	34 (8.8)	31 (8.0)	52 (13.4)	4 (1.0)	47 (12.1)	1 (0.3)	388 (100.0)

주: $\chi^2=58.941$ $p=0.622$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3〉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입할 것이다	적극 가입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7 (6.5)	19 (17.8)	29 (27.1)	15 (14.0)	37 (34.6)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1 (1.2)	9 (10.7)	29 (34.5)	22 (26.2)	23 (27.4)	84 (100.0)
1.2~5백만 원	3 (1.8)	26 (15.6)	48 (28.7)	57 (34.1)	33 (19.8)	167 (100.0)
5백~1천만 원	0 0.0	35 (16.5)	70 (33.0)	69 (32.5)	38 (17.9)	212 (100.0)
1~2천만 원	3 (1.5)	26 (12.8)	69 (34.0)	72 (35.5)	33 (16.3)	203 (100.0)
2~5천만 원	3 (0.8)	33 (9.2)	106 (29.4)	172 (47.8)	46 (12.8)	360 (100.0)
0.5~1억 원	3 (1.2)	19 (7.5)	79 (31.3)	119 (47.2)	32 (12.7)	252 (100.0)
1~2억 원	1 (0.6)	8 (5.2)	50 (32.3)	86 (55.5)	10 (6.5)	155 (100.0)
2억 원 이상	1 (1.3)	7 (9.1)	23 (29.9)	44 (57.1)	2 (2.6)	77 (100.0)
모름/무응답	0 0.0	1 (4.2)	7 (29.2)	5 (20.8)	11 (45.8)	24 (100.0)
전체	22 (1.3)	183 (11.2)	510 (31.1)	661 (40.3)	265 (16.1)	1,641 (100.0)

주: $\chi^2=171.468$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4〉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가입 의향 동기

단위: 명, (%)

구분	자유로운 의견 건의	의사와 권익 대변	경영에 도움	농어업, 농어촌 발전 기여	농어업인 목소리 하나로 하기 위해	농어업 관련 정보 수령	기타	없음/ 모름	전체
거의 없음	10 (23.3)	5 (11.6)	11 (25.6)	5 (11.6)	7 (16.3)	5 (11.6)	0 0.0	0 0.0	43 (100.0)
1.2백만 원 미만	10 (20.0)	6 (12.0)	16 (32.0)	5 (10.0)	6 (12.0)	7 (14.0)	0 0.0	0 0.0	50 (100.0)
1.2~5백만 원	26 (25.2)	12 (11.7)	19 (18.4)	15 (14.6)	17 (16.5)	14 (13.6)	0 0.0	0 0.0	103 (100.0)
5백~1천만 원	34 (25.0)	22 (16.2)	27 (19.9)	21 (15.4)	17 (12.5)	14 (10.3)	0 0.0	1 (0.7)	136 (100.0)
1~2천만 원	41 (29.1)	27 (19.1)	29 (20.6)	16 (11.3)	14 (9.9)	11 (7.8)	1 (0.7)	2 (1.4)	141 (100.0)
2~5천만 원	72 (25.9)	48 (17.3)	42 (15.1)	54 (19.4)	34 (12.2)	28 (10.1)	0 0.0	0 0.0	278 (100.0)
0.5~1억 원	60 (30.9)	46 (23.7)	22 (11.3)	25 (12.9)	29 (14.9)	10 (5.2)	0 0.0	2 (1.0)	194 (100.0)
1~2억 원	49 (36.3)	23 (17.0)	14 (10.4)	26 (19.3)	15 (11.1)	8 (5.9)	0 0.0	0 0.0	135 (100.0)
2억 원 이상	20 (30.3)	18 (27.3)	5 (7.6)	13 (19.7)	6 (9.1)	4 (6.1)	0 0.0	0 0.0	66 (100.0)
모름/무응답	2 (16.7)	2 (16.7)	2 (16.7)	1 (8.3)	3 (25.0)	2 (16.7)	0 0.0	0 0.0	12 (100.0)
전체	324 (28.0)	209 (18.0)	187 (16.1)	181 (15.6)	148 (12.8)	103 (8.9)	1 (0.1)	5 (0.4)	1,158 (100.0)

주: $\chi^2=81.764$ $p=0.056$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5〉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자원 확보 방법

단위: 명, (%)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자체 회원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위탁	기타	없음 / 모름	전체
거의 없음	54 (50.5)	30 (28.0)	14 (13.1)	6 (5.6)	3 (2.8)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57 (67.9)	14 (16.7)	11 (13.1)	1 (1.2)	1 (1.2)	84 (100.0)
1.2~5백만 원	102 (62.2)	26 (15.9)	32 (19.5)	1 (0.6)	3 (1.8)	164 (100.0)
5백~1천만 원	126 (59.7)	41 (19.4)	31 (14.7)	4 (1.9)	9 (4.3)	211 (100.0)
1~2천만 원	118 (57.8)	44 (21.6)	33 (16.2)	2 (1.0)	7 (3.4)	204 (100.0)
2~5천만 원	244 (67.8)	57 (15.8)	45 (12.5)	12 (3.3)	2 (0.6)	360 (100.0)
0.5~1억 원	143 (57.9)	58 (23.5)	34 (13.8)	10 (4.0)	2 (0.8)	247 (100.0)
1~2억 원	101 (65.2)	30 (19.4)	16 (10.3)	6 (3.9)	2 (1.3)	155 (100.0)
2억 원 이상	46 (59.7)	18 (23.4)	11 (14.3)	1 (1.3)	1 (1.3)	77 (100.0)
모름/무응답	18 (75.0)	4 (16.7)	1 (4.2)	0 (0.0)	1 (4.2)	24 (100.0)
전체	1,009 (61.8)	322 (19.7)	228 (14.0)	43 (2.6)	31 (1.9)	1,633 (100.0)

주: $\chi^2=55.699$ $p=0.019$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6〉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회비 납부 의무

단위: 명, (%)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매우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5 (4.7)	18 (16.8)	42 (39.3)	14 (13.1)	28 (26.2)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5 (6.0)	25 (29.8)	40 (47.6)	4 (4.8)	10 (11.9)	84 (100.0)
1.2~5백만 원	12 (7.3)	49 (29.7)	65 (39.4)	11 (6.7)	28 (17.0)	165 (100.0)
5백~1천만 원	3 (1.4)	42 (19.8)	116 (54.7)	17 (8.0)	34 (16.0)	212 (100.0)
1~2천만 원	7 (3.4)	54 (26.3)	92 (44.9)	26 (12.7)	26 (12.7)	205 (100.0)
2~5천만 원	11 (3.1)	79 (21.9)	167 (46.4)	76 (21.1)	27 (7.5)	360 (100.0)
0.5~1억 원	8 (3.2)	36 (14.3)	135 (53.8)	58 (23.1)	14 (5.6)	251 (100.0)
1~2억 원	4 (2.6)	10 (6.5)	78 (50.3)	50 (32.3)	13 (8.4)	155 (100.0)
2억 원 이상	2 (2.6)	11 (14.3)	34 (44.2)	25 (32.5)	5 (6.5)	77 (100.0)
모름/무응답	1 (4.2)	8 (33.3)	5 (20.8)	0 (0.0)	10 (41.7)	24 (100.0)
전체	58 (3.5)	332 (20.2)	774 (47.2)	281 (17.1)	195 (11.9)	1,640 (100.0)

주: $\chi^2=199.246$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7〉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적정 연회비

단위: 명, (%)

구분	3만 원 미만	3만~5만 원	6만~7만 원	8만~9만 원	10만 원 이상	전체
거의 없음	27 (48.2)	22 (39.3)	0 0.0	1 (1.8)	6 (10.7)	56 (100.0)
1.2백만 원 미만	23 (52.3)	15 (34.1)	4 (9.1)	0 0.0	2 (4.5)	44 (100.0)
1.2~5백만 원	27 (36.5)	35 (47.3)	4 (5.4)	1 (1.4)	7 (9.5)	74 (100.0)
5백~1천만 원	63 (47.4)	42 (31.6)	14 (10.5)	4 (3.0)	10 (7.5)	133 (100.0)
1~2천만 원	40 (34.2)	53 (45.3)	12 (10.3)	2 (1.7)	10 (8.5)	117 (100.0)
2~5천만 원	65 (26.7)	125 (51.4)	21 (8.6)	5 (2.1)	27 (11.1)	243 (100.0)
0.5~1억 원	52 (27.4)	83 (43.7)	26 (13.7)	6 (3.2)	23 (12.1)	190 (100.0)
1~2억 원	38 (29.9)	47 (37.0)	16 (12.6)	0 0.0	26 (20.5)	127 (100.0)
2억 원 이상	10 (16.9)	27 (45.8)	7 (11.9)	2 (3.4)	13 (22.0)	59 (100.0)
모름/무응답	2 (40.0)	2 (40.0)	0 0.0	0 0.0	1 (20.0)	5 (100.0)
전체	347 (33.1)	451 (43.0)	104 (9.9)	21 (2.0)	125 (11.9)	1,048 (100.0)

주: $\chi^2=75.031$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8〉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4 (3.7)	11 (10.3)	42 (39.3)	19 (17.8)	31 (29.0)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5 (6.0)	2 (2.4)	48 (57.1)	20 (23.8)	9 (10.7)	84 (100.0)
1.2~5백만 원	7 (4.2)	9 (5.4)	76 (45.5)	53 (31.7)	22 (13.2)	167 (100.0)
5백~1천만 원	2 (0.9)	12 (5.6)	122 (57.3)	52 (24.4)	25 (11.7)	213 (100.0)
1~2천만 원	8 (3.9)	18 (8.7)	92 (44.7)	61 (29.6)	27 (13.1)	206 (100.0)
2~5천만 원	5 (1.4)	18 (5.1)	158 (44.4)	150 (42.1)	25 (7.0)	356 (100.0)
0.5~1억 원	3 (1.2)	16 (6.4)	100 (40.0)	110 (44.0)	21 (8.4)	250 (100.0)
1~2억 원	4 (2.6)	2 (1.3)	63 (40.6)	77 (49.7)	9 (5.8)	155 (100.0)
2억 원 이상	0 0.0	2 (2.6)	25 (32.9)	44 (57.9)	5 (6.6)	76 (100.0)
모름/무응답	1 (4.2)	1 (4.2)	10 (41.7)	6 (25.0)	6 (25.0)	24 (100.0)
전체	39 (2.4)	91 (5.6)	736 (44.9)	592 (36.1)	180 (11.0)	1,638 (100.0)

주: $\chi^2=148.830$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부표 2-159〉 응답자 농축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업회의소 법제화 후 효과

단위: 명, (%)

구분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 될 것이다	농어업인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거의 없음	19 (17.8)	33 (30.8)	9 (8.4)	16 (15.0)	30 (28.0)	107 (100.0)
1.2백만 원 미만	9 (10.7)	42 (50.0)	13 (15.5)	7 (8.3)	13 (15.5)	84 (100.0)
1.2~5백만 원	40 (24.1)	53 (31.9)	24 (14.5)	18 (10.8)	31 (18.7)	166 (100.0)
5백~1천만 원	44 (20.7)	73 (34.3)	29 (13.6)	27 (12.7)	40 (18.8)	213 (100.0)
1~2천만 원	46 (22.3)	78 (37.9)	27 (13.1)	25 (12.1)	30 (14.6)	206 (100.0)
2~5천만 원	119 (33.2)	135 (37.7)	36 (10.1)	38 (10.6)	30 (8.4)	358 (100.0)
0.5~1억 원	77 (30.8)	99 (39.6)	29 (11.6)	28 (11.2)	17 (6.8)	250 (100.0)
1~2억 원	48 (31.0)	68 (43.9)	19 (12.3)	15 (9.7)	5 (3.2)	155 (100.0)
2억 원 이상	23 (29.9)	38 (49.4)	7 (9.1)	5 (6.5)	4 (5.2)	77 (100.0)
모름/무응답	7 (29.2)	3 (12.5)	2 (8.3)	5 (20.8)	7 (29.2)	24 (100.0)
전체	432 (26.3)	622 (37.9)	195 (11.9)	184 (11.2)	207 (12.6)	1640 (100.0)

주: $\chi^2=116.117$ p=0.000

자료: '농어업 대표기구 설립에 관한 농어업인 인식조사' 설문 조사 결과

3. CP군 농업회의소 분과위원회 회의 자료(예시)

2019년 2차 분과위원회

유통분과 회의자료

일시	2019. 8. 28(수). 13:30
장소	CP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농업인 대의기구, 정부 농정파트너
삽단 **CP군농어업회의소**



2019년 2차 분과위원회 계획(안)



1 추진목적

- 우리군 농정현안 및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분과위원 의견수렴 및 토론
 - 주요 농정현안, 농정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중장기 발전전략 등
- 농업현장에서(읍면순회농어업인간담회, 설문, 사무국방문 등) 수렴된 주요 농정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및 조정자 역할 수행
- 2020년 농정 건의를 위한 분과별 우선 건의사항 확정

2 개요

- 일자 : 2019. 8. 22(목) ~ 9. 2(월)
- 장소 : CP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 대상 : CP군농어업회의소 분과위원(임원, 대의원, 회원 등)
CP군농업기술센터 각 담당공무원

3 세부일정

분과	일시		장소(농업기술센터)
축산분과	8. 22(목)	9:30~12:00	세미나실 (소회의실)
농촌발전분과	8. 23(금)	9:30~12:00	
식량분과		13:30~16:00	
유통분과	8. 28(수)	13:30~16:00	
원예분과	9. 2(월)	9:30~12:00	

※ 어업분과는 자체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 전달 예정.

4 | 분과위원 현황

분과	구성		
	인원수	위원장	위원
합계	98		
식량분과	6	정**	나** 양** 이** 이** 전**
원예분과	27	(공석)	강** 곽** 김** 김** 김** 박** 신** 안** 안** 어** 염** 우** 유** 윤** 이** 이** 이** 이** 임** 임** 정** 조** 지** 최** 최** 최** 함**
축산분과	13	고**	김** 김** 김** 김** 박** 박** 안** 연** 장** 지** 최** 함**
유통분과	24	전**	강** 곽** 김** 김** 김** 김** 김** 박** 백** 손** 유** 이** 이** 이** 이** 이** 정** 정** 조** 최** 한** 함** 함**
농촌발전분과	13	(공석)	김** 김** 김** 김** 김** 김** 박** 박** 원** 이** 임** 전** 정** 조**
어업분과	7	주**	박** 박** 심** 이** 이** 차**
산림분과	8	3 (5)	이** 이** 장** 김** 이** 이** 조** 최**

5 | 분과별 소관부서(담당)

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서(담당)
농촌발전분과	· 농업정책(이○○) · 농촌개발(김○○) · 농촌산업(신○○) · 인력육성(윤○○)
축산분과	· 축산정책(전○○) · 축수산환경(황○○) · 방역위생(임○○)
어업분과	· 축수산환경(황○○)
식량분과	· 식량작물(허○○) · 농업기계(김○○) · 농산자원(김○○)
유통분과	· 유통정책(지○○) · 가공수출(박○○) · CP푸드(안○○)
원예분과	· 원예특작(김○○) · 농산자원(김○○) · 친환경농업(신○○) · 소득작물(황○○)
산림분과	· 산림과

유통분과 토론사항

〈 안 내 〉

- 아래는 읍면순화농업인간담회, 서면 의견수렴, 사무국 방문 및 유선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 농업인 건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토론회 당일, 분과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내용과 아래 내용을 종합하여 심층 토론 후 2019년도 분과별 '최종 건의사항'을 확정합니다.

토론사항[의견수렴 결과]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 시행지침 마련
2	CP군 농특산물 수출법인 설립
3	CP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4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
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개선
6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7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
8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
9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 농한기 실시
10	농특산물 홍보 사업예산에 오미자 품목 추가
11	우리군 육성 품목에 대한 판매대책 마련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 시행지침 마련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군은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CP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2019년 8월 현재 2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 하지만 동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농축산물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 발생.
-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일부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2. 주요 건의사항

가. 동 조례 제7조 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마련

- 1) 제7조 1항(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 2020년 상반기 내에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최저가격 확정, 고시
- 2) 제7조 2항, 3항(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의 적용사례 구체화

참고사항] CP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7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나. 조례 개정 검토(부칙 제2조)

○ 동 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군수는 제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차액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를 해석하면

- ‘농축산물 차액지원 등(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 그 이전이라도 군수는 차액지원을 할 경우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제6조제3항) 차액지원을 할 수 있음.

○ 타 시군 대부분의 유사 조례는 적용례에 있어 ▶기금이 일정금액 이상 조성되었을 때, 또는 ▶조례제정 이후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차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의 타시군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부칙 제2조(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검토 필요.

※ CP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부칙 <조례 제2201호. 2015.12.31> 제2조(적용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이라도 군수는 제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차액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차액지원은 기금 총액이 2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2

CP군 농특산물 수출법인 설립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군 농산물 수출능가는 도내 어느 지역보다 재배기술이 뛰어나고 수출실적도 많으나 군 내에 수출업무를 담당할 거점이 없어 대부분의 수출 농산물이 타지역 소재 무역회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이에따라 농산물을 해당 무역회사 포장재로 출하하게 되어 우리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수출물류비 지원 등)도 무역회사에서 수취하고 있어 우리군 농산물 수출활성화와 수출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거점으로서 CP군농산물수출법인(가칭 CP무역) 설립 필요성 제기

참고사항. CP군 농산물 수출 실적[2017~2018]

연 도 구 분	2017년		2018년		주요 수출국
	수출량(톤)	수출액(천\$)	수출량(톤)	수출액(천\$)	
계	6,504	12,418	7,206.7	14,454	
파프리카	3,100	8,200	3,077	9,261	일본, 대만
여름딸기	8	131	13.4	137	일본/말련
완숙토마토	386	904	416	980	일본/대만
방울토마토	44	147	49	156	일본
화훼	3	18	4.3	39	일본
배추	1,696	849	918	434	대만
양배추	387	173	113.4	463	대만
김치	40	74	80.6	90	미국/영국
기타	840	1,922	2,535	2,894	일본/대만

2. 주요 건의사항

- 우리군 농산물 수출활성화와 수출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거점으로서 CP군농산물수출법인(가칭 CP무역) 설립

3 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우리군 농산물 마케팅의 전문화와 규모화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여 산지유통활성화와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1년 출범하였음.(현재 OO, OO, OO, OO 등 4개 농협 참여)
- 우리군은 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매년 포장재, 판촉홍보비, 역량강화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730백만원 지원(포장재 700백만원, 판촉홍보·역량강화 30백만원)
- 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마케팅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시장 다변화, 직거래 확대, 물량 분산출하 유도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사업 가운데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단순 중개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수탁사업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 및 운영활성화 필요성 제기

2. 주요 건의사항

가. 조공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발굴·지원

- 전통적인 의미의 조공법인 역할 이외에 달라진 유통환경과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모델 발굴·지원 필요.

나.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 대책 마련

- 또한 조공법인 마케팅활동으로 우량 직거래 출하처를 확보하여도 관내 품목별 조직화가 미비하여 출하처에서 요구하는 균일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많음. 조공법인 활성화를 위해 군 차원의 품목별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 대책 마련 필요

다. 농가조직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수탁사업 지양

- 농산물유통은 농가 개별대응으로는 한계 있음. 따라서 조공법인은 농산물 마케팅의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며 향후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 높음.
-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조공법인 수탁 출하농가에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조공법인은 그에 대한 출하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사업방향은 개선 필요.
- ※ 포장재비 지원사업비를 각 지역농협으로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음.(토론 필요)

4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의 우리군 농산물은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다 보니 거래교섭력이 떨어져 유통업체가 제시한 가격대로 끌려다니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별 유통구조 통합, 농산물 규모화를 통한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공동선별 조직을 육성하거나 조직하고 있지만 개별 노력으로는 한계 있음. 이에따라 공동선별 출하조직 집중 육성을 위한 군 차원의 지원 필요성 제기.

2. 주요 건의사항

가.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사업 도입(군 자체)

- 군 내 농산물의 규모화, 규격화, 고품질화를 위해 지역농협을 포함한 지역별, 마을별 공동선별 출하조직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선별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도입

※ 사업예시

○ 사업명 : CP군 농산물 공동선별조직 육성·지원사업

- 사업량 : 0 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군비 2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선별조직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공동선별조직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 세부사업내용 : 창고시설, 저온저장시설, 부대시설,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등

나. 공동선별 출하조직 유통활성화 지원 강화

- 공동선별 출하조직에 대하여 선별비, 포장재, 물류비 등 지원 강화(차등지원)

다. 향후 통합마케팅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 농가·단체 중심으로 지원 강화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 농가·단체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및 유통활성화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기계화, 영농자재, 교육 지원 등)

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개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군은 농특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 제고를 통한 판매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포장재 지원사업이 일부 품목단체나 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농가에 한하여 지원되는 물론 각각의 지원율도 상이한 상황임. 이에따라 관내 모든 농가가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개선하여 한다는 농가 의견 제기.

※ 우리군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지원률, 지원금액)

- 일부 품목단체 : 포장재 제작비의 50~60%, 일부사업 80% 지원
- 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농가 : 박스당 200~300원 이내 지원

2. 주요 건의사항

-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모든 농가가 일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 개선(공동선별 조직 이외 모든 농가 일률 지원) / (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 건에 대한 사항은 토론주제 3번의 결과를 반영)

※ [참고사항] CP군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내역(2019년 당초예산 기준)

■ 군비자체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액 (단위:천원)	소관부서
1	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	22,000	유통정책
2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 구입	15,000	유통정책
3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CP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70,000	유통정책
4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	19,375	원예특작
5	CP더덕 명품화 지원	20,000	원예특작
6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66,500	원예특작
7	다래과원 조성사업 지원	3,250	원예특작
8	CP산채 명품화 안정생산 지원	11,250	원예특작
9	CP멜론 명품화안정생산 지원	22,000	원예특작
10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지원	70,000	친환경농업
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30,000	친환경농업
12	신소득 유망작목 재배 시범지원	21,000	소득작물
합 계		870,375	

※자료 : 2019년 CP군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자료 참고.

■ 도비보조사업

연번	사업명	예산액(단위:천원)			소관부서
		합계	도비	군비	
1	자체육성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2,400	900	1,500	식량작물
2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 (○○도감자조합공동사업법인)	337,666	109,400	228,266	유통정책
3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5,000	1,500	3,500	친환경농업
4	전통주 포장재 및 품질검사비 지원	2,564	770	1,794	가공수출
5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	18,000	5,400	12,600	친환경농업
6	○○도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홍보물 및 포장재)	64,000	19,200	44,800	축수산환경
합 계		429,630	137,170	292,460	

※자료 : 2019년 CP군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설명자료 참고.

6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산지 포전매매나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한계 발생.
- 이에따라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군 차원의 다양한 시책 추진 필요성 제기

2. 주요 건의사항

가. 농산물 직매장 설치 지원

- 직매장은 중소규모 생산자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통단계 및 비용 절감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 농산물 직매장 설치 필요

나. 하나로마트 지역 농산물 판매 방안 마련(shop-in-shop)

-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적은 인구, 짧은 농산물 생산시기 등 농산물 직매장 설치·운영에 제약 요소 있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관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내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shop-in-shop 형태의 직매장 설치·운영 지원 필요

다. 우리군 5일 장 연계 '농업인 판매장' 운영 지원

- 우리군 5일 장에서 지역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운영 지원 필요.

라. ○○읍·○○면 역사 내 농특산물 홍보·판매·체험·관광 복합시설 설치

- 외부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역사 내에 우리군 농산물 홍보·판매·체·관광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설치 검토(CP군 문화·관광 플랫폼 연계)

마. CP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지원

- CP군홈페이지 - 온라인쇼핑몰 링크 추진. 추석선물 홍보책자 제작. 공공기관, 각 지역 향우회, 대도시 기업체 대상 홍보활동 전개 등

7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 우리군은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조절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9년 사업량은 당초예산 기준 총 99동(3평형 11동, 5평형 88동)으로서 2018년 총 사업량(3평형 30동, 5평형 82동) 대비 3평형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음.
- 이에따라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은 우리군 현실을 반영하여 3평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2. 주요 건의사항

가. 3평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 우리군 농산물 중에서 원예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고 농가 고령 화율은 40%에 육박한 상황임.
- 또한 2015년 기준 우리군 경지규모별 농가수를 보면, 1ha 미만 경작 농가가 전체 4,448 농가의 56%(2,497), 2ha 미만은 74%(3,294농가)에 이룸.
- 우리군 농업의 특수성과 농가 영세화·고령화, 자부담 여력 등 현실을 반영하여 3평형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필요.

나. 저온저장고 수리비 지원사업 도입

- 우리군은 수년 전 10평형 이상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당시 지원한 저온저장고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잦은 고장 발생.
- 대형 저온저장고 수리비는 단가가 높아 경제적 부담으로 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다수 발생. 농가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저온저장고 수리 비지원사업 도입 검토 필요.

8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마을단위 농산물 출하편의 도모와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 필요성 제기
 -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을 통해 마을별 생산자조직화와 협동을 유도하고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 촉진

2. 주요 건의사항

-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

9~11

9. SNS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 농한기 실시

- sns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 매우 유용하나 농번기 실시로 교육 참여 어려움. 특정 단체가 아닌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한기 교육 실시 필요.

10. 농특산물 홍보 사업예산에 오미자 품목 추가

11. 우리군 육성 품목에 대한 판매대책 마련

- 우리군은 육성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음. 생산기반 지원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가공·유통·마케팅 등 소비 지원 확대 필요

4.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2019년)

2019년도

CP군농어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

2019. 9. 6.

농업인 참여에 기반한 현장중심 농정실현
사업 CP군농어업회의소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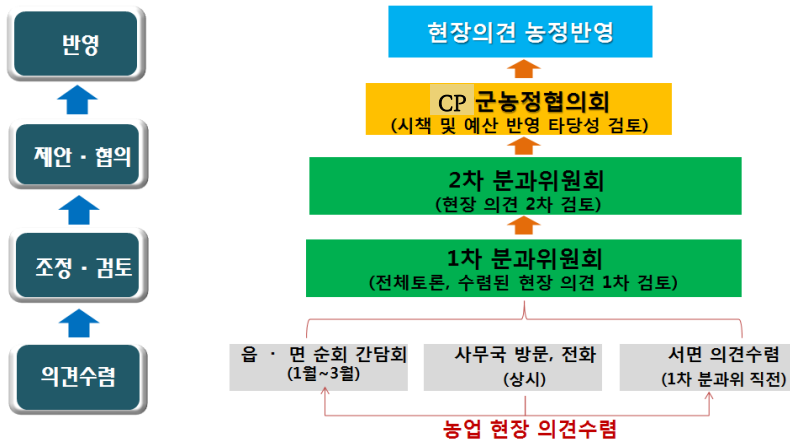
1 목적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및 조정자 역할 수행
- 현장 농업인 의견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농정 추진
- 지역 농업인 대표 대의기구로서 역할 강화

2 추진 체계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농정현안 및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를 통한 조정·검토
- CP군농정협의회를 통해 CP군 행정에 공식 건의

(그림. CP군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 추진 체계)



3 세부내용

농정 사업 홍보	1. CP군 농업분야 지원사업 안내서 제작·배포 □ 목적 - CP군에서 추진 중인 농업분야 지원사업 홍보 - 읍면순회간담회, 서면조사 등 현장 의견 수렴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배포일 : 2019. 1월 □ 대 상 : 1,100명(회의소 개인회원 800명, 단체회원 소속 농업인 300명)
의견 수렴 [181건]	1. 읍면순회 농업인간담회 개최 □ 목적 -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CP군농어업회의소 추진업무 보고 및 이해 제고 - 지역 농정현안 청취 및 토론을 통한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수행 □ 기간 : 2019. 2. 25(월) ~ 3. 4(월) □ 장소 : 읍면사무소(회의실/복지회관/예식장) □ 대상 : 지역 농어업인 □ 결과 : 참석인원 578명, 의견 수렴 106건(서면, 구두), 회원가입 69명, 농업예산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255명) 2. 농업예산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 목적 : 농업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CP군 농업예산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대상 : CP군 거주 농업인 □ 일시 : 2019. 2. 25 ~ 3. 4 / 읍면순회농업인간담회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배포, 수거 후 분석 □ 설문인원 : 255명 □ 설문 외 의견 수렴 : 40건

	3. 1차 분과위원회 개최 □ 목적 : 우리군 농정현안 및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분과위원 의견 수렴 및 토론 □ 일시 : 2019. 8. 21(월) 09:30 □ 대상 : 농어업회의소 분과위원(임원, 대의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 결과 : 의견 수렴 20건 4. 사무국 면담, 유선 등 □ 상시 사무국 면담, 유선을 통한 의견 수렴 □ 결과 : 의견 수렴 15건
조정 · 검토	4. 2차 분과위원회 개최 □ 목적 - CP군 농정현안 및 농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수렴된 주요 농정현안과 농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반영 타당성 검토 - 2019년 농정 건의를 위한 분과별 우선 건의사항 확정 □ 일시 : 2019. 8. 22(목) ~ 9. 2(월) 9:30, 13:30 □ 장소 : CP군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 대상 : 농어업회의소 분과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공무원

건의 내용

분과	연번	건의내용(요약)	페이지
공통 안전	1	농정지원사업 추진 체계 개선	/ 7
	2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 11
	3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공모사업 도입	/ 13
	4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능 강화	/ 14
	5	농업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개선	/ 16
축산	1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책 마련	/ 19
	2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도입 지원	/ 20
	3	초유은행 사업 도입	/ 21
	4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지원사업 기준사업비 현실화	/ 22
	5	축산후계인력 육성 대책 마련	/ 22
	6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 확대	/ 23
	건의 보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 23
농촌 발전	1	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계획 보완	/ 26
	2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 27
	3	농업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 28
	4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확대 및 추진 체계 개선	/ 29
	5	여성농업인 작업대 지원 확대	/ 30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 30
	7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마련	/ 31
	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 32

	9	치유농장, 농촌 체험 교육농장 관련 지원예산 확대	/ 33
	10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확대	/ 33
분과	연번	건의내용(요약)	페이지
농촌 발전	11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 34
	12	관행작목 재배교육 강화(채소, 감자, 약초 등)	/ 35
	13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확대	/ 35
	14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선 필요	/ 35
	건의 보류	농업인수당 제도 도입	/ 36
식량	1	토양 현장진단 컨설팅 도입	/ 41
	2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설치	/ 41
	3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능 및 역할 강화	/ 42
	4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실시	/ 43
	5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기준사업비 현실화	/ 44
	6	임대사업소 농업용드론 도입 및 실증연구, 농가교육 실시	/ 45
	7	중소형 도정기 구입 지원	/ 45
	8	감자수확기 지원 대상 확대	/ 46
유통	1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부 시행지침 마련	/ 48
	2	CP군 농특산물 수출법인 설립	/ 50
	3	CP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51
	4	공동선별 출하조직 육성 지원	/ 52
	5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53
	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개선	/ 54
	7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관련	/ 56
	8	SNS 활용 농산물마케팅 교육 농한기 실시	/ 57

	9	우리군 육성 품목에 대한 판매대책 마련	/ 57
	건의 보류	농특산물 홍보 사업예산에 오미자 품목 추가	/ 58
	건의 보류	마을공동 집하장 설치 지원	/ 58
원예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 61
	2	과채류(고추, 피망 등) 바이러스 피해 대책 마련	/ 62
분과	연번	건의내용(요약)	페이지
원예	3	시설재배 연작장해 및 전염성병해충 피해 대책 마련	/ 63
	4	CP군수품질인증제 개선	/ 65
	5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	/ 66
	6	연동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도입	/ 67
	7	무·배추 시들음병(위황병) 차단 대책 마련	/ 67
	8	사과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	/ 68
	9	오미자 재배 지원사업 관련	/ 69
	10	왕대추 재배 지원사업 관련	/ 70
	11	피망선별기 지원사업 도입	/ 71
	12	딸기 화분화 검사기 구비	/ 71
	13	해썹(haccp) 인증 지원사업 도입	/ 72
	14	양액재배시설 전문 컨설팅 도입	/ 72
	15	우리군 육성작목 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창구 일원화	/ 72
	건의 보류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권역별 구비(pls 제도시행 관련)	/ 72
	건의 보류	농산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 72

주: 본 보고서에는 음영처리된 건의 사항만 수록하였고 나머지 건의 사항은 생략하였음. 단, 기타 건의 사항은 마지막에 수록하였음.

공 통 안 건

공통안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각 담당부서와 협의 후 농축산과 농업 정책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정지원사업 추진 체계 개선

1. 제안배경

- 농정의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은 우리군 농정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군 농업·농촌분야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농업인이 제안한 내용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건의하고자 함.

2. 우리군 예산현황(2019년 당초예산 기준)

가. 예산총액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합 계	404,332,968
일반회계	369,912,039
특별회계	34,420,929

나. 농업예산

(단위 : 천원)

농업기술센터(조직별)			농림해양수산(기능별)		
구분	예산액	구성비	구분	예산액	구성비
합계	47,396,545	11.72 %	합계	70,607,399	17.46 %
국	10,496,973	(22/100)%	농업 · 농촌	54,136,892	13.39 %
군	3,101,600	(7/100)%	임업 · 산촌	16,119,327	3.99 %
기	3,002,527	(6/100)%	해양수산 · 어촌	351,180	0.09 %
도	4,208,254	(9/100)%			
군	26,587,191	(56/100)%			

*구성비: 우리군 전체예산 기준

※ 참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대비 군 자체사업 예산현황(2018~2019)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비교증감
전체예산	33,338,566	47,396,545	(42%) 14,057,979
군 자체사업 예산	10,911,865	11,182,450	(2.4%) 270,585

3. 주요 문제점

가.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사업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는 민원 제기
- 특히, 시범사업이나 추경사업에 대한 홍보 매우 부족

나.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 발생

-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서 간 지원현황 공유 미흡
- 일정규모 이상 농가나 일부 품목, 축종에 중복·편중지원 체감
- 보조대상에서 탈락한 일부 농가들이 지속적인 민원 제기

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율 기준 미비

- 군비 자체사업 가운데 시범사업 등 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일부 사업의 지원율이 상이한 경우 존재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농가 혼란 발생

라. 사업평가 체계 미비

- 특정단체나 품목, 축종에 연례 반복적 지원 발생
- 일회성, 소모성 예산 일몰 근거 부재
- 달라진 농업환경을 반영한 신규시책 도입에 한계 발생

마.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체계 미흡

-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전 사후관리 미흡
 - 사후관리기간 : 건물 및 부속설비 10년, 기계 및 장비 5년
-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과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지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

4. 향후 개선방안(주요 건의사항)

가.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사업계획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품목별단체까지 홍보
- 보조금 사업 안내 홍보 책자 배부 : 1월중 / 농어업회의소 사업 연계
- 보조사업 사전교육 시행, 농업인실용교육에 보조사업 관련 교육 편성, 농가 대상 시책사업 보고회 개최 등

나. 보조사업의 중복·편중 지원 해소

-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및 운용

- 보조사업자에 대한 최근 3~5년간 지원받은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에 활용
- 보조사업이 위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조합별 농업보조금 총액제 및 일몰제 도입 검토
- 농정심의회 심의 기능 강화. 읍면 자체심의 확대

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을 기준 마련

-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품목 대표자 등에 농가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의무화
- 사업자 선정방법 및 우선순위에 기준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
- 사업신청 홍보 시 농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제시
- 가칭) CP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예시)사업자선정 기준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 (예시)보조금 지원을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80퍼센트 이내
3. 신기술 및 특정 기술 보급 시범, 시험연구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라.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존치·확대·축소·폐지·사업 선별

- 관행적인 예산 편성 탈피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재검토. 생산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 비효율적 보조사업 정비
 - 특정 단체, 품목, 축종에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

-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 유사·중복사업 통합합 추진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 가칭) 농업예산 개편 위원회 설치, 가칭) CP군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 제정 검토

마.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보조사업 후 3-5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 강화
- 지원된 시설, 장비의 존치여부와 활용실태 점검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및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2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1. 제언배경

- 우리군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매년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보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16개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2. 건의사항

-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 조례는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순위, 지원율, 사후관리 기간, 지원한도, 지원 제한 등을 규정

- 특히 보조금 지원율과 지원한도를 규정하여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특정개인, 단체, 조합 등에 대한 중복·편중지원 해소 필요.

타시군 사례

□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주요 내용(WJ시, HS군, YG군, BE군 등 다수)

○ (보조금 지원율 / YG군)

-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YG군수가 공공의 농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보조금 지원한도 / HS군)

- 최근 5년 동안 같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순위)

-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 영농·영어정도가 높은 자
 4. 해당분야 전공·교육이수·자격증 취득 등 기술수준이 높은 자
 5. 농업인단체 활동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
 6.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3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공모사업 도입

1. 제언배경

- 우리군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품목 소량 생산 농업구조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다양한 농업인(단체) 수요 대응에 한계 발생.
-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단계까지 현장 농업인(단체)이 필요로 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농업인(단체) 실정에 맞는 발전 도모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공모사업 도입 필요성 제기.

2. 건의사항

- 군 자체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공모사업 도입

사업예시

○ 사업명 : CP군 농업인(단체)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량 : 00 개소
- 사업비 : 300백만원(군비 150, 자부담 150)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조합 등
- 사업내용 : 농산물 생산, 유통, 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능 강화

1. 제언배경

-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는 1962년 3월 제정된 농업진흥법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농업 관련 계몽지도, 기술보급 및 훈련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촌지도소가 1998년도에 개편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함.
- 하지만 1998년도 개편이후, 우리군 지도직공무원들은 농촌지도사업, 농업특화사업 보다는 보조사업 집행·관리 업무에 치중한다는 농가 민원이 많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음.
-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의 당초 목적은 지도 및 유통기능 강화였음. 그 중 지도기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다수 농가의 의견 제기

2. 건의사항

- 가. 지도직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부서 전보 제한
 - 지도직공무원 전문성 여부는 지역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도사업 촉진과 대 농민 현장 밀착 업무 추진에 어려움 발생.
 - 현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공무원 정원은 19명임. 향후 19명 전원이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 나. 우리군에서 육성하거나 지형적 특성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에 대한 재배기술 연구·보급 기능 강화
- 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목 발굴
- 라. 현장 밀착형 업무 강화

2차 분과위원회 토론회 토론회 내용 요약

- 최근 농업기술센터 잦은 인사이동에 대하여 다수 농업인의 민원 제기
- 농업기술센터 조직관리 매우 미흡. 타 부서(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연속성, 공무원 전문성, 책임성 결여
- 품목별연구회 입장에서 보면 근래 들어 6개월 주기로 담당자가 바뀌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 발생
-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의 당초 목적은 지도기능 및 유통기능 강화였음. 현재 지도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 있음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타부서에서 근무하고는 지도직공무원 전원이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향후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농업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5 농업보조금 중복 · 편중 지원 개선

1. 제언배경

- 수출농업 육성은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농업의 돌파구로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임.
- 하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 하에서 수출농가 등 대농에게 상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제기
 - 2017년 기준, 우리군 전체농가(4,310) 대비 수출농가(69) 비율은 1.6%에 불과하지만 2019년 1회추경 예산 기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대비 수출농업 분야 예산 비율은 15.9%에 육박함.
 - 다만, 2019년 기준 우리군 수출농업 분야 예산확대는 국도비 사업 적극 유치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참고] 우리군 수출농업 분야 예산현황(2019년 1회추경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농업기술센터	수출농업 분야	수출농업분야 예산 비율
합계	55,074,230	8,811,247	15.9%
국비	10,500,897	3,274,256	
균특	3,276,600		
기금	3,145,373	445,129	
도비	4,855,314	1,040,783	
군비	33,296,046	4,051,079	

※ [참고] 우리군 전체농가 대비 수출농가 현황(2017년 기준)

전체농가 수	수출농가 수	전체농가 대비 수출농가 비율
4,310	69	1.6%

2. 건의사항

- 농업보조금의 특정 농업인·단체에 대한 중복·편중 지원 개선
- 향후 수출농가 육성은 신규농가 기반조성 중심으로 지원하고 모든 농가에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단계적 축소 필요.

※ 수출농업 육성의 필요성은 분과위원 모두가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과다하다는 다수 의견 제기. 수출농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내 일반 농업 인들과 지원 형평성 확보 필요.

토론결과 요약

- 자체의 농정 예산도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다수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일부농가 편중 지원 매우 불합리함. 특혜 중에 특혜라 할 수 있음. 수출농가 대부분은 기업형 농가임. 수출농업의 높은 장벽이 존재하므로 처음 자리를 잡는 단계에서는 지원확대 하는 것 바람직하지만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농가에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함.
- 수출농가조직 기득권 강해 신규농가 접근 거의 차단되어 있음.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부 농가에 지속적으로 누적 지원되는 구조임.
- 일반적인 대다수 농가는 1년에 1-2백만원 지원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 품목별, 단체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농가별, 단체별 보조금 총액제, 일몰제 등 도입 필요.
- 최우선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축 산 분 과

1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책 마련
2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도입 지원
3	초유은행 사업 도입
4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지원사업 기준사업비 현실화
5	축산후계인력 육성 대책 마련
6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사업 확대
건의보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건의내용

1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책 마련

1. 제언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11호)」에 따르면 '20. 3. 25일부터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검사결과 배출시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되어야 반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 퇴비 부숙도 검사는 전업화 된 양돈·양계농가보다는 소규모 한우농가가 문제인데, 통계청의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농가 중 사육마릿수 50마리 미만이 전체의 약 82%(7만8500농가)이며, 2017년 기준 우리군 현황을 보면 89%가 50두 미만 농가임.
- 이에따라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군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2. 건의사항

- 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스키로더 추가 구비(장비구입 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 나. 퇴비사 지원 확대
- 다. 악취경감 발효제, 톱밥 지원 확대
- 라. 환경부의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콤팩트(CoMMe-100), 솔비타(Solvita) 등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 구축

토론내용 요약

- 퇴비부숙 촉진을 위해 교반작업 필수. 소규모 농가가 교방장비(스키로더) 구입하기 쉽지 않으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스키로더 추가 구비를 통해 농가 편이도 필요.
- 스키로더 구입 지원사업 관련, 기준사업비 현실화 필요(4,000~4,500만원). 다만 스키로더 구입 지원사업 사업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악취경감 발효제, 톱밥공급 지원사업 예산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우리군 축산농가 중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 많지 않음. 제도 시행에 따라 퇴비사 지원 확대 필요.(신축 및 증축)
 - 퇴비사 지원 불가시 건조시설 지원 검토 필요
 - 퇴비사 에어시설(바닥을 통한 산소공급) 시범사업 도입 검토 필요
- 그 외 토론주제와는 별도로 축산농가에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악취문제 해결'의 필요성 제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효제, 톱밥공급 지원사업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 건의

2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 도입

1. 제언배경

-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은 축산농가가 여행, 장기출타 등으로 가축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선발된 전문인력(헬퍼)이 농가를 찾아가 소 먹이 주기, 축사 청소 등을 대행해주는 제도임
- 우리군은 낙농 도우미(헬퍼)는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한우 등 축종에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사업 도입 필요성 제기

2. 건의사항

-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사업 도입
 - 축협과 협의를 통해 영월군 운영방식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축산농가 도우미 사업 도입

토론내용 요약

- 헬퍼제를 실시하고 있는 젖소농가와의 형평성확보 차원에서 한우농가 대상 제도 도입 필요.
- 지체체-축협 협력을 통한 사업 도입 적극 검토 필요

(이하 축산분과 건의 사항 생략)

농촌발전분과

1	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계획 보완
2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3	농업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4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확대 및 추진 체계 개선
5	여성농업인 작업대 지원 확대
6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7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마련
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9	치유농장, 농촌 체험 교육농장 관련 지원예산 확대
10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확대
11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12	관행작목 재배교육 강화(채소, 감자, 약초 등)
13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확대
14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개선 필요
건의 보류	농업인수당 제도 도입

건의내용

1 농업인력지원센터 추진계획 보완

1. 제언배경

- 일반적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농 증가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하고 구직자 상담, 농촌인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농작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
- 우리군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나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되었음.
- 이에따라 농업인력지원센터 본연의 기능인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업무 중심으로 공약 추진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2. 건의사항

가. 농업인력지원센터 본연의 업무 추진계획 수립

- 농업인과 구직자 연결, 구직자 상담, 농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등

나. 향후 농가 고령화 대응 ‘영농작업단’ 구성·운영으로 역할 확대

- 농업인력지원센터 및 영농작업단 운영은 지역 농·축협이나 인력중개업소와 연계 추진 검토

토론내용 요약

-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시 보험 의무가입 등을 통해 노동안정성 확보 가능. 또한 중개역할을 통해 농업인력의 인건비 수취 비용 제고와 농가부담 경감 등 효과 있음.
-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해소 정책 도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본 회의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되길 바라는 정책사업 중 1순위로 선정된 농정과제였음.
- 농업인력 부족과 농가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와 영농작업단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 제안배경

-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農業)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로서 매년 11월 11일에 해당함
 - 최근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념일로 지정
- 우리군은 전체가구 대비 농가 비중이 24% 이르는 전형적인 농업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
- 이에따라 우리군 전체 농업인, 농업인단체, 조합,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필요성 제기

2. 건의사항

-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 관내 전체 농업인, 농업인단체, 조합, 농업기술센터 참여

토론내용 요약

- 농업인학습단체장 협의 완료.
 - 전병설, 이웅재, 김미숙, 박순옥, 김은솔(박용현), 전영록
- 농·축협 조합장 동참 건의
 - 2019년 9월 현재, 농·축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와 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참을 건의함. 향후 관내 농·축협조합장협의회 개최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 후 결과를 알려 주기로 함.
- 금년 개최 불가 시 2020년 개최 추진.

(이하 농촌발전분과 건의 사항, 타 분과 건의 사항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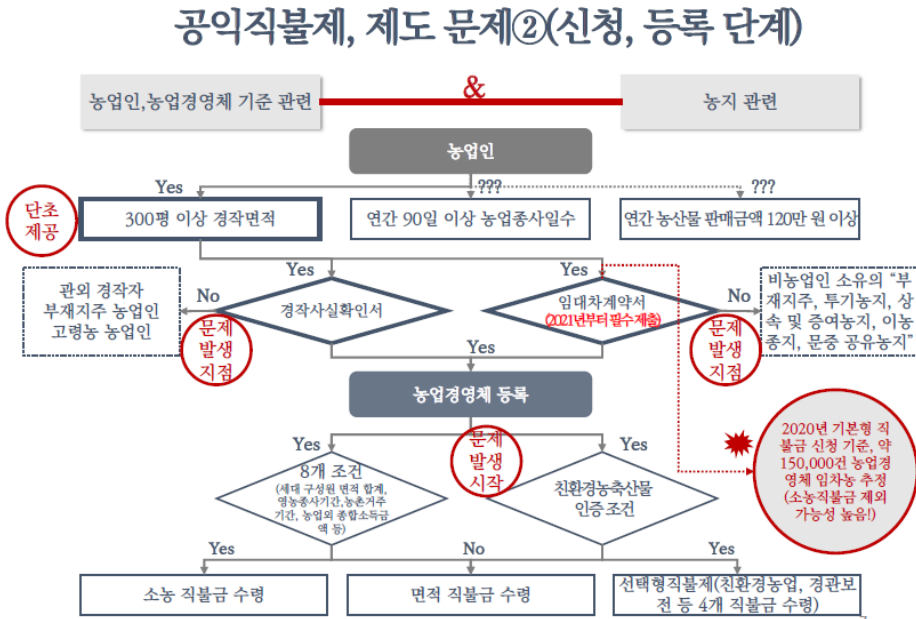
기타건의

2019년 읍면순회농업인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입니다. 매년 농가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내용오니 향후 농정 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불요]

□ 기 논의되었거나 단순 예산확대, 타부서 소관사업 건의사항 등

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3건)
2. 토양내 중금속, 잔류농약 성분 검사장비 설치
3.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도입 등(3건)
4.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확대(3건)
5. 악취유발 등 불량퇴비 생산업체 제재방안 마련
6. 농기구 및 퇴비 지원사업이 부족, 관수시설 지원사업 부족
7. 영농자재, 농약 지원사업
8. 물통 구입 지원사업 3톤형 추가
9. 농약통 구입 지원사업 도입
10. 대농 위주의 지원사업 축소/중소농 지원 확대
11. 시설재배하우스 지원시 무인방제, 천장 자동개폐, 관수시설 일괄 지원
12. 산마늘 대체작목 보급
13.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 신청 일원화(방립면 등)
14. 친환경농업 증장기 발전방안 마련
15. pls 관련 농약등록 확대 건의

5.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등록 및 이행점검 단계 업무 개요도³⁵⁾



³⁵⁾ 강마야(2021: 7-9)에서 인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마야. 2021. “공익직불제 시행경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마을학회일소공도 제 31차 월례세미나 발표 자료.
- 김대현. 2021. “농어업회의소와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농어업회의소 민관협치형 추진 체계 현장토론회』 자료집,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김수석. 2007.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2018.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세계농업』 214: 3-12.
- 김수석·이규천·김광수. 2010.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김남훈·김정승·조여니·강마야·이도경. 2020.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계 개편 방안(3/3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21. 농어업회의소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 자료.
- 마상진·김수석·권인혜. 2014. 『농어업회의소 교육 컨설팅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신희권. 2010. “우리나라 농정 거버넌스의 재구축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2(2): 155-176.
- 오현석·김진호·김정섭. 1998. “한국 농업회의소의 창립과 농촌지도사업의 위상 변화에 대한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5(2): 177-186.
- 오현석. 2011.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 국민농업포럼토론회 발표 자료.
- 위르겐 하버마스. 2000.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한상진·박영도 옮김, 나남.
- 정기수·채선옥·최수지. 2018.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Moseley, M. 2003. *Local Partnerships for Rural Development: the European Experience*. CABI Pub.
- OECD. 1990. *Partnerships for Rural Development*. Paris: OECD Publication.
- Young, Iris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ersity Press.

KREI

www.krei.re.kr

농업회의소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9 791161 495002
ISBN 979-11-6149-500-2